

IFRS17 보험회계해설서

(2022.11.)



동 자료에 수록된 각종 통계자료, 조사결과 등은 내부 업무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수집된 자료의 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동 자료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으며 동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인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계해설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반영-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서 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3년부터 기존의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도 2023.1.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이 도입되어 보험회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험회계를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험회계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보험회계인 IFRS4에서는 개별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17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향상되고,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재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되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해설서에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과 현재까지 개정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보험회계, 특별계정회계 등의 내용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계 실무자의 이해도 증대를 위하여 다수의 회계처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회계처리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해설서의 내용과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해설서가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보험회계해설서」 발간을 통하여 보험관련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회계를 이해하게 되고 보험회사 회계실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IFRS17이 보험권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 1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차 수 환

Contents

제1장. 보험회계총론	3
제1절. 보험회계의 의의	3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도입 배경	3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특징	3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관계	4
1.4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5
제2절. 보험회계의 개요	5
2.1 보험회계 적용대상	5
2.1.1 적용범위	5
2.1.2 보험계약의 정의	5
2.1.3 적용범위 제외	6
2.1.4 보험계약의 구성요소	6
2.1.5 투자요소	7
2.1.6 내재파생상품	7
2.1.7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이전	7
2.2 계약집합의 결정	8
2.2.1 포트폴리오	8
2.2.2 계약집합	8
2.2.3 보험계약 통합 수준	9
2.3 현금흐름의 측정	10
2.4 할인율	11
2.5 위험조정	11
2.6 보험계약마진	11
2.7 보험부채 변동 회계처리	12
2.7.1 보험계약부채의 인식시기	12
2.7.2 사업결합 및 계약의 이전에 따른 최초 인식	12
2.7.3 보험계약부채의 후속 측정	13
2.7.4 보험손익 · 보험금융손익	14
2.7.5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15
2.8 회계모형	20
2.9 보험료배분접근법	21
2.9.1 개요	21

2.9.2 적용조건	21
2.9.3 측정	21
2.9.4 금융요소의 조정	22
2.9.5 손실부담계약	22
2.9.6 수익인식	22
2.10 재보험(수재 및 출재)	24
2.10.1 발행한 재보험계약 (수재보험계약)	24
2.10.2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	24
2.10.3 최초 인식	24
2.10.4 측정	25
2.10.5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25
2.10.6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25
2.11 보험수익의 표시 및 인식	25
2.11.1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25
2.11.2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의 보험수익	26
2.11.3 보험료배분접근법의 보험수익	27
2.11.4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	27
2.12 보험비용의 표시 및 인식	27
2.12.1 보험서비스비용	27
2.13 보험금융손익의 표시 및 인식	28
2.14 중간재무보고	28
2.15 보험부채 공시	29
제3절. 보험회계 관련 규제	29
3.1 적용법규	29
3.2 재무제표 제출기한	30
3.3 경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	30
3.4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32
3.5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	34
3.6 경영공시	35
제4절.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37
4.1 재무상태표	38
4.2 포괄손익계산서	39
제2장 재무상태표	43
제1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43
1.1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43
1.1.1 재무상태표의 의의	43
1.1.2 자산의 인식과 측정	43

1.1.3 부채의 인식과 측정	43
1.1.4 재무상태표의 표시 원칙	44
제2절. 금융상품 총론	45
2.1 금융상품 일반	45
2.1.1 금융상품의 정의	45
2.1.2 금융상품의 분류	45
2.1.3 금융상품의 재분류	48
2.1.4 금융상품의 인식	49
2.1.5 금융상품의 제거	49
2.1.6 금융자산의 손상	49
2.1.7 금융상품의 외화환산	49
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
2.2.1 분류조건	50
2.2.2 금융상품의 예	50
2.2.3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	52
2.2.4 재분류에 관한 사항	52
2.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3
2.3.1 분류조건	53
2.3.2 금융상품의 예	53
2.3.3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	54
2.3.4 재분류에 관한 사항	55
2.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6
2.4.1 분류조건	56
2.4.2 금융상품 종류	56
2.4.3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	57
2.4.4 재분류에 관한 사항	58
2.5 파생상품	59
2.5.1 파생상품의 정의	59
2.5.2 내재파생상품회계처리	62
2.5.3 공정가치위험회피	65
2.5.4 현금흐름위험회피	67
2.6 금융상품의 공시	71
2.6.1 공정가치 공시	71
2.6.2 리스크 공시	72
2.6.3 기타 공시	74
제3절. 자산 계정과목별 해설	74
3.1 현금 및 예치금	74
3.1.1 현금	74

3.1.2 예치금	74
3.2 유가증권	75
3.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75
3.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75
3.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75
3.2.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75
3.3 대출채권	76
3.3.1 대출채권의 정의	76
3.3.2 주요회계처리	82
3.3.3 주요계정과목설명	82
3.4 부동산	83
3.4.1 취득 및 인식	83
3.4.2 후속원가의 인식	85
3.4.3 후속측정	85
3.4.4 감가상각	85
3.4.5 손상	86
3.4.6 제거	87
3.4.7 매각예정자산의 분류	87
3.4.8 부동산 계정과목 설명	88
3.4.9 공시사항	89
3.5 기타자산	91
3.5.1 유형자산	91
3.5.2 무형자산	91
3.5.3 미수금	94
3.5.4 보증금	94
3.5.5 미수수익	95
3.5.6 선급비용	95
3.5.7 이연법인세자산	95
3.5.8 기타	96
3.5.9 리스회계	97
제4절. 보험부채 총론	99
4.1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약의 분류	99
4.1.1 개요	99
4.1.2 보험계약 판단 주요 기준	101
4.1.3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 기준	103
4.2 회계단위	106
4.2.1 최소인식 단위	106
4.2.2 보험요소의 분리와 결합	106

4.2.3 계약의 경계	108
4.2.4 보험 포트폴리오	108
4.2.5 보험계약 집합의 구분	109
4.2.6 공시정보의 통합수준	110
4.3 회계모형 개요	111
4.3.1 장기보험 회계모형 및 적용요건	111
4.3.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요건	113
4.3.3 재보험에 관한 사항	114
4.4 현금흐름	114
4.4.1 미래현금흐름의 특성과 포함항목	114
4.4.2 사업비(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투자관리비 등)	117
4.4.3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고려사항	118
4.4.4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기간	119
4.4.5 미래현금흐름의 예측방법	120
4.4.6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123
4.5 할인율	128
4.5.1 할인율의 특성 및 측정방법	128
4.5.2 무위험수익률의 정의 및 특징	129
4.5.3 비유동위험에 대한 고려사항	130
4.5.4 할인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131
4.6 위험조정	133
4.6.1 위험조정평가대상	133
4.6.2 위험조정평가방법	133
4.6.3 위험조정에 대한 신뢰수준	137
4.6.4 위험조정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138
4.7 보험계약마진	141
4.7.1 보험계약마진의 의의	141
4.7.2 보험계약마진의 최초인식	142
4.7.3 보험계약마진의 조정 및 회계처리	142
4.8 보험부채의 변동	147
4.8.1 당기현금흐름의 변동(비금융가정 변동)	147
4.8.2 당기현금흐름의 변동(금융가정 변동)	147
4.8.3 미래현금흐름변동(보험료)	147
4.8.4 미래현금흐름변동(사업비 등)	147
4.8.5 미래현금흐름변동(보험금 등 비금융가정 변동)	148
4.8.6 미래현금흐름변동(금융가정 변동)	148
4.9 변동수수료모형	148
4.9.1 적용요건	148

4.9.2 적용을 위한 현금흐름의 중요성 판단	149
4.9.3 주요 회계처리	149
4.9.4 회계불일치 제거를 위한 예외 조치	154
4.10 보험료배분접근법	155
4.10.1 적용요건	155
4.10.2 보험취득현금흐름에 대한 회계정책	155
4.10.3 보험료배분접근법부채의 변동	156
4.11 출재보험	157
4.11.1 출재보험의 정의 및 의의	157
4.11.2 출재보험계약 정의 및 계약의 경계	158
4.11.3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측정	158
4.11.4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할인	159
4.11.5 출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	159
4.11.6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160
4.11.7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요소	160
4.11.8 출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변동	161
4.12 전환회계	164
4.12.1 전환일의 보유계약 평가방법	164
4.12.2 전환시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부채 평가	165
4.13 보험부채 공시	166
4.13.1 개요	166
4.13.2 공시를 위한 통합수준	166
4.13.3 공시 요구사항	167
4.14 문서화	184
제5절. 보험부채 계정과목별 해설	186
5.1 잔여보장요소	186
5.1.1 최선추정부채	186
5.1.2 위험조정	187
5.1.3 보험계약마진	187
5.1.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부채	187
5.2 발생사고요소	187
5.2.1 최선추정부채	187
5.2.2 위험조정	187
5.2.3 감독목적준비금	187
5.3 재보험자산/부채	188
5.3.1 잔여보장요소	188
5.3.2 발생사고요소	188
5.4 투자계약부채	189

제6절. 기타부채 계정과목별 해설	189
6.1 순확정급여채무	189
6.2 기타부채	197
6.2.1 미지급금	197
6.2.2 미지급비용	198
6.2.3 미지급법인세	198
6.2.4 당좌차월	198
6.2.5 차입금	198
6.2.6 사채	199
6.2.7 선수금	200
6.2.8 선수수익	200
6.2.9 예수금	200
6.2.10 미지급부가세	201
6.2.11 가수금	201
6.2.12 가수보험료	201
6.2.13 본지점계정대	201
6.2.14 이연법인세부채	202
6.2.15 임대보증금	202
6.2.16 파생상품부채	202
6.2.17 신탁계정차	203
6.2.18 복구충당부채	203
6.2.19 채무보증충당부채	203
6.2.20 요구불상환지분	203
6.2.21 지급어음	204
6.2.22 자산재평가계약자지분	204
6.2.23 그밖의기타부채	204
6.2.24 특별계정부채	204
제7절. 자본 총론	205
7.1 자본의 분류	205
7.1.1 자본의 분류 요건	205
7.1.2 신종자본증권	205
7.1.3 감독업무시행세칙상 자본분류	207
7.2 자본의 변동	208
7.2.1 자본 거래	208
7.2.2 손익 거래	210
7.2.3 배당	210
7.2.4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211
7.2.5 계약자지분조정	211

제8절. 자본 계정과목별 해설	211
8.1 납입금	211
8.1.1 자본금	211
8.1.2 자본잉여금	212
8.1.3 신종자본증권	215
8.2 잉여금	215
8.2.1 이익잉여금	215
8.2.2 자본조정	224
8.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5
8.2.4 계약자지분조정	226
제3장. 손익계산서	229
제1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229
1.1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229
1.1.1 손익계산서의 의의	229
1.1.2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의 인식 및 표시	230
1.1.3 투자수익과 투자비용의 인식 및 표시	230
1.2 주주 및 계약자손익 배분	230
1.2.1 계약자배당을 위한 손익 기준	230
1.2.2 유/무배당 보험에 대한 손익 구분	231
1.2.3 보험이익의 배분기준 변천과정	231
제2절. 보험손익 총론	232
2.1 보험손익 일반	232
2.1.1 보험수익과 비용	232
2.2 보험수익	233
2.2.1 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	233
2.2.2 위험조정 수익인식	234
2.2.3 손실요소 배분액	234
2.2.4 예상발생보험금 및 예상사업비	235
2.2.5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236
2.2.6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수익	236
2.2.7 기타	236
2.3 보험서비스비용	237
2.3.1 실제발생보험금 및 실제사업비	237
2.3.2 발생사고요소 조정	237
2.3.3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237
2.3.4 손실부담계약관련 비용 환입	237
2.3.5 손실요소 배분액	237
2.3.6 기타	238

제3절. 보험손익 계정과목 해설	238
3.1 보험수익	238
3.1.1 예상보험금	238
3.1.2 예상손해조사비	238
3.1.3 예상계약유지비	239
3.1.4 예상투자관리비	239
3.1.5 위험조정변동	239
3.1.6 보험계약마진 상각	239
3.1.7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239
3.1.8 손실요소 배분액	239
3.1.9 기타보험수익	240
3.1.10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240
3.2 보험서비스비용	240
3.2.1 발생보험금	240
3.2.2 발생손해조사비	241
3.2.3 발생계약유지비	241
3.2.4 발생투자관리비	241
3.2.5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241
3.2.6 발생사고요소조정	241
3.2.7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241
3.2.8 손실요소배분액	241
3.2.9 기타보험서비스비용	242
3.2.10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242
제4절. 투자손익 총론	243
4.1 투자손익 일반	243
4.1.1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243
4.1.2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 회계정책	243
4.1.3 회계모형별 보험금융수익(비용) 회계처리 방법	244
4.1.4 변동현금흐름에 대한 이자율 계산	245
4.2 보험금융비용	245
4.2.1 최선추정부채 보험금융비용	245
4.2.2 위험조정 보험금융비용	246
4.2.3 보험계약마진 보험금융비용	246
4.3 보험금융수익	246
4.3.1 최선추정부채 보험금융수익	246
제5절. 투자손익 계정과목 해설	247
5.1 보험금융비용	247
5.1.1 보험계약금융비용	247

5.1.2 보험계약순금융비용 (OCI)	247
5.1.3 기타	247
5.2 보험금융수익	248
5.2.1 보험계약금융수익	248
5.2.2 보험계약순금융수익 (OCI)	248
제6절. 출재보험손익 총론	249
6.1 출재보험손익 일반	249
6.1.1 원수보험과 차이내역	249
6.1.2 투자회수요소의 반영	250
6.1.3 원수보험계약 손실회수요소 조정	250
제7절. 출재보험손익 계정과목 해설	251
7.1 출재보험수익	251
7.1.1 발생재보험금	251
7.1.2 발생손해조사비	251
7.1.3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251
7.1.4 손실회수요소배분액	251
7.1.5 발생사고요소조정	251
7.1.6 기타재보험수익	252
7.2 출재보험서비스비용	252
7.2.1 예상재보험금	252
7.2.2 예상손해조사비	252
7.2.3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252
7.2.4 기타재보험비용	252
제8절. 출재투자손익 총론	253
8.1 출재투자손익	253
8.1.1 재보험금융손익	253
8.1.2 출재사의 불이행위험	253
제9절. 출재투자손익 계정과목 해설	253
9.1 출재투자손익	253
9.1.1 재보험금융비용	253
9.1.2 재보험금융수익	254
9.1.3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254
제4장. 기타의 보험회계	257
제1절. 재보험 회계	257
1.1 개요	257
1.1.1 재보험의 기능	257

1.2 재보험의 형태	257
1.2.1 전가하는 방법의 절차상 차이에 따른 구분	258
1.2.2 책임분담방법에 따른 구분	258
1.2.3 임의재보험	258
1.2.4 특약재보험	259
1.2.5 비례재보험특약	259
1.2.6 비비례재보험특약	268
1.3 발행한 재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275
1.3.1 인식	275
1.3.2 계약의 경계 판단	275
1.3.3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측정	276
1.3.4 수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할인	277
1.3.5 수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	277
1.3.6 수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77
1.3.7 수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변동	277
1.4 재보험 회계처리	279
1.4.1 일반모형	279
1.4.2 보험료배분접근법	281
1.5 공동재보험	283
1.5.1 공동재보험의 정의	283
1.5.2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 회계 처리	285
1.5.3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재보험 회계 처리	288
제2절. 특별계정 회계	291
2.1 특별계정의 성격	291
2.1.1 특별계정의 의의	291
2.1.2 특별계정의 구분	291
2.2 특별계정재무제표	293
2.2.1 기준서와 감독규정의 차이	293
2.2.2 재무상태표	294
2.2.3 포괄손익계산서	294
2.2.4 재무제표 공시	295
2.3 특별계정 회계처리	298
2.3.1 적립보험료와 운용수익	298
2.3.2 자금이체	301
2.3.3 자금이체 시기	303
2.3.4 기간 경과이자	303
2.4 퇴직보험 특별계정	304
2.4.1 퇴직보험의 의의	304
2.4.2 재무제표 작성방법	304

2.5 변액보험 특별계정	304
2.5.1 변액보험의 의의	304
2.5.2 변액보험 역사	304
2.5.3 변액보험 성격	305
2.5.4 변액보험과 타상품 비교	305
2.5.5 재무제표 작성방법	307
2.6 생명보험 연금저축 및 자산연계형 특별계정	308
2.6.1 연금저축의 특징	308
2.6.2 자산연계형상품의 특징	308
2.6.3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308
2.7 퇴직연금 특별계정	308
2.7.1 퇴직연금 의의	308
2.7.2 퇴직연금과 퇴직보험의 비교	308
제3절. 대손충당금 회계	309
3.1 인식 대상 및 측정 모형	309
3.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 기준서의 개요	309
3.1.2 적용대상	309
3.1.3 측정모형의 구분	309
3.1.4 전환일 규정	310
3.2 측정방법	311
3.2.1 단순접근법	311
3.2.2 일반접근법	311
3.3 대손준비금	317
제4절. 법인세 회계	320
4.1 정의	320
4.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321
4.2.1 비일시적 차이	322
4.2.2 일시적 차이	322
4.3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322
4.3.1 이연법인세부채	322
4.3.2 이연법인세자산	323
4.3.3 실현가능성 평가	324
4.4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측정	326
4.5 수정신고	327
4.6 재무제표 표시	328
4.6.1 미수법인세환급액의 표시	328
4.6.2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표시	328
4.7 법인세비용의 기간내 배분	329

제5절.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331
5.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및 범위	331
5.1.1 의의	331
5.1.2 용어의 정의	332
5.1.3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333
5.1.4 특수목적기업	338
5.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341
5.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341
5.2.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342
5.2.3 주요 연결 회계처리 개요	342
5.2.4 내부거래 대사 및 상계	345
5.2.5 지배권 획득일의 투자·자본상계	348
5.2.6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	352
5.3 재무제표 환산	354
5.3.1 외화환산	354
5.3.2 그룹통화환산	354
5.3.3 주요 회계처리	354
5.3.4 환율확정 및 그룹통화 환산	354
5.4 별도재무제표	355
5.4.1 정의 및 범위	355
5.4.2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의 회계처리	355
5.4.3 종속기업이 없는 기업의 재무제표 표시	356
5.5 연결재무제표 공시 사항	356
제6절. 외화보험과 환율변동효과	358
6.1 개요	358
6.2 화폐성 및 비화폐성의 구분	358
6.3 외화보험계약의 외화환산	358
6.3.1 최초인식	358
6.3.2 장부금액 변동분의 외화환산	359
6.3.3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359
제7절. 계약자배당	364
7.1 개요	364
7.1.1 계약자배당의 의의	364
7.1.2 잉여금의 발생 원인	364
7.1.3 잉여금의 발생 원천	364
7.2 손익분석	365
7.2.1 손익분석의 개념	365
7.2.2 손익분석의 목적	365

7.2.3 손익분석 방법	366
7.2.4 계약자지분 배분	372
7.3 계약자배당관련 보험계약부채	374
7.3.1 보험사건의 정의	374
7.3.2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	376
7.3.3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378
7.3.4 계약자배당준비금	378
제8절. 지분법회계	381
8.1 적용 범위	381
8.2 지분법 회계처리	383
8.3 기타사항	391

제5장. 회계사례 395

제1절. 회계처리(일반모형)	395
1.1 최초인식	395
1.1.1 이익계약집합	395
1.1.2 손실계약집합	395
1.1.3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 반영	396
1.2 기중거래	396
1.2.1 응당 보험료 수취	396
1.2.2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397
1.2.3 보험취득관련 비용 발생	398
1.2.4 계약유지관련 비용 발생	399
1.2.5 투자요소 지급	399
1.2.6 계약해지 및 중도인출	400
1.2.7 부활	400
1.2.8 계약자배당	401
1.2.9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401
1.3 결산정리	402
1.3.1 공시이율변경	402
1.3.2 Unwinding (이자부리 포함)	403
1.3.3 미래현금흐름 변동(비금융가정)	404
1.3.4 미래현금흐름 변동(금융가정) - 일반 및 변동수수료 모형	404
1.3.5 위험조정의 변동	405
1.3.6 손실부담 평가	406
1.3.7 보험계약마진 상각	407
1.3.8 손실부담계약의 손익조정	408
1.3.9 할인율 변동 반영	408
1.3.10 보험취득현금흐름 예실차 회계처리	409

제2절. 회계처리(보험료배분접근법)	410
2.1 최초인식	410
2.1.1 보험료배분접근법 개요	410
2.1.2 계약집합의 구분	410
2.1.3 이익계약집합	411
2.1.4 손실계약집합	412
2.2 기중거래	414
2.2.1 보험료 수취	414
2.2.2 보험금 지급	415
2.2.3 보험취득관련 비용 발생	416
2.2.4 계약해지 및 중도인출	418
2.2.5 투자요소의 지급	418
2.3 결산정리	418
2.3.1 Unwinding (이자부리)	418
2.3.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수익	423
2.3.3 손실부담부채	426
제3절. 출재보험(일반모형)	430
3.1 최초인식	430
3.1.1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출재보험계약	430
3.1.2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 출재보험계약	432
3.2 기중거래	434
3.2.1 재보험료 지급시점	434
3.2.2 재보험수수료 발생시점	437
3.2.3 재보험금 수취시점	442
3.2.4 수입손해조사비 수취시점	443
3.2.5 계약유지 관련비용 발생	444
3.3 결산정리	445
3.3.1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	445
3.3.2 투자회수요소의 인식	446
3.3.3 재보험수수료와 투자회수요소	448
3.3.4 이익수수료의 배분	449
3.3.5 불이행위험의 반영	450
3.3.6 손실회수요소	450
제4절. 재무제표	452
4.1 재무상태표 양식	452
4.2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460

제 1 장

보험회계총론

제1장. 보험회계총론

제1절. 보험회계의 의의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도입 배경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K-IFRS'라고 한다)을 적용해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던 기존 국제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보험계약'은 국가별 회계요구 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회계 실무를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별 상품별 회계처리의 차이 때문에 투자자들과 재무분석가들은 보험회사의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험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은 공통의 국제 보험회계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이 장기이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계약 내에 유의적인 투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보험계약' 하에서 허용되던 종전의 일부 보험회계 실무는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진정한 재무상태나 재무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더 유용하게 하고 보험회계 실무를 국가간 더 일관되게 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을 공표하였다.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특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계약의 특징을 결합한 계약이며, 대다수의 보험 상품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변동성을 가진 현금흐름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특징을 가진다.

- ① 미래에 불확실한 특정 사건(보험사건)이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서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식별한다.
- ② 특정 내재파생상품, 구별되는 투자요소 및 구별되는 이행의무는 보험계약과 분리한다.
- ③ 계약들을 인식하고 측정할 집합으로 구분한다.
- ④ 다음의 (가)에 (나)를 가감((가)의 가치가 부채라면 (나)를 가산하고 (가)의 가치가 자산이라면 (나)를 차감)하여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1. 관측 가능한 시장 정보와 일관되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위험을 조정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2. 계약 집합의 미실현 이익을 나타내는 금액(보험계약마진)

- ⑤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기간에 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의 이익을 인식한다. 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거나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 즉시 손실을 인식한다.
- ⑥ 포괄손익계산서에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수익 또는 보험금융비용을 별도로 표시한다.
- ⑦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⑧ 재무상태표에 포트폴리오별로 순부채(자산)인 보험계약, 순자산(부채)인 출재보험계약을 별도로 표시한다.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는 이미 2018년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시가평가 하는 제1117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2022년 대상의 재무제표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예전 금융상품 회계기준 또는 새롭게 제정된 제1109호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비교목적 공시기간에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류조정(Overlay)이 허용되는데,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는 기업이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하거나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만 해당 과거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었다면 제1109호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는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Overlay)을 적용하는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예: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예비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 분류 오버레이 적용으로 발생한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과 전환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전환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 내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는 기업은 다음을 따른다.

- ①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 1. 분류 조정이 적용된 정도(예: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5.5절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되었는지와 적용된 정도
- ② 금융자산 분류 오버레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전환일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사이의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에만 적용한다.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7.2절 참조).

1.4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일반회계는 주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 제공목적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지만, 감독회계는 재무건전성 유지, 계약자 보호 등 감독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보험업법」에 근거를 두며 감독당국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한다.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감독목적 회계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면서 회사간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확대 등의 국제회계기준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2절. 보험회계의 개요

2.1 보험회계 적용대상

2.1.1 적용범위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에 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기준서 제1117호의 모든 사항은 출재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집합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에도 적용한다.

2.1.2 보험계약의 정의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미래에 불확실한 특정사건(보험사건)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한 특정사건에 대하여 ②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 보험자(보험회사)가 이러한 계약을 인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서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식별한다. 여기서 보험위험의 유의성이란 어떠한 경우에 보험사건으로 인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발행자에게 손실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위험은 유의적으로 판단한다.

표1 | 보험위험의 유의성(중요성) 판단 기준

<부가급부금 비율>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보험사고 미발생 시의 급부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판단한다.

* 부가급부금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금 - 보험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

* 부가급부금 비율 = (부가급부금(=PV(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금^{주1}) - PV(보험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주2}))) ÷ (PV(보험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주2}))

^{주1}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과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금지급금 등 각종 급부의 합을 의미

^{주2} 생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중도환급금, 연금지급금 등과 해지환급금의 합을 의미하며, 각 금액은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금액 기준

부가급부금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보험위험이 유의적인(Significant)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해외 보험사는 보험위험의 중요성 정량적 판단기준은 1%~10%까지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5)에서는 유의성 판단기준을 10%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부가급부금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구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가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한다.

2.1.3 적용범위 제외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보증과 관련된 거래 및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단, 출재 보험은 제외)에 대해서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준서 제1117호 문단 7에서 말하고 있는 리스계약, 금융보증계약 (단,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제외),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2.1.4 보험계약의 구성요소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는 저축요소와 보장요소가 포함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자에게서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저축보험료 부분에 특정이율로 부리한 만기환급금도 돌려받는다. 또한 일정부분의 보증이율을 보장받는 경우도 있으며, 유배당 상품의 경우 배당금도 수취한다. 이렇게 보험상품에는 보험요소와 투자요소 및 파생상품, 비보험 서비스 요소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의 구분 가능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2.1.5 투자요소

기준서 제1117호 부록A 용어의 정의에서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투자요소가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주1}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한다.

명백하게 구분이 불가능한 투자요소의 경우^{주2} 보험요소와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를 적용하며,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 이러한 투자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1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고,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제삼자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주2 투자요소와 보험요소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를 적용. (1) 한 요소의 가치가 다른 요소의 가치에 따라 변동되거나, (2) 한 요소의 실효나 만료가 다른 요소의 실효나 만료를 야기하는 경우

2.1.6 내재파생상품

보험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명백하게 분리가능할 경우 분리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한다.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가능 여부 판단기준은 ‘금융상품’ 기준서와 동일하다.

2.1.7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 이전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보험계약에서 분리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를 적용한다.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기업이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비보험 서비스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체에 대하여 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한다.

2.2 계약집합의 결정

2.2.1 포트폴리오

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예: 정기생명보험과 일시납 고정연금의 경우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 회사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표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포트폴리오 구분

구 분	보험 종류	포트폴리오 구분
원수보험	생명보험	유배당사망, 무배당사망, 변액사망, 유배당건강, 무배당건강, 변액건강, 유배당연금·저축, 무배당연금·저축, 변액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변액기타
	장기손해보험	유배당상해, 무배당상해, 유배당질병, 무배당질병, 유배당재물, 무배당재물, 유배당연금·저축, 무배당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유배당기타, 무배당기타
	일반손해보험	국내(화재, 종합, 해상, 근재, 책임, 상해, 기술, 보증, 자동차, 기타), 해외
재보험	생명보험	사망, 건강, 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기타, 복합
	장기손해보험	상해, 질병, 재물, 연금·저축, 자산연계형연금·저축, 기타, 복합
	일반손해보험	국내(화재, 종합, 해상, 근재, 책임, 상해, 기술, 보증, 자동차, 기타), 해외, 복합

2.2.2 계약집합

기준서 제1117호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계약 집합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최초 인식시점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계약이 있다면 그러한 계약으로 나눔에 따라 생기는 보험계약 세트로, 1년 이내의 기간에 발행된 계약으로 구성된다.

- ① (있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 ② (있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③ (있다면) 위 ①과 ②가 아닌 집합

상기 3가지의 계약집합을 나누는 수익성 구분 기준 외에도 회사는 기준서 제1117호 문단 21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아니한다.

- ① 금리연동 구분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변액, 자산연계 등)
- ② 최초 인식 후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의 차이
- ③ 회계모형 구분 (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변동수수료접근법)
- ④ 원수출재 구분 (원수, 수재, 출재)
- ⑤ 보험개시월도
- ⑥ 개인단체 구분 (개인, 단체, 제휴 등)

계약세트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이 손실부담인지 여부 혹은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유의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계약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세트가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개별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2.2.3 보험계약 통합 수준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이란, 어느 범위까지를 1개의 동질적 집단으로 판단하여 평가할지를 결정하는 단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보험업종에서 사용 중인 보험계약의 평가단위에는 증권번호, 상품코드, 상품군, 담보, 영업부문 등 다양한 평가단위가 존재하며, 이러한 평가단위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3 | 용도별 구분가능 항목

구 분	용 도
담보	책임준비금 및 IBNR 담보별 계산
상품코드	보험료 분석보고서(상품개발)
상품군별	보유계약가치
유·무배당 구분, 금리확정·연동 구분	부채적정성평가(LAT)

기준서 제1117호에서 정의하는 각 평가단위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회계단위와 용도

구 분	정 의	용 도
개별계약 (Individual insurance contract)	동일(혹은 밀접한 관계의) 보험계약자와 체결된 계약집합으로써 1개의 상업적효과를 위하여 체결된 계약집합은 그 전체를 1개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별계약은 증권번호 단위로 해석한다.	회계처리(신계약, 제거·변경 등)의 최소단위
계약세트 (A set of insurance contracts)	같은 집합에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손실부담계약 판단 및 후속적 손실가능성 판단에 계약 세트 기준으로 판단 가능	손실부담부채 판단 시 계약 세트 사용 가능
계약집합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발행한 계약을 개시 시점에 집합으로 통합하여, 이 집합에 기준서 제1117호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함.	기준서 제1117호 가치평가의 최소단위, CSM의 상계단위
포트폴리오 (Portfolio of insurance contracts)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됨.	회계정책 결정의 최소단위 (포트폴리오 내 모든 계약은 동일한 회계정책 적용) 직접사업비 배부 기준(포트폴리오로 합리적으로 배부 가능한 사업비만 직접사업비)

2.3 현금흐름의 측정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계약 집합의 이행에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현금유입액(보험료 등)과 현금유출액(보험금, 신계약비, 보험금지급관련비용 등)의 현재가치를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는 계약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주1} 내에 있는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하며,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변수에 대한 보험자의 관점을 반영하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과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추정하여야 한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고려한 명시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는 보험보장과 관련된 옵션 및 보증도 포함되어야 한다.

주1 계약의 경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점 또는 보장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 의무가 있는 시점으로 정의

2.4 할인율

할인율은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 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하는 요소로, 보험계약 집합의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가능한 이자율을 보험계약 집합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예: 시기, 통화 및 현금흐름의 유동성). 할인율 선정 시에는 보험계약과 관련없는 요소는 제외한다(예: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불이행위험) 등). 할인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장 재무상태표의 4.5 할인율에서 다룬다.

2.5 위험조정

비금융위험(보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대가의 금액으로 산정된 부채이다. 이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로 산출된 최선추정부채(BEL)의 변동성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위험조정이란 항목의 부채로 산출한 금액이다.

위험조정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추정기법을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90원과 110원이 될 확률이 각각 50%)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100원으로 고정)을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하고,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기업이 포함한 급부의 분산 정도와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위험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장 재무상태표의 4.6 위험조정에서 다룬다.

2.6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은 보험계약의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에서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차이로 산출되며 선수수익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 최초 인식시점의 미실현이익을 일시에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상되는 부채가 CSM 이다. 단, 동 차이 금액이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손실부담계약으로 판단하여 차이금액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2장 재무상태표의 4.7 보험계약마진에서 다룬다.

사례1 | 보험계약마진의 산출

가정

－ 위험조정: 500원

-미래현금흐름유출액의 현재가치: 4,500원

(1) 미래현금흐름유입액의 현재가치가 6,000원인 경우

보험계약마진 = 1,000원(6,000원-4,500원-500원)

(2) 미래현금흐름유입액의 현재가치가 4,000원인 경우

보험계약마진 = 0원, 당기손실 인식 금액 = 1,000원(4,000원-4,500원-500원)

2.7 보험부채 변동 회계처리

2.7.1 보험계약부채의 인식시기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을 최초 인식한다.

- ①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 ②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
- ③ 집합이 손실부담계약 집합이 되는 때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동 집합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모든 보험취득 현금흐름^{주1}은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즉, 보험계약 인식 이전에 발행한 보험계약 인수를 위하여 발생한 신계약비 등은 보험계약 인식 이전에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부채로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인식 시점에 제거된다.

^{주1} 보험계약 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 집합의 판매, 인수, 실사 등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

2.7.2 사업결합 및 계약의 이전에 따른 최초 인식

제3자에게 계약을 이전하여 수취하거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은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보험료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의 보험계약마진이나 손실 요소를 결정한다.

사례2 | 보험계약부채의 최초 측정

가정

-보장기간: 발행시점부터 3년간

-보험계약의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1,000원(최초 계약 인식시점에 수취하여 수취금액과 현재가치 금액은 동일)

-미래현금흐름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매년 300원(총 900원), 연 5% 할인율을 사용하여 817원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 300/(1.05) + 300/(1.05)^2 + 300/(1.05)^3$)
- 최초 인식시점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50원(매년 균등상각 가정)
 -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5%
 - 보험계약마진: 33원(매년 균등상각 가정)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1,000)원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817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83)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150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33)원

보험계약마진: 33원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부채: 0원

(1) 최초 인식시점

차) 보험부채(BEL: 최선추정부채)	183	/ 대)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33
		보험부채(RA: 위험조정)	150
차) 보험료 수취시점: 현금	1,000	/ 대) 보험부채(BEL: 최선추정부채)	1,000

(2) 보험서비스 제공시점

차) 보험부채(BEL: 최선추정부채)	300	/ 대) 보험수익(예상보험금)	300
차) 보험서비스비용	300	/ 대) 현금	300
차) 보험금융비용	42.7	/ 대) 보험부채(BEL: 최선추정부채)	41 ^{주1}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1.70 ^{주2}
차)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11.56	/ 대) 보험수익(CSM 상각)	11.56 ^{주3}
차) 보험부채(RA: 위험조정)	50	보험수익(위험조정 상각)	50 ^{주4}

주1 $817 \times 0.05 = 41$

주2 $33 \times 0.05 = 1.7$

주3 $(33 + 1.7) / 3 = 11.56$ 원

주4 $150 / 3 = 50$ 원

2.7.3 보험계약부채의 후속 측정

보험계약 후속측정은 최초인식된 보험계약의 후속적으로 변동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 보고기간말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부채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 금액으로, 각 보험계약부채의 변동분석 단계별 금액을

측정하고 각 변동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보고기간말 시점의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금액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회계모형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변동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잔여보장부채 최선추정부채(BEL): 신계약 인식, 이자부리, 예상현금흐름 인식, 공시이율 변경, 물량 변경, 모델 변경, 계리적가정 변경, 재량 변경, 할인율 변경 등
- ② 잔여보장부채 위험조정(RA): 신계약 인식, 위험의 해제, 이자부리, 물량 변경, 모델 변경, 계리적가정 변경, 재량 변경, 할인율 변경 등
- ③ 잔여보장부채 보험계약마진(CSM): 신계약 인식, 이자부리, 예상 및 실제 현금흐름 차이 조정, 물량 변경, 모델 변경, 계리적가정 변경, 재량 변경, 손실요소 조정, 보험계약마진 상각 등
- ④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신계약 인식, 손실요소 배부, 손실요소 조정
- ⑤ 보험료배분접근법 잔여보장부채: 수취보험료, 보험취득현금흐름 발생,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이자부리, 경과보험료, 투자요소 발생, 손실요소 조정 등
- ⑥ 발생사고부채 최선추정부채(BEL): 이자부리, 당기발생손해액, 당기지급금, 추정변경, 환율 변동, 할인율 변동 등
- ⑦ 발생사고부채 위험조정(RA): 당기발생사고, 기타변동금액 등

2.7.4 보험손익·보험금융손익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후속측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험수익: 해당 기간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됨.
 - 당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예상현금흐름 (예: 예상발생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 예상계약유지비, 예상투자관리비 등)
 - 위험조정변동액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
 -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 손실요소 배분액
- ② 보험서비스비용: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투자요소 제외)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됨.
 -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손실의 환입
 - 당기에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분
 -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

- ③ 보험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할인을 변경 효과, 환율 변경 효과, 재보험 불이행위험 변경 효과 등

2.7.5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일반모형을 적용한 계약집합에서 보고기간말의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 ①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 ②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
 -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을 적용
 -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을 고려한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③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
 -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
 -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분
 -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실제 투자요소 차이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④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 ⑤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를 확정하기 위하여 집합 내의 보장단위(Coverage Unit)를 산정하는데, 보장단위는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보고기간말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각각 배분하며,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3 | 보험계약마진의 상각

가정

- 계약집합에 3개의 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계약의 급부의 양과 듀레이션 및 총 보험계약마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급부의 양	Duration
계약 A	50원	5년
계약 B	25원	4년
계약 C	10원	3년

집합의 총 보험계약마진: 50원

<매년 배분되는 보험계약마진 산정>

(1) 총 급부의 양: $50\text{원} \times 5\text{년} + 25\text{원} \times 4\text{년} + 10\text{원} \times 3\text{년} = 380\text{원}$

(2) 상기 급부의 양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급부의 양					
	1년	2년	3년	4년	5년	누적 계
계약 A	50	50	50	50	50	250
계약 B	25	25	25	25		100
계약 C	10	10	10			30
합계	85	85	85	75	50	380

(3) 연도별로 배분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

총계	1년	2년	3년	4년	5년
50원	11원 ^{주1}	11원	11원	10원	7원

주1 $50 \times (85/380) = 11$

(4) 보장단위는 매결산기말 기준으로 재산출되어야 한다.

사례4 | 보험계약부채의 후속 측정

가정

- 보장기간: 발행시점부터 3년간
- 보험계약의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900원(최초 계약 인식시점에 수취하여 수취금액과 현재가치 금액은 동일)
- 미래현금흐름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매년 200원(총 600원), 연 5% 할인율을 사용하여 545원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200/(1.05)+200/(1.05)^2+200/(1.05)^3$)
- 최초 인식시점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0원(매년 균등상각 가정)
-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5%
- 보험계약마진: 235원(매년 균등상각 가정)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단위: 원)

구 분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	—	—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545	372	191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355)	372	19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0	80	40	—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235)	452	231	—
보험계약마진	235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부채	—			

<최초 인식시점의 회계처리>

차) 잔여보장요소 BEL	355 / 대) 잔여보장요소 RA	120
	잔여보장요소 CSM	235

1차연도 말에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원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단위: 원)

구 분	BEL	RA	CSM	부채계
기초금액	—	—	—	—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신규계약	(355)	120	235 ^{주1}	—
현금유입	900	—	—	900
보험금융비용	27 ^{주2}	—	12 ^{주3}	39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40) ^{주4}	(82) ^{주5}	(122)
현금유출	(200)	—	—	(200)
기말금액	372	80	165	617

^{주1}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었으므로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추가

^{주2} 보험금융비용 27원은 545원(기초잔액 (-)355원과 1차년도 초 수취한 현금유입 900원의 차이금액)에 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

^{주3}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대한 누적이자 12원을 기초잔액 235원에 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

^{주4}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기간 변동분(균등상각 가정)을 손익계산서에 보험서비스 결과의 일부로 표시

^{주5} 보험계약마진 82원은 247원(235원 + 12원)을 3년의 보장기간으로 배분한 금액

<1차연도의 회계처리>

－ 보험료수취

차) 현금 900 / 대) 잔여보장요소 BEL 900

－ 이자비용 인식

차) 보험금융비용_잔여보장요소 BEL 27 / 대) 잔여보장요소 BEL 27
 보험금융비용_잔여보장요소 CSM 12 잔여보장요소 CSM 12

－ 당기 보험금 지급

차) 잔여보장요소 BEL 200 / 대) 보험수익_예상보험금 200
 실제지급보험금 200 현금 200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차) 잔여보장요소 RA 40 / 대) 위험조정상각 40
 잔여보장요소 CSM 82 보험계약마진상각 82

2차연도 말에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2차연도의 실제 보험금은 최초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50원 적은 150원이다.
- (2) 회사는 3차연도에 대한 미래현금유출 추정치를 조정하여 200원이 아닌 14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가치는 191원에서 58원 감소한 133원).
- (3) 회사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연도별 변동금액을 최초 예상치인 40원에서 30원으로 수정하였다.

2차연도 말 수정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	－	－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545	372	133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355)	372	133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0	80	30	－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235)	452	163	－

2차연도 말에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단위: 원)

구 분	BEL	RA	CSM	부채계
기초금액	372	80	165	617
보험금유비용	19 ^{주1}	—	8 ^{주1}	27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	(58)	(10)	68 ^{주2}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50) ^{주3}	(40)	(121) ^{주4}	(211)
현금유출	(150)	—	—	(150)
기말금액	133	30	120	283

주1 할인율 5%를 곱한 값

주2 회사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회사는 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인 58원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인 10원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

주3 기초에 당기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서비스비용 추정치 200원과 당기에 발생한 실제 보험서비스비용 15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50원의 경험조정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아니함. 회사는 이러한 변동을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주4 보험계약마진 121원은 241원(165원 + 8원 + 68원)을 2년의 보장기간으로 나눈 금액

<2차연도의 회계처리>

— 이자비용 인식

차) 보험금유비용_잔여보장요소 BEL	19	/ 대) 잔여보장요소 BEL	19
보험금유비용_잔여보장요소 CSM	8	잔여보장요소 CSM	8

— 당기 보험금 지급

차) 잔여보장요소 BEL	200	/ 대) 보험수익_예상보험금	200
실제지급보험금	150	현금	150

—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차) 잔여보장요소 BEL	58	/ 대) 잔여보장요소 CSM	58
잔여보장요소 RA	10	잔여보장요소 CSM	10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차) 잔여보장요소 RA	40	/ 대) 위험조정상각	40
잔여보장요소 CSM	121	보험계약마진상각	121

3차연도 말에 보장기간이 종료되면,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의무는 수정된 현금유출이 3차연도 말에 지급되면서 소멸된다.

<3차연도의 회계처리>

— 이자비용 인식

차) 보험금유비용_잔여보장요소 BEL	7	/ 대) 잔여보장요소 BEL	7
보험금유비용_잔여보장요소 CSM	6	잔여보장요소 CSM	6

— 당기 보험금 지급

차) 잔여보장요소 BEL	140	/ 대) 보험수익_예상보험금	140
실제지급보험금	140	현금	140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차) 잔여보장요소 RA	30	/ 대) 위험조정상각	30
잔여보장요소 CSM	126	보험계약마진상각	126

모든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을 하기와 같이 약식 포괄손익계산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포괄손익계산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합계
보험수익	322	361	296	979
예상보험금	200	200	140	540
위험조정 상각	40	40	30	110
보험계약마진 상각	82	121	126	329
보험서비스비용	(200)	(150)	(140)	(490)
실제지급보험금	200	150	140	490
보험서비스결과	122	211	156	489
보험금융손익	(39)	(27)	(13)	(79)
보험금융비용	(39)	(27)	(13)	(79)

2.8 회계모형

보험계약부채는 크게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로 구분가능하며, 잔여보장부채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변동수수료접근법의 3가지 모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회계모형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재무상태표의 4.3 회계모형 개요에서 다룬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7호에 따라 수재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에 준해 회계모형을 선택하면 되며, 출재보험계약은 이와 달리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변동수수료접근법은 출재보험계약은 적용할 수 없다.

2.9 보험료배분접근법

2.9.1 개요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의 회계모형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단기계약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측정모형으로 수취한 보험료를 시간의 경과 기준 혹은 위험의 해제 양상 등을 고려하여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모형에 비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이며, 잔여보장부채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9.2 적용조건

다음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 ①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추정된 부채와 일반모형으로 측정된 부채의 크기가 모든 경과년도별로 유사한 경우(부채의 유사성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판단)
- ②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

2.9.3 측정

최초 인식 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① 최초 인식 시점에 수취한 보험료(현금 수취 기준)
- ② - 최초 인식 시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단,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 제외)
- ③ +- 보험계약부채 인식 전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를 그 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각 후속 보고기간말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① 전기말 장부금액
- ② + 당기 수취한 보험료(현금 수취 기준)
- ③ - 당기 중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주1}
- ④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과 관련된 금액
- ⑤ + 금융요소의 조정
- ⑥ - 경과보험료 인식(수익 인식: 예상보험료 기준)
- ⑦ -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 ⑧ 당기말 장부금액

주1 보험취득 현금흐름: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서 차감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하여 보험비용과 부채를 증가시킴

2.9.4 금융요소의 조정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주1}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단, 보장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주1 기업은 오직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갖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에 이자를 부리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일과 보장의 제공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때, 그 집합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활용하는 잔여보장부채의 금융요소의 측정의 효익을 판단하기 위해 할인 전 잔여보장부채와 할인 후 잔여보장부채의 금액적 차이의 유의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9.5 손실부담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다만, 사실과 상황이 변화하여 손실부담계약을 인식해야 할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어떠한 사실과 상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서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손실부담계약 측정의 방법은 일반모형을 사용한 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잔여보장부채의 차이로 측정한다. 또한 이런 차이를 산출할 때 보험료와 보험취득현금흐름을 각각 측정 하여 이에 상응하는 이행현금흐름과 비교 할 수 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보험계약 집합이 손실계약이 된다면, 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2.9.6 수익인식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각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이다.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다음에 따라 매 보장기간에 배분한다.

- ① 시간의 경과 기준
 - ②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 ②의 예는 특정보험의 경우 과거 보장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발생 양상이 보험종기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보험종기에 많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인식 방법은 과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과보험료 인식과 유사하다.

사례5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잔여보장부채의 측정

상황

회사는 20X3년 7월 1일에 보험계약을 발행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9개월로 20X4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이다.

- 최초계약 인식시점: 20X3년 7월 1일
- 회사는 보험료 900원을 수취하고, 보험취득현금흐름으로 90원을 지급하였다.
-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위험이 감소하며, 당기 중 해지계약은 없다.
-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임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 최초 인식시점에 투자요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가정한다.

(1) 최초계약 인식시점의 분개

20X3년 7월 1일

차) 현금	900원	/ 대) 잔여보장부채	90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90원	현금	90원
잔여보장부채	9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90원

20X3년 7월 31일

차) 잔여보장부채	100원	/ 대) 보험수익(경과보험료)	10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비	10원	잔여보장부채	10원

(2) 최초 인식시점의 재무제표 표시

20X3년 7월 31일

(단위: 원)

재무상태표(20X3.7.31.)		포괄손익계산서(20X3.7.1.~20X3.7.31.)	
자산		수익	
현금	810	보험수익(경과보험료)	100
부채		비용	
잔여보장부채	720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0
자본		순이익	
이익잉여금 ^{주1}	90	보험서비스결과 ^{주1}	90

주1 ^{주1} 잔여보장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여주며, 사고발생에 따른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 및 자본의 감소는 표시하지 않음

(3) 연도말 결산 시 분개 및 재무제표 표시

20X3년 8월 01일~20X3년 12월 31일

차) 잔여보장부채	500원	/ 대) 보험수익(경과보험료)	50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비	50원	잔여보장부채	50원

(단위: 원)

재무상태표(20X3.12.31.)		포괄손익계산서(20X3.7.1.~20X3.12.31.)	
자산		수익	
현금	810	보험수익(경과보험료)	600
부채		비용	
잔여보장부채	270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60
자본		순이익	
이익잉여금	540	보험서비스결과	540

2.10 재보험(수재 및 출재)

2.10.1 발행한 재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원수보험과 유사하게 평가한다.

2.10.2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

다른 기업이 발행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원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금에 대해 그 기업을 보상하기 위해 기업(재보험자)이 발행한 보험계약을 출재보험계약으로 정의한다. 원수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서의 모든 사항은 출재보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출재보험계약 집합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과 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10.3 최초 인식

출재보험의 경우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만약 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중 이른 날부터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한다. 다만,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과 원수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최초 계약을 인식한다. 또한, 그 밖의 보장을 제공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 시점에 최초 계약을 인식한다.

2.10.4 측정

금융위험을 반영한 확률가중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및 재보험구입 시의 순원가 또는 순차익인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1. 재보험계약 구입 시 순원가나 순차익은 재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
2.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 인식

2.10.5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 ①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 ② 손실요소의 최초 인식으로 인해 최초로 인식한 손실회수요소 관련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 ③ 손실요소의 환입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변동
- ④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
- ⑤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 ⑥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2.10.6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재보험계약 발행자인 재보험사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한다.

2.11 보험수익의 표시 및 인식

2.11.1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 ①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서비스결과
- ② 보험금융수익(비용)

투자요소로 인한 현금흐름의 유입과 유출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수익이나 비용은 발행한 보험계약의 비용 또는 수익과 별도로 표시한다.

2.11.2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의 보험수익

보험계약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와 일관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부채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보험수익은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에서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제외한 금액이다.

- ①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 ② 해당 기간에 투자요소와 관련된 변동
-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동
- ④ 제3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거래 기반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과 관련된 변동
- ⑤ 보험금융수익(비용)
- ⑥ 보험취득현금흐름
- ⑦ 제3자 이전으로 인한 부채의 제거
- ⑧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의 증감

즉,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은 전액 보험수익이지만, 잔여보장부채의 직접적인 증감을 야기하는 현금흐름(보험료,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과 세금, 금융손익, 판매(이전) 및 손실요소의 변동으로 인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수익에 해당하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 ① 기초시점의 예상 보험서비스비용(예상유출 현금흐름의 당기 귀속분, 보험취득현금흐름 제외)
- ② 투자요소의 상환액(차감)
- ③ 제3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과 관련된 금액(차감)
- ④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차감)
- 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당기 귀속분
- ⑥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러한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은 잔여보장부채의 증감을 야기하지 않으며, 잔여보장부채의 증감으로 측정할 수 없다.

2.11.3 보험료배분접근법의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와 금융요소 제외)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장기간에 배분한다.

- ① 시간의 경과 기준
- ②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즉, 보험금 등 보험서비스비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하고,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사실과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기준은 변경 가능하다.

2.11.4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은 보험금융수익(비용) 이외의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을 구분하되, 그 순액이 위의 단일 금액과 동일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된 보험료의 배분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재보험의 현금흐름은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리하여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예: 일부 유형의 재보험수수료)은 재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한다.
- ③ 손실회수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으로 처리한다.
- ④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은 수익의 감소로 표시하지 않는다.

2.12 보험비용의 표시 및 인식

2.12.1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서비스비용은 다음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①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투자요소 제외)
- ②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액

③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④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이때 발생한 보험금에는 발생하였지만, 보고되지 않은 금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도 포함한다.

보험서비스비용은 보험수익과 다르게 비용 인식방법이 잔여보장부채의 측정방법별로 다르지 않다.

2.13 보험금융손익의 표시 및 인식

보험금융수익(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그리고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을 직접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준서는 보험금융수익(비용)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 직접참가특성 유무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1)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 ①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킨다.
- ②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한다.

(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 ①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킨다.
- ②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한다.

상기 각 경우의 ②를 선택하는 경우 총보험금융수익(비용)에서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2.14 중간재무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선택은 발행한 모든 보험계약 집합과 모든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적용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유의적 손실이 없도록, 기업은 발행한 모든 원수 및 출재 보험계약에 이 선택권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즉, 이 회계정책의 선택은 보고기업 수준에서 결정한다).

2.15 보험부채 공시

기업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 기준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제3절. 보험회계 관련 규제

3.1 적용법규

보험회계를 관리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법규를 살펴보면, 보험회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공시목적의 일반회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감독목적 회계로 구성되므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일반 공시목적에 적용되는 법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등 설립근거법 및 업무취급 근거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규정

제5조(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회계규정

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② 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회계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3.2 재무제표 제출기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 장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중 회계규정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주1}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1} 보험업법시행령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3.3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보험업무 이외의 금융업무 및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의 매출액 또는 수입보험료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장부작성 및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중 장부작성 요건

제11조(보험회사의 경영업무)

- ①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경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①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시행령 중 부수업무 회계처리

제17조(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4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 해당하는 각 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별로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며,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연금손해보험, 퇴직연금원리금보장, 퇴직보험, 연금저축보험, 자산연계형보험, 장기손해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계정별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계리하며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은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중 특별계정 설정 및 운용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특별계정 설정 및 운용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4. <삭 제>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6-12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
-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 ⑤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 ⑥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6-12조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7-66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제1항제2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표5 | 업종별 특별계정 현황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자산연계형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자산연계형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연금저축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연금저축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퇴직보험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퇴직보험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종신 연금 VUL	장기손해보험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개인연금 손해보험	원리금보장형	유배당 무배당
자본시장법	보장성	보장성			
	저축성	저축성			

3.5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중 책임준비금 검증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시행령 중 책임준비금 검증

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 가. 생명보험
- 나. 연금보험
- 다. 자동차보험
- 라. 상해보험
- 마. 질병보험
- 바. 간병보험

- ②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준비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 ④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책임준비금 검증

제6-11조의4(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3.6 경영공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일반현황, 재무상황 및 재무제표, 경영지표, 위험관리체계·관리방법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 등 기타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공시대상, 기준, 방법·시기 등은 보험협회의 「경영통일공시기준」 및 「경영공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정기경영공시의 경우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및 재무제표 등을 매분기별로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부실채권 및 금융사고 발생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 등에서 정한 수시경영공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보험법」 제111조에 따른 공시는 제외)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법 중 경영공시

제124조(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경영공시

제7-44조(경영공시)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 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 <삭제 2017. 8. 2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3.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4.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5. <삭제 2016. 4. 1.>

6. <삭제 2016. 4. 1.>

7. <삭제 2016. 4. 1.>

-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다. 자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삭제 2004. 2. 5.>

⑥ <삭제 2004. 2. 5.>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의2(수시공시) 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규정 제7-44조제4항의 구체적인 공시대상 및 내용은 별표 32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제4절.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

보험업감독규정상 재무제표상에 사용되는 계정과목과 배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의 재무제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표시해야 할 정보와 분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최소한의 항목만을 예시하고 있다.

4.1 재무상태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운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험업법상 자산 운용 등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특별계정은 감독목적 재무상태표 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①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법규에 따라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성과 등에 기반한 금액을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 총액으로 한줄 표시한다.
- ② 퇴직보험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에 계상하지 않고 보험계약·투자계약부채로 평가하여 일반계정에 합산 표시한다.

표6 | 개별(별도)재무상태표(감독회계)

자산	부채 및 자본
자산	부채
운용자산	책임준비금
현금및예치금	보험계약부채
유가증권	잔여보장요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발생사고요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재보험계약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잔여보장요소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발생사고요소
	투자계약부채
대출채권	기타부채
부동산	특별계정부채
비운용자산	부채총계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자본
.....	자본금
특별계정자산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계약자지분조정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표7 | 연결재무상태표(감독회계)

자산	부채 및 자본
자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비운용자산 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자산 특별계정자산	부채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부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부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투자계약부채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계약자지분조정 연결이익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지배지분
자산총계	부채 및 자본 총계

4.2 포괄손익계산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동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고식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고유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해진 계정과목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 원천별로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으로 구분되며, 손익의 원천 및 보험의 경영지표를 효율적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손익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 내 특별계정(변액보험, 실적배당형퇴직연금 포함) 관련 수익·비용은 일반계정에 합산하여 표시한다.

표8 | 개별(별도) 및 연결 포괄손익계산서(감독회계)

개별(별도)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보험손익	보험손익
보험수익	보험수익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수익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재보험수익	재보험수익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재보험서비스비용	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비용
기타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
투자손익	투자손익
투자수익	투자수익
투자비용	투자비용
영업이익(손실)	기타영업손익
영업외손익	영업이익(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법인세비용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순이익
	지배회사지분 연결당기순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연결기타포괄손익
	연결총포괄손익

제 2 장

재무상태표

제2장 재무상태표

제1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1.1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1.1.1 재무상태표의 의의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능력,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과 이러한 자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의 과거 능력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재무구조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자금차입수요에 대한 예측 및 미래이익과 현금흐름이 기업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1.1.2 자산의 인식과 측정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이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대신 그러한 거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1.1.3 부채의 인식과 측정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특정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현재의무와 미래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부채 산출 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 포함되는 보험부채와 기타부채를 구분하여야 한다. 보험부채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하지 않고 보험계약부채의 하위항목으로 표시되며, 기타부채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한다. 보험부채와 기타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구분기준에 따라 매 회계기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1.1.4 재무상태표의 표시 원칙

(1) 최소 표시항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되어야 할 항목의 순서나 형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재무상태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9 | 재무상태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최소요건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당기법인세자산	<부채> 보험부채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충당부채 매각예정비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부채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비지배지분

(2) 유동성 배열법 및 유동/비유동 구분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순서에 있어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인 ‘유동성 배열법’이 더욱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부채)과 비유동자산(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유동성배열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매각예정자산·부채의 별도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사용중단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만족하는 관련 자산, 부채를 별도로 구분표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매각예정 분류 건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반드시 신설하기 보다는 주기 및 목적에 따른 별도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 작성 시에 별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절. 금융상품 총론

2.1 금융상품 일반

2.1.1 금융상품의 정의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금융상품은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리고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이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유, 무형자산을 제외한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파생상품 등은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의미하며,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파생상품부채 등은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자본)이란 보험사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지급의무가 없거나 회피 가능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2.1.2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부채와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다. 금융상품의 거래당사자인 발행자가 금융상품의 보유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가 존재하면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지급의무가 없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자본으로 분류된다.

또한, 금융상품이 자기지분상품(주식)으로 결제되거나 결제할 경우에는 자기지분의 금액의 확정가능여부에 따라 확정 가능할 경우 자본으로, 확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즉, 지급할 주식수가 확정되었고, 동시에 지급금액이 확정 가능한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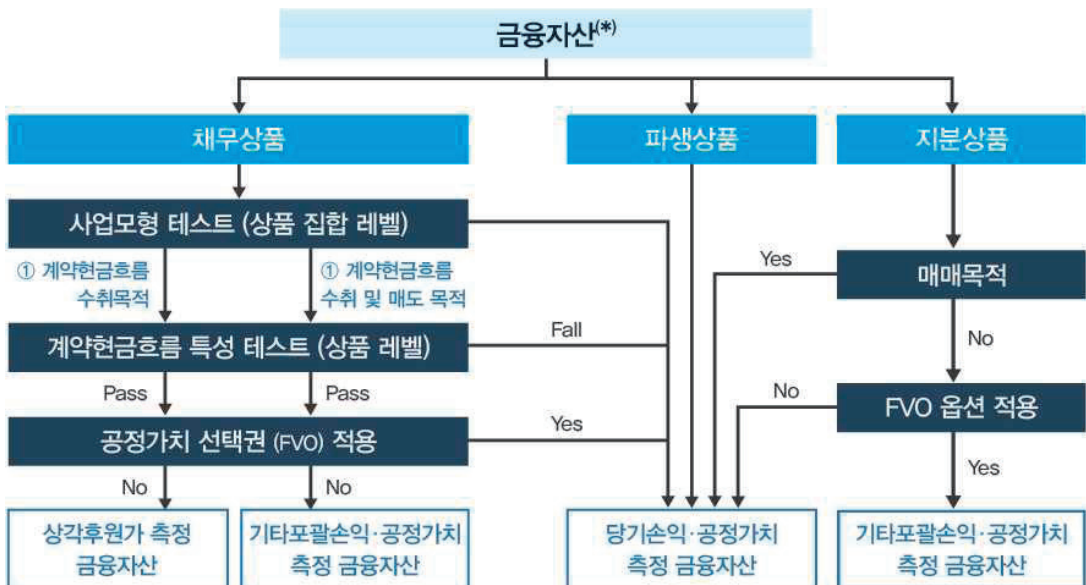
(2)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mortized Cost: 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의 분류는 실무상 채무상품, 파생상품 및 지분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구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기준서에 따른 금융부채 및 자본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단, 모든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채무상품은 1. 사업모형 및 2.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단,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한 경우에도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 가능하다. 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단, 단기매매목적이 아니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림1 | 금융자산의 분류 Flow Chart



(*)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금융상품은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주계약에 따라 분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지분상품은 채무상품과 달리 평가손익이 recycling이 되지 않음.

1) 채무상품의 분류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범주로 분류한다.

- ①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이런 분류를 위해 사업모형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주요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모형의 단위는 개별 상품수준이 아닌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서별, 점별 또는 부서 내 포트폴리오별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모형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모형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계약상 지급액을 수취하여 현금흐름을 실현하는 사업모형으로서 과거기간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및 금융자산의 매도 모형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사업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을 말한다.

③ 그 밖의 사업모형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빈번한 단기매매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기 ①, ②의 사업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보유 금융자산이 계약상 원리금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이라도 이러한 현금흐름의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달성에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모형에 포함된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위의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다.

3) 지분상품의 분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 상품인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취소 불가능하다.

2.1.3 금융상품의 재분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변경된 사업모형에 따라 재분류해야 하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재분류하지 않는다. 한편, 금융부채는 재분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재분류된 금융상품의 새로운 장부가액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손익(손상차손 또는 환입 포함)이나 이자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표10 | 금융상품 재분류와 상세처리

분류 전	분류 후	상세 분류시 처리	
		장부가액	내용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AC)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PL)	재분류일 공정가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OCI)	재분류일 공정가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단, 유효이자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은 불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PL)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AC)	재분류일 공정가치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총장부금액으로 인식(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OCI)	재분류일 공정가치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OCI)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AC)	재분류일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 금융자산 공정가치에서 조정(당기손익 미인식, 유효이자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은 불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FVPL)	재분류일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다음의 경우에는 재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었던 항목이 더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② 특정 항목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 되는 경우
- ③ 위험회피회계에서 신용 익스포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측정의 변화

2.1.4 금융상품의 인식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한다. 정형화된 매입이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1.5 금융상품의 제거

금융자산의 제거는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거한다.

- ①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②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2.1.6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각후원가 금융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 중 채무상품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상각후원가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2.1.7 금융상품의 외화환산

보험회사는 외화거래 및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기준서는 외화거래에 대하여 기능통화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화거래 발생 시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그 거래를 기록한다. 이러한 외화거래의 결과로 외화표시 자산 부채가 기말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능통화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외화표시 자산 부채를 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표시통화가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측정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2.1 분류조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2.2.2 금융상품의 예

원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사채,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 출자증권, 주식, 수익증권 등 국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주식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나타내는 소유권주식인 보통주식과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남은 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식으로 구분된다.

주식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나 자본총액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장부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주식 수만 증가시킨다.

(2) 출자금

출자금은 상법상의 회사 중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3) 국·공채

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증권으로 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다.

국채는 유가증권 중 시가의 변동이 비교적 작고 매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여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채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 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공채증권의 상환 기간이 경과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4) 특수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특수채로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이 있다.

(5) 금융채

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특수채와 성격이 유사하다. 금융채는 구체적으로 통화안정증권, 원화발행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기타로 구분된다.

(6) 회사채

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증 및 담보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일반사채) 및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등으로 분류되며 금리결정방법에 따라 확정이자부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로, 이익참가형태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로 각각 구분된다. 그 밖에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사채, 중기사채 및 장기사채로, 원금의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전액상환사채, 정기분할상환사채, 감채기금부사채, 임의상환사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회사채의 모집방법은 공모채와 사모채로 구분된다. 공모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사모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회사채를 말한다.

(7)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투자자(고객)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신탁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파생상품, 채권, 콜, CD, CP, RP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주는 권리증서다.

(8)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유가증권은 국내은행, 기업 및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은행 등이 발행한 국공채, 사채, 은행인수어음, 주식 등 각종 외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9)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기업어음(CP), 보증어음, 기타 등이 있다.

기업어음은 일정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통어음을 말한다. 보증어음은 지급보증을 첨부한 어음을 말한다. CP의 경우 유통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어음으로 분류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다만, 증금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은 예수금 성격이므로 이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분류한다.

2.2.3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

회사는 20x1년 01월 20일 원화채무증권을 10,000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채무상품의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13,000원이며 결산일 익일에 13,000원에 처분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사례6 | 채무증권의 후속측정

(1) 취득시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10,000원 / 대) 현금 10,000원

(2) 결산시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3,000원 / 대) 당기손익-공정가치 3,000원
측정채무상품평가이익(투자수익)

(3) 처분시

차) 현금 13,000원 / 대) 당기손익-공정가치 13,000원
측정채무상품

2.2.4 재분류에 관한 사항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상각후원가)이 되므로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동 유효이자율을 바탕으로 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대존속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재분류일을 최초인식일로 간주하여 후속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한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되므로 유효이자율은 재분류일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지 않지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일을 최초 인식일로 보고 후속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며,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3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2.3.1 분류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한 금융자산이다.

지분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취소 불가능하다.

2.3.2 금융상품의 예

(1) 주식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나타내는 소유권주식인 보통주식과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남은 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식으로 구분된다.

주식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나 자본총액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장부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주식 수만 증가시킨다.

(2) 출자금

출자금은 상법상의 회사 중 주식회사를 제외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3) 국·공채

국공채는 각 채권별 발행 근거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4) 특수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특수채로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이 있다.

(5) 금융채

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특수채와 성격이 유사하다. 금융채는 구체적으로 통화안정증권, 원화발행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기타로 구분된다.

(6) 회사채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7)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투자자(고객)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신탁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파생상품, 채권, 콜, CD, CP, RP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주는 권리증서다.

(8) 외화표시유가증권

동 계정은 국내은행, 기업 및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은행 등이 발행한 국공채, 사채, 은행인수어음, 주식 등 각종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투자 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한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주식, 채권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서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CP 등을 동 계정으로 처리한다.

2.3.3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

회사는 20x1년 01월 20일 원화지분증권을 10,000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지분상품의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13,000원이며 결산일 익일에 13,000원에 처분하였을 경우 회계처리하는 아래와 같다.

사례7 | 지분증권 후속측정

(1) 취득시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10,000원 / 대) 현금	10,000원

(2) 결산시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3,000원 / 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3,000원

(3) 처분시

차) 현금	13,000원	/ 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13,000원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이익 (기타포괄손익)	3,000원	/ 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처분이익 (기타포괄손익)	3,000원

(4) 이익잉여금 대체 결정시

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처분이익 (기타포괄손익)	3,000원	/ 대) 이익잉여금	3,000원

2.3.4 재분류에 관한 사항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한다.

재분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고, 기대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이후에도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 인식하지만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총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인식한다. 따라서 재분류 전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하여 인식한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일부터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고, 기대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누적 인식한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를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4.1 분류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정한 금액을 인식한다.

2.4.2 금융상품 종류

(1) 국·공채

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증권으로 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다.

국채는 유가증권 중 시가의 변동이 비교적 작고 매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여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채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금전 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채증권이 발행되는데, 국가 등은 이 공채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공채증권의 상환 기간이 경과하면 공채를 회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채를 상환한다.

(2) 특수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특수채로는 한국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한국도로공사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이 있다.

(3) 금융채

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특수채와 성격이 유사하다. 금융채는 구체적으로 통화안정증권, 원화발행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종합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기타로 구분된다.

(4) 회사채

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보증 및 담보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일반사채) 및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등으로 분류되며 금리결정방법에 따라 확정이자부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로, 이익참가형태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로 각각 구분된다. 그 밖에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사채, 중기사채 및 장기사채로, 원금의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전액상환사채, 정기분할상환사채, 감채기금부사채, 임의상환사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회사채는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채와 사모채로 구분된다. 공모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수하는 것)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사모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소수인에 대하여 발행된 회사채를 말한다.

(5)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투자자(고객)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신탁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파생상품, 채권, 콜, CD, CP, RP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주는 권리증서다.

(6) 외화표시유가증권

동 계정은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중 외화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외화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은 채권 및 기타로 구분된다.

(7) 기타

채권, 주식관련증권 및 지분증권을 제외한 기타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수익증권, CP, 보증어음, 기타항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4.3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

회사는 20x1년 12월 15일에 채권 10,000원을 매입하였다.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해당 채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사례8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후속측정

(1) 취득시

차)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0,000원 / 대) 현금	10,000원

(2) 결산시

20x1년 12월 31일(보고기간 말)에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해당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9,500원으로 하락하였다.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원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단, 기대신용손실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은 미미하다고 가정한다. 회사는 20X1년 12월 31일 결산 직후 해당 채무증권을 처분하였다.

차)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대손상각비	300원 / 대)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대손충당금	300원

(3) 처분시

차) 현금	9,500원 / 대)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0,000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대손충당금300원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매매손익 200원			

2.4.4 재분류에 관한 사항

(1)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분류 이후에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산정을 위해서 재분류 이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산정한 유효이자율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총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인식하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경우 기존에 인식한 기대신용손실 인식액을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분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고, 기대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한 이후에도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치는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에서 기대신용손실 추정치는 총장부금액을 차감하도록 인식하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기대신용손실 추정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재분류 이전에 인식한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제거하고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대체한다.

2.5 파생상품

2.5.1 파생상품의 정의

(1) 파생상품회계처리의 적용요건

파생상품회계를 적용하는 계약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을 의미한다. 선물, 선도, 스왑, 옵션뿐만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은 파생상품회계처리를 적용한다.

- 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 ②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③ 미래에 결제된다.

1) 상세요건 -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하며, 기초변수는 하나 이상일 수 있다. 파생상품은 이러한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또한, 비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해당 비금융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11 | 기초변수에 따른 파생상품 예시

기초변수	파생상품
이자율	이자율선도,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 옵션 (Cap, Floor, Collar), 스왑선
환율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지분가격	주식관련선도, 주가지수선물, 주식관련스왑, 주식관련옵션, 주가지수옵션
일반상품가격	상품선도, 상품스왑, 상품옵션
신용	신용스왑, 신용파생옵션

2) 상세요건 -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은 최초 순투자금액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려면 최초 계약 시에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동일한 시장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른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변수의 변동에 참여할 수 있다. 예로써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와 해당 상품에 대한 선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의 취득원가 상당액만큼의 순투자금액이 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순투자금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선물계약과 같이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 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옵션계약의 경우에도 최초 계약시점에 옵션프리미엄을 지급/수취하지만 연계된 기초금융상품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보다 옵션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며, 최초 계약 시에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은 최초 순투자금액이 영(0)이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 상세요건 - 미래시점의 결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거래시점과 결제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계약의 경우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순액 결제 또는 총액 결제 등 특정 결제 형식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도 계약은 특정 미래 시점에 결제되며 옵션 계약은 미래 행사 시점이 있고, 스왑 계약은 이자가 결제되는 여러 시점이 있으므로 미래시점에 결제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4)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항목

1. 정형화된 매매거래

정형화된 매매거래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나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회계처리가 적용되며,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파생상품의 회계처리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상품별 정형화된 거래기간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12 | 항목별 정형화 거래기간

항목	정형화된 거래
국내채권	T+1 영업일 이내 결제
국내주식	한국거래소의 개설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T+2영업일 이내 결제
해외채권	T+3~10 영업일 이내 결제
해외주식	T+7 영업일 이내 결제

2. 보험계약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은 보험계약 또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또한,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발행자가 과거에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본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제1117호를 적용해야 한다.

3. 비금융항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 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파생상품회계처리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파생상품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기지분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발행자입장의 전환사채의 전환권 회계처리 등)

발행자 입장에서의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등)에 내재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전환권대가와 같은 옵션 계약)은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특이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자기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한 경우, 발행자는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의 현금(옵션 행사가격)을 받고 확정된 수량의 자기주식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파생상품의 프리미엄은 자본에 가감한다.

5.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파생상품의 분류

파생상품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분류하거나 거래목적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1) 거래형태에 따른 분류

- ① 선도(Forward):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

② 선물(Futures): 수량·규격·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써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정해진 방법에 따른 거래

③ 옵션(Option):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④ 스왑(Swap):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2) 거래목적에 따른 분류

① 매매목적거래는 직접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서, 거래목적이 위험회피목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모든 거래를 말한다.

1. 시장조성(Market Making)
2. 포지션보유(Position Taking)
3.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

② 위험회피목적거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금액의 환산차이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거래를 말한다.

2.5.2 내재파생상품회계처리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구성요소이며, 복합계약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 비금융변수인 경우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내재파생상품과 결합되는 계약을 주계약(host contract)이라고 하고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합한 것을 복합계약(hybrid contract)이라 한다. 이와 같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의 예는 전환사채, 수의상환채무상품, 금리캡/플로어/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채무상품 등이 있다.

복합계약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경우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 측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복합계약의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표13 | 복합계약의 분류

분류	정형화된 거래	분류 예시
금리	원리금 지급이 여러 유형의 금리 변형변수에 연계	역변동금리, 이중지표변동금리, 장기국채금리부, 연동금리, 이자율옵션내재예금/채무상품
주식	원리금 지급이 주가에 연계	주가지수연계 (ELD, ELS)
통화	원리금 지급이 환율에 연계	환율연계예금/채무상품
상품	원리금 지급이 귀금속 등 상품지수에 연계	금연계예금/채무상품
신용	원리금 지급이 신용위험에 연계	신용연계채무상품, 합성담보부채무상품

(1)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① 복합계약에 포함된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다.
- ②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③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④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련성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며, 회계처리의 복잡성 감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하는 복합계약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는 경우와 분리하지 않은 경우의 실익이 없기에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분리하지 않는다.

(2) 회계처리

- 1)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분리회계는 복합계약이 당기손익 반영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복합계약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처리하지 않는다. 복합계약이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경우와 분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분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2) 복합계약이 공정가치 평가대상(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이 아닐 경우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며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분리회계를 적용한다.

3)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에 해당되면 내재파생상품은 독립적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계약시점에 공정가치를 최초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차후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한다. 비옵션 내재파생상품(내재된 선도계약이나 스왑)은 실질조건에 기초하여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0'이 되도록 주계약에서 분리하고, 옵션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내재된 풋, 콜, 캡, 플로어 또는 스왑션)은 옵션특성의 명시적인 조건에 기초하여 주계약에서 분리한다. 이때 주계약의 최초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의 잔여금액이다.[참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B4.3.3]

4)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복합계약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차액을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5)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6) 계약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①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 ②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채무상품이 있다.

사례9 | 주가지수연동예금 발생시

주가지수연계예금은 이자율에 기초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주계약과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매도주가지수옵션이 결합된 복합계약이다. 따라서 분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20x1년 5월 1일 회사가 주가지수연동예금을 발행하였으며 동 예금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으로 지정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예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 발행일: 20x1년 5월 1일
 - 만기일: 20x2년 4월 30일
 - 이자율: 연 3%
 - 옵션프리미엄률: 1%
 - 거래금액: 4,000,000
 - 옵션의 공정가액: 결산시 45,000, 만기시 49,000
-

(1) 발행시점

20x1.05.01

차) 현금	4,000,000원 ^{주1}	/ 대) 예수부채	4,000,000원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주1}	40,000원 ^{주2}	/ 대) 파생상품	40,000원

주1 예수부채의 취득원가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상환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예수부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혹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만기시점까지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주2 $4,000,000 \times 1\%$ (옵션프리미엄률) = 40,000

(2) 결산시점

20x1.12.31

차) 이자비용	80,000원 ^{주1}	/ 대) 미지급비용	80,000원 ^{주1}
차) 이자비용	25,000원 ^{주2}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25,000원 ^{주2}
차) 파생상품평가손실	5,000원 ^{주3}	/ 대) 파생상품	5,000원 ^{주3}

주1 $4,000,000 \times 3\%$ (이자율) $\times 8 \div 12$ (월할계산가정) = 80,000

주2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이 25,000이라 가정함

주3 결산시점 옵션을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45,000$ (옵션의 공정가치) - $40,000$ (옵션 장부가액) = $5,000$

(3) 만기시점

20x2.4.30

차) 예수부채	4,000,000원	/ 대) 현금	4,000,000원
차) 이자비용	40,000원 ^{주1}	/ 대) 현금	120,000원
미지급비용	80,000원		
차) 이자비용	15,000원 ^{주2}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15,000원 ^{주2}
차) 파생상품	45,000원 ^{주3}	/ 대) 현금	49,000원 ^{주3}
파생상품거래손실	4,000원 ^{주3}		

주1 $4,000,000 \times 3\%$ (이자율) $\times 4 \div 12$ (월할계산가정) = 40,000

주2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이 15,000이라 가정함

주3 만기시점 옵션에 대한 거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49,000$ (옵션의 공정가치) - $45,000$ (옵션 장부가액) = $4,000$

2.5.3 공정가치위험회피

(1) 의의 및 유형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이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과 상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서로 다를 경우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손익 인식기준이 동일하거나 모든 금융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므로 별도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유형

구분		사례	위험회피수단
자산 및 부채	이자율성격 변경 (고정 → 변동)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의 이자율을 변동이자율로 변동 (변동차입금과의 금리 불일치 해소)	이자율 스왑 등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율을 변동이자율로 변경 (변동대출금과의 금리 불일치 해소)	이자율 스왑 등
	가격변동 회피	고정금리 투자채권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회피	투자채권에 대한 풋옵션매입으로 최소 금액 고정 등
		고정금리 차입금의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회피	금리플로어를 매입함으로써 차입금의 최대금액 고정 등
	확정계약	고정금리부 채권발행 확정계약	이자율 선물 등

(2) 회계처리

위험회피수단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도 적용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인 경우에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인 경우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10 |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

(1) 결산 시

차) 파생상품	4,000원 /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주1}	4,000원
차) 위험회피대상평가손실 ^{주1}	3,800원 ^{주2} / 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3,800원

^{주1} 당기손익항목

^{주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위험회피>

(1) 결산 시

차) 파생상품	4,000원 /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주1}	4,000원
차) 지분상품평가손실 ^{주1}	3,800원 ^{주2} / 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3,800원

주1 기타포괄손익항목

주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

2.5.4 현금흐름위험회피

(1) 의의 및 유형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를 의미한다. 특정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공정가치변동액 관련 손익을 위험회피대상인 미래현금흐름변동 관련 손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적절히 대응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다. 여기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변동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위험회피대상인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회계상 손익으로 인식되는 시점까지 이연시켰다가 상쇄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다음 표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15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유형

구분		사례	위험회피수단
자산 및 부채	이자율성격 변경 (변동 -> 고정)	변동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의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변경 (고정차입금과 금리 불일치 해소)	이자율 스왑 등
		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변경 (고정대출금과 금리 불일치 해소)	이자율 스왑 등
	이자현금흐름 고정	변동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의 이자 현금흐름을 고정	이자율 스왑 등
		변동금리 차입금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현금흐름 변동을 고정	금리캡을 매입하여 최대이자지급액을 고정 등
이자현금흐름 고정		변동금리채권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현금흐름 변동을 고정	금리플로어 매입으로 최소이자수입액을 고정 등

미래예상거래	투자채권 미래예상 매출	투자채권가격에 대한 풋옵션매입으로 예상 최소매출액고정 등

(2) 회계처리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 ①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누계액
- ②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

만약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의 변동을 초과한다면(과대위험회피라고 불림)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반대로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의 변동보다 작다면(과소위험회피라 불림) 비효과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과대위험회피의 경우에 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 변동액 현재가의 차액을 의미한다.

표 16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_과소/과대위험회피

구분	시나리오1(과대위험회피)	시나리오2(과소위험회피)
현금흐름 변동액	100	110
파생상품평가손익	110	100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기타포괄손익)	100	100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당기손익)	10	0

다음의 예시는 미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으로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불확실한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한 거래의 손익효과를 재무제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 관련 손익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등)의 평가손익의 인식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금액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예상거래의 발생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처리하는 것이다. 예상현금흐름의 현재 변동액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보다 더 작을 경우(시나리오1)에는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현재 변동액만큼만 위험에 효과적인 경우가 되어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시키나, 반대(시나리오2)의 경우에는 전부 위험에 효과적이게 되어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연시킨다.

즉, 위의 예에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110백만원이고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현재변동액은 100백만원일 경우 해당 기간에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100백만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 10백만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100백만원이고,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현금흐름 현재변동액은 110백만원일 경우에는 그 차액 10백만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관련거래 발생시점으로 이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수단(예시 중 파생상품)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해야 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위험회피수단(예시 중 파생상품)의 손익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누계액(예시 중 현금흐름 변동액 현재) 중 작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현재 변동액보다 큰 경우에만 그 차액을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표17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_누적기준 평가

구분	20X1회계연도	20X2회계연도
현금흐름 현재 변동액	70	75
파생상품평가손익	75	70
현금흐름현재 변동액 (누적액)	70	145
파생상품평가손익(누적액)	75	145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70	145

또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해야 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회계기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X1회계연도에 파생상품평가이익이

75백만원이고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예상현금흐름 유출액 현가가 70백만원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70백만원을 파생상품평가이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X2회계연도에는 파생상품평가액 변동이 70백만원,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예상현금흐름 유출액 현가의 변동이 75백만원 발생하였다면, 누적기준에 따라 누적파생상품평가이익과 누적현금흐름 유출액 현가의 변동액이 145백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없게 된다. 따라서 20X2회계연도에 누적적으로 145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75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20X2년 파생상품평가액 변동액 70백만원과 20X2년 기타포괄손익인식액 75백만원의 차이인 5백만원을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상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통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사례11 |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효과 vs 비효과)

(1) 20x1년도

차) 파생상품	75 / 대) 기타포괄손익	70
	파생상품평가이익	5

(2) 20x2년도

차) 파생상품	70 / 대) 기타포괄손익	75 ^{주1}
파생상품평가손실	5 ^{주2}	

주1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액(145) - 전기까지 인식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70)

주2 당기의 파생상품평가액 변동(70) - 당기의 효과적인 부분 변동액(75)

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해 후속적으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 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그 금액을 제거하고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그 금액을 직접 포함한다. 이 회계처리는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12 |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비금융자산 취득)

(1) 비금융자산 취득시점

차) 비금융자산	100 ^{주3} / 대) 현금	130 ^{주1}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30 ^{주2}	

주1 비금융자산 취득 시 지급한 금액

주2 기존에 현금흐름위험회피를 통하여 기타포괄이익(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인식을 가정하며, 해당 금액을 제거하는 회계처리, 재분류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3 취득원가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주2}을 반영한 금액

② ①이 적용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사례13 |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거래 이자지급)

IRS를 통하여 변동이자사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한 경우
사채 액면 1,000 이자율 CD+1%, IRS CD수취 & 2% 고정금리지급

(1) 이자지급시점

차) 이자비용	25 ^{주1)} / 대) 현금	25
이자비용	5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5 ^{주2)}
이자율스왑	5 / 현금	5 ^{주2)}

주1 변동이자로 인한 이자지급액 CD금리 1.5%가정

주2 IRS 상 교환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액, 2%지급 & 1.5%수취

③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사례14 |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재분류조정)

차) 당기손익	5 / 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5

2.6 금융상품의 공시

2.6.1 공정가치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에 따라 구분표시(공정가치 레벨 분류)하며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의 목적은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고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공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 ①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 ② 보고기간 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2.6.2 리스크 공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사에게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양적공시)과 이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질적공시)으로 나누어진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양적공시)은 전형적으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을 포함하되, 이러한 위험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질적공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방법을 의미하며,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①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발생 형태
- ②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 방법
- ③ 위 내용의 변동 사항

(2) 양적공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공시한다.

1)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위험의 집중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경제적 또는 기타 조건의 변경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경영진이 집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② 집중별 공통된 특성에 대한 기술(예: 거래상대방, 지역, 통화 또는 시장)
- ③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2) 기타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 노출 정도에 대한 양적 자료의 요약. 다만,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와 위 1)에 포함되어 공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신용위험 공시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① 신용위험 관리실무
 - 1.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
 - 2. 기대신용손실 적용을 위해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 방법
- ②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 내역
2.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
3.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성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4. 금융상품 종류별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
5.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

③ 신용위험 익스포저

1. 신용위험 등급별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④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1. 회계기간 중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보유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① 자산의 성격과 장부금액, ②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 방침이나 영업상 이용 방침

(4) 유동성위험 공시

유동성 위험이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① 잔존계약만기를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발행된 금융보증계약 포함)
- ②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 파생금융부채에 대한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잔존계약만기를 만기분석에 포함한다.
- ③ 만기분석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위의 설명에 따라 만기를 분석하는 경우 판단에 따라 적절한 수의 구간을 결정한다.

만기분석에서 공시하는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의 조건을 참조하여 공시할 금액을 결정한다.

(5) 시장위험 공시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며,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시장위험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시장위험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공시한다.

- ① 이자율 위험: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
- ② 환위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
- ③ 기타 시장위험: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

2.6.3 기타 공시

금융상품을 보유한 회사는 다음 부분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① 일반 공시사항으로 금융상품 및 차입금과 기타부채에 대한 정보
- ②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

제3절. 자산 계정과목별 해설

3.1 현금 및 예치금

현금 및 예치금은 금융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범주 분류상 대부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범주로 분류되며 현금, 예치금 등으로 구분한다. 예치금 중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증)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1.1 현금

현금계정은 보험사의 입출금내역이 집계되는 계정으로 보유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현금계정은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잔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금은 국내통화, 해외통화, 통화대용증권 등으로 즉시 교환이 가능한 증서이다.

3.1.2 예치금

예치금은 특정 목적을 기반으로 예입/예치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보유하는 여유자금을 상당기간 타금융기간에 예치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예치의 종류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해외제예금, 기타예금, 금전신탁, 선물거래예치금, 기타예치금 등이 있다.

3.2 유가증권

법률적으로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만 등록된 경우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어 시장에서 거래된다.

회계적으로 유가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분류하며,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구분은 유가증권의 법적 분류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에 따른 금융부채 및 자본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단, 모든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3.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이다. 또한 회계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지정한 금융자산이다.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또는 매도목적이 아닌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금융자산, 풋가능 금융상품과 같은 상품이 이에 포함된다.

3.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고 원리금지급만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이다.

지분상품으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며 최초 취득시 기타포괄 손익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원리금 수취 및 중도매도 목적인 회사채 또는 국공채,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3.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고 원리금지급만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이다. 기타사업모형 또는 원리금 수취 및 매도목적에 속하지 않는 대출채권, 예치금, 입차보증금,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공채 등이 이에 포함된다.

3.2.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투자자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투자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주식 등으로 투자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인 종속기업투자자산과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인 관계기업투자자산이 이에 포함된다.

3.3 대출채권

3.3.1 대출채권의 정의

대출채권은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상품이다.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 계약상 원리금 지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1) 대출채권의 분류

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2. 현금흐름 수취목적 사업모형 판단 시 과거매매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매도사유가 제삼자의 강제 또는 기업의 재량에 따른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3.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하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일수 있다. 매도의 빈도와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위험의 증가로 인해 매도한다고 해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4. 신용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매도와 같이 그 밖의 이유로 인한 매도인 경우에도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더라도 이러한 매도가 빈번하지 않거나 매도가 빈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매도 금액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과 일관될 수 있다. 또한, 만기 가까운 시점에 매도한 금액이 남은 계약상 현금흐름과 거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모형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므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며 손상평가가 필요하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 및 매도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보유한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대출채권이 계약상 현금흐름만을 수취하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이하, SPPI 조건;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이러한 계약상의 현금흐름 수취가 사업모형의 목적달성에 부수적이거나 빈번한 매매 활동이 있는 경우는 기타사업모형으로 분류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평가한다.

또한, 대출채권이 SPPI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모형 분류와 상관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를 따른다.

(2) 일반적인 대출채권의 SPPI 조건의 검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서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계약조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화폐의 시간가치,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최초 인식시점에만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고정될 수 있다.),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및 이윤으로 구성되는 변동이자율
- ② 발행자(채무자)가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 ③ 발행자나 보유자가 채무상품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연장옵션), 이러한 연장옵션의 조건 때문에 연장된 기간의 계약상 현금흐름에는 원리금 지급만 존재하고, 이 금액에는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

(3) 변동금리상품의 SPPI 조건 검토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변동금리가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SPPI 조건을 만족한다.(예를 들어 설정일에 3개월의 기간에 대해 3개월 LIBOR로 또는 1개월의 기간에 대해 1개월 LIBOR로 지급하는 것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만일, 채무자가 3개월마다 이자지급주기가 재설정되고 이때 1개월 LIBOR금리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이자율은 이자율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빈도로 재설정되는 것이고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변형된 경우이다. 이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과 신용위험이 같은 금융상품과 비교(예시에서 이자설정 및 지급주기가 3개월이고 3개월 LIBOR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하여 판단한다.

(4) 중도상환권이 있는 대출채권의 SPPI 조건 검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B4.1.11(2)에서는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예로서 채무상품을 중도상환하거나 보유자(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채무상품을 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계약조건이라면 계약상

원리금 지급조건을 만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계약의 조기 청산을 유발한 사건 또는 상황과 관계없이, 당사자는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조기에 청산하기로 하였을 때(또는 조기청산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당사자는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동 기준 문단 B4.1.12와 같이 계약상 액면금액을 할증(할인)하여 매입하고 중도상환금액이 액면금액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본대여계약으로부터의 수익이 아닌 차익(차손)을 실현할 수도 있으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5) 개발사업 등(PF, SOC, 인수금융 등)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SPPI조건 검토

개발사업 등(PF, SOC, 인수금융 등)과 관련된 회사의 대출 또는 투자가 SPE 등 구조화된 투자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계약상 연계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조화된 투자기구는 서로 다른 트랑슈를 발행하여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에게 발행자가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워터폴 구조(waterfall structure)를 창출할 수 있다.

워터폴 구조와 일반채권자의 우선순위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표18 | 워터폴 vs 일반채권 비교

구분	워터폴 구조	일반채권자 우선순위
손실배분	발행자의 손실을 각각의 트랑슈에 직접배분	발행자의 자산과 청산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분
우선순위 방식	우선순위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만 영향을 미침	우선순위는 계약상뿐만 아니라 비계약상 권리 및 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지급액 변동	손실배분으로 인한 지급액의 변동은 발행자의 디폴트나 파산을 유발하지 않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에 대한 지급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파산을 유발
후순위화 영향	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트랑슈에 지급해야하는 계약상 금액이 변동 (지급해야할 금액이 감소)	발행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동되지 않음 (약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

해당상품이 위와 같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SPPI 조건을 만족한다.

- ① 해당 트랑슈의 계약상 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예:트랑슈에 대한 이자율이 일반상품지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현금흐름이 생긴다.
- ② 기초자산은 금융상품 집합이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계약상 원리금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

또는 원리금 지급만 있는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줄이거나 발행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과 일치시키기 위한 금융상품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 ③ 트랑슈에 내재된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보다 같거나 작다.(예: 해당 보유하는 트랑슈의 신용등급은 기초 금융상품집합의 재원조달인 단일 트랑슈에 적용하는 신용등급과 같거나 높다.)

(6) 개발사업 등(PF, SOC, 인수금융 등)의 소구권이 없는 대출채권의 SPPI 조건 검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기술되어 있으나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과 같이 채권자의 청구가 채무자의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제한될 수 있다. 회사가 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SPE등에 대출 또는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구권 여부는 계약상 원리금 지급 조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금융상품이 하나는 소구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SPPI 테스트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결과는 서로 같을 가능성이 높다. SPPI 조건 검토 시 현금흐름 특성, 보유자에 대한 보상, 계약상 권리 등(충분한 신용보강 여부 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 세밀한 검토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고려될 수 있다. ① 충분한 담보보유 여부 ②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게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는지 여부 ③ 제3자의 지급보증이 충분한지 여부 등이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다.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비금융자산인지는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대출채권의 종류

1) 콜론

콜론이란 중개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간 직접거래에 의하여 콜거래가 허용된 기관에게 원화 및 외화자금을 단기로 대여한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콜거래는 단기자금의 운용 또는 차입기간에 따라 익일물콜과 기일물콜로 구분되는데, 익일물콜은 거래 다음날에 결제되는 콜거래이고, 기일물콜은 거래기간이 2일 이상 90일 이내인 콜거래를 의미한다.

콜론은 수단이며 금융기관 상호 간에 일어나는 동업자 대출로 거래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 현재 콜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 및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리스회사, 선물업자 등이다.

동 계정은 거래통화 및 금융성격에 따라 원화콜론과 외화콜론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유가증권담보대출금

투자자의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3) 부동산담보대출금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신용대출금

담보 없이 신용수준을 고려해서 실행되는 대출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5) 어음할인대출금

1. 상업어음할인

상업어음할인은 회사가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 상업어음의 액면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즉,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매입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여기서 상업어음이란 상품의 매매대금 지급 등 실제의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을 말하며 상품의 매수인이 매도인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매수인이 인수한 환어음 등을 말한다. 상업어음은 단순한 자금유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소위 유통어음과 달리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므로 어음대금은 상품매각 대금으로 상환될 수 있어 지급의 확실성이 높은 어음이지만 화환어음처럼 화물증권이 부대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음할인 의뢰인이나 지급인의 신용에 의해 거래가 성립한다.

2. 무역어음할인

동 계정은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계약서를 근거로 발행하고 외국환은행이 인수한 어음, 즉 무역어음을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하여 할인 매입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도입·시행(1989. 8.1)된 제도로서 동 어음의 인수 및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출업체는 L/C(Local L/C 포함)를 근거로 무역어음(환어음)을 발행하여 인수기관에 인수 의뢰
 - ② 중개기관(Dealer)은 동 인수어음을 할인 매입
 - ③ 중개기관은 동 할인어음을 근거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매출
 - ④ 수출업체는 어음만기 전 인수기관에 어음대금을 입금(수출환어음의 Nego 또는 추심대금 등)
 - ⑤ 인수기관은 만기 시 동 입금대금으로 일반투자가 앞 어음대금 지급
- 이와 같이 무역어음은 상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유통어음이지만 신용도가 양호한 금융기관이 인수함으로써 자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기타

동 계정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자기발행어음, 즉 유통어음을 회사가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거 할인 매입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자기발행어음은 제3자가 발행하고 할인신청인이 배서를 하는 어음까지 포함할 수 있다.

6) 지급보증대출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여하는 대출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7) 기타대출금

1. 사모사채

사모로 발행된 회사채를 인수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회사채는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채와 사모채로 구분되는데, 공모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어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에 의해 발행된 채권이며, 사모채는 법률에 정한 증권 모집방법이 아니고 특정 소수에게 발행된 채권이며, 정보의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다는 점이 공모채와 다르다.

2. CP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CP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기타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또한,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예수금이므로 이를 매입한 경우에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이 CP를 할인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취득가액으로 CP매입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들이 취급하는 CP매입은 통상적으로 단기기업어음이므로 이 경우, 회계처리의 실익이 중요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를 액면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CP매입이자로 처리한다.

3.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이 아닌 투자계약(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적용)으로 분류된 상품에서 계약에 약정에 의해서 실행된 보험계약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표시하는 계정이다.

4. 기타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3.3.2 주요회계처리

사례15 | 대출채권 회계처리

(1) 최초 인식 : 대출채권을 100원 실행한 경우, 이연부대수익 5 발생

차) 대출채권	100 / 대)	현금	100
현금	5	이연대출부대수익	5

(2) 일부 상환 : 채무자가 60원 중도상환한 경우

차) 현금	60 / 대)	대출채권	60
이연대출부대수익	3	대출부대수익	3

(3) 결산시: 이연부대수익 상각

차) 이연대출부대수익	1 / 대)	대출채권 이자수익	1

(4) 결산시: 손상평가

차)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전입액	2 / 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2

3.3.3 주요계정과목설명

(1)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출채권 실행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대출채권의 명목가액과 상이한 경우로서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동 계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환기간에 배분되도록 상각처리 하여야 하며 동 상각액은 이자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대손충당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 제외), 리스채권, 계약자산, 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도건수가 없거나 아주 적어서 리스크 요소 추정치를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여 검증하기 어렵거나, 국가신용등급 수준의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하여 손실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상품 또는 최초 인식일로부터 만기가 매우 짧은 경우 실무적으로 대손충당금을 0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이연부대수익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지만 관련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1)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작성, 계약의 완료 등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써 대출 또는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거래원가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금융상품의 예상 만기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된다.

2) 특정 대출이 실행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의 대출약정수수료: 대출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여의 대가이므로 관련된 거래원가와 함께 이연하여 유효이자율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만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약정기간이 종료된다면 그 대출약정수수료는 종료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이연대출부대수익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이연부대비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근저당권설정비 등 대출채권 취급 시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이연대출부대비용으로 대출채권에 부가하여 표시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한다. 단,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3.4 부동산

3.4.1 취득 및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위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 취득원가의 구성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②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③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의 일괄구입

두 개 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별로 취득원가를 안분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액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 자산에 배분할 수 있다.

(3) 복구비용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혹은 유형자산을 특정 기간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게 되는 복구의무 등과 관련된 복구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는 최초에 추정되는 복구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은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을 복구충당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복구충당부채는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으며, 순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차입원가자본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3.4.2 후속원가의 인식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혹은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낮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3.4.3 후속측정

기업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정 유형자산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으며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한다. 유형자산의 분류는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3.4.4 감가상각

(1) 원가모형 하 감가상각

원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을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투영한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그리고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거나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2) 재평가모형 하 감가상각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기초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즉 전기말의 재평가금액을 기초로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단, 재평가잉여금의 감가상각분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4.5 손상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하며,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개별 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된다면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한다. 만약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을 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경우를 제외한다.

- ①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순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제3자와의 독립적인 거래에서 매매되는 경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 또는 자산이 속한 현금흐름창출단위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자산손상의 징후는 아래와 같다.

- ①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 ②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 능력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 ④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크다.
- ⑤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 ⑥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희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⑦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3.4.6 제거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단, 자산의 사용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 주로 회수될 예정인 경우,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별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3.4.7 매각예정자산의 분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동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부동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분배부대원가(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또한, 신규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취득일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취득 후 빠른 기간(통상 3개월 이내) 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예: 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부동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일 전에 인식되지 않은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또한 부동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3.4.8 부동산 계정과목 설명

(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두 가지 모두]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투자부동산에서 제외한다.

- ①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
- ②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만약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한다.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 및 개량비를 토지로 회계처리하며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토지개발부담금 등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토지는 물리적 파괴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비상각자산이다.

(3) 건물

건물 기본공사와 냉난방, 조명, 통풍, 기타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부대시설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로 회계처리한다. 건물은 자기의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사용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순환기간 이상 사용되는 내구자산이며, 사용 또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는 자산이므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 중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역시 건물가액으로 합산한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선·유지 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건물은 상각대상자산이므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4) 구축물

교량, 안벽, 궤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 등이다

(5) 해외부동산

해외에서 매입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총액을 말하며, 해외부동산도 국내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6) 건설중인자산

이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 제비용을 당해 자산의 준공 또는 완공 시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며 당해 유형자산이 완공, 인도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유형자산과목으로 일괄 대체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은 신축 중인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는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설정된 자산 중 전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일부 완성되어 사용 시에는 동 금액만이라도 본 계정에 대체한 후 감가상각해야 한다.

(7) 기타부동산

비업무용유형자산은 업무용 이외의 유형자산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은 비업무용유형자산 중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8) 감가상각누계액

동 계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9) 손상차손누계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이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동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충족 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바,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해당 자산에 따라 업무용토지손상차손누계액(-), 업무용건물손상차손누계액(-), 임차점포시설물손상차손누계액(-), 업무용동산손상차손누계액(-) 등으로 계정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3.4.9 공시사항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공시사항들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제1116호에 의하면 투자부동산의 소유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리스제공자의 공시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고, 기업이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주석사항을, 운용리스에 대하여는 리스제공자의 주석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표19 | 투자부동산의 공시요구사항

- (1)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의 적용여부
- (2) 분류가 어려운 경우(제1040호 문단 14 참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 및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류기준
- (3) 재무제표에 인식되었거나 주석으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독립된 평가인의 가치평가에 근거한 정도. 평가인은 인정되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고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4)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다음 사항의 금액
 - 1)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2)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
 - 3)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
 - 4)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범주에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범주로 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변동누계액(문단 32C 참조)
- (5) 투자부동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또는 임대수익과 처분대금의 송금에 대한 제약 여부와 해당금액
- (6) 투자부동산의 구입, 건설이나 개발, 개량, 수선,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약상 의무
- (7) 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공시사항
 - 1) 감가상각방법
 - 2)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 3)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
 - 4)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의 변동내역
 1. 취득과 자산으로 인식한 후속지출을 구분한 기중 증가 내용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또는 그 밖의 처분 자산
 4. 감가상각비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의한 기중 인식한 손상차손과 손상차손의 환입
 6.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한 순외환차이와 해외영업장을 보고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면서 발생한 순외환차이
 7.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 내용과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 내용
 8. 그 밖의 변동 사항
- 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
 1. 해당 투자부동산의 개요
 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
 3. 가능한 경우, 공정가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정치의 범위

3.5 기타자산

3.5.1 유형자산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의 유형자산을 의미하여 비품, 차량운반구, 임차점포시설물 등이 있다.

(1) 비품

비품의 구입금액 등에 소요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2)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부속운반구 취득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

(3) 임차점포시설물

점포임차 시 자산성이 있는 시설물 투자액

(4) 기타의유형자산

상기 이외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유형자산(수목, 서화 등)

3.5.2 무형자산

(1) 개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및 기타의 무형자산 등이 있다.

1) 영업권 : 합병·영업양수·계약이전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2) 소프트웨어 : 외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3) 개발비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

4) 기타의 무형자산 : 상기 이외의 무형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및 관련 보증금 등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정시설물의 사용권에 의해 자산성 인정되는 회원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단, 회원권 발행처가 확정된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를 보장하여 회원권의 취득원가를 금융상품과 사용가치에 대한 무형자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원권을 금융상품과 무형자산으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시장성이 없는 회원권의 경우 상각하지 않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 절차에 따라 매년 손상 검사를 실시한다. 시장성 있는 회원권의 경우 관련

시가를 기준으로 손상검사를 한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표20 | 연구활동 예시

비용화되는 항목 예시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음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①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②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③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④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⑥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3) 감가상각

1)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 검토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4)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결과를 당기 손상검사에 이용할 수 있다.

- ① 무형자산이 포함되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
- ② 최근에 실시한 계산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 ③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변화된 상황을 분석해 볼때 현재 시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5) 공시사항

무형자산은 각 분류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아니면 유한한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사용된 상각률
- ②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사용된 상각방법
- ③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
- ④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 ⑤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1.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2.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한 자산, 그리고 기타 처분자산
 3.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4.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5.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
6. 당기 중에 인식한 상각액
7.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8. 기타 변동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자산끼리 묶어서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브랜드명
- ② 제호와 출판표제
- ③ 컴퓨터소프트웨어
- ④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⑤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 ⑥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 ⑦ 개발 중인 무형자산

(6) 추가공시사항

-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그러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비한정 내용연수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하는 근거
- 2)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과 잔여상각기간
- 3)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금액 및 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 4)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상 약정금액

3.5.3 미수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① 유가증권 거래 시 체결일과 결제일의 상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
- ② 유가증권 중 시효가 만료된 건의 미입금액
- ③ 임차보증금 중 기간 경과 후 미회수액
- ④ 기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금액

3.5.4 보증금

보증금은 계약이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증금에는 공탁금, 예약보증금, 임차보증금 및 기타보증금 등이 있다.

- ① 공탁금 : 채무이행의 의무면제 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법원에 예치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 ② 예약보증금 : 임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의해 예치한 금액
- ③ 임차보증금 : 건물, 토지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 ④ 기타보증금 : 상기 이외의 보증금

건물, 토지, 전산장비 및 기계 등의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점 또는 점포 등의 업무용 토지나 건물 등의 임차를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임차보증금은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요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보증금은 거래 발생시점에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평가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② 공정가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는 선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동안 지급임차료로 인식한다.
- ③ 임차보증금의 장부가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 ④ 임차보증금 손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하며,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 ⑤ 손상금액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3.5.5 미수수익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 수익 중 미수금액으로서 회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한다.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임대료 미수수익, 수입배당금의 미수수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대출원금에 적용된 손상방법론에 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5.6 선급비용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손익 계산상 차기 이후에 비용화 될 금액과 그 지급 효력이 차기 이후에 도래되는 계약상의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3.5.7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회계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효과를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서 그 효과를 가감하고, 동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연법인세회계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세금효과를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배분하므로 법인세의 기간간

배분이라고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3.5.8 기타

(1) 어음

받을어음과 부도어음으로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 1) 받을어음 : 상거래(보험영업, 투자영업 및 기타상거래를 말함)에서 수취한 상업어음 (선일자수표를 포함)
- 2) 부도어음 : 받을어음 중 지급기일에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

(2) 선급금

물품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선급금과 부동산매입선급금으로 구성된다.

(3) 가지급금

귀속될 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인 지급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가계정으로 일반가지급금과 부동산매입가지급금으로 구성된다.

(4)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선지급하는 일시적인 보험금 및 미정리보험금으로 결산시에는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 선급법인세

사업연도 중에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나 중간 예납한 법인세로서 법인세 확정 신고시 선급법인세 잔액을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6) 선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다.

(7) 본지점계정차

본·지점간 거래금액의 미청산 잔액이다.

(8) 파생상품자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평가이익으로 발생한 자산으로

기초자산으로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9) 특별계정자산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총자산 금액으로 실적배당형 퇴직연금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자산을 의미한다.

(10) 특별계정미수금

특별계정 상품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에는 일반계정에서 선지급하고 특별계정에서 후정산하는 형태를 취하여 결산시점에서 정산이 종결되지 않는 건이 발생하며, 이중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특별계정미수금이라 한다. 특별계정미수금은 총괄재무상태표 작성시에는 미정산금액이 이중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정부채 밑에 차감 항목으로 표시 한다.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거래금액의 미청산 잔액을 의미한다.

(11) 순확정급여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

3.5.9 리스회계

(1) 이용 중인 리스의 분류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① 금융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② 운용리스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하지 않는 리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리스자산 분류는 리스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 하도록 한다.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 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 ③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④ 리스 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②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 : 리스 종료시점에 리스자산 매각 대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③ 리스이용자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리스를 갱신할 능력이 있는 경우

(2)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

금융리스채권 인식일은 다음과 같다.

- ① 리스약정일 : 리스계약일과 리스계약의 주요 사항 합의일 중 이른 날로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될 금융리스채권 금액과 리스분류의 결정일
- ② 리스기간개시일 :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금융리스채권의 최초 인식일(리스자산, 부채, 수익 및 부채의 인식일)

리스순투자금액 또는 리스총투자의 현재가치(내재이자율로 할인)로, 리스총투자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 ①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지급할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 ②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③ 잔존가치보증은 다음 중 하나가 보증한 잔존가치임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3자)
- ④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⑤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3) 금융리스의 후속측정(금융리스채권 상각 및 이자수익 인식)

매 기간별 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또한, 리스제공자는 리스충투자 금액 중 추정무보증잔존가치는 정기적으로 검토 하여,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감소 금액은 즉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운용리스자산의 최초인식

운용리스자산은 리스 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만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운용리스자산의 후속측정

- 1) 운용리스료 수익 :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 2)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와 제1038호에 따라 계산한다.
- 3) 리스자산의 손상여부 검토 :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절. 보험부채 총론

4.1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약의 분류

4.1.1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는 보험자가 발행한 계약의 유의적인 보험위험 이전 여부와 재량적 참가특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 대상 계약과 금융상품 기준서 적용 대상 계약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계약이 이전하는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더라도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금융상품으로 보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여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 계약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적용 계약 분류 시 적용할 보험위험의 유의성 기준 및 평가 시기, 평가 단위 등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경우 재량적 참가특성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21 | 보험계약의 분류

구 분	재량적 참가특성 존재	재량적 참가특성 존재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s)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
투자계약 (Investment Contracts)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이하 ‘보험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보험계약 분류 시에는 계약 조건과 보험 약관 및 관련법과 규정 등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이다.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강제가능성 존재 여부 판단은 법적 문제이며, 계약은 기업의 사업 관행에 의해 서면이나 구두로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계약 조건에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모든 조건이 포함되지만 상업적 실질이 없는(즉, 계약의 경제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 상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이 아닌 계약의 예시이다.

표22 | 보험계약의 예시

보험계약(보험위험이 유의적인 경우에 한함)	보험계약이 아닌 계약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배상책임보험 •민사책임 및 소송비용 보험 •생명보험 및 선납장래보험 •생존조건의 연금 및 퇴직연금(퇴직급여채무는 제외됨) •장애 및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 •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 •권원보험 및 여행자보험 •기타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무배당 퇴직보험 등) •자가보험(계약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음) •도박계약 •특정 기초변수와 연관되어 보험위험이 아닌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파생상품 •기후파생상품 •신용 관련 보증 •대재해채권 •기타

재보험자가 발행한 출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계약의 분류는 ‘4.11 출재보험’에서 다룬다.

4.1.2 보험계약 판단 주요 기준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고)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현물지급 포함)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정의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표 23 | 보험계약의 주요 기준

구 분	요 소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Uncertain future event)	사고의 발생 가능성, 사고의 발생 시기,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발행자가 지급할 금액 중 하나 이상이 불확실한 사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 (Adverse effects on the policyholder)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사건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피보험이익'으로 도박은 해당하지 않음
보상 (Compensation)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계약상의 급부
유의적인 보험위험 (Significant insurance risk)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은 보험계약의 본질인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보험계약에 있어 불확실성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 발생 시기 혹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지급할 금액 중 하나 이상이 불확실한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존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사망 혹은 생존이라는 불확실한 사건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하며, 보상의 형식은 현금 또는 현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액을 배상하는 대신 동일한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자 자신이 보유하는 병원과 의료진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계약들은 보험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보험계약이다.

보험위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을 의미한다.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 없이 계약발행자를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금융위험은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 등이 미래에 변동할 위험을 의미하며, 계약발행자를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계약의 예로는 고정금리부채권 등이 있다. 고정금리부채권이 이전하는 위험은 시장이자율 변동 관련 금융위험에 해당하며 계약발행자는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일부 계약에서 계약발행자가 유의적 보험위험과 함께 금융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수익률을 보장(금융위험 발생)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유의적으로 초과할 수도 있는 사망보험금을 약정(사망위험 형태의 보험위험 발생)한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위험과 금융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위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위험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노출된 위험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이 위험의 발생에 기여하거나 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창출되는 새로운 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특정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상을 지급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무관하게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통화선도 계약은 선도계약 약정기일에 현물 원/달러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상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달러 매수 포지션에 있는 계약자에게 차액을 보상하도록 요구한다.

환율 상승이라는 특정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여 매수 포지션에 있는 계약자에게 보상이 지급되었지만 환율 상승이 매수 포지션에 있는 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보험위험이 아니다. 달러 매수 포지션에 있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달러 채권을 발행한 상태이며, 따라서 환율 상승이 달러 표시 원리금상환액의 원화 상당액 상승을 초래하여 현금흐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통화선도 관련 위험과 채권 관련 환위험은 보험위험이 아니다.

매수 포지션에 있는 계약자가 달러 채권 발행에 내재된 위험의 노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계약을 이용하더라도 달러 채권 발행 계약과 통화선도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달러 채권 발행으로 인해 계약자에 대한 불리한 영향이 존재해야만 통화선도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보험위험이 아니다.

이러한 계약상 전제 조건은 그 사건이 실제로 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계약발행자가 조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보상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효 또는 유지 위험(즉, 발행자의 예상보다 일찍 또는 더 늦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위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보험위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위험(계약관리원가가 예상과 달리 증가할 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위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실효위험, 유지위험 또는 비용위험에만 노출시키는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비보험위험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2차 계약으로 위험을

완화시키는 경우, 그 2차 계약은 그 다른 당사자를 보험위험에 노출시키며 이는 보험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관리원가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는 사건은 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계약관리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제3자가 일정 보상을 제공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면 2차 계약은 제3자에게 보험위험을 발생시킨다. 이 경우 불확실한 미래 사건은 계약관리원가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는 사건이며, 계약관리원가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면 2차 계약의 보험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킨다.

기업이 보험계약자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할 수 있다. 상호기업은 각각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비록 보험계약자들이 그 기업의 잔여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동 위험을 집합적으로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호기업은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별도의 실체이다.

4.1.3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 기준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계약만이 보험계약이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즉, 계약의 경제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고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유의적이다.

그러나 재보험계약의 경우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발행자가 지급하는 추가 금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현재가치는 명목금액보다 크지 않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 이전하는 보험위험은 명목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덜 유의적이다. 다만 발생 시기가 불확실한 보험사고가 단일 시점에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사망위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가 동일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예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고정사망급부 종신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위험이 유의적인지 판단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직후 사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계약포트폴리오상 확률적으로 손실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유의적 보험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지연시키는 계약조건은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추가 금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와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발행자가 지급하는 추가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는 제외).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험금 처리원가와 손해조사비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제외한다.

- ① 미래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 ② 사망에 따른 취소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면제
- ③ 계약보유자에게 중요한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급액
- ④ 회수가 가능한 재보험금(분리하여 총액 기준 회계처리)

표24 |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 시 고려사항

구 분	내 용
부가급부금 비율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급부금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
계약 분류 평가단위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개별 계약단위
계약 분류 평가시점	계약의 최초 인식 시점

(1) 부가급부금 비율

부가급부금의 비율은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특정 시점, 특정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가급부금의 비율 중 가장 큰 비율을 적용하여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한다.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에서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과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가급부금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보험위험이 유의적인(Significant)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해외 사례는 보험위험의 중요성 판단을 1%, 5% 또는 10% 등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 신설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서는 부가급부금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다고 간주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부가급부금의 비율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부가급부금 =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의 현재가치-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의 현재가치
- ② 부가급부금 비율 = 부가급부금 /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의 현재가치

(2)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금은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써, 주계약과 특약 보험금의 합계액. 단, 손해의 심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소멸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적립액에서 해지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산한다.
- ② 연금지급금 등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부

(3)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은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지급금을 말하며,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① 생사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중도환급금, 연금지급금
- ② 해약환급금

(4) 계약 분류 평가단위

보험계약의 분류는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개별계약 단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를 분리할 수 있다.

- ①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가 각각 별도로 가격 산정되어,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 ②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의 해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③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가 위험집합으로서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
- ④ 개별계약 내 보험요소간의 미래 현금흐름에 상호의존성이 없는 경우

(5) 계약 분류 평가시점

보험계약의 분류는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한다. 보험계약의 분류를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하는 것은 시나리오별 부가급부금 비율의 산출 시점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하되 계약 체결 이후 3년경과 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부가급부금을 산출할 수 있다.

4.2 회계단위

4.2.1 최소인식 단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사용된 최소 회계단위는 계약(the contract)이며, 기업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률적 계약이라면 단일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적 계약이라도 이것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단일의 법률적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를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함에 따라 계약의 회계단위 가정을 반박할 때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과 숙고가 필요하다. 하나의 법률적 계약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나타내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로 다른 위험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는지(단일계약의 보험요소간의 현금흐름에 대한 상호의존성 여부)
- ② 보험요소가 함께 소멸되는지
- ③ 보험요소가 위험집합으로서 별도로 관리되는지
- ④ 보험요소가 별도로 가격 산정 되고 판매되는지

4.2.2 보험요소의 분리와 결합

(1) 보험계약 요소의 분리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분리하기 위해 다음을 적용한다.

1) 내재파생상품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 ①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②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2) 투자요소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서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서 투자요소를 분리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를 적용하여 측정한다.

- ①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는다. 투자요소와 보험요소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 1.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한 요소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가치가 다른 요소의 가치에 따라 변동된다면, 분리하지 않는다.
 - 2. 보험계약자가 다른 요소가 없다면 한 요소로부터 급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실효나 만료가 다른 요소의 실효나 만료를 야기시킨다면, 분리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제삼자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을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한 국가에서 분리하여 팔거나 팔 수 있을 경우

3)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명백하게 구분 될 때 이를 분리하여 측정한다.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①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이나 위험이 계약 내 보험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 ② 기업이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험요소와 통합하는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보험계약 요소의 결합

동일한 계약자(또는 서로 관련 있는 거래상대방)와 체결한 보험계약 세트(또는 일련의 보험계약)가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다면, 해당 보험계약 세트(또는 일련의 보험계약)를 단일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세트(또는 일련의 보험계약)가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판단사항을 고려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세트(또는 일련의 보험계약)는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결합하는 것을 고려한다.

- ① 권리와 의무를 하나로 보는 것이 권리와 의무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예를 들어, 한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무효화 시키는 경우)
- ② 다른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 계약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즉, 현금흐름이 상호의존적인 경우. 예를 들어, 각 계약이 보장하는 다른 위험 간에 상호의존성이 있고, 계약이 함께 소멸하는 경우).

단, 두 개 이상의 계약을 통해 계약자가 할인을 받는 사실이 해당 보험계약 세트(또는 일련의 보험계약)가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2.3 계약의 경계

계약의 경계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 기간 및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미래예상현금흐름만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며, 보험계약의 경계를 벗어난 미래예상현금흐름은 인식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경계를 벗어난 미래예상현금흐름은 미래의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종료한다.

- ①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적 능력이 있어,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보험계약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적 능력이 있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2.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제공하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4.2.4 보험 포트폴리오

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식, 측정하기 위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같은 상품 계열내의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함께 관리된다면 같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상품 계열 내에 있는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회계에서는 최소한의 포트폴리오 구분 기준만을 제시하고, 회사가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재보험의 포트폴리오는 재보험계약에 속한 원수보험계약이 단일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재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주요한 위험에 따라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구분한다. 여기서 재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 중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합계를 기준으로 해당 재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주요한 포트폴리오로 본다.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분류할 때 앞

문장의 기준에 따른 주요한 포트폴리오가 없는 경우, 해당 재보험계약은 복합 포트폴리오로 분류한다. 감독회계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5 |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구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유사위험	단일집합	유사위험	단일집합	보장담보
사망	유배당	상해	유배당	화재
	무배당		무배당	종합
	변액	질병	유배당	해상
건강	유배당		무배당	근재
	무배당	재물	유배당	책임
	변액		무배당	상해
연금/저축	유배당	연금/저축	유배당	기술
	무배당		무배당	보증
	변액		자산연계	자동차
	자산연계	기타	유배당	해외
기타	유배당		무배당	기타
	무배당			
	변액			

4.2.5 보험계약 집합의 구분

보험계약 집합은 보험계약마진 측정의 기준이며, 발행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눈다.

- ①(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a group of contracts)
- ②(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 ③(있다면)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

이 때, 한 계약의 세트(a set of contracts)가 모두 동일한 집합에 속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보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세트를 단위로 해당 계약의 세트가 어떤 집합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정보가 없다면 개별 계약 단위로 검토하여 개별계약이 속할 집합을 결정한다.

다만, 특정 법률이나 감독규정에 따라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함께 묶어야 하는 계약들을 별도의 집합에 포함시키는 경우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한정하여 해당 계약들을 같은 집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한 3개의 집합으로 구분한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추가 세분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내부보고에서 다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초 인식 시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집합을 세분화 가능
 - 1. 수익성 수준의 차이
 - 2. 최초 인식 이후 손실부담 계약이 될 가능성의 차이
- ② 내부보고가 손실을 부담하는 정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초 인식 시 손실부담계약인 집합을 세분화 가능

상기 조건에 따른 세분화가 가능하되 집합 내에 1년을 초과하는 간격으로 발행된 계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집합의 구분 시 결과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집합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4.2.6 공시정보의 통합수준

회사는 공시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상세수준과 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수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는 다른 기준서와 유사하게 다량의 유의적이지 않은 세부사항들을 포함시키거나 상이한 특성을 갖는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유용한 정보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정보를 통합하거나 구분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거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9-31을 참조하고 있다.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통합의 적합한 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유형(예 : 주요 상품라인)
- ② 지리적 영역(예 : 국가 또는 지역)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영업부문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 및 통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공시를 위한 통합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 유형, 즉 주요 상품 라인 수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회사가 설정한 포트폴리오 수준이 주요 상품 라인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나, 포트폴리오 수준 또는 다른 통합수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포트폴리오 수준 또는 다른 통합수준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지리적 영역이 기업의 공시 통합수준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에서 수행되는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고려가 되어야 하며 (예: 국내, 국외 주요 상품라인 수준별로 추가 세분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고부문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공시 통합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8호 문단 5에 따른 경우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 ①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②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③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4.3 회계모형 개요

4.3.1 장기보험 회계모형 및 적용요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의 회계모형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측정의 일반원칙을 적용 받는 BBA모형(Building Block Approach, BBA)과 실무적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 PAA)으로 구분된다.

BBA모형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회계모형인 변동수수료접근법(Variable Fee Approach)과 일반모형으로 구분하며, 일반모형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 집합에 적용하는 비연동형모형(Non-Par모형)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 집합에 적용하는 간접연동형 모형(Indirect-Par모형)으로 구분한다.

표26 | 보험계약의 회계모형의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용어
BBA ^{주1} 모형	일반모형 ^{주1} (GMM)	금융가정 변동이 상당한 영향 없음	비연동형 (Non-Par)
		금융가정 변동이 상당한 영향 있음	간접연동형 (Indirect-Par)
	변동수수료접근법 ^{주2} (VFA)	기초자산 보유	VFA-당기 장부수익률법
		기초자산 미보유	VFA-체계적 배분법

주1 Building Block Approach 또는 General Measurement Model

주2 Variable Fee Approach

(1) 일반모형 적용 요건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일반모형의 경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간접연동형(Indirect-par) 모형을 적용하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비연동형(Non-par) 모형을 적용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는 '상당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을 설정하여 회계모형 판단 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리연동형, 자산연계형, 변액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외부지표 및 자산수익률과 같은 기초항목(금융가정)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동하므로 이러한 상품의 특성상 금융가정 변동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판단하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 판단되어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연동형(Indirect-par) 모형을 적용한다. 반면, 무배당 금리확정형 상품과 같이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급부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는 상품에는 비연동형(Non-par) 모형을 적용한다.

(2)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요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다.

- ①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 ②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 ③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초항목에 근거하고,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연동하여 변동된다. 즉, 기업의 기초항목의 운용에 따른 약정된 투자수익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실질적으로 투자관련 서비스 계약의 성격이 강한 보험계약이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변동수수료는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관련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서 기초항목의 수익에 근거하여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된다. 보험자에게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서 서비스에 대한 변동가능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추정치의 변동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변동수수료접근법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수수료의 추정치 변동분을 보험계약마진을 통해 조정한 후 보험계약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배분한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모형과 유사점

최초 인식시점에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결정한 보험계약마진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여 결정한 보험계약마진은 동일하다. 또한 미래서비스 관련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추정치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미래서비스와 관련 없는 변동 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일반모형과 차이점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후속측정 시 일반모형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변동효과로 인한 사항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나 변동수수료접근법에서는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 몫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주1}한다.

^{주1} 보험계약에 내제되어 있는 Option & Guarantee의 금융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내제된 Option & Guarantee의 가치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기 위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 측정 시 적용하는 할인율로 일반모형에서는 기초항목의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 관련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하나, 변동수수료접근법에서는 현행할인율로 측정한다.

4.3.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요건

단기보험은 일반모형을 적용하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은 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와 중요한 차이 없이 측정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반모형은 예상유출현금흐름의 실현과 비금융위험의 해제 및 보험계약서비스(보험보장서비스, 투자관련서비스 및 투자수익서비스)의 이전에 따라 보험수익을 인식하지만,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집합은 기간의 경과 혹은 기간의 경과가 위험의 해제 양상과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위험의 해제 양상에 따라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일반모형은 유출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유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반모형 대비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요소배분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인식방법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조건, 측정방법 및 사례 등은 제4장 회계사례 제2절 회계처리(보험료배분접근법)에서 후술한다.

4.3.3 재보험에 관한 사항

수재보험계약 집합과 출재보험계약 집합은 원수보험계약 집합과 별개로 회계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기준서의 목적 상 수재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은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일 수 없으며 따라서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모형 혹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실무적으로 원수보험계약 집합은 일반모형을 적용하지만 해당 원수보험 관련 출재보험계약 집합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4.4 현금흐름

4.4.1 미래현금흐름의 특성과 포함항목

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에 포함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동일 상품 혹은 포트폴리오 등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개별 보험계약 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중립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시장변수에 대한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 현행추정치이면서 명시적인 현금흐름이다.

(1)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중립적 사용
현금흐름 추정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에 대한 기댓값(즉, 확률가중평균)을 추정한다. 기업 자체의 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현금흐름 추정의 출발점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미래 시나리오들이다. 각 시나리오는 특정 결과에 대한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와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포함한다.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은 기대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할인하고 발생 확률로 가중평균한다. 결과적으로,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목적은 미래현금흐름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일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할 때, 그 목적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편의 없이 반영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그 추정 결과가 평균값을 산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는 측정 목적과 일관된다면, 명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 포아송분포와 같이 적은 매개변수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추정된다면, 적은 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세부적인 시뮬레이션을 요구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값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현금흐름은 복잡한 기초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비선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옵션의 현금흐름의 경우 측정목적에 만족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확률론적 모형이 필요할 수 있다.

(2) 시장변수 및 비시장변수

현금흐름 추정치는 관련 시장변수를 이용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와 관련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는 가정 하에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다. 기업은 시장변수와 관련 있는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그 시장변수에 따라 변동하는 관측된 시장 가격과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행추정치

현금흐름 추정치는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현행추정치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은 보고기간말 갱신된 추정치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와 추정치의 변경이 해당 기간 동안의 상황 변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명시성

현금흐름 추정치는 명시적이다. 따라서 다른 추정치와 별도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추정한다.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에 포함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동일 상품 혹은 포트폴리오 등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개별 보험계약 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포함항목으로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주1}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주1 계약의 경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점 또는 보장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 의무가 있는 시점으로 정의

표27 |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포함 여부

이행현금흐름에 포함	이행현금흐름에서 제외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조정보험료와 분납보험료 포함) •보험료 할인액 및 보험료 미납추가분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발생하고 보고된 사고에 대한 급부금 •미보고발생손해액. 즉,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급부금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예를 들어, 적립이율에 대한 최저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배분 •보험금처리원가(기업이 보유계약의 사고를 조사, 처리 및 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률 수수료, 손해사정수수료,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 원가 등 간접손해조사비를 포함함) •계약상 급부를 현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보험료 청구 및 보험계약 변경 처리 원가 등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원가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 및 분담금 •보험계약자 또는 관련 수령인에게 발생된 납세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으로 계약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	•투자수익(투자요소는 별도로 인식·측정·표시)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출재보험계약은 별도로 인식·측정·표시) •미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와 같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원가와 관련된 현금흐름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되었으나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인력이나 그 밖의 자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법인세 지급액 및 환급액 중 보험자가 수수하지 않는 부분 •보고기업 내의 다른 구성요소 간의 현금흐름 •다른 기준서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되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기타

•보유계약에서 보장하는 미래 보험금에 대한 구상(잔존물 또는 대위)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과 과거 보험금에 대한 구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보험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고정간접비 또는 변동간접비의 배분액 •계약자배당 지급액 •기타	

4.4.2 사업비(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투자관리비 등)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사업비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 항목으로 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된다. 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되는 사업비는 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 투자관리비를 포함한다.

(1)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 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 집합의 판매, 인수 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 집합에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현금흐름, 즉 비비례 모집수당 등도 포함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영업, 계약 심사, 계약 등 보험계약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판매 및 판매 실적과 직접 관련된 원가로 다음을 포함한다.

- ① 비례·비비례수당, 판매촉진비, 시책비, 대리점수수료
- ② 점포운영비, 영업 및 판매부서의 인건비, 관리비
- ③ 광고비, 인쇄비, 진단비 등 기타원가

(2) 계약유지비

계약유지비는 보험계약 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 계약의 관리 및 유지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 집합에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현금흐름, 즉 급여와 임금 등을 포함한다. 계약유지비는 업무지원부서에서 발생한 다음의 원가를 포함한다.

- ① 인건비와 관리비, 전산비, 세금과공과
- ②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 ③ 통신비, 수수료, 접대비, 관리용역비, 인쇄비 및 회의비 등 기타원가

(3) 손해조사원가

손해조사원가는 보험계약 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 계약의 사고를 조사 및 처리하는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그러한 현금흐름에는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 집합에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간접비 등을 포함한다. 손해조사원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 ① 손해사정수수료 및 손해조사관련 소송비용
- ② 보상지원부서의 인건비와 관리비, 전산비, 세금과공과, 통신비 등 기타원가

(4) 투자관리비

투자관리비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보장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보험계약대출자산을 포함한 투자자산의 투자, 운용 및 심사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투자관리비는 투자자금운용부서 및 투자심사부서 등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기타 간접비를 포함하며, 투자비용으로 인식하는 재산관리비와 별도로 처리한다.

4.4.3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고려사항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은 보험계약 만기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의 중도·만기상환액, 이자수취액, 신규대출액을 의미하며 평가일 현재 보험계약대출 잔액(대출이자 포함하지 않는다), 미래 신규대출액, 미래 대출상환액(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대출이자로 구성된다.

회사의 경험통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의 할인율은 보험부채평가시 적용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보험계약대출의 미래 가산이자율은 회사의 상품별 직전 3년간의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월별평균가산이자율은 회사의 상품별 월평균가산이자율을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상품군별

평균가산이자율 및 상품별 평가시점 현재 가산이자율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보험계약대출의 시가평가액은 보험계약부채의 차감으로 표시하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보험계약의 상태에 따라 해당 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실효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은 잔여보장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하며, 해지한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은 미지급해약환급금의 감소로 간주하여 발생사고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또한 휴면보험금 등을 기타부채로 분류한 경우, 휴면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기타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4.4.4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기간

미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측한다. 보험계약서비스 제공기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된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존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서비스는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및 투자수익서비스(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경계를 벗어난 예상 보험료 또는 예상 보험금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액은 미래의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다. 계약상 기업에게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과 해당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 가격을 정할 권리가 부여되는 시점에 기업은 더 이상 기존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점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기존 계약의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이 아닌 장래 계약과 관련이 있다.

미래현금흐름은 최초 인식 시점부터 계약의 경계까지 추정한다. 갱신 가능 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에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과 위험을 반영하여 가격을 재결정할 능력을 고려하여 계약의 경계가 단절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의 경계는 주계약과 특약을 분리하지 않고 보험계약 단위로 판단할 수 있다. 주계약과 특약의 만기가 다른 보험계약은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일반적으로 주계약의 만기까지 특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지만,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된다.

일부 계약은 다른 담보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해당 옵션은 기업에게 이전된 보험위험의 성격 또는 보장기간을 변경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만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연금전환 특약이 부여되어 만기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생존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했지만 보험기간 중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종신전환 옵션, 실손전환, 감액완납 및 연장정기 등 보험가입금액 혹은 적립금의 변동을 통해 보험료

납입 방법이나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한다. 이러한 옵션들은 행사 이후 현금흐름의 양상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보험위험을 재평가하여 보험료를 재책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옵션 행사 이후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

4.4.5 미래현금흐름의 예측방법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월도별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이 실제로 수령 또는 지급할 현금의 흐름을 추정한다.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의 현금흐름 추정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의 유지자수와 납입면제자수 및 납입자수를 반영하여 보험료 유입액을 추정한다. 기간 별 납입면제 원인의 발생률을 고려하되, 납입면제자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예상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납입면제보험료를 차감한 순 유지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상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 총 보험기간동안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를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한 별도의 조정을 수행한다.

담보된 보험사고의 보험금과 환급금을 현금흐름 유출액으로 추정한다. 보험금은 미보고발생손해액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금액을 추정한다. 사고 발생시점부터 보고시점까지의 보험금 추정액은 발생사고부채에 포함된다. 따라서 잔여보장부채에서 추정하는 보험금의 현금흐름은 지급금액이 아닌 발생금액이다. 환급금은 해약·만기·중도환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부의 발생원인과 부합하는 최적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를 적용하더라도 약관 상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환급금을 기준으로 추정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예상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를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과 보험손익으로 조정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료와 관련되어 있고 미래서비스의 변동을 야기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이다.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보험손익으로 조정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예상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배분(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하는 경우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조정하고 실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배분(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하는 경우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보험수익으로 조정한다. 보험서비스비용 또는 보험수익으로 조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수익 또는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계약유지비, 손해조사원가, 투자관리비는 최적가정 산출 시 적용한 배부기준, 배분을 등과 부합하는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계리적 가정은 현행 추정에 따라 산출하며, 계리적 가정 산출시 회사의 내·외부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되 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한 산업통계, 국내·외 학술논문 인용통계 등 외부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①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② 외부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③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④ 외부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⑤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⑥ ①부터 ⑤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의사결정 체계, 의사결정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은 매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②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계리적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 ③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④ ①부터 ③까지 규정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을 문서화 할 것

계리적 가정 산출시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계리적 가정 중

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보험료, 계약자행동 및 경영자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비율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일시적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비율은 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 및 투자관리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비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판매채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계약유지비는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계약유지비는 세부항목별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물가상승률은 평가시점 당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중간값으로 할 수 있다.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계약유지비의 구분은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해약률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해약률 산출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 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약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금리시나리오에 따라 해약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위험률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며 세분화 할 수 있다.

보험료는 회사의 경험통계와 미래추세를 고려하여 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한다. 유니버설보험 등 보험료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의 보험료 납입가정은 의무납입기간 경과여부, 계약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에는 추가납입, 납입면제, 중도인출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계약자행동 가정(실효·해약 등 계약자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경영자행동 가정은 현재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어야 하며, 각각의 경영자행동 가정들 상호간에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영자행동 가정은 회사가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4.6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현행서비스의 제공과 미래 제공될 서비스의 변동, 금융위험의 변동 등으로 재측정된다. 각각의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16 |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예시

가정

계약기본정보	주계약 담보	주계약 가입금액	특약 담보	특약 가입금액
	사망	10억원	암	1억원
사망률(q1)	T=1	2	3	
	0.2%	0.3%	0.4%	
암발생률(q2)	T=1	2	3	
	0.4%	0.5%	0.6%	
해약환급금	T=1	2		
	—	251,615		
해지율	T=1	2		
	5%	5%		
선도할인율	T=0~1	1~2	2~3	
	3%	4%	5%	
연납 영업보험료 4,763,901				
보험기간	보험취득현금흐름	유지관리원가	목표이익률	
3년	초회보험료 50%	영업보험료 5%	4%	

<예상현금흐름>

유출현금흐름(사망)	T=1	2	3
	2,000,000	3,000,000	4,000,000

유출현금흐름(암)	T=1	2	3
	400,000	500,000	600,000

유출현금흐름(환급금)	T=1	2
	-	11,952

유출현금흐름(사업비)	T=1	2	3
	2,620,145	226,285	214,971

유출현금흐름(합계)	T=1	2	3
	5,020,145	3,738,237	4,814,971

PV_유출현금흐름 (합계)	T=0~1	1~2	2~3
	4,873,928	3,489,766	4,280,887

BEL_outgo	T=0
	12,644,581

목표이익	T=0
	526,858

BEL_outgo+목표이익	T=0
	13,171,438

CF 영업보험료	T=0	1	2
	4,763,901	4,525,706	4,299,420

PV_CF 영업보험료	T=0	1	2
	4,763,901	4,393,889	4,013,649

BEL_영업보험료	T=0
	13,171,438

(1) 최초측정

BEL_0 측정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5,020,145	3,738,237	4,814,971
사망 보험금		2,000,000	3,000,000	4,000,000
암 보험금		400,000	500,000	600,000
신계약비		2,381,950	-	-
유지비		238,195	226,285	214,971

환급금		-	11,952	-
예상유입현금흐름	(4,763,901)	(4,525,706)	(4,299,420)	-
영업보험료	(4,763,901)	(4,525,706)	(4,299,420)	-
순유출현금흐름	(4,763,901)	494,440	(561,183)	4,814,971
PV_합계	(4,763,901)	480,039	(523,883)	4,280,887
BEL_0	(526,858)			
EIR_0 ^{주1}	4.0002%			

주1 순유출현금흐름과 현재가치(BEL_0)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RA_0 측정 (*RA는 단순화를 위해 유출현금흐름현가의 2%로 가정)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5,020,145	3,738,237	4,814,971
유출2%		100,403	74,765	96,299
현가_유출2%		97,479	69,795	85,618
RA_0	252,892			

CSM_0 측정

시점	T=0
BEL_0	(526,858)
RA_0	252,892
CSM_0	273,966

(2) 최초측정 예상 변동내역

BEL_0 예상 변동내역

시점	T=0	1	2	3
기초잔액	-	4,237,043	3,912,094	4,629,770
신계약	(526,858)			
이자비용		169,491	156,492	185,201
예상현금흐름				
사망 보험금		(2,000,000)	(3,000,000)	(4,000,000)
암 보험금		(400,000)	(500,000)	(600,000)
신계약비		(2,381,950)	-	-
유지비		(238,195)	(226,285)	(214,971)
환급금		-	(11,952)	-
보험료	4,763,901	4,525,706	4,299,420	-
기말잔액	4,237,043	3,912,094	4,629,770	-
최초EIR	4.0002%			

(3) 후속측정 및 최초가정과 실제치 내역

사망률(q1)	T=1	2	3
최초예상	0.2%	0.3%	0.4%
1시점 실제치	0.0%		
2시점 이후 예상		0.2%	0.2%

암발생률(q2)	T=1	2	3
최초예상	0.4%	0.5%	0.6%
1시점 실제치	0.0%		
2시점 이후 예상		0.4%	0.5%

해지율	T=1	2
최초예상	5%	5%
1시점 실제치	0%	
2시점 이후 예상		10%

선도할인율	T=0~1	1~2	2~3
최초예상	3%	4%	5%
1시점 실제치	3%		
2시점 이후 예상		5%	6%

(4) 변동분석 단계별 BEL 산출

당기말 예상 원가 BEL (현재가치는 EIR_0 4.0047%를 적용하여 산출)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사망 보험금			3,000,000	4,000,000
암 보험금			500,000	600,000
신계약비			—	—
유지비			226,285	214,971
환급금			11,952	—
예상유출현금흐름				
영업보험료			(4,299,420)	—
합계			(561,183)	4,814,971
PV_합계			(539,575)	4,451,310
BEL_1		3,911,735		
EIR_0		4.0047%		

물량차이 효과 산출용 BEL (1기 실제 해지율(0%) 수정 반영)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사망 보험금			3,000,000	4,000,000
암 보험금			500,000	600,000
신계약비			—	—
유지비			238,195	226,285
환급금			12,581	—
예상유출현금흐름				
영업보험료			(4,763,901)	—
합계			(1,013,125)	4,826,285
PV_합계			(974,115)	4,461,769
BEL_1		3,487,655		
EIR_0		4.0047%		

해지율 가정변경효과 산출용 BEL (1기 실제 해지율(0%) 수정 반영, 2기 이후 수정된 해지율 반영)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사망 보험금			3,000,000	4,000,000
암 보험금			500,000	600,000
신계약비			—	—
유지비			238,195	214,376
환급금			25,162	—
예상유입현금흐름				
영업보험료			(4,763,901)	—
합계			(1,000,544)	4,814,376
PV_합계			(962,018)	4,450,759
BEL_1		3,488,741		
EIR_0		4.0047%		

위험률 가정변경효과 산출용 BEL (2기 이후 수정된 위험률 반영)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사망 보험금			2,000,000	2,000,000
암 보험금			400,000	500,000
신계약비			—	—
유지비			238,195	214,376
환급금			25,162	—
예상유입현금흐름				
영업보험료			(4,763,901)	—
합계			(2,100,544)	2,714,376
PV_합계			(2,019,663)	2,509,366
BEL_1		489,703		
EIR_0		4.0047%		

당기말 시가 BEL (2기 이후 수정된 선도이자율 반영)

시점	T=0	1	2	3
예상유출현금흐름				
사망 보험금			2,000,000	2,000,000
암 보험금			400,000	500,000
신계약비			—	—
유지비			238,195	214,376
환급금			25,162	—
예상유출현금흐름				
영업보험료			(4,763,901)	—
합계			(2,100,544)	2,714,376
선도YC			5%	6%
PV_합계			(2,000,518)	2,438,792
BEL_1		438,274		
EIR_0		4.0047%		

(5)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Run구분	Run 결과	반영	변동금액	차변		대변	
당기초 시가 BEL	-	-	-				
당기초 원가 BEL	-	OCI	-				
신계약 최초인식 BEL	(526,858)	△CSM	(526,858)	잔여BEL	526,858	CSM	526,858
당기말 예상 원가 BEL	3,911,735	보험수익 ^{주1}	(2,638,195)	잔여BEL	2,638,195	보험수익	2,638,195
		보험료	9,527,801	현금	9,527,801	잔여BEL	9,527,801
		예실차 ^{주2}	(238,195)	잔여BEL	238,195	CSM	238,195
		신계약비 ^{주3}	(2,381,950)	잔여BEL	2,381,950	현금	2,381,950
		이자비용 ^{주4}	169,491	이자비용	169,491	잔여BEL	169,491
물량차이 효과 산출용 BEL	3,487,655	△CSM	(424,080)	잔여BEL	424,080	CSM	424,080
해지율 가정변경효과 산출용 BEL	3,488,741	△CSM	1,086	CSM	1,086	잔여BEL	1,086
손해율 가정변경효과 산출용 BEL	489,703	△CSM	(2,999,037)	잔여BEL	2,999,037	CSM	2,999,037
사업비용 가정변경효과 산출용 BEL	489,703	△CSM	-				
당기말 실제 원가 BEL	489,703	-	-				
당기말 시가 BEL	438,274	OCI	(51,430)	잔여BEL	51,430	AOCI	51,430

주1 보험수익: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

주2 예실차: 예상해지율(5%)과 실제 해지율(0%)의 차이로 발생한 환급금 차이

주3 신계약비: 예상 = 실제 지출한 신계약비

주4 이자비용: 기초BEL x EIR_0(4.0002%)

4.5 할인율

4.5.1 할인율의 특성 및 측정방법

(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할인율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로서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수익률을 보험계약 집합의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예: 시기, 통화 및 현금흐름의 유동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할인율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 ① 하향식 접근법: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참조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의 기대수익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 없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단,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참조 포트폴리오와의 유동성 특성 차이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② 상향식 접근법: 무위험이자율에서 보험계약부채와 관련 있는 요소(비유동성 프리미엄)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회계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하며, 원화와 외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책임준비금 평가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를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산출하고, 변액보험 펀드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기반한 채권 수익률 시나리오와 주식 수익률 시나리오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2)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

기초항목의 성과와 연동되는 현금흐름과 그렇지 아닌 현금흐름을 분리할 의무는 없다. 단, 분리하지 않는다면 전체 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률론적 모형이나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집합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책임준비금의 보증옵션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를 통해 할인율을 산출하며, 확률론적 할인율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금리시나리오 모형을 통해 산출토록 한다. 아래는 확률론적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할인율 시나리오 생성 모델 중 무위험수익률 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한 Hull-White 1 factor 모델이다.

표28 | 할인율 시나리오 산출모델

$$dr(t) = \alpha[\theta(t) - r(t)]dt + \sigma dW(t)$$

- ▶수렴속도모수(α):금리시나리오가 수익률곡선에 회귀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모수
- ▶변동성모수(σ):금리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모수
- ▶수익률곡선적합함수($\theta(t)$):수익률곡선이 복원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

4.5.2 무위험수익률의 정의 및 특징

무위험수익률(금리기간구조)은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① 관측: 국내에서 관측 가능한 무위험수익률의 최장 만기는 50년(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이지만, 발행잔액, 지표물 호가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신뢰가능한 최종 관찰 만기(LLP; Last Liquid Point)까지의 국고채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로 사용한다. 국고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해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 ② 수렴: 최종 관찰 만기를 초과하는 구간의 무위험이자율은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에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산출한다. 장기선도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산출하며, 실질이자율의 장기평균은 국내 지표금리에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조정하여 산출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 ③ 보간(보외): 최종 관찰 만기 기간내의 만기별 무위험수익률 및 최종 관찰 만기와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시점 사이의 무위험수익률의 기간구조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4.5.3 비유동위험에 대한 고려사항

유동성 위험이란 시장 거래의 용이성에 대한 위험으로, 보험부채는 유의적인 비용 없이는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시장 유동성)하고 보험사의 발생시점이나 만기시점 등의 특정 시점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는(자금조달 유동성) 비유동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으로 산출토록 하고 있다.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는 보험사를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찰되는 자산별·신용등급별·만기별 스프레드를 사용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표29 |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 산출모델

$$\sum_{i=\text{자산}, j=\text{신용등급}, k=\text{만기}} \text{위험스프레드}_{i,j,k} \times w_{i,j,k}$$

- ▶ 위험스프레드_{i,j,k} : 평가시점에 공시된 자산*i*(신용등급=*j*, 만기=*k*)의 수익률에서 국채 수익률(만기=*k*)을 차감한 값
- ▶ *w_{i,j,k}* :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의 자산별·신용등급별·만기별 비중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스프레드는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부도위험스프레드(PD)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등급하락스프레드(CoD)의 합계로 산출하며, 부도위험스프레드 및 등급하락스프레드는 신용등급변화표, 평가시점의 무위험수익률 곡선, 회수율 및 평균누적부도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4.5.4 할인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측정하기 위해 현행할인율을 사용하므로, 회계기간 경과에 따라 사용하는 할인율은 변경되며 그 효과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할인율은 유동성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간구조를 가지며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가진 특성에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보고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금융수익(비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 경과분의 금융손익 인식에 있어 금융위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Non-Par)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Indirect-Par)로 구분하여 금융손익 인식의 할인율을 달리 적용한다. Non-Par 계약의 경우, 금융위험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융비용을 측정한다. Indirect-Par 계약의 경우, 금융위험에 의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현금흐름에 금융위험을 반영한 재측정할인율을 적용하여 금융비용을 측정한다.

할인율의 기간구조에 따라, 기간구조의 최근 할인율만이 회계기간 경과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인식되므로 이는 자연적으로 금융비용의 이연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평균적인 수준의 금융비용을 인식하기 위하여 금융비용의 체계적 배분을 수행하며 그 방식은 아래와 같다.

- ① 유효수익률법: 보험계약 집합의 예상현금흐름을 현행할인율 기간구조를 적용하여 할인한 현행추정 부채와, 단일율로 할인한 금액이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유효수익률)로 배분하는 방법
- ② 예상 부리이율법: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과 미래 기간에 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방법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 동안 인식될 총 금융비용은 유효수익률법이나 예상 부리이율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와 현행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동일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동안의 기타포괄이익의 총합은 영(0)이다.

사례17 | 유효수익률법을 적용한 이자비용인식

상황

(1) 최초인식시점에 아래와 같은 예상현금흐름을 가지는 계약집합을 가정한다. 단, 예상현금흐름의 발생시기는 각 기간의 기말시점으로 가정하고, 최선추정부채는 각 기간의 기말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간	0	1	2	3	4	5	6	7	8	9	10
예상현금흐름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400
현행할인율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최선추정부채 _{YC}	(656)	(173)	222	529	745	870	900	831	661	385	0

(2) 최초인식시점의 최선추정부채와 예상현금흐름을 단일물로 할인했을 때의 금액이 같아지도록 하는 유효수익률을 산출한다.

기간	0	1	2	3	4	5	6	7	8	9	10
유효수익률	3.65%										
최선추정부채 _{EIR}	(656)	(180)	213	521	740	867	899	831	662	386	0

(3) 총 보험기간동안 현행할인율로 측정된 이자비용과 유효수익률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다.

기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이자비용 _{YC}	(16)	(5)	6	16	25	30	31	30	24	15	156
이자비용 _{EIR}	(24)	(7)	8	19	27	32	33	30	24	14	156

* t시점의 이자비용은 t-1 시점의 기말최선추정부채에 현행할인율 및 유효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함.

(4) 총 보험기간동안의 각 시점별 기타포괄손익누계액(AOCI)과 기타포괄손익(OCI)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포괄손익의 총 합계는 영(0)이다.

기간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AOCI	0	(7)	(9)	(8)	(5)	(3)	(1)	0	1	1	0	
OCI		(7)	(2)	1	3	2	2	1	1	0	(1)	0

* 총포괄손익은 각 시점별 최선추정부채_{YC}에서 최선추정부채_{EIR}을 차감하여 산출함.

4.6 위험조정

4.6.1 위험조정평가대상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금융위험보다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예: 해약위험, 비용위험)이다. 실효 또는 유지 위험(즉, 발행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위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변동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보험위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위험(즉, 보험사건과 관련된 원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관리원가가 예상과 달리 증가할 위험)은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위험이 아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목적은 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외에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금융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운영위험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4.6.2 위험조정평가방법

(1) 개요

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①과 ②가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 ①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
- ②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

예를 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90원과 110원이 될 확률이 각각 50%인 부채의 이행과 100원으로 고정된 부채의 이행을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한다. 그 결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기업이 부과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므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 사항도 반영한다.

- ①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기업이 포함한 급부의 분산 정도

②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 모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개념상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이러한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할인율과는 별도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또는 할인율을 산정할 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준서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정기법을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다음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① 낮은 빈도와 높은 심도를 가진 위험은 높은 빈도와 낮은 심도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 ② 위험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긴 계약이 만기가 짧은 계약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 ③ 더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 더 클 것이다.
- ④ 현행 추정치와 그 추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을수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더 클 것이다.
- ⑤ 최근에 생겨난 경험에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증가)한다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감소(증가)할 것이다.

(2)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위험조정의 산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 각각에 대해 최선추정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위험조정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1) 잔여보장요소 : $\text{Max}\{①, ②\}$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은 다음 ① 및 ②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으로 적용한다.

- ①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거나 모형을 신뢰성 있게 산출·검증할 수 없는 경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부통계 및 모형을 활용 가능)
- ② 아래에서 제시(신지급여력제도에서 규정한 불확실성 요인별 충격수준 변환)하는 불확실성 요인의 충격수준을 최선추정치에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선추정과의 차액

1. 불확실성 요인의 종류는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애·질병 정액보상 위험, 장애·질병 실손보상 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 수준위험, 사업비 인플레이션 위험이다.
2. 불확실성 요인별로 각 계리적 가정을 충격수준만큼 할증(최선추정가정 $\times(1+\text{충격수준})$)하여 적용하되, 사업비 인플레이션 위험의 경우 계리적 가정에 충격수준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
3. 해지위험은 해지율 가정에 해지 충격수준만큼 할증하여 산출한 위험량과 할인하여 산출한 위험량 중 큰 값을 적용한다.

표30 | 비금융위험조정 산출을 위한 위험별 불확실성 수준

불확실성 요인		충격수준
사망		3.27%
장수		$\Delta 4.58\%$
장애·질병	정액보상	3.40%
	실손보상	2.62%
장기재물·기타		4.19%
해지	수준(상승)	9.16%
	수준(하락)	9.16%
사업비	수준	2.62%
	인플레이션	0.26%p

2) 발생사고요소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발생사고요소의 위험조정은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신뢰수준은 최소 75% 이상으로 한다.

(3) 일반손해보험 위험조정의 산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 각각에 대해 최선추정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위험조정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1) 잔여보장요소 : $\text{Max}\{①, ②, ③\}$

일반손해보험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은 다음 ①부터 ③까지 산출한 금액 중 가장 큰 값으로 적용한다.

- ①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거나 모형을 신뢰성 있게 산출·검증할 수 없는 경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부통계 및 모형을 활용 가능)

- ② 아래에서 제시(신지급여력제도에서 규정한 보장그룹별 충격수준 변환)하는 보장그룹별 충격수준을 최선추정치에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선추정과의 차액(보장그룹별로 손해를 가정을 충격수준만큼 할증하여 적용)

표31 | 보장그룹별 충격 수준 예시

보장그룹	충격수준
재물	10.7%
책임	4.1%
일반기타	6.2%
자동차	4.4%
보증	14.9%

- ③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발생사고요소: $\text{Max}\{①, ②\}$

일반손해보험 발생사고요소의 위험조정은 다음 ① 및 ②에 의해 산출한 금액 중 큰 값으로 적용한다.

- ①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신뢰수준은 최소 75% 이상으로 한다.
 ②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위험조정의 결합

1)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불확실성 요인간 위험의 분산은 신지급여력제도에서 제시한 상관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표32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잔여보장요소의 리스크간 상관관계

구분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장기재물·기타	해지	사업비
사망	1					
장수	-0.25	1				
장해·질병	0.25	0	1			
장기재물·기타	0	0	0	1		
해지	0	0.25	0	0	1	
사업비	0.25	0.25	0.5	0.5	0.5	1

2)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상관관계를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적용한다.

표33 | 일반보험 잔여보장요소의 리스크간 상관관계

단위	상관계수
보장그룹 간	0.5
지역 간	0.25

이 때, 지역간 상관관계 산출 시 아래에서 제시(신지급여력제도에서 규정한 지역구분)하는 지역 구분기준을 적용한다.

표34 | 지역 상관관계 반영을 위한 국가 분류

지역구분	해당 국가
1. 한국	한국
2. 유럽·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3. 미국·캐나다	미국, 캐나다
4. 중국	중국(대만 및 홍콩 제외), 마카오
5. 일본	일본
6. 기타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산마리노, 싱가포르, 대만, 홍콩
7. 신흥국	1~6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
8. 해외 기타	해외 국가구분이 어려운 경우

(5) 위험조정의 배분

위험조정의 계약별 배분 대상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위험조정 전체 금액으로 하며, 잔여보장요소 위험조정의 계약별 배분은 '불확실성 요인간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전 계약별 위험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4.6.3 위험조정에 대한 신뢰수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시장참여자의 인식보다는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에 대한 기업 자신의 인식에 의존하므로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성향 등을 반영하여 신뢰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유사한 보험계약 집합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다르게 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 특유의 평가가 기업별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서는 기업에게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상응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회사가 산출한 위험조정과 75% 신뢰수준의 충격수준을 적용한 위험조정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위험조정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신뢰수준의 하한은 75%로 생각할 수 있다.

4.6.4 위험조정 변동원인별 회계처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할 필요는 없다. 세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한다.

(1)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화 하는 경우

1) 잔여보장요소

1. 신계약 효과

신계약 효과는 당기에 신규로 인식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조정의 변동을 말한다.

(차변) 최선추정부채-잔여보장요소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대변) 보험계약마진

2. 이자비용/수익

이자비용/수익 인식은 위험조정에서 부리되는 이자에 따른 변동을 말한다.

(차변) 보험금융비용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3. 위험조정의 해제

위험조정의 해제(당기/과거 서비스결과)는 전기말 위험조정 중 당기에 해제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차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대변) 보험수익

4. 위험조정의 변동

위험조정의 변동(미래서비스 관련)은 미래 추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한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 조정대상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미래 추정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보험계약마진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② 미래 추정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대변) 보험계약마진

5. 경제적 가정 조정

경제적 가정 조정은 할인율/환율 변경 등 경제적 가정 변경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의미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에 의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나누어 작성한다.

경제적 가정 조정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선택

①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대변) 보험금융수익

②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보험금융비용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경제적 가정 조정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선택

①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대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②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2) 발생사고요소

발생사고요소 장부금액의 다음 변동분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① 보험서비스비용: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분(투자요소는 제외)
- ②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
- ③ 보험금융수익(비용):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1. 당기 신규발생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으로 인한 변동

(차변) 보험서비스비용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2. 이자비용/수익

이자비용/수익 인식은 위험조정에서 부리되는 이자에 따른 변동을 말한다.

(차변) 보험금융비용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3. 위험조정의 해제/변동

당기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발생사고요소의 후속 변동분

- ① 위험조정의 해제/변동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 (대변) 보험서비스비용
- ② 위험조정의 해제/변동으로 인해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보험서비스비용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4. 경제적 가정 조정

경제적 가정 조정은 할인율/환율 변경 등 경제적 가정 변경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의미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에 의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나누어 작성한다.

경제적 가정 조정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선택

- ①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 (대변) 보험금융수익
- ②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보험금융비용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경제적 가정 조정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선택

- ①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 (대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② 경제적 가정 조정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2)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화 하지 않는 경우

1) 잔여보장요소

1. 신계약 효과

신계약 효과는 당기에 신규로 인식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조정의 변동을 말한다.

- (차변) 최선추정부채-잔여보장요소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대변) 보험계약마진

2. 위험조정의 해제

위험조정의 해제(당기/과거 서비스결과)는 전기말 위험조정 중 당기에 해제하여 보험수익(또는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차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대변) 보험수익

3. 위험조정의 변동

위험조정의 변동(미래서비스 관련)은 미래 추정의 변동과 경제적 가정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동한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 조정대상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① 미래 추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보험계약마진 / (대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② 미래 추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잔여보장요소 / (대변) 보험계약마진

2) 발생사고요소

1. 당기 신규발생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으로 인한 변동

(차변) 보험서비스비용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2. 위험조정의 해제/변동

당기 신규발생분을 제외한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

- ① 위험조정의 해제/변동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감소시
(차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 (대변) 보험서비스비용
- ② 위험조정의 해제/변동으로 인한 위험조정의 증가시
(차변) 보험서비스비용 / (대변) 위험조정-발생사고요소

4.7 보험계약마진

4.7.1 보험계약마진의 의미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청구된 대가가 계약 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취득 현금흐름과 계약집합을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현금 유출액 및 위험조정의 예상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이는 집합의 보장기간에 걸쳐 집합 내 계약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는 회사가 그 초과분을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신에 보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이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집합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인식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은 미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반영하고 그 금액은 적어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같아야 한다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손익의 인식 방식과 일관된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 집합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마진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것을 금지(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손실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및 제1037호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손실을 인식하는 것과 일관된다.

4.7.2 보험계약마진의 최초인식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인식 시에 측정하며, 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다음 항목들에 대한 조정에서 어떤 수익과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① 보험계약 집합 최초인식시점의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 ② 보험계약 집합 최초인식시점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③ 보험계약 집합 최초인식시점 이전에 인식한 사전 보험취득현금흐름 중 최초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 ④ 보험계약 집합 최초인식시점 이전에 인식한 사전 현금흐름 중 최초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 ⑤ 보험계약 집합 내 계약에서 최초인식시점에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4.7.3 보험계약마진의 조정 및 회계처리

(1) 일반모형의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1)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 잔액은 보고기간 초 잔액에 다음을 조정한 잔액이다.

- ① 보험계약 집합에 추가되는 '신계약'의 효과
- ②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
- ③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단, 다음을 제외한다.
 - 1.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불리한 변동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 2.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되는 변동
- ④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 ⑤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2)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의 변동내역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①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 ②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 (단,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제외)
- ③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그 예상된 투자요소에 지급되기 전까지의 관련된 보험금융손익과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 ④ 해당 기간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 보험계약대출과 그 예상된 보험계약대출에 지급되기 전까지의 관련된 보험금융손익과 해당 기간에 상환될 실제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
- ⑤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사례18 | 보험계약마진의 조정 및 회계처리

가정

-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금리확정형 무배당계약(Non-par계약)을 발행
- 3년 보장기간의 보험계약 100개를 발행, 보장기간은 보험계약 발행시 시작
- 최초 인식 후 즉시 500의 보험료 수취 예상
- 매 연도별 기대 미래현금흐름유출은 100이며, 현금유출 중 50은 투자요소임을 가정

구 분	T=0	T=1	T=2	T=3	합 계
미래현금유입					
보험료	(500)				(500)
미래현금유출					
보험금(보험요소)		50	50	50	150
보험금(투자요소)		50	50	50	150

-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5%사용,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음.

〈변경 후 기대 현금흐름〉

구 분	T=0	T=1	T=2	T=3
미래현금유출				
보험금(보험요소)		50	55	55
보험금(투자요소)		70	60	60

구 분	T=0	T=1	T=2	T=3	합 계
미래현금유출의 현재가치			110	104	214

(1) 1차년도 말 보험금 지급시

1차년도 말 실제 지급한 보험금 120 중 보험요소와 관련된 50은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 1차년도 초에 예상한 50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차) 보험서비스비용	50원 ^{주1}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원
차)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50원 ^{주2} / 대)	보험수익	50원

^{주1} 1차년도 말 지급된 보험요소 50에 대하여 서비스비용 인식

^{주2} 1차년도 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던 보험요소 50에 대하여 보험수익 인식

(2) 지급한 보험금 중 70은 투자요소이므로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이는 보험계약마진을 통해 조정한다.

차)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50원 ^{주1}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70원
차)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20원 ^{주2}		

^{주1} 1차년도 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던 투자요소 50

^{주2} 실제 투자요소(70)와 예상 투자요소(50) 차이

(3) 1차년도 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 조정

1차년도 말 예상되는 이행현금흐름이 최초 예상과 달라졌고, 해당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므로(비금융가정에 의한 변동)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인 5%이다.

차)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28원 ^{주1} / 대)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28원

^{주1} 28 = 214(미래현금흐름 변경 후 BEL 현재가치) - 186(미래현금흐름 변경 전 BEL 현재가치)

(2)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1)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 잔액은 보고기간 초 잔액에 다음을 조정한 잔액이다.

- ① 보험계약 집합에 추가되는 신계약의 효과
- ②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일반적으로 '변동수수료'). 단, 다음을 제외한다.
 1. 위험경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위험경감' 참고)
 2.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3.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2.를 환입하는 경우
- ③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무관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단, 다음을 제외한다.
 1. 위험경감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위험경감' 참고)
 2.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불리한 변동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3.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되는 변동
- ④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 ⑤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2)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의 변동내역' 중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무관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 단 위험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 ② ①을 제외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 이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과 일관되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모든 조정은 현행 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위험경감

회사는 파생상품이나 출재보험계약을 통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위험 효과 또는 파생상품이나 재보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통해 기초항목의 성과와 무관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중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것(이하

'위험경감')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위험경감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을 통한 보험계약 금융위험의 경감의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전에 문서화
- ②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이 경감된다.
- ③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비파생금융상품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하여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 ④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효과보다 유의적이지 않다.

4.8 보험부채의 변동

4.8.1 당기현금흐름의 변동(비금융가정 변동)

비금융가정은 금융위험이 아닌 요소로 인한 가정으로서 해약률, 손해율, 사망률 등으로 구성된다. 비금융가정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과거 또는 당기의 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한 당기현금흐름의 예상금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는 보험서비스손익으로 처리한다.(예: 보험금, 계약유지비 등)

4.8.2 당기현금흐름의 변동(금융가정 변동)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에 따라 변동되는 당기현금흐름으로 과거 또는 당기의 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하는 변동액이며 이는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동 보험금융손익 중 당기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액으로 구분될 경우 당기비용으로 분류하며 그 외에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별 보험금융손익 정책에 따라 당기비용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4.8.3 미래현금흐름변동(보험료)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예: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최초인식시점 할인율로 측정한다.

4.8.4 미래현금흐름변동(사업비 등)

미래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구성하는 보험계약 집합 경계내의 사업비(보험취득현금흐름, 계약유지비, 투자관리비 및 손해조사비)의 미래 예상 이행현금흐름

(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4.8.5 미래현금흐름변동(보험금 등 비금융가정 변동)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은 최초 할인율로 측정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조정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는 보험계약마진 조정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 중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효과는 보험계약마진을 통해서 조정되지 않고, 보험금융손익을 통해 조정된다.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금융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은 보험금융손익으로 조정되므로, 금융가정과 비금융가정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가정에 대한 변동효과를 반영하기 전 현금흐름 및 할인율(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또는 최초할인율)을 이용하여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 후, 나머지를 보험금융손익으로 조정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를 구분한다면,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은 최초할인율로 측정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4.8.6 미래현금흐름변동(금융가정 변동)

잔여보장부채 미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경제적가정(할인율, 인플레이션을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변동금액을 보험금융손익(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로 인식한다.

표35 | 금융위험 vs 비금융위험 분류

구분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비금융위험
인플레이션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에 기초하거나 성과가 인플레이션에 연계되는 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	특정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
기초항목의 가치변동	기초항목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치 변동 예) 유배당손익의 변동	추가 및 인출에 의한 기초항목의 가치 변동

4.9 변동수수료모형

4.9.1 적용요건

변동수수료모형(Variable Fee Approach)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회계모형이다. 보험계약의 개시시점에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 판단한다.

- ① 계약 조건에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 집단(pool)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
- ②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
- ③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

4.9.2 적용을 위한 현금흐름의 중요성 판단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기초항목이 특정 자산인 경우 공정가치 이익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처분)이익으로 정의하며, 기초항목이 수익물이나 이익의 형태인 경우 기초항목 전체를 공정가치 이익으로 간주한다.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기초항목에 연계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상당할 경우 '조건2'를 충족한다고 본다. 상당한의 수준은 제공하는 투자관련서비스에 관련하여 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표36 | 투자관련서비스 판단예시

상품군	상당한 부분의 판단(예시)
변액상품	계약자 지급금은 펀드평가이익에서 사업방법서에서 명시한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판단

4.9.3 주요 회계처리

(1)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 후속측정 및 회계처리방법은 일반모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일반모형과 VFA 모형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보고기간 말 현재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 잔여보장부채와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된 발생사고부채의 합으로 구성되며,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손익을 인식한다.

표37 | 잔여보장 vs 발생사고 손익비교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 보험수익: 보고기간 동안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잔여보장부채의 감소 ■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손실 및 이에 대한 환입 ■ 보험금융수익(비용):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단,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집합의 금액 변동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위험경감과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손실인식 및 환입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의 효과는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 보험서비스비용: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및 비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금액(투자요소 제외) ■ 보험금융수익(비용):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

(2) 보험계약마진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기초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기말까지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보험계약마진의 조정내역을 모두 별도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 내역을 통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표38 | 변동수수료모형의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구분	상세 내용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일반모형과 동일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업의 몫	문단 B112에 따라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2)(가)참조)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45(2)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단, 다음의 항목은 제외한다. - 위험경감옵션을 적용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에 대한 기업의 몫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한 기업의 몫에 따라 손실을 환입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분(보험계약마진 조정)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현행이자율(current rate)로 할인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과 기초항목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효과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단, 다음의 항목은 제외한다. - 위험경감옵션을 적용 -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험계약마진을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의 증가 - 손실요소금액에 배부되는 이행현금흐름의 감소
모든 외환차이 영향	일반모형과 동일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보험계약마진 상각)	일반모형과 동일

사례19 | 변동수수료모형 회계처리

가정

- 기업은 3년 보장기간의 보험계약 100개를 발행
- 보장기간은 3년이며,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
- 각 보험계약자는 보장기간 시작시점에 150원의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는 특정자산집합에 투자되며, 해당 자산은 FVPL로 측정
- 해당 보험계약 집합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임.
- 보험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수령

구분	급부
(a) 보장기간 내 보험계약자 사망시	MAX(170, 계약자적립금 ^{주1})
(b) 보장기간 종료일 생존시	계약자적립금 ^{주1}

주1 계약자적립금 = 기초잔액(a) + 수취보험료(b) + 투자수익(c) - 운용수수료((a)+(b)+(c))*2% - 사망 또는 만기시 지급할 계약자적립금 잔액

- 최초 인식시 기업은 자산집합의 공정가치 수익률을 매년 10%로 예상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은 연 6%
- 최초 위험조정을 25원으로 추정하고 매년 각각 12원, 8원, 5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
- 위험조정관련 보험금용손익과 보험수익을 세분화하지 않기로 선택
- 보험계약자에게 부리하는 이자율은 특정자산집합 수익률에서 2%를 차감하는 것으로 계약상 약정에 명시되어 있고, 수수료 회수를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보험금을 지급
- 매년 말 보험계약자 1명 사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

1. 최초인식 (T=0)

계약 개시시점에 측정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T=1	T=2	T=3
기 초	-	16,008	17,083
수취보험료	15,000	-	-
투자수익 ^{주1}	1,500	1,601	1,708
수수료 ^{주2}	(330)	(352)	(376)
사망보험금 ^{주3}	(162)	(174)	(188)
만기환급금	-	-	(18,227)
기 말	16,008	17,083	-
기초보유계약수	100	99	98
기초자산 예상수익률	10%	10%	10%

주1 (기초 + 수취보험료) * 기초자산수익률(10%)

주2 (기초 + 수취보험료 + 투자수익) * 수수료율(2%)

주3 (기초 + 수취보험료 + 투자수익 - 운용수수료) * (당기예상사망자수/기초총계약자수)

이를 바탕으로 계약개시시점에 측정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재가치	T=0	T=1	T=2	T=3
보험료	(15,000)	(15,000)	-	-	-
사망보험금 ^{주1}	432	-	162	174	188
최저사망보험금 ^{주2}	8	-	8	-	-
만기환급금 ^{주1}	13,694	-	-	-	18,227
TVOG ^{주3}	46	46	36	20	-
최선추정부채(BEL)	(820)				
위험조정(RA)	25				
이행현금흐름(FCF)	795				

주1 기초자산에 연동되는 현금흐름의 경우, 해당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기초자산 수익률을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할인율(10%)로 사용

주2 기초항목에 따라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으로 현행할인율(6%)를 적용하여 할인

주3 최저사망보증금의 시간가치(TVOG)는 시점별 공정가치가 주어진 값으로 가정

<최초 인식시점에 회계처리>

(1) 신계약 최초인식

차)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820원 / 대) 보험부채(RA: 위험조정) 25원
/ 대)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795원

(2) 보험료 수취시점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00원 / 대)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15,000원

(3) 기초자산 투자

차)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000원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000원

2. 후속측정 (T=1)

20X1말 보험계약부채의 항목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구 분	BEL: 장래CF현가	RA: 위험조정	CSM: 보험계약마진	합계
기 초	-	-	-	-
신계약	(820)	25	795	-
수취보험료	15,000	-	-	15,000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 ^{주1}	1,500	-	-	1,500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 중 회사지분 ^{주2}	(30)	-	30	-
화폐시간가치 및 기타금융위험 변동 ^{주3}	(61.5)	-	61.5	-
위험조정 release	-	(12)	-	(12)
사망보험금	(170)	-	-	(170)
만기환급금	-	-	-	-
보험계약마진 상각 ^{주4}	-	-	(298)	(298)
기 말	15,418.5	13	588.5	16,020

주1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금액(15,000*10%)은 보험금융비용으로 처리

주2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의 변동금액(=1,500*2%)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문단45(2)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

주3 화폐의 시간가치(이자부리 효과) 및 금융위험의 효과로 인한 변동금액(아래 표 참조)

주4 보험계약별 보장금액이 동일하므로 보장단위(coverage unit)으로 하여 보험계약마진상각 금액을 인식
= 보험계약마진 상각 전 조정금액 합계 * (기시보유계약수 / 예상 기간별 보유계약수 합계)
= (795+30+61.5) * (100/(100+99+98)) = 298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의 계산		
적립금 현금흐름 시간가치	(52)	수취보험료를 고려한 기시PV*10% - 기초자산 공 정가치 변동 중 계약자 지분 = (-820+15,000)*10% - (1,500 - 30)
보증관련 현금흐름 시간가치 (TVOG) 제외	0.5	최저사망보증금 기시 PV(8/1.06)*6%
TVOG 시간가치 변동	(10.0)	36(t=1) - 46(t=0)
합 계	(61.5)	

<기말시점(T=1)의 회계처리>

(1) 기초자산 투자수익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500원 / 대) 투자수익 1,500원

(2)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에 비례한 보험부채 인식

차) 보험금융비용 1,500원 / 대)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1,500원

(3)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 중 회사지분

차)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30원 / 대)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30원

(4) 보험금의 지급^{주1}

차)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170원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0원

차) 보험서비스비용 8원 / 대) 보험수익 8원

^{주1} 당기 사망보험금 170을 지급하나, 이 중 기초항목의 사망자(1명)에 대한 적립액은 162이므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70과 차액 8은 보험요소로 당기 보험비용으로 인식

(5) 화폐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

차) 보험부채(BEL: 장래CF현가) 61.5원 / 대)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61.5원

(6) 위험조정의 위험 해제에 따른 수익 인식

차) 보험부채(RA: 위험조정) 12원 / 대) 보험수익 12원

(7) 보험계약마진 상각에 따른 수익 인식

차) 보험부채(CSM: 보험계약마진) 298원 / 대) 보험수익 298원

4.9.4 회계불일치 제거를 위한 예외 조치

VFA모형을 적용할 경우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금융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①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이용하여 금융위험 효과를 경감한다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 ②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이용하여 금융위험 효과를 경감한다면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금융위험 효과의 변동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그 목적과 전략을 적용할 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험경감을 적용한다.

- ① 보험계약과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간에 경제적 상쇄효과가 존재한다. 즉, 보험계약과 그러한 위험경감항목은 경감 대상 위험의 변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적 상쇄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상 측정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신용위험이 경제적 상쇄효과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위험경감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은 매 보고기간에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상기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위험경감의 적용을 중지하고 종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변동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

4.10 보험료배분접근법

4.10.1 적용요건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은 단기계약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측정모형으로 수취한 보험료를 시간의 경과 기준 혹은 보장기간의 위험의 해제 양상 등을 고려하여 매 보장기간에 배분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모형에 비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이며, 잔여보장부채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 ① 측정대상 잔여보장부채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반모형이나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사용한 것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 ②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

4.10.2 보험취득현금흐름에 대한 회계정책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 집합의 판매, 인수, 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다. 일반모형 혹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최초인식 시점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 포함되어 보험계약마진을 감소시키며, 후속측정 시 보험기간에 걸쳐 안분된 금액을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동일하게 인식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방법과 상각기간 등은 실제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유출액은 보험계약마진의 상각액 감소로 실현된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상각하므로 보험취득현금흐름 또한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익의 감소로 실현되는 항목이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집합은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아닌 계약집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회계정책으로 같은 포트폴리오 내의 보험계약 집합이라 하더라도 보장기간에 따라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취득현금흐름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지 않은 보험계약 집합은 잔여보장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하고 보험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계약 집합은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 집합 대비 자본의 감소를 먼저 인식하였기 때문에 손실부담부채 산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손실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손실계약집합 혹은 손실가능계약집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4.10.3 보험료배분접근법부채의 변동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단기보험부채의 경우 잔여보장부채는 아래와 같이 측정된다.

기말 잔여보장부채

= 기초 장부금액

+ 당기 수취한 보험료

- 당기에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이연하여 상각하기로 선택한 경우)

+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액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이연하여 상각하기로 선택한 경우)

+ 금융요소 조정분 (화폐의 시간가치를 인식하기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 및 외화계약의 경우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

- 당기 경과보험료 해당분

- 당기에 지급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 손실부담부채 변동분

잔여보장부채의 각 변동부분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한다.

표39 | 보험료배분접근법 하 회계처리 항목

구 분	인식방법	회계처리
수취 보험료	당기 중 수취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BEL의 증가
보 험 취 득 현 금 흐 름 지급분	당기에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금액 (이연하여 상각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BEL 차감 (단, 일시 비용인식하는 경우 보험서비스비용)
보 험 취 득 현 금 흐 름	수익인식과 동일한 패턴으로 상각	보험서비스비용

구 분	인식방법	회계처리
상각액	해약 시 잔액 일시 상각	
금융요소 조정분	－ (이자부리를 선택한 경우) 최초 할인율로 이자부리 － (외화계약의 경우) 경과보험료는 평균환율, 보고기간 말 외화 잔여보장부채 잔액은 기말환율로 환산하여 환율변동효과 인식	보험금융손익
경과보험료	－ 기간비례 수익인식 － 위험비례 수익인식	보험수익
투자요소	－ 보험손익 인식에서 제외하여 수익인식 － 투자요소가 실제 발생하면 발생사고부채로 이전	발생사고부채
손실부담부채 변동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추정분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보험서비스비용

* 각 항목별 회계처리 예시는 제4장 회계사례 제2절 회계처리(보험료배분접근법)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잔여보장부채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4.11 출재보험

4.11.1 출재보험의 정의 및 의의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 관련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한 원보험사(Primary Insurer)는, 재보험계약을 통하여 원보험계약 상의 보상책임을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며 이를 출재(出再)라 한다. 반대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재보험사(Reinsurer)는 이를 수재(受再)라 한다.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을 전부 보유하거나 그 일부를 다른 재보험사에게 다시 출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재보험(Retrocession)이라 하고 이 재보험계약의 보상책임 인수자를 재재보험사(Retrocessionaire)라 한다. 재재보험의 경우 수재보험은 원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재사가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는 방법은 ‘재보험 거래유형’과 ‘책임분담방법’에 따라

각각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재보험 거래유형에 따라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과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으로 분류되며, 책임분담방법에 따라서는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과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으로 분류된다.

4.11.2 출재보험계약 정의 및 계약의 경계

출재보험계약은 임의재보험 및 특약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원수보험은 일반적으로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방식으로 출재되며, 이는 출재사가 인수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출재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출재사와 수재사 간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합의된 특약에 따라서 계약의 경계 및 장래 인식될 신계약이 결정된다.

사례20 | 출재보험계약 정의 및 계약의 경계

가정

- 원보험만기 : 10년
- 특약서 출재중단조항 : 신계약 출재중단 3개월 전 통보
- 특약출재중단방식 : Run-off

예시

- (1) 특약체결시점 계약의 경계 : 특약체결시점부터 그 후 3개월 시점까지의 모든 원수계약 포함
 - ▶ 3개월 미래신계약(만기 10년)이 출재보험계약의 회계단위
- (2) 특약체결 1개월 후 계약의 경계 : 특약체결시점부터 그 후 3개월 시점까지의 모든 원수계약 포함
 - ▶ 1개월 보유계약, 2개월 미래신계약(만기 10년)이 출재보험계약의 회계 처리단위

임의재보험 및 비비례재보험의 경우, 상기 비례재보험특약 방식과 같이 자동적으로 출재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으로 출재되는 원보험계약의 만기 및 출재계약의 출재중단조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4.11.3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측정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원보험계약과 연계된 현금흐름 및 원보험계약과 무관한 현금흐름으로 구분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기준서의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측정의무에 따라,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을 현금흐름 측정 시 고려한다. 원보험계약은 부채관점에서 현금흐름의 부호를 정의하나, 출재보험계약은 자산관점에서 그 부호를 정의한다.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출재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 가능하다.

- ① 출재보험료
- ② 출재보험금
- ③ 수입손해조사비
- ④ 출재수수료
- ⑤ 출재이익수수료 및 손해분담금

출재보험료 및 출재보험금 외 나머지 현금흐름항목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측정 시 출재보험료 또는 출재보험금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한다.

- ① 원보험계약 사고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흐름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 : 출재보험료
- ② 원보험계약 사고여부에 따라 현금흐름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 출재보험금

사례21 | 출재보험계약 현금흐름 분류

예시

- (1) 특약제결시점 출재보험료의 10% 규모로 출재수수료 결정(출재보험료할인)
 - ▶ 출재보험료 간주
- (2) 연도末 마감 후 출재보험금 규모에 따라 출재이익수수료 결정
 - ▶ 출재보험금 간주

4.11.4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할인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은 계약집합의 이행에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위험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를 측정함에 있어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한다. 할인율은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요소이며,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시 원수보험에서 적용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한다.

4.11.5 출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재보험계약의 보유자가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금액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수보험과 별도로 산정한다. 원수보험에서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보험위험, 해약위험, 사업비위험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측정하지만, 재보험계약에서의 위험조정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보험위험 중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 산출 시 (1) 출재계약 위험조정 직접 산출 방법과 (2) 원수 및 보유기준의 위험조정을 각각 산출 후 차감하여 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을 산출하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출재계약 위험조정 직접 산출

재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위험요인 분류 및 측정방법은 원수보험계약과 일관되게 적용한다. 다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 시에 포함한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의 경우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이 아니므로 위험조정 측정에서는 제외한다.

(2) 원수 및 보유기준의 위험조정을 각각 산출 후 차감하여 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을 산출
원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반영기간 및 평가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방법은 재보험 위험조정의 충실한 반영이 불가하다.

4.11.6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원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은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이익을 의미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마진은 미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할 미실현이익이 아닌 재보험 구입시의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나타낸다. 이때, 순원가는 재보험자에 대한 기대현금흐름유출액이 기대현금흐름유입액과 위험조정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순원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되는 이익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현되는 구입 비용을 의미한다.

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는 계약 집합의 위험조정된 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기대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결정되며, 동 차이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즉시 손실로 인식하지만 재보험계약 집합에서는 최초 인식시 순원가 또는 순이익 발생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이 차변 또는 대변에 인식될 수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에서는 부(-)의 보험계약마진을 인정한다.

단, 재보험보장 구입의 순원가가 재보험계약 집합의 구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은 구입 시의 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마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11.7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요소

출재대상 원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또는 후속적으로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손실회수요소는 다음 (1)과 (2)를 곱하여 산출한다.

- (1)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
- (2)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용

단, 비비례 출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된 보험계약의 담보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후 정산되는 Market의 성과에 비례해서 출재보험금 회수액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손실회수요소가 매우 낮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22 |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험계약마진의 산출

가정

－위험조정: 500원

－미래현금흐름유입액의 현재가치: 4,500원

- (1) 재보험자에게 제공한 재보험료가 6,000원인 경우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1,000원(6,000원-4,500원-500원)

- (2) 재보험자에게 제공한 재보험료가 4,000원인 경우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1,000원(4,000원-4,500원-500원)

사례23 | 손실회수요소 인식

가정

－평균(대표)출재율: 40%

－위험조정: 500원(원수보험계약 집합), 200원(출재보험계약 집합)

－미래현금흐름유출액의 현재가치: 4,500원(원수보험계약 집합)

－미래현금흐름유입액의 현재가치: 2,500원(출재보험계약 집합)

- (1) 원수보험계약 집합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가 4,000원인 경우

보험계약마진 = 0원, 당기손실 인식 금액 = 1,000원(4,000원-4,500원-500원)

- (2) 출재보험계약 집합

재보험자에게 제공한 재보험료가 2,000원인 경우

손실회수요소 인식 전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700원(2,000원-2,500원-200원)

당기수익 인식 금액 = 400원(1,000원×40%)

손실회수요소 인식 후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 -300원(-700원+400원)

4.11.8 출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변동

매 보고기간말 재보험계약 집합의 후속측정치는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된다. 이행현금흐름은 원수보험계약의 보고기간말 이행현금흐름

측정시 적용한 가정과 일관된 가정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출재보험계약 BEL 후속측정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의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원수보험계약 집합 중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 집합(Non-Par)의 BEL 변동분석 단계를 준용하며, 공동재보험과 같이 영업보험료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원수계약집합 중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집합(Indirect-Par)의 BEL 변동분석 단계를 준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 시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관련 위험을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을 추가로 고려하여 후속 측정한다.

(2) 출재보험계약 위험조정 후속측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중 보고기간 내에 위험의 해소(상각)로 인한 변동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따른 변동은 보험금융비용(PL 또는 OCI)으로 인식한다. 그 외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화 할 필요는 없으며, 세분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한다.

(3)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보고기간말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 ①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 ②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러되는 이자
 1.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적용
 2. 계약 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을 고려한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③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또는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의 손실에 대해 보고기간에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 ④ ③에서 인식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 ⑤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1. 원수계약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은 제외한다.

- ⑥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⑦ 해당 기간에 제공받은 서비스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기간에 제공받은 서비스를 확정하기 위하여 보장단위(Coverage Unit)를 산정하는데, 보장단위는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보고기간말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각각 배분하며,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24 |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험계약마진의 상각

가정

- 출재계약집합에 3개의 원수보험계약이 포함된다.
- 계약A,B,C의 출재율은 50%로 가정한다.
- 예시의 단순화를 위해 시간가치 반영은 생략한다.

구 분	급부의 양		Duration
	원수보험계약 집합	출재보험계약 집합	
계약 A	100원	50원	5년
계약 B	50원	25원	4년
계약 C	20원	10원	3년

집합의 총 보험계약마진: 50원

<매년 배분되는 보험계약마진 산정>

- (1) 총 급부의 양: $50원 \times 5년 + 25원 \times 4년 + 10원 \times 3년 = 380원$
 (2) 상기 급부의 양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급부의 양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약 A	50	50	50	50	50
계약 B	25	25	25	25	
계약 C	10	10	10		
합계	85	85	85	75	50

- (3) 연도별로 배분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

총계	1년	2년	3년	4년	5년
50	11 ^{주1}	11	11	10	7

주1 $50 \times (85/380) = 11$

(4) 보장단위는 매결산기말 기준으로 재산출되어야 한다.

사례25 | 출재보험계약 집합 손실회수요소의 후속 측정

가정

-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후속측정 시 손실을 인식
- CSM 이자부리 할인율(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 5%
 - * 원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 집합 동일함을 가정함
- CSM 상각률 : 10%
- 손실회수요소 인식 평균(대표)출재율 : 50%

<출재보험계약 집합 보험계약마진 및 손실회수요소 후속 측정>

(단위: 원)

구 분	원수보험계약 집합	출재보험계약 집합
기초 보험계약마진	100	60
기초 손실요소/손실회수요소	-	-
신계약 유입효과	-	-
보험계약마진 이자부리	5	3
보험계약마진 조정	(205)	57
손실요소/손실회수요소 환입	100	50 ^{주1}
조정 후 보험계약마진	-	170 ^{주2}
기말 손실요소/손실회수요소	100	50
보험계약마진 상각	-	17
기말 보험계약마진	-	153

주1 손실회수요소 환입 : $50 = 100(\text{원수보험계약 집합 손실전환금액}) \times 50\%(\text{평균출재율})$

주2 조정 후 보험계약마진 : $170 = 60 + 3 + 57 + 50$

4.12 전환회계

4.12.1 전환일의 보유계약 평가방법

보험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을 시가로 전환하여 비교표시대상인 전환일(2022.1.1.)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시가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는 전환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완전소급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완전소급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 ① 완전소급법: 보험계약 판매시점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보유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하며, 보험계약집합을 소급하여 평가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 판매 당시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위험조정, 할인을 등 정보가 필요하다.
- ② 수정소급법: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전환일 기준 보험계약집합의 식별이 허용되며 현금흐름, 할인을, 위험조정을 조정·추산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 ③ 공정가치법: 보험계약마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보험부채의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 위험조정)의 차이로 산출한다.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소급기간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에서 5년 사이의 연 단위 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보험계약집합별로 소급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소급기간 이전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공시기한: 2022.12.31.)할 경우 소급기간을 전환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의 연단위 기간으로 하거나,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환일 전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2 | 시점별 보험계약 시가 전환방법



4.12.2 전환시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부채 평가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전환일의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의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보험부채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2023.1.1. 시행)에서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맞게 보험계약대출 평가방법 및 위험마진 측정방법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정하였다.

그림3 |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부채 평가



4.13 보험부채 공시

4.13.1 개요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 대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4.13.2 공시를 위한 통합수준

회사는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시 수준이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와 각 요구사항에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면 목적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상세항목을 다수 포함하거나 실질적으로 특성이 다른 항목들을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공시사항을 통합하거나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29~31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 수준으로 적절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 유형(예: 주요 상품 계열)
- ② 지리적 영역(예: 국가 또는 지역)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4.13.3 공시 요구사항

보험계약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은 각 분류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유형별로 공시한다. 다음의 유형별 공시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출채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한 공시사항을 별도로 후술한다. 향후 제시되는 공시양식은 예시적인 항목으로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포함한다.

표40 | 보험계약 관련 공시 요구사항

분류	내용		문단	비고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보험계약 순장부금액의 기초 기말 차이조정	98~105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초 기말 차이조정	105A, 105B	
		보험수익	106, B124	보험료배분 접근법 제외
		신계약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	107, 108	보험료배분 접근법 제외
		보험계약마진 잔액의 기간별 기대손익	109	보험료배분 접근법 제외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간별 기대배분금액	109A	
	보험금융수익(비용)		110~113	
	전환금액		114~116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 기법	보험계약 측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 및 투입변수 추정과정	117(1)(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서의 재량행사로 인한 미래현금흐름 변동	117(3)(가)	

		위험조정지 세분	117(3)(나)	
		할인을 및 투자요소	117(3) (다)(라)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와 보험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접근법	117(3)(마)	
	보험금융손익의 구분 방법		118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지 신뢰수준		119	
	수익률곡선		120	
보험계약에서 생기는위험의 성격과 정도	위험의 유형에 대한 공시		124, 125	
	규제 체계의 효과		126	
	모든 유형의 위험: 위험의 집중		127	
	보험 및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		128, 129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130	
	신용위험: 그 밖의 정보		131	
	유동성위험: 그 밖의 정보		132	

(1)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1)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1. 보험계약 순 장부금액의 기초 기말 차이조정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이 현금흐름과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수익 및 비용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변동되었는를 보여주는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이 공시사항은 발행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자산으로 표시되는 포트폴리오와 부채로 표시되는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 ① 자산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 ② 부채인 발행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 ③ 자산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 ④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 ①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로 구분하여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장부금액 조정사항

(단, 발생사고부채 중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대해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별도로 공시)

- ②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해 기초잔액부터 기말까지의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사항

2.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 조정내역

각각 다음의 금액을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에 공시한다.

- ① 보험수익
- ② 다음을 구분하는 보험서비스비용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③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
- ④ 다음 금액을 포함하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 수취한 보험료
 - 보험취득 현금흐름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된(또는 출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발생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
- ⑤ 보험금융수익(비용)
- ⑥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상기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1 | 공시항목: 보험부채의 조정내역 - 손익항목과의 연계

구분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합계
		잔여보장부채 (자산)		발생 사고 부채	잔여보장부채 (자산)		발생사고부채(자산)		
		손실 요소 외	손실 요소		손실 요소 외	손실 요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초 잔액								
보험수익									
보험 서비스 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투자요소 및 보험료 환급									
현금 흐름	수취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 지급								
	보험금 및 기타 보험 서비스비용의 지급								
	투자요소 수취(지 급) 및 보험료 환급								
보험 금융 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 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기타증감									
기말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말 잔액								

3.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사항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차이조정에 공시한다.

① 다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1.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2.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3. 신계약의 효과

②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1.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2. 미래서비스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위험조정의 변동분
3. 경험조정

③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④ 다음 금액을 포함하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1. 수취한 보험료
2. 보험취득 현금흐름
3.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된 발생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

⑤ 보험금융수익(비용)

상기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2 | 공시항목: 보험부채 조정내역 - 미래/당기/과거 서비스별 구분

구분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 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 마진	합계
기초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초 잔액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변동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인식분				
	위험조정 변동분				
	경험조정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사고요소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				

현금흐름	수취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 지급				
	보험서비스비용 지급				
	투자요소 수취(지급)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기타증감					
기말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말 잔액				

4.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표 43 | 공시항목: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변동내역

구분		금액
기초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초 잔액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인식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손상차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손상환입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제거		
기말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말 잔액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이 향후 제거되어 보험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계약이 포함되는 보험계약 집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44 | 공시항목: 보험취득현금흐름의 기대 실현기간

구분	당기말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금액						

5.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 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단 다음을 제외함
 1.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2. 투자요소 상환액
 3. 제삼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과 관련된 금액
 4. 보험취득비용
 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관련 금액(아래 설명 참조)
- ②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단 다음을 제외함
 1. 보험금융손익에 포함된 변동
 2. 미래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
 3.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 ③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④ 그 밖의 금액(예: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조정)
- ⑤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상기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5 | 공시항목: 보험수익 내역

	구분	금액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손실요소 배분액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의 경험조정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합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나, 보험수익과 대응하여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손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표46 | 공시항목: 보험서비스비용 내역

구분		금액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합계		

표47 | 공시항목: 보험금융손익 내역

구분		금액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합계		

6. 신계약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보험계약이 다음에 미친 영향을 공시한다. 이 때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및 손실부담계약집합은 별도로 공시한다.

- ①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보험취득 현금흐름 별도 표시
- ②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③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④ 보험계약마진

상기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8 | 공시항목: 신계약의 영향

구분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보험 계약 마진	합계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외	보험취득 현금흐름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계약	발행한 보험계약	손실부담 계약집합 외					
		손실부담 계약집합					
	소계						
	출재보험 계약	순이익 계약집합 외					
		순이익 계약집합					
	소계						
해당 기간에 이전 또는 사업결합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보험계약							
합계							

7. 보험계약마진 잔액의 기간별 기대 손익

보고기간 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해당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49 | 공시항목: 보험계약마진의 기간별 기대손익인식액

구분	당기말 보험계약마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발행한 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2) 보험금융수익(비용)

보고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을 공시하고 설명한다. 특히 재무제표이용자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수익 또는 비용의 원천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수익(비용)과 자산의 투자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① 기초항목의 구성과 공정가치
- ② 이행현금흐름의 일부 변동분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러한 선택이 당기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에 미친 효과
- ③ 기초항목의 보유 여부가 바뀌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는 기준을 변경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

1. 세분하는 기준의 변경 이유

2. 영향을 받은 재무제표의 각 조정 금액
3. 변경이 적용된 보험계약 집합의 변경일의 장부 금액

상기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0 | 공시항목: 투자손익과 보험금융손익

구분		금액
투자손익	이자수익	
	기타투자손익	
	금융상품 거래 및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투자손익 합계	
보험금융손익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계약의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분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뭉에 대한 금융위험 효과의 위험경감분	
	체계적 배분액	
	할인율 및 금융가정의 변경 효과	
	환율변동효과	
	기타	
	소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재보험금융손익	체계적 배분액	
	할인율 및 금융가정의 변경 효과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변동액	
	환율변동효과	
	기타	
	소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순보험금융손익 합계		

3) 전환금액

전환시점 보험계약 집합 별로 각기 다른 전환규정을 적용하므로, 집합 간 보험계약 측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표51 | 공시항목: 전환시 요구되는 항목

구분	공시사항
보험계약마진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조정내역	다음의 사항에 대해 각각 공시한다. (가) 전환 시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나) 전환 시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다)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보험수익에 대해서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발생사고부채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조정내역	(가)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공시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전환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 (나) 전환 시 적용한 판단의 성격과 유의성
전환금액 산정 시 사용한 방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구분함에 따라 총 보험금융손익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금융손익 간의 차이가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액
기타포괄손익 조정내역	

해당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2 | 공시항목: 보험계약마진 조정내역 - 미래/당기/과거 서비스별 구분

구분		보험계약마진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합 계
기초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초 잔액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변동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인식분				
현금흐름	수취한 보험료				
	보험취득현금흐름 지급				
	보험금 및 기타 보험서비스 비용의 지급				
	투자요소 수취(지급) 및 보험료 환급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기타증감					
기말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기말 잔액				

표53 | 공시항목: 보험수익 조정내역 - 후속 기간의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

구분		보험수익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합계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 서비스비용 관련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의 변동분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 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 계약마진금액				
	손실요소 배분액				
	보험료의 관련 현금흐름의 경험조정				
	기타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합계					

표54 | 공시항목: 기타포괄손익 조정내역-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시

구분	보험계약 집합 관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증감
기초잔액	
해당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기타포괄손익	
기말잔액	

(2) 유의적인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

1)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

1. 보험계약 측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 및 투입변수 추정과정

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해당 방법의 투입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그리고 보험계약 측정과 투입변수 추정의 방법에 변동이 있다면 그 이유와 영향을 받는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도 공시한다.

2.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서의 재량행사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 변동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재량의 행사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과 기타 변동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공시한다.

3. 위험조정의 세분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요소와 보험금융요소로 세분하였는지, 또는 보험서비스결과로 전부 표시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을 공시한다.

4. 할인율 및 투자요소

할인율 및 투자요소가 산정된 방법에 대해 공시한다.

5.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관련서비스와 보험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접근법

급부의 수량에서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와 보험요소간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보장단위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할 때 사용된 접근법을 공시한다.

2) 보험금융손익의 구분 방법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으로 세분하기로 선택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에 관한 설명을 공시한다.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신뢰수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한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기법과 그러한 기법의 결과치에 해당하는 신뢰수준을 공시한다.

4) 수익률곡선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수익률 곡선 (또는 수익률 곡선의 범위)을 공시한다. 많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전체로서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형태로 또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로 그러한 공시를 제공한다.

(3)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1) 위험의 유형에 대한 공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 ①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와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떻게 생기는지(전기와 달라진 사항 포함)
- ②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전기와 달라진 사항 포함)
- ③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기간말 해당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에 관한 요약된 정보
- ④ 보고기간말에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해 공시된 정보가 해당 기간 동안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대표값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과 보고기간말 익스포저가 대표값이 아닌 이유를 공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익스포저의 대표값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2) 규제 체계의 효과

기업이 운영하는 규제 체계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최소 자본 요구량 또는 요구되는 보장 이자율을 공시한다. 또한, 보험계약 집합 결정 시 특성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을 설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다르게 두는 기업의 실무상 능력을 법률 또는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집합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한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을 같은 집합에 포함시키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3) 모든 유형의 위험: 위험의 집중

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① 기업이 집중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② 집중을 식별하는 공통된 특성(보험사건의 유형, 산업, 지역 또는 통화 등)

4) 보험 및 시장위험: 민감도 분석

보험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다음의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 ① 보고기간 말 상당히 발생 가능했던 위험 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 1. 보험위험: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과 후의 효과
 - 2. 시장위험의 각 유형: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시
- ②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방법과 가정
- ③ 민감도 분석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전기 대비 변경된 사항과 사유
- ④ 상기 세 가지 방법에서 설명한 방식과 다른 방식의 민감도 분석을 이미 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사용한다면, 그 민감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1. 그러한 민감도 분석을 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변수와 가정에 대한 설명
2. 사용된 방법의 목적 및 제공된 정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한사항에 관한 설명

5)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한 과거추정치와 비교된 실제 보험금(예: 보험금진전추이)을 공시한다. 이 공시는 앞선 장부금액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의 공시내역에서 발생사고부채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공시는 최초 중요한 보험금이 발생했던 기간부터 보고기간 말에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기간 동안 공시한다. 보고기간 말로부터 이전 최대 10년까지 공시하도록 요구되며, 보험금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6) 신용위험: 기타정보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①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보고기간말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 ② 출재보험계약 자산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7) 유동성위험: 그 밖의 정보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①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②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각 연도별 순현금흐름으로,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공시(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은 제외)
 1. 남아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2.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대한 추정 시기별 분석
- ③ 상기 공시사항을 적용했을 때 공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요구시 지급할 금액 및 이 금액과 관련 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과의 관계를 설명

(4)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공시사항

출재보험계약은 발행한 보험계약의 특성과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의 공시사항을 기준서 문단 100~109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재보험계약부채(자산)의 차이조정내역을 공시하고, 전환시점 보험계약마진과 보험수익에 대한 차이조정에 대해 공시한다. 보험수익에 대한 공시사항은 발행한 보험계약과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서비스비용에 대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해당 내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55 | 공시항목: 출재보험계약 부채(자산)의 조정내역 - 손익항목과의 연계

구분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합계
		잔여보장부채 (자산)		발생 사고 부채 (자산)	잔여보장부채 (자산)		발생사고부채(자산)		
		손실 회수 요소 외	손실 회수 요소		손실 회수 요소 외	손실 회수 요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 초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								
	기초 잔액								
재보험서비스비용									
재 보 험 수 익	발생한 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투자회수요소									
현 금 흐 름	지급한 보험료								
	보험취득현금흐름 지급								
	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의 수취								
	투자회수요소 수취(지급)								

재 보 험 금 용 손 익	당기손익인식 재보험금용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재보험금용손익								
기타증감									
기 말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								
	기말 잔액								

표56 | 공시항목: 출재보험계약 부채(자산) 변동내역 - 미래/당기/과거 서비스별 구분

구분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 마진	합계
기초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				
	기초 잔액				
미래서비스 와 관련된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변동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현행서비스 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인식분				
	위험조정 변동분				
	경험조정				
과거서비스 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사고요소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				
현금흐름	지급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 지급				
	재보험금 및 기타 재보험수익의 수취				
	투자회수요소 수취(지급)				
보험금용 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용손익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용손익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					
기타증감					
기말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				
	기말 잔액				

(5)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한 공시사항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대한 공시사항은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을 손익항목과 연계하여 공시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시한다.

- ①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 대해서 각각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중 기업이 만족한 요건
- ②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요소를 조정하는지 여부
- ③ 최초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4.14 문서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검토자·승인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기준서의 요구사항,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한 회계정책서
- ② 책임준비금 하위 각 세부 계정(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평가하여 산출할 때 적용한 산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계리방법서

또한,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①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 절차 및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포트폴리오 구분 기준 및 보험계약집합 구분을 위한 수익성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계모형(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 절차 및 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위험조정 산출시 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거나 모형을 신뢰성있게 산출·검증할 수 없어 외부통계 및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합리성을 입증한다.
- ⑤ 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에 대해 회사의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화하고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공시이율 가정 적용시 공시이율 조정률은 회사의 사업전략 및 공시이율 조정률에 대한 과거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설정근거 및 검증내역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⑦ 금융감독원이 제시하지 않는 해외통화의 가정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가정의 산출기준 및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⑧ 해외통화에 대한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다른 확률론적 모형의 선정 사유 및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⑨ 변액보험 펀드시나리오 산출시 해외통화에 대해 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채권수익률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회사가 해외통화의 모수 및 난수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하고, 해외통화 기준 Hull-White 1 factor 모형의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형 선정 사유, 모형 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⑩ 변액보험 펀드시나리오 산출시 주식수익률 시나리오의 추세모수는 해외통화의 경우 회사가 해외통화 기준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변동성모수는 회사가 2001년 이후의 KOSPI200 역사적 평균 변동성이 아닌 다른 주가 변동성(최소 20년 이상의 통계)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이 적합함을 입증할 경우 입증 결과 등을 문서화한 후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⑪ 계리적 가정 산출시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제공한 산업통계, 국내·외 학술논문 인용통계 등 외부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1)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 (2) 외부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 (3)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및 그 효과에 대한 검증, (4) 외부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 (5)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5가지 사항을 적용하는 의사결정 체계, 의사결정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⑫ 계리적 가정은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1)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2)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계리적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3)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등 3가지 규정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과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⑬ 회사는 미래현금흐름 현행추정치 산출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하여 (1) 통계책임자 지정, (2)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3) 통계담당자 자격요건 및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4) 통계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 (5)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산업통계 산출목적의 통계제공 절차, (6) 통계관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7) 기타 통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⑭ 계리적 가정 중 사업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설정 및 변경근거를 문서로 보관하며, 일시적 비용을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 ⑮ 사업비 중 보험취득현금흐름과 계약유지비의 구분은 사업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5절. 보험부채 계정과목별 해설

5.1 잔여보장요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의무로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5.1.1 최선추정부채

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잔여보장요소의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5.1.2 위험조정

보험계약 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잔여보장요소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금액

5.1.3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

5.1.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부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 집합의 잔여보장요소

5.2 발생사고요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의무로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5.2.1 최선추정부채

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발생사고요소의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5.2.2 위험조정

보험계약 집합의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발생사고요소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5.2.3 감독목적준비금

유배당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래 계약자 배당액으로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으로 구성되며, 감독목적 재무제표에서 보험계약부채의 정보성계정으로 표시된다.

(1)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자 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의해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5.3 재보험자산/부채

5.3.1 잔여보장요소

보유한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부담하는 재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상 권리로 최선추정자산,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1) 최선추정자산

재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잔여보장요소의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재보험계약 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 집합에서의 잔여보장요소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3) 보험계약마진

미래에 재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순원가 또는 순차익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잔여보장요소

5.3.2 발생사고요소

재보험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및 수령사유가 발생한 투자요소와 관련된 재보험계약자의 순계약상 권리로 최선추정자산,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1) 최선추정자산

재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에 있는 발생사고요소의 모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 위험조정

재보험계약 집합 보유자가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재보험계약 집합에서의 발생사고요소 비금융위험을 반영한 금액

5.4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으로 인한 보험자의 의무

제6절. 기타부채 계정과목별 해설

6.1 순확정급여채무

(1) 퇴직급여제도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회사는 임직원이 퇴직시 회사가 정한 사규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미래 퇴사시 지급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를 퇴직급여충당부채라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급여제도의 운영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로 나뉘게 된다.

2)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가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확정급여형으로 재선택은 불가능하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 퇴직연금운용사 등)에 사전에 정해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가 종료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① 기업의 의무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한정된다. 회사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의무가 종료되므로 직원의 퇴직시 지급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경우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매년 정산함으로써 퇴직금과 관련된 의무가 모두 종료 되는 것이다.
- ② 종업원이 수령할 퇴직급여액은 회사의 기여금과 기여금으로 인한 수익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미래 퇴직급여액 결정의 위험부담은 모두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기여금을 납입 또는 납입할 의무가 발생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회사의 의무부담 발생 전에 지급한 기여금은 선급비용(자산)으로, 발생시에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미지급비용(부채)으로 회계처리 한다. 기여금의 납부기일이 근무용역 제공기간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을 이용하여 할인한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특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회사가 종업원이 퇴직할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과 다른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① 기업의 의무는 약정된 퇴직급여를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 ② 종업원의 퇴직시점과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급여의 변동액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기업이 지게 된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직원의 퇴사시점과 퇴사시 수령할 퇴직급여를 추정한 뒤(보험수리적가정) 근로용역을 제공한 기간 동안 배분하여(예측단위 적립방식) 할인하여 계산한다. 또한, 사외적립자산(현재의 퇴직연금예치금)의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부채 금액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수리적손익 금액과 당기인식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 외 퇴직급여제도의 개정 등으로 인한 과거근무원가, 제도의 청산 또는 축소로 인한 손익의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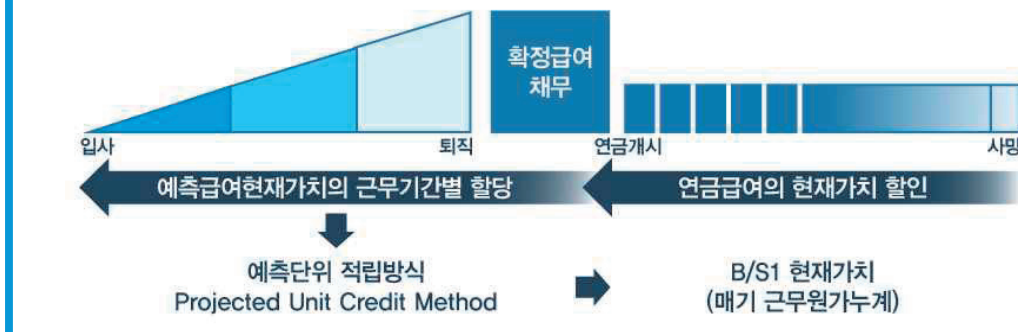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측정을 위한 절차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측정을 위해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계산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결산일 현재 회사가 인식해야 할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추정된 퇴직급여액을 당기 및 과거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수리적가정은 미래에 지급될 퇴직급여액을 추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측단위 적립방식

그림 4 | 예측단위 적립방식 도해



퇴직급여 총당부채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첫번째 과정은 예측단위적립방식의 적용으로 이는 추정된 퇴직급여총당부채 중 매기 근무용역의 제공에 따라 인식해야 할 부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래의 퇴직급여액을 추정한 뒤 매결산시점에 인식할 금액을 정액법으로 안분하고 시간의 가치를 반영하여 할인하는 것이다.

퇴직급여총당부채를 구성하는 요소는 당기근무원가와 이자비용이다.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총당부채 증가액을 말한다. 즉, 일정 기간에 배분된 귀속급여에 대해 매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귀속급여를 얻을 권리를 얻게 되고 해당 퇴직급여를 결제하기 위해 동 금액을 퇴직급여총당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다.

각 기간동안 배분된 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인식한 퇴직급여는 미래에 결제가 되는 것이므로 할인하여 금액을 계산한다. 퇴직급여는 예측한 미래에 지급될 것이므로 할인된 근무원가에 이자원가를 가산해야만 미래 퇴직급여에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매결산기 마다 기 인식된 근무원가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보험수리적가정

미래의 퇴직급여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총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추정이 사용된다. 이를 보험수리적 가정이라 하는데 보험수리적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아야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인구통계적 가정은 사망률, 퇴직률, 급여수령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를 가지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원가 청구율 등이 있다.

재무적 가정은 할인율과 미래의 임금수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있다. 재무적 가정의 경우 퇴직급여가 지급될 미래에 대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기대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1. 할인율

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율이다.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은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할인율은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할인율에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만 기업 고유의 신용위험 등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높은 이자율을 가진 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을 가진 회사의 부채보다 작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할인율은 우량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참고한다. 사용하는 회사채의 통화 및 만기는 당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통화,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미래의 임금수준

퇴직자가 수령할 퇴직금은 퇴직직전의 임금수준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시 미래의 임금수준을 적절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임금상승률을 추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률과 승급률 등 임금상승에 관련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손익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직전 결산시점의 예상과 다른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즉, 직전 결산시 추정에 사용했던 가정과 실제 결과와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당기 결산시 사용되는 가정과 다른 경우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보험수리적손익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① 손익인식법: 범위한계를 적용하지 않고 미인식 보험수리적 손익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상각 방법으로 예상평균잔여 근무기간 동안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방법(상각하지 않고

모든 보험수리적 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 ② 기타포괄손익인식법: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회사는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매기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③ 한계손익인식법 : 확정급여제도별로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10%를 곱한 금액과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미인식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하여 예상평균잔여 근무기간 동안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방법

4)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이란 직원이 퇴직할 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기금 또는 보험회사 등에 적립해 놓은 자산을 말한다. 사외적립자산은 시장에 형성된 기대치에 기초하여 기대수익을 도출한 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교하여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한다.

(4) 공시사항

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DC)

표57 | 퇴직급여 DC형 공시요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53~54

문단 53.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공시한다.

문단 5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 정보를 공시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DB)

표58 | 퇴직급여 DB형 공시요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135~152

문단 135. 기업은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 (1)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문단 139 참조)
- (2) 확정급여제도에서 생기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
- (3) 확정급여제도가 어떻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정도

문단 136.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함의 수준

- (2) 각각의 다양한 규정을 강조하는 정도
- (3) 수행하여야 할 통합과 세분화의 정도
- (4) 재무제표이용자가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필요 유무

문단 137. 이 기준서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사항이 문단 135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확정급여채무의 성격, 특성, 위험을 구분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분석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시사항에서 다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1) 현재 근무 중인 가입자, 퇴직급여 수령 대기자, 연금수령자에게 생기는 금액
- (2) 가득된 급여와 생겼으나 가득되지 아니한 급여
- (3) 조건부급여, 미래임금상승 금액, 그 밖의 급여

문단 138. 중요하게 다른 위험을 가진 제도나 제도의 집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시의 전부나 일부를 세분화할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제도에 관한 공시를 세분화할 수도 있다.

- (1) 지리적 위치의 차이
- (2) 정액임금기준 연금제도, 최종임금기준 연금제도, 퇴직후의료급여제도 등 특성에 따른 차이
- (3) 감독 환경의 차이
- (4) 보고부문의 차이
- (5) 기금적립약정의 차이(예: 미적립, 전부 적립, 일부 적립 등 기금의 적립 수준)

문단 139. 다음을 공시한다.

- (1) 다음을 포함하는 확정급여제도의 특성에 관한 정보
 - (가)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성격(예: 최종임금기준 확정급여제도나 보장부 기여금기준제도)
 - (나) 제도를 운영하는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예: 최소적립요구액의 수준, 자산인식상한 등 제도에 대한 규제체계의 영향(문단 64참조)]
 - (다) 제도의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그 밖의 책임에 대한 설명(예: 제도의 기금관리자나 이사의 책임)
- (2) 제도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기업이나 제도에 특유한 비일상적 위험에 초점을 맞춤)과 유의적인 위험의 집중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사외적립자산이 주로 부동산과 같은 한 종류에 투자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제도로 인해 부동산시장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 (3) 제도의 개정, 정산, 축소에 대한 설명

문단 140. 다음 각 항목(해당되는 경우)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을 공시한다.

-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다음 각각의 조정내용을 구분한다.
 - (가) 사외적립자산
 - (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다) 자산인식상한효과

(2) 보상권. 보상권과 관련 의무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문단 141. 문단 140에서 열거한 각 조정내용은 다음 사항(해당되는 경우)을 공시한다.

(1) 당기근무원가

(2)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한다.

(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위 (2)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나)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1) 참조)

(다)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익(문단 76(2) 참조)

(레) 순확정급여자산을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하는 영향의 변동(위 (2)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효익을 결정한 방법, 즉 이 경제적 효익이 환급의 형태인지 또는 미래기여금 감소의 형태인지 아니면 둘을 혼합한 형태인지를 공시한다.

(4)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문단 100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5) 환율변동의 영향

(6) 제도에 납부하는 기여금.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과 제도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별도로 구분한다.

(7)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정산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한다.

(8) 사업결합과 사업처분의 영향

문단 14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외적립자산의 속성과 위험을 구분하는 종류별로 세분하고, 각 종류의 사외적립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이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다시 세분한다. 예를 들면, 문단 136에서 논의한 공시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2) 지분상품(산업유형, 회사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구분)

(3) 채무상품(발행자의 유형, 신용 건전성, 지역 등에 따라 구분)

(4) 부동산(지역 등에 따라 구분)

(5) 파생상품(이자율계약, 통화선도계약, 지분계약, 신용계약, 장수스왑(longevity swaps) 등 계약이 기초하는 위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

(6) 투자펀드(펀드 유형에 따라 구분)

(7) 자산담보부증권

(8) 구조화채무상품

문단 143. 기업이 사외적립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도 가능한 기업 자신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기업이 점유한 부동산이나 사용 중인 그 밖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공시한다.

문단 144.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공시한다(문단

76 참조). 그러한 가정은 절대 숫자로 공시한다(예를 들면 절대 백분율로 공시하며 다른 백분율과의 차이나 다른 변수와의 차이로 공시하지 아니한다.). 여러 제도를 묶어 합산하여 공시하는 경우 그러한 가정은 가중평균치나 비교적 좁은 범위 값의 형태로 공시한다

문단 145.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 144에 따라 공시한)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 각각에 대한 민감도분석. 이를 통해 보고기간 말에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나타낸다.
 - (2) 위 (1)에서 요구하는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가정과 이 방법의 한계
 - (3)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이 종전 기간과 달라진 경우 그 내용과 이유
- 문단 146. 제도나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자산부채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연금보험이나 장수스왑과 같은 그 밖의 기법 사용을 포함)을 공시한다.

문단 147.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미래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금적립약정과 기금적립방침에 대한 설명
- (2) 다음 연차 보고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 (3)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에 대한 정보. 이 정보에는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 만기가 포함되며, 급여 지급 시기의 분포에 관한 정보(예: 급여 지급의 만기분석)가 포함될 수도 있다.

문단 148.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기금적립약정에 대한 설명(기업이 기여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최소 적립 요구사항을 포함)
- (2) 복수사용자제도의 규약과 조건에 따라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기업이 제도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설명
- (3) 다음의 경우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의 배분약정에 대한 설명
 - (가) 제도의 청산
 - (나) 제도에서 탈퇴
- (4) 문단 34에 따라 복수사용자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경우, 문단 139~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대신에 위 (1)~(3)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 (가) 그 제도가 확정급여제도라는 사실
 - (나)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유
 - (다) 다음 연차 보고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
 - (라) 미래의 기여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에 대한 정보(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초과적립액이나 과소적립액이 있다는 사실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의미를 포함)
 - (마)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는 정도를 다른 참여기업과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표. 이러한 지표로 제공할 수 있는 예로는 제도에 대한 총 기여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재 근무 중인 종업원, 퇴직자, 전직 종업원의 전체 인원수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을 들 수 있다.

문단 149.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1)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방침. 만약 그러한 합의나 방침이 없다면 그 사실
- (2) 각 기업이 지급할 기여금 결정 방침
- (3) 문단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확정급여원가 배분액을 인식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47에서 요구하는 정보
- (4) 문단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 의무가 있는 해당 기간의 기여금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제도 전체에 대해 문단 135~137, 139, 142~144, 147 (1)·(2)에서 요구하는 정보

문단 150. 다음의 경우 문단 149의 (3)과 (4)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의 공시를 상호 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다.

- (1)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도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별도로 식별하여 공시하는 경우
- (2)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동시에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재무제표이 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문단 15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 (1) 퇴직급여제도와の特수관계자거래
-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퇴직급여

문단 15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에 따라 퇴직급여채무에서 비롯되는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6.2 기타부채

보험회사의 채무 중에서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순확정급여채무 포함)를 기타부채라 한다.

6.2.1 미지급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를 미지급금이라 한다.

보험영업이외의 거래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예컨대 고정자산 구입대금, 주식매수대금 등에 대하여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2.2 미지급비용

당기말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을 미지급비용이라 한다.

미지급비용은 기간손익 계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채이다. 즉, 미지급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 설계사수당, 지급임차료 등에 대하여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은 미지급비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6.2.3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법에 의거 당기부담에 속하는 법인세 등의 미지급금액을 미지급법인세라 한다.

“미지급법인세”라 함은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미납부액을 의미한다. 미지급법인세 계정은 주로 기업의 결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정하고 기중에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또한 과거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하면서 추가납부세액도 고지했으나 회계연도말 현재 미지급 상태인 경우 동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미지급법인세계정은 대부분 확정된 부채를 포함하지만 일부 항목은 미확정부채로 구성된다. 이는 법인세를 회계결산 이후에 확정, 납부하기 때문이다.

미지급법인세의 발생은 회계결산시(법인세 등을 추정하는 경우)와 정부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았을 경우 등이며 소멸은 실제로 납부하는 때이다. 한편, 법인세 추납액이나 환급액의 경우 일시적 차이로 인한 부분은 이연법인세에서 조정하고, 영구적 차이로 인한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6.2.4 당좌차월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일시 차입한 금액을 당좌차월이라 한다.

예금의 인출은 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 금융기관과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해 두면 일정기간, 일정금액까지는 예금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를 당좌차월이라 한다.

6.2.5 차입금

당좌차월 이외의 지급 또는 상환해야 할 차입금을 말하며, RP매도, 후순위차입 등이 있다.

- ① RP매도 :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한 방식의 환매조건부 채권
- ② 후순위차입 :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
- ③ 기업어음의발행 : 보험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
- ④ 기타 : 상기 이외의 차입금

차입금은 상환기한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보험회계에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차입 항목

제7-9조(차입)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3) <삭제 2014. 12. 31.>
-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 (7) 채권의 발행
- (8) 기업어음의 발행
-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 (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 (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6.2.6 사채

보험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후순위채권, 일반채권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가 적정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처리하는 부채계정이다.

- ① 후순위채권 :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
- ② 일반채권 :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사채

6.2.7 선수금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착수금, 계약금 등의 선수금액을 말한다. 선수금은 계약이 완성되기 전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부채계정이다.

6.2.8 선수수익

보험영업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 중 당기에 속하지 않는 차기 이후의 수익을 선수수익이라 한다.

선수수익은 이미 입금된 수익 중 결산기 이후 즉, 차기에 귀속 될 수익을 말한다. 이는 선급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연수익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수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선수수익에는 예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의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금액을 모두 당기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당기에 속하는 금액만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하고,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은 당기의 손익계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기간손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선수수익은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이다.

6.2.9 예수금

지급하여야 할 시점이 수입시점보다 늦은 일시적 입금으로 원천징수한 세금 등을 예수금이라 한다. 예수금이라 함은 장차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영업상 또는 영업외의 일시적인 채무로서 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일단 금전을 받고 그 후 그 타인 또는 그 타인을 대신하는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수금으로는 원천징수한 세금(갑근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이자소득세 등과 그에 따른 주민세, 채권이자보유기간법인세, 농특세, 개인연금추징세, 실명전환과징금 등)을 들 수 있는데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기간 동안 예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예수성격이나 보험회계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미지급부가세로 처리한다.

6.2.10 미지급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미지급부가세라 한다. 미지급부가세는 예수금의 일종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업은 부가세 면세업이므로 미지급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처리하는 선급부가세계정에 대응하는 계정으로 미지급부가세는 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때 이를 선급부가세와 상계하여야 하며, 남은 잔액을 정부(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6.2.11 가수금

귀속할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일시적 자금의 수입액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계정을 가수금이라 한다. 가수금은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적일 때 처리하는 계정으로 보험료수납 통장 이외의 통장으로 입금(가수보험료 처리)된 경우 처리한다. 가수금 계정은 임시가계정으로 결산 전 원인규명을 통해 정리가 되어야 한다.

6.2.12 가수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입금된 보험료 및 과입보험료를 가수보험료라 한다. 가수금과 동일한 성격의 부채계정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료수납 통장에 입금된 건 중 입금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 가수보험료로 처리하는데 통상 수취보험료로 대체(보험계약마진 조정)되는 계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 입금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계정이다. 가수보험료는 보험계약부채로 표시될 수 있다.

6.2.13 본지점계정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금액의 미청산잔액을 본지점계정대라 한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예는 결산월에 본지점계정을 정리하여 그 잔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간의 개별거래 회계처리 시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기 위해 본지점계정을 사용하나 회사전체를 합산할 경우 본지점계정의 잔액이 “0”이어야 한다. 본지점 거래시 특정지점(또는 본점)의 회계처리사항을 상대지점(또는 본점)에서 회계처리를 누락하거나 착오 처리한 경우 본지점계정의 회사전체 합산잔액이 “0”이 되지 않고 대변금액이 클 경우 본지점계정대 계정을

사용한다. 회사는 조속히 본지점계정의 불일치 사유를 파악하여 본지점계정의 잔액이 “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 보험사의 현지법인 또는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외 본점에서 사업비를 송금 받는 경우에 본지점계정대가 결산기말에도 발생할 수 있다.

6.2.14 이연법인세부채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라 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경우 당해 일시적 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의 대상이 되는 일시적 차이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되어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유보사항이다. 예를 들면 예금, 채권 등의 미수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이 있다.

6.2.15 임대보증금

건물, 토지, 기계 등의 임대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임대보증금계정은 회사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월세(수입임대료)등을 받을 조건으로 회사가 차주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임대보증금의 법적 성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으로 보고 있다. 즉, 그것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만일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당연히 상환할 금액에서 충당하고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임차인(또는 제3자)에게서 양도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수입임대료나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에 의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6.2.16 파생상품부채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의 평가손실로 발생된 부채로 기초자산으로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2.17 신탁계정차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고유계정에 공여·운용하는 금액이다.

6.2.18 복구충당부채

(1) 개요

점포시설물을 임차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함에 따라 사용기간 종료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한다.

(2) 산출방법

- ① 임차점포의 과거 평균 사용기간을 산출하여 예상복구기간 추정하고 예상복구시점 예측
- ② 현재시점(입점일)에 임차점포의 과거 평균 복구비용을 산출
- ③ 예상복구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예상복구비용을 추정
- ④ 예상복구시점의 예상복구비용을 임차계약시점까지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 산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6.2.19 채무보증충당부채

상대방의 채무보증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현재가치이다.

6.2.20 요구불상환지분

보유자의 상환 요구 시 상환이 강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으로, 상환우선주와 기타로 구성된다.

- ① 상환우선주 :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 시점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 ② 기타 : 상기 이외의 요구불상환지분

6.2.21 지급어음

상거래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이다.

6.2.22 자산재평가계약자지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유배당 보험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익사업출연기금,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다.

- ① 공익사업출연기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②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소유자산을 재평가한 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결손금 누적액과 재평가세를 차감한 금액 중 계약자지분 해당액

6.2.23 그밖의기타부채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부채를 그 밖의 기타부채로 처리한다.

그 밖의 기타부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채계정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계정으로 보험회계의 특징 중 하나가 계정과목의 임의신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사의 통계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정하지 아니한 부채계정이 발생할 때에는 그 밖의 기타부채로 처리하여야 한다.

6.2.24 특별계정부채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 투자계약에 대한 총부채 금액으로 실적배당형 퇴직연금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부채를 의미한다.

제7절. 자본 총론

7.1 자본의 분류

7.1.1 자본의 분류 요건

자본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말하며, 주주지분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자본은 별도로 측정될 수 없으며,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 결과 그 차액으로만 계산된다.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자산과 부채가 증감하게 된 원인별로 표시된다. 자본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다음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2.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②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2.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자본은 자본거래 및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되며, 신종자본증권과 계약자기분조정을 포함한다.

7.1.2 신종자본증권

보험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으로 말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신종자본증권 ('22.9.13. 규정변경예고 안)

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①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2.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3. 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물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5.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6.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

3.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

③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험회사가 제7-9조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7-9조제9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7.1.3 감독업무시행세척상 자본분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척 [별표 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9 | 감독회계 상 자본분류 ('23.1.1. 시행안)

개별(별도)	연결
I. 자본금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1. 보통주자본금 [발행보통주식수] 2. 우선주자본금 [발행우선주식수]	I.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재평가적립금 4. 기타자본잉여금	II. 연결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재평가적립금 4. 기타자본잉여금
III.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 (-) (할증발행차금) (+)	III.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 (-) (할증발행차금) (+)
IV. 계약자지분조정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2.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3. 재평가잉여금	IV. 계약자지분조정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2. 지분법투자주식평가손익 3. 재평가잉여금
V.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3. 대손준비금 4. 임의적립금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6. 해약환급금준비금	V. 연결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3. 대손준비금 4. 임의적립금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지배회사지분 연결순손익) 6. 해약환급금준비금 7. 보증준비금 8. 비상위험준비금
	VI. 연결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7. 보증준비금	2. 자기주식
8. 비상위험준비금	3. 기타자본조정
VI. 자본조정	VII.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주식할인발행차금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지분상품평가손익]
2. 자기주식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3. 기타자본조정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V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지분상품평가손익]	5. 지분법자본변동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6. 해외사업환산손익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6. 해외사업환산손익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8. 재평가잉여금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9. 보험수리적손익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10. 기타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VIII. 비지배지분
8. 재평가잉여금	
9. 보험수리적손익	
10. 기타	

7.2 자본의 변동

7.2.1 자본 거래

자본거래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주주와의 거래를 말하며, 자본거래의 결과는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증가한 자본은 손익거래의 결과가 아니므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 이후의 잔액만을 표시한다.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자본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자본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한편 자본거래의 결과로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부(-)의 자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의 자본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식 발행 시 주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그 반대로,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때 주식발행가액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와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한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후 남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한다.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이후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지 못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후에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2) 유상감자

자본금의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감자라고도 한다. 즉, 감소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 더 많으면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금액이 더 적으면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고 부(-)의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감자차손은 결손금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무상증자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전입액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4) 무상감자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회사의 실질적 자산은 감소하지 않는 감자로서 결손금 보전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감소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액면가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7.2.2 손익 거래

손익거래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말하며, 손익거래의 결과로 증감한 자본은 전부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손익거래의 결과로 증감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표나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항목으로 이연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항목에는 재평가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당기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괄손익의 계산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총포괄손익에 포함한 직후 재무상태표에 자본항목으로 보고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재무상태표에는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보고하며, 당기순손실의 누적액을 결손금으로 보고한다. 이익잉여금과 결손금은 재무상태표에 동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손익의 결과에 따라 누적이익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누적손실인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표시한다.

7.2.3 배당

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는 그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되며, 그 시점은 배당선언일(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이다.

주식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의 일부를 자본 전입하여 발행한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이나 주식분할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그 개념과 요건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분된다. 주식배당은 투자자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되므로 주식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전후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 배당결의일에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지급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 제462조의 2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자사의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에 의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배당총액을 주식배당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산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 배당시점에 관련 자본계정에 직접 대체하면 된다.

7.2.4 주식분할과 주식병합

주식분할은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은 액면금액의 변동만을 비망기록한다.

7.2.5 계약자지분조정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은 계약자에 대한 포괄적 채무를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특정계약자에 대한 채무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비확정부채를 말한다. 이는 미실현 계약자지분을 실현분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과 구분·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특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이라는 미실현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방법과는 달리 계약자지분조정에 배분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주식회사 형태에서 유배당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실제 확정되어 지급될 의무가 있는 부채가 아니며, 미실현손익을 장래의 귀속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시행에 따라 미실현평가손익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부채(책임준비금) 반영분을 제외하고 이외 나머지 금액은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변경되었다.

제8절. 자본 계정과목별 해설

8.1 납입금

8.1.1 자본금

자본금이란 주주가 불입한 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한 부분이다. 액면주식의 발행만 허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은 곧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금은 1주당 액면금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는 채권자를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담보액을 의미하므로 법정자본이라고도 하며, 상법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불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이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1주당 액면금액 × 발행주식총수)

8.1.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란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자본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말한다. 여기에서 잉여금이란 회사자산에 대한 주주청구권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잉여금은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중 보편적인 분류 방법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면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이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주식발행초과금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한다. 이때 주식발행가액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발생한 주식발행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초과수익력이 높은 회사나 순자산가치가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높은 회사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서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프리미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주금의 납입절차 없이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배당(액면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사례26 | 주식발행비용 회계처리

가정

20X1년 초에 갑회사는 보통주 100주(액면가액 1,000원)를 1,500원에 유상증자하였다. 증자과정에서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 20,000이고 간접 발생한 비용이 10,000이다.

<회계처리>

차) 현금	130,000 ^{주1}	/ 대) 보통주자본금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
차) 제비용(주식발행비)	10,000	/ 대) 현금	10,000

^{주1} 100주 x 1,500원 - 20,000(직접 발행 비용) = 130,000

(2) 감자차익

감자차익은 유상감자 또는 무상감자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유상감자 시에는 감소하는 자본금보다

지급하는 대가가 적을 때 발생하며, 무상감자 시에는 감소하는 자본금보다 상계하는 미처리결손금이 적을 때 발생한다.

(3) 재평가적립금

현재는 자산재평가법의 폐지에 따라 종전에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규정하던 재평가적립금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과거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였으므로 동기간 중 자산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잉여금에 계상될 수 있으며, 종전에 계상되어 있던 재평가적립금 역시 자본전입 또는 결손금보전에 충당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자본잉여금에 계상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등을 재평가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된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재평가한 고정자산 등의 장부가액 즉, 평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을 재평가차액이라 하고 이 재평가차액에서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리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전액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즉, 재평가적립금계정은 이러한 재평가적립금의 증감변동사항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이것은 과거 구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적립되는 것이므로 종전 구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구별하여 이를 자본준비금의 다음에 재평가적립금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4) 기타자본잉여금

1)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취득 후 매각처분한 때에 취득원가보다 처분가액이 큰 경우 발생하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차감하고 그 잔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2) 권리행사기한이 종료된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주식선택권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3)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대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부채부분과 자본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중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와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한다.

4) 환율상승으로 인한 자본의 추가불입액

내국인은 합작투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작투자가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주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인은 외국통화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가 당시의 환율보다 외국인이 외국통화로 주금액을 납입하는 시점의 환율이 상승하면 인가당시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결과가 되며, 동 초과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의 성격을 갖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인가당시의 주금이 모두 납입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본을 추가 불입해야 할 것이다.

5) 합병차익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5) 자본잉여금의 감소거래

상법에 따르면 자본잉여금은 배당 등을 통해 사외유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잉여금을 배당등에 사용하면 일정수준 이상으로 회사의 자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자본전입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이란 무상증자를 의미한다. 무상증자란 주주로부터 현금등의 납입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회사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차) 주식발행초과금 100 / 대) 보통주자본금 100

2) 결손보전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그 중 한가지 방법이 ‘무상감자’로서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상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결손보전인데, 이는 미처리결손금을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는 것이다. 결손보전을 결손금의 처리라고도 하는데, 이익잉여금의 처분과 반대의 개념이다.

차) 임의적립금	200	/ 대) 미처리결손금	400
법정적립금	50		
주식발행초과금	150		

8.1.3 신종자본증권

보험회사가 자본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 이내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말하며,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일정비율만큼 지급여력금액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8.2 잉여금

8.2.1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시 적립된 잉여금 중 배당금 등으로 사외 유출되거나 자본금(및 결손보전) 등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당해 기업의 유보 및 배당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이익잉여금은 크게 기처분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비상위험준비금, 대손준비금 등)과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처분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의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으로 먼저 충당하고서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다. 법정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의 항목들이 있다.

임의적립금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적립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임의적립금에는 배당준비금, 별도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타임의적립금의 항목들이 있다.

(1)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여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 때 “자본”이란 상법상의 자본으로서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소득공제 등을 받은 기업이 그 공제 받은 세액이나 감면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내부에 유보시키도록 의무화된 법정적립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강제하는 목적은 단순히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단기조치를 벗어나, 조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기업자금의 내부유보를 충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 비상위험준비금

1) 개요

예정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 즉,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초대형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즉,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보험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2)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늘 거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초대형 선박, 항공기, 중화학コンビ나트, 초고층 빌딩 등은 언제든지 거대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손해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의 평균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고는 결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는 대형사고 발생시 지급해야 할 거액의 보험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대형사고의 비상위험에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적극적으로 분산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회사 자체적으로도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잉여금내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처분(주주총회) 전이라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3)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및 환입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수재 및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로 구분하여 적립 및 환입한다.

① 적립

1. 비상위험준비금 : { 적립대상보험료 × 적립기준율^{주1} } × (35%~100%)^{주2}

주1 적립기준율

표60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원보험
적립기준율	5%	3%	2%	15%	5%	6%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

**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

주2 적립률(35%~100%) : 적립률은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를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회사 정책사항)

2. 적립한도 :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

표61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보험료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원보험
적립대상보험료 의 일정비율	50%	50%	40%	150%	50%	50%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

**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

② 환입

1. 보험종목별로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 가능

표62 |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시 기준율

구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수재 및 원보험
예정대비 발생손해액의 일정비율	120%	110%	110%	140%	110%	80%

*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

**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

2.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 하여 환입 가능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범위

이익처분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종목별 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90%를 한도로 손금 인정

사례27 | 비상위험준비금 회계처리

가정

종목	화재	해상	합계
보유보험료 (A)	10,000	5,000	15,000
적립기준율 (B)	5%	3%	
A x B	500	150	650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10,000 x 5%) + (5,000 x 3%) = 650

세전당기순이익 20,000, 법인세율 20% 가정

<회계처리>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650 / 대) 비상위험준비금	650
차) 법인세비용	4,000 / 대) 미지급법인세	3,883
	이연법인세부채	117 ^{주1}

주1 (650 x 90%) x 20% = 117

관련법규 | 보험업법 중 비상위험준비금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시행령 중 비상위험준비금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중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비상위험준비금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중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를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발생손해액 및 예정손해액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제4-16조(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감독규정 제6-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은 별표 34과 같다.

관련법규 | 법인세법 중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해약환급금준비금

1) 개요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할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적립하는 준비금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하여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및 환입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5) 보증준비금

1) 개요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2) 보증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구)보험회계기준 하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부채 내 별도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부채가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통합하여 계산되어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구)보험회계기준에서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온 바, 시가평가 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기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내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3) 보증준비금 적립 및 환입

기준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사외 유출을 제한한다.

(6) 대손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분류 대상자산의 최소적립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차액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이때 대손준비금은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 기업대출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분류 대상채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과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의 차이로 계상하며, 특별계정 보유자산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또한, 실행된 자산 외 미사용 기업 및 가계자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의한 일정비율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손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투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 계약대출은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대손준비금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4.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1의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7) 임의적립금

상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준비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같이 법적 강제에 의해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이 아니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이다.

(8) 처분전이익잉여금 (처리전결손금)

처분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기 전의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리고 처리전결손금이란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의 결손금 처리 전 금액을 말한다.

8.2.2 자본조정

자본조정이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는 항목이거나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인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액면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가액에서 차감함에 따라 주식을 액면이하로 발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액면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이 계상될 수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면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자기주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기 발행한 주식 중에서 일부를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자기회사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 후 매각처분한 때에 처분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계정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본 계정으로 처리하며 결산시 결손금의 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주식선택권

주식선택권이란 보유자에게 특정기간 고정가격 또는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종업원이나 기타거래상대방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다.

8.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소유주와의 거래외의 거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 계산시에는 제외되지만 포괄손익에는 포함되는 수익, 비용, 차익, 차손을 말한다.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향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손상기준에 따라 산출한 충당금이다.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시 관계·종속기업의 자본항목 변동금액 중 투자회사의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시에는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발행한 (재)보험계약 집합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다.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이다.

(6)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차액이다.

해외지점 등의 외화자산·부채를 현행환율법으로 환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서로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한다. 이는 비화폐성자산까지 현행환율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환산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해외지점의 폐쇄시까지 이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

계하여 처리하고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때에 당해 지점이나 사업소의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잔액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의미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가감한다. 한편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8) 재평가잉여금

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9)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로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누적 변동액이다.

8.2.4 계약자지분조정

보험회사의 미실현평가손익에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부채에 반영된 미래 계약자배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으로 구성된다.

-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평가손익 중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재평가잉여금 :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1호 등에 의한 유형자산 재평가 및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발생한 자산의 평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 3 장

손익계산서

제3장. 손익계산서

제1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1.1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1.1.1 손익계산서의 의의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별도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순액주의에 의하여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상계하여 공시하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회사의 영업유형별 성과나 특정 자산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기간에 속한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손익을 성격에 따라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으로 구분 표시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손익을 별도로 표시한다.

보험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보험계약의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내역이 충실히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에 인식될 보험수익 총액은 보험계약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취한 총 보험료(투자요소와 시간가치를 반영 후)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의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 문단 한138.2에서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여기서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 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다. 이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 금액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건과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즉,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영업손익은 보험손익, 투자손익, 기타영업손익으로 구분된다. 보험손익에는 원수계약 및 수재계약의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이 포함되고, 출재보험계약의 재보험수익과 재보험서비스비용이 포함된다. 투자손익에는 보험 및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과 투자비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비보험 영업에서 발생한 영업손익이 기타영업손익으로 분류된다.

1.1.2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의 인식 및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시 원수계약(수재계약 포함)과 출재계약을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측정모형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별로 표시하는 항목을 차별화 하고 있다.

1.1.3 투자수익과 투자비용의 인식 및 표시

보험사의 경우 투자손익에는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익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집합(출재보험 포함)에서 발생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효과로 인해 발생한 손익도 포함한다.

보험계약을 자금운용 관점에서 본다면 원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취는 자금조달로 해석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적립금 또는 급부를 증가시켜주는 것은 자금조달에 대가로 투자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험사는 조달된 자금으로 운용자산을 구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투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는 이런 관점에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투자비용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연계해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2 주주 및 계약자손익 배분

1.2.1 계약자배당을 위한 손익 기준

해설서 작성일 현재 계약자배당을 위한 분석 대상 손익은 기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202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시행을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위한 분석 대상 손익에 대한 재정비가 진행중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하 책임준비금 평가시 향후 지급될 계약자배당 현금흐름이 포함되어야 하고, 현금흐름 산출을 위해서도 분석대상손익에 대한 정의는 중요한 사안이다.

1.2.2 유/무배당 보험에 대한 손익 구분

보험사의 경우 유배당보험상품과 무배당보험상품의 자산운용이 분리되지 않고 단지 이원분석을 통한 구분계리 수준에서 이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주주 및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분기준이 보험회계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잉여금 전액이 주주지분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납부 및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되나, 보험회사의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일정 기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 배당을 하는 배당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일정부분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분류하고 동 재원을 이용하여 계약자배당 및 향후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을 적립한다. 또한, 배당이 필요 없는 무배당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 및 계약자에 대한 손익 배분시 별도재무제표상의 손익뿐만 아니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손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2.3 보험이익의 배분기준 변천과정

(1) 1999년 3월 12일 이전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해 책임준비금의 적립충실도(K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주지분을 배분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였다.

K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100% 이상	70% 이상	30% 이하
5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20% 이하
50% 미만	90% 이상	10% 이하

$$K\text{율} = \text{투자손익} \times \frac{\text{실적립책임준비금} - \text{해약환급금식준비금}}{\text{준보식책임준비금} - \text{해약환급금식준비금}}$$

(2) 1999년 3월 12일 이후

직전 사업년도말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지분을 계약자배당전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10% 이하~15% 이하로 배분하고 잔액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하였다.

지급여력비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8% 이상	85% 미만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15% 이하
4% 이상 8% 미만	87.5% 미만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12.5% 이하
4% 미만	90% 미만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10% 이하

(3) 2000년 3월 25일 이후

자본계정운용손익의 도입 등 현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2절. 보험손익 총론

2.1 보험손익 일반

2.1.1 보험수익과 비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지침 B120에 따라 모든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인식된 총 보험수익은 기업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 받는 대가인 보험료 수취액에 금융효과를 조정하고, 모든 투자요소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총 보험수익} = \text{총 수취보험료} \pm \text{보험금융비용(수익)} - \text{투자요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수익인식 원칙에 따라 약정된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보험계약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보험서비스결과라고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할 필요는 없으며,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한다. 출재보험계약의 수익이나 비용은 발행한 보험계약의 비용 또는 수익과 별도로 표시한다.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서비스결과의 세부 항목과 인식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금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와 일관되게 기업이 계약에서 약정된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하였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무(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의무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무관한 변동은 제외한다.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의무의 감소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초 시점에 예상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단, 다음 항목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의무의 감소가 아니거나,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1.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2. 투자요소의 상환액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의무의 감소가 아님)
 3. 제삼자를 대신하여 징수한 거래 관련 세금과 관련된 금액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의무의 감소가 아님)
 4. 보험 취득 현금흐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의무의 감소가 아님)
 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관련된 금액 (② 참고)
- ②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단, 다음 항목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의무의 감소가 아니거나,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1.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2.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
 3.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 ③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④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 등의 금액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조정)

(2) 보험 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

보험 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은 해당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해당금액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이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3) 보험서비스비용

다음 항목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 ①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전입과 환입
- ②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적 변동분에 배분된 손실요소
- ③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으로 인한 발생사고부채의 증가분
- ④ 해당 기간에 발생한 기타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한 발생사고부채의 증가분
- ⑤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③, ④항목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적인 변동분

2.2 보험수익

2.2.1 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 있는 보험계약마진(배분 전 잔액)을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아래

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 상각)

- ① 보험계약 집합 내 계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량을 산출하여 보장단위를 식별한다.
보장단위는 각 계약별로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어떠한 금액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이전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각각 배분한다.
- ③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2023.1.1. 시행)에서는 보험계약마진 중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표63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text{보험 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 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t} \text{기대보험 계약서비스제공량}_{t+k}}$$

- ▶ n = 잔여현금흐름프로젝션기간
- ▶ 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장서비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보장 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발생 정도(보험기간 중 동일한 유형의 보험사고에 대해 2회 이상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 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

2.2.2 위험조정 수익인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단, 다음 항목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의무의 감소가 아니거나,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 ①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 ②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
- ③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

2.2.3 손실요소 배분액

최초인식시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즉,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부채 합계가 순부채) 해당 계약을 '손실부담계약'으로 구분하여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따로 분류한다.

손실부담계약의 순유출 현금흐름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의 보험계약마진은 0이다.

최초에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후속적으로 손실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 집합을 손실부담계약집합(혹은 손실을 더 부담하는 보험계약 집합)으로 측정하며, 인식되는 손실요소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후속적으로 손실요소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 집합 내의 보험계약들은 집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불리한 변동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 ②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되는 금액의 감소

또한 위의 유리한 변동의 경우(즉,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유리한 변동' 등) 손실요소가 0이 될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하며, 유리한 변동이 손실요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최초인식 또는 후속측정에서 인식한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에 대해 손실요소인 부분과 손실요소 이외의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변동되며,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의 인식에서 제외된다. (제공한 서비스 중 대가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측정한 금액)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적인 변동 중 아래 항목을 손실요소와 손실요소 이외의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손실요소 배분은 보험서비스결과에는 영향이 없도록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 총액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금융효과와 투자요소를 제외한 보험료가 보험수익과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 ①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잔여보장부채에서 감소되는 보험금과 비용
- ② 위험의 감소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③ 보험금융손익

또한 위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적 변동을 체계적 배분비율을 사용하여 손실요소와 손실요소 외의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2.2.4 예상발생보험금 및 예상사업비

예상발생보험금, 예상손해조사비, 예상계약유지비 및 예상투자관리비는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2.2.5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관련된 보험계약 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이하 '사전 보험취득현금흐름 자산')으로 인식한다. 인식한 사전 보험취득현금흐름 자산을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현행 보험계약 집합과 미래에 발행될 보험계약 집합(계약의 갱신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합)으로 각각 구분하여 인식한다.

후속적으로 관련된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할 때 기업은 인식되는 부분과 관련된 사전 보험취득현금흐름 자산을 제거한다.

매 보고기간 말에 체계적인 방법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배분된 사전 보험취득현금흐름 자산을 변경한다. 단, 관련된 모든 보험계약이 집합에 추가된 이후에는 배분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각 보험계약 집합으로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장기간에 걸쳐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액은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액과 동일하다.

2.2.6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하는 경우 잔여보장부채 측정 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지 않지만, 보험수익 인식을 위해서 미래 예상되는 보험료 수취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예상되는 보험료 수취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 ① 시간의 경과 기준
- ② 다만,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2.2.7 기타

상기에 포함되는 보험수익 이외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수익을 말한다.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보험수익에서 조정하며,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조정한다.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거나, 공정가치가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환입)은 보험수익에서 조정하며,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환입)은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조정한다.

(3) 기타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 등 기타의 보험수익을 말한다.

2.3 보험서비스비용**2.3.1 실제발생보험금 및 실제사업비**

실제발생보험금, 실제손해조사비, 실제계약유지비 및 실제투자관리비는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서비스비용에 투자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2.3.2 발생사고요소 조정

과거서비스와 관련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2.3.3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액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액과 동일하다.

2.3.4 손실부담계약관련 비용 환입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당기에 신규로 발생한 손실요소 및 손실요소 배분액을 제외한 손실요소의 증감분을 말한다.

2.3.5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요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요소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당기 보험서비스비용의 차감되는 항목이다.

2.3.6 기타

상기 이외의 보험서비스비용을 말한다.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보험수익에서 조정하며,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은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조정한다.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거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환입)은 보험수익에서 조정하며,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상각하는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환입)은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조정한다.

(3) 기타

기타의 보험서비스비용 중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서비스비용을 말한다.

제3절. 보험손익 계정과목 해설

3.1 보험수익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에 적용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수익은 3.1.1부터 3.1.9까지에 해당된다.

3.1.1 예상보험금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3.1.2 예상손해조사비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3.1.3 예상계약유지비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3.1.4 예상투자관리비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3.1.5 위험조정변동

잔여보장부채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으로,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된 변동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손실요소배분액 차감 전)

3.1.6 보험계약마진 상각

보험계약 집합을 구성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상각액을 말한다.

3.1.7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3.1.8 손실요소 배분액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1) 최선추정부채 수익인식 배분액

최선추정부채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험조정 수익인식 배분액

위험조정의 변동분 중 손실요소에 배분되어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3.1.9 기타보험수익

상기에 포함되는 보험수익 이외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수익을 말한다.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을 말한다.

(2)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보험료 수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을 말한다.

(3) 기타

기타의 보험수익 중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수취보험료 경험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수익을 말한다.

3.1.10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간의 경과 기준 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말한다.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한 경우 이를 조정한 금액)

3.2 보험서비스비용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에 적용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서비스비용은 3.2.1부터 3.2.9까지에 해당된다.

3.2.1 발생보험금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 요소 중 최선추정 금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 발생사고 요소 중 위험조정 금액

3.2.2 발생손해조사비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사고 손해액을 사정하여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2.3 발생계약유지비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2.4 발생투자관리비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부동산 등을 관리,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를 말한다.

3.2.5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당기에 신규로 발생한 손실요소 및 손실요소의 증가(감소)분을 말한다.

3.2.6 발생사고요소조정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을 말한다.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을 말한다.

3.2.7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3.2.8 손실요소배분액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후속 변동분 중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3.2.9 기타보험서비스비용

상기 이외의 보험서비스비용을 말한다.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보험서비스비용을 말한다.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거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 당해 자산의 손상인식 이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회복한 금액을 말한다.

(3) 기타

기타의 보험서비스비용 중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서비스비용을 말한다.

3.2.10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발생보험금 (발생보험금, 발생손해조사비 등)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 및 발생손해조사비 등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보험계약의 발생사고요소 중에 최선추정 및 위험조정의 인식액이 포함된다.

(2) 손실부담계약관련 비용(환입)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손실의 발생이나 변동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발생사고요소조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말한다.

(4) 보험취득현금흐름 즉시인식액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5)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액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6)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상기 이외의 기타 보험서비스비용을 말한다.

제4절. 투자손익 총론

4.1 투자손익 일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 및 비용과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손익을 포함하는 계정으로 주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로 설명한다.

4.1.1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에서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과 보유한 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후속측정 시 화폐의 시간가치(Unwinding)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은 OCI 옵션 선택여부, 보험상품 유형 및 적용 회계모형에 따라 그 측정 및 인식 방식이 상이하다.

4.1.2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 회계정책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 단위로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이하 “OCI 옵션”)할 수 있으며, 각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OCI 옵션 적용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포트폴리오별로 보유한 자산과 그 자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른 분류 및 측정 방식

② 회계불일치와 손익변동성에 대한 관리 방식 및 각 기준서에서 허용한 선택가능한 모든 옵션
OCI 옵션은 선택 이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표시 방법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여야 하기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4.1.3 회계모형별 보험금융수익(비용) 회계처리 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상품 유형별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아래와 같이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표64 | 회계모형별 보험금융수익의 회계처리

보험상품 유형	적용 회계모형	보험금융수익(비용) 회계처리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 집합 (Non Par)	일반모형	[OCI 옵션 선택]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주1}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 배분된 당기손익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주1}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 (Yield curve 또는 단일률) [OCI 옵션 미선택] 화폐의 시간가치(Unwinding)와 금융위험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 집합 (Indirect Par)	일반모형	[OCI 옵션 선택]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주2}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 배분된 당기손익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주2} 잔여 만기동안 남아있는 수정된 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로 배분하는 할인율을 사용하거나, 당기에 부러지는 금액과 미래 기간에 부러질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 [OCI 옵션 미선택] 화폐의 시간가치(Unwinding)와 금융위험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Direct Par)	변동수수료 접근법	[OCI 옵션 선택]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비용)과 정확히 대응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 (자산/부채 순투자손익은 0), 다만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변동효과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OCI 옵션 미선택] 화폐의 시간가치(Unwinding)와 금융위험 변동 효과를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단기보험	보험료배분 접근법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 [OCI 옵션 선택]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주3}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총보험금융수익(비용)과 배분된 당기손익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주3}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 (Yield curve 또는 단일률) / 발생사고부채의 경우 보험금 발생일의 결정된 할인율 [OCI 옵션 미선택] 화폐의 시간가치(Unwinding)와 금융위험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4.1.4 변동현금흐름에 대한 이자율 계산

Indirect Par의 경우 경제적 가정의 변동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이 변동된다. OCI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잔여 만기동안 남아있는 수정된 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로 배분하거나(유효수익률법),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과 미래 기간에 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배분한다(예상부리이율법).

유효수익률법 사용 시, 보고기간말 현행 최적가정이 적용된 현금흐름과 장부금액 최선추정부채를 일치시키는 단일할인율로 유효이자율을 재산출하며, 해당 유효이자율은 차기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4.2 보험금융비용

4.2.1 최선추정부채 보험금융비용

최선추정부채의 경우 후속측정시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 효과를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OCI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보험금융비용을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

OCI 옵션 선택 : 최초 또는 재산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금융비용을 산출하고, 이외 금융위험 변동 효과는 기타포괄손익 보험금융비용 처리

OCI 옵션 미선택 :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변동 전액을 당기손익 보험금융비용 처리

최선추정부채의 보험금융비용은 상기 Unwinding 효과 외 예상/실제공시이율 차이, 현행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미래추정치의 재산출 유효이자율 또는 최초할인율과의 차이분도 포함되며, 해당 보험금융비용은 포트폴리오별 OCI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4.2.2 위험조정 보험금융비용

위험조정의 경우 후속측정시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비용을 세분화 하는 회계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분화 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위험조정에 대한 보험금융비용은 미래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보험금융비용을 배분할 때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험조정 보험금융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단일률은 최선추정부채의 단일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으로 정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위험조정에 대해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비용을 세분화하지 않는 경우 위험조정의 보험금융비용은 0이며, 금융위험 변동 효과는 보험계약마진에서 흡수한다.

4.2.3 보험계약마진 보험금융비용

보험계약마진의 경우 후속측정시 최초인식시점의 현행 할인율에 따른 시간가치 변동분을 보험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의 Yield curve를 경과기간별로 적용할 수도 있고, 최초시점의 미래현금흐름과 최선추정부채를 일치시키는 단일률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월결산을 가정할 경우 보험계약마진의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다.

$$\text{보험계약마진 이자비용} = \text{기초보험계약마진} \times (\Pi_t(1 + \text{최초할인율}(t))^{1/12} - 1)$$

4.3 보험금융수익

4.3.1 최선추정부채 보험금융수익

최선추정부채는 장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할인된 효과를 복귀(Release)시키는 보험금융비용과 유사하지만, 장래유입현금흐름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금융수익이 발생된다.

제5절. 투자손익 계정과목 해설

5.1 보험금융비용

5.1.1 보험계약금융비용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험계약금융비용과 재보험계약금융비용으로 구성된다.

(1) 보험계약금융비용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험금융이자비용, 환율변동비용, 할인율변동비용으로 구성된다.

-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② 환율변동비용 :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 ③ 할인율변동비용 :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2) 재보험계약금융비용

보유한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험금융이자비용, 환율변동비용, 할인율변동비용으로 구성된다.

-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 ② 환율변동비용 :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 ③ 할인율변동비용 :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

5.1.2 보험계약순금융비용 (OCI)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 할인율 등 경제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액을 의미한다.

- ①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②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보유한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5.1.3 기타

상기 이외의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기타 보험금융비용을 말한다.

5.2 보험금융수익

5.2.1 보험계약금융수익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계약금융수익과 재보험계약금융수익으로 구성된다.

(1) 보험계약금융수익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금융이자수익, 환율변동수익, 할인율변동수익으로 구성된다.

-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② 환율변동수익 :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③ 할인율변동수익 :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2) 재보험계약금융수익

보유한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보험금융이자수익, 환율변동수익, 할인율변동수익으로 구성된다.

-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 ② 환율변동수익 :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및 재보험계약 변제시 발생하는 외환차익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 ③ 할인율변동수익 :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5.2.2 보험계약순금융수익 (OCI)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일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당기 할인율 등 경제적 가정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액을 의미한다.

- ①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②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보유한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제6절. 출재보험손익 총론

6.1 출재보험손익 일반

6.1.1 원수보험과 차이내역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발행한 보험계약과 동일한 인식 및 측정 기준이 적용되나,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그 특징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계약의 인식시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측정, 보험계약마진 등)에 대한 예외사항을 적용한다.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기는 하지만 일반보험계약처럼 보험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재보험자에게 출재를 통하여 보험위험을 이전한 보험이므로, 그 특성을 반영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발행한 보험계약과 상이하게 적용한다.

표65 | 출재보험 vs 원수보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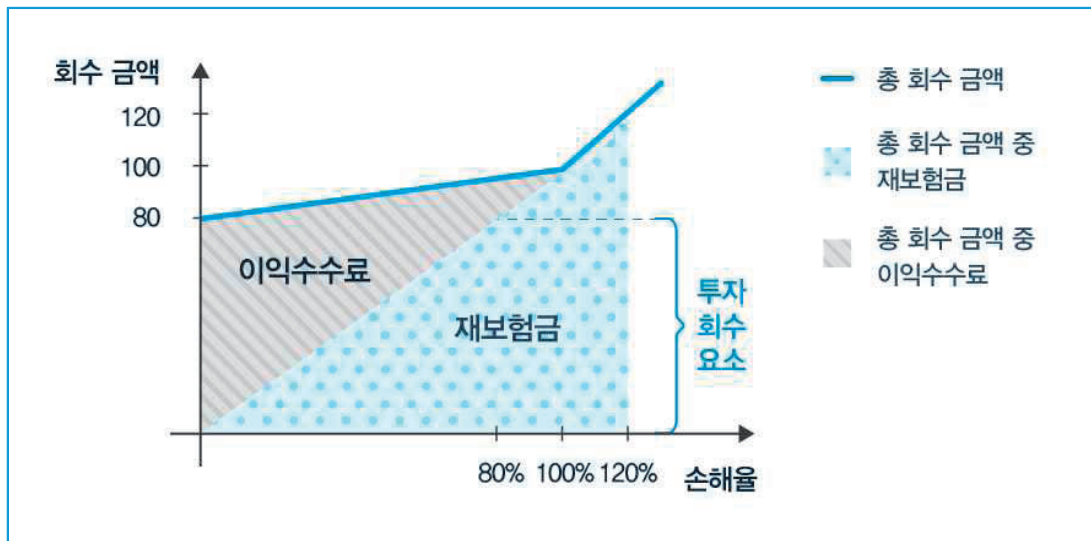
구분		발행한 보험계약과의 주요 차이점
최초인식	인식시점	-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하는 시점(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전에 출재보험계약 집합에 포함되는 관련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수보험계약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보다 늦다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인식을 원수보험계약이 최초로 인식될 때까지 연기
	측정	-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위험 효과를 반영 - 재보험계약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
	보험계약마진	- 부(-)의 보험계약마진을 인식 -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또는 손실부담인 원수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수익을 인식
	회계모형	-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 불가능
후속측정	보험계약마진 조정	-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은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분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조정하지 않음 -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수익을 인식 - 원수보험계약의 손실요소 개념에 대응되는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요소 사용

6.1.2 투자회수요소의 반영

투자회수요소는 '보험사건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유중인 재보험계약에는 재보험자의 이익을 공유 및 분배하는 이익수수료 정산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원수보험자는 원수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재보험료의 일정부분(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익수수료)을 항상 회수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익수수료 금액을 재보험계약의 투자회수요소로 정의하며,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5 | 출재보험의 투자회수요소 도해



[가정]

- 재보험료 = 100
- 이익수수료율 = 80%
- 이익수수료 = $\text{Max}(\text{재보험료} - \text{재보험금}, 0) \times \text{이익수수료율}$
- * 회수 금액 = 재보험금 + 이익수수료

6.1.3 원수보험계약 손실회수요소 조정

출재 대상 원수보험의 계약집합에서 최초 인식 시 손실을 인식할 때, 또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그 집합에 추가할 때, 관련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이익을 인식(대칭적 회계처리)하며 이를 손실회수요소로 관리한다. 최초 인식 시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최초 인식 대칭적 회계처리 >

*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인식 금액 = ① x ②

① 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 인식한 손실

② 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으로부터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

이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하여 재보험계약으로부터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은 '원수 사고보험금의 현재가치와 출재보험금 현재가치의 비율'을 사용한다.

제7절. 출재보험손익 계정과목 해설

7.1 출재보험수익

7.1.1 발생재보험금

보유한 재보험계약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는 재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7.1.2 발생손해조사비

보유한 재보험계약에서 당기에 실제로 회수되는 손해조사비로, 손실회수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말한다.

7.1.3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원수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요소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7.1.4 손실회수요소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금액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 집합의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7.1.5 발생사고요소조정

재보험계약 집합 발생사고요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분으로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재보험계약 집합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부채 변동금액 중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과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재보험계약 집합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금액 중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금액)으로 구분한다.

7.1.6 기타재보험수익

상기 이외의 재보험수익을 말한다.

7.2 출재보험서비스비용

7.2.1 예상재보험금

취득한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보험사고 발생 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2.2 예상손해조사비

취득한 보험계약 집합 측정 시 포함되는 현금흐름 중 당기에 보험사고 발생 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비로, 일련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수액을 말한다.

7.2.3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원수보험의 손실요소배분금액이 반영되도록 재보험계약 집합의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금액으로, 재보험비용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7.2.4 기타재보험비용

사업비 중에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비용으로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1) 재보험료 경험조정

재보험료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재보험비용을 말한다.

(2) 기타 경험조정

재보험료 이외의 경험조정 중 미래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재보험비용을 말한다.

(3)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재보험비용을 말한다.

제8절. 출재투자손익 총론

8.1 출재투자손익

8.1.1 재보험금융손익

(1)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출재보험계약은 변동수수료접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모형 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집합의 최선추정부채에 대한 후속측정 단계를 준용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 시 다음을 재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보험금융손익 :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체계적 배분한 보험금융손익
- ② 재보험사의 신용변동 : 출재사의 신용위험 산출요소(신용등급, 회수비율, 노출액 등)을 반영한 이행현금흐름 현가

(2) 비금융위험에 대한 금융조정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따른 변동 즉, 회계모형에 따른 할인율로 체계적 배분한 이자부리 금액을 재보험금융수익(PL 또는 OCI)으로 인식한다.

(3) 보험계약마진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과 동일하게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측정한다. 보험계약마진 이자부리 즉,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이자부리 금액을 재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한다.

8.1.2 출재사의 불이행위험

금융상품 기준서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준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의 불이행위험을 평가하며, 이를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반영하여 불이행위험을 측정한다.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제9절. 출재투자손익 계정과목 해설

9.1 출재투자손익

9.1.1 재보험금융비용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1) 보험금융이자비용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비용의 체계적 배분액을 말한다.

(2) 외환차손

재보험계약 회수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을 말한다.

(3) 외화환산손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할인율변동비용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비용을 말한다.

9.1.2 재보험금융수익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1) 보험금융이자수익

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의 체계적 배분액을 말한다.

(2) 외환차익

재보험계약 회수 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익을 말한다.

(3) 외화환산이익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할인율변동수익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기타

상기 이외의 기타 재보험금융수익을 말한다.

9.1.3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출재보험계약 집합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위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 금융비용과 금융수익을 말한다.

제 4 장

기타의 보험회계

제4장. 기타의 보험회계

제1절. 재보험 회계

1.1 개요

1.1.1 재보험의 기능

재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손해보험회사의 부실화는 예정손실 이상의 보험 클레임 발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보험계약 또는 누적위험으로 인한 대재해(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같은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연간보험금의 극심한 편차는 경영의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까지 위험을 보유하고 초과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대형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보험자와 위험을 분담하여 위험인수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재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원보험회사의 경우 위험인수에 상당하는 자본투여가 없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유보험료를 보험계약자잉여금의 일정배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유보험료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재보험이 이용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보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회사의 지급여력 확보 및 안정된 경영을 위협할 수 있는 보험영업손실로부터의 보호
- ② 영업실적의 안정화, 손실의 분산화
- ③ 대형물건 및 다양한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영업의 탄력성 제고
- ④ 재무구조의 강화
- ⑤ 보험자로부터의 기술적인 지원

1.2 재보험의 형태

통상 재보험은 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책임을 재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방법의 절차상의 차이에 따라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과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으로 구분한다.

또한,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책임분담 방식에 따라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과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으로 구분된다.

1.2.1 전가하는 방법의 절차상 차이에 따른 구분

(1) 임의재보험

출재보험자가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개별 계약마다 재보험자에게 임의로 재보험 청약을 하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개개의 재보험 청약에 대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재보험의 청약인수에 대하여 상호 구속됨이 없이 완전히 임의로 이루어지게 된다.

(2) 특약재보험

처음부터 재보험 당사자간에 대상계약, 재보험조건, 청산방법 등을 협정한 재보험 특약(Reinsurance Treaty)이 체결되고 이것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재보험청약인수가 의무적·자동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의무재보험(Obligatory Reinsurance) 또는 자동재보험(Automatic Reinsurance) 이라고도 부르며, 이 특약에 따라 다수의 계약이 계속적·자동적으로 재보험 처리된다.

1.2.2 책임분담방법에 따른 구분

(1) 비례적 재보험

비례적 재보험은 원보험자의 보유액과 재보험자가 인수한 재보험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배분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그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위의 분담비율로 양자의 부담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2) 비비례적 재보험

비비례적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보험금의 일정액(이것을 보유손해액, Underlying Retention이라고 함)까지는 전액 부담하고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보험금 부담비율은 실제 보험금의 대소에 따라 정해지며, 그 비율은 사전에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재보험료도 보유 초과손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정해지며, 비례적 재보험과 같이 양자가 부담하는 책임한도액(보험금액 기준)의 비율에 따라 단순히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1.2.3 임의재보험

임의재보험은 매건별로 재보험계약이 체결되므로 원보험에서의 건별 회계처리방식과 유사하다. 임의재보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 ① Placing Slip의 준비
- ② 출재조건의 협의 (필요한 경우)
- ③ 재보험 청약 (order)
- ④ 참여재보험자의 지분 확정(over placing인 경우 sign down)
- ⑤ Closing Instruction의 송부
- ⑥ Cover/Debit Note (재보험인수증 및 재보험청구서)의 접수
- ⑦ 보험료의 청산

출재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당해 원보험계약의 발효 이전에 재보험계약의 체결이 완료되므로 원보험계약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동시에 재보험 회계처리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재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재보험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지분(share)을 출재보험자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over placing이 되는 경우 인수희망지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수지분이 최종 확정되는 closing instruction의 접수시점에서 확정된 계수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국내 재보험거래에 있어서는 최소한 월단위 기준으로는 출재보험자와 재보험자간에 계수발생 시점을 일치시키고 있으나, 외국 재보험거래에서는 이러한 시차에 따르는 계수인식 시점의 불일치가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1.2.4 특약재보험

일정기간으로 구분하여 일괄적인 계수처리가 이루어지며, 또한 출재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에 다양한 재보험조건과 상호 계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특약서에 규정하게 되므로 임의재보험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특약재보험방식에 있어서는 통상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출재보험자가 특약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계산서에 당해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보험료, 보험금, 수수료 및 기타 거래계정을 기입하여 재보험자에게 송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호 정산을 하게 된다. 국내 재보험거래에 있어서는 상호 계수확인을 통하여 월단위로 볼 때 거의 동일시점에 상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나 외국재보험 거래에 있어서는 시차로 인한 계수인식 시점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1.2.5 비례재보험특약

(1) 계산과 관련한 재보험특약 조건

비례재보험특약은 당해 재보험특약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특약에 규정하고 있다.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 등에 대한 계산서의 작성주기, 수지잔액에 대한 청산시기, 즉시불

보험금의 한도, clean cut방법, 특약유보금비율, 이익수수료 비율 등의 관련 조항이 있다.

(2) Accounting year 방식과 Underwriting year 방식

비례재보험특약을 운영하는 계약방식에는 사업연도기준 방식과 인수연도기준 방식이 있다.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으나 사업연도기준 방식은 화재보험 등과 같은 short-tail 종목에 적용하고 인수연도기준 방식은 해상보험 및 책임보험과 같은 long-tail 종목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연도기준 방식은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출재되는 위험의 인수연도 또는 손해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당 사업연도에 계수처리된 보험료 및 손해액 등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인수연도기준 방식은 보험료 및 손해액 등이 계수처리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위험이 출재되었던 인수연도에 합산하여 마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 보험료와 보험금

출재보험자는 재보험 특약운영과 관련하여 재보험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재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연도 중에 발행한 증권 및 특약연도 중에 갱신한 증권에 대하여 그 위험이 종료될 때까지 재보험자의 책임이 지속되는데, 매년 특약의 갱신시점에서 특약에서 탈퇴하는 재보험자가 있거나, 특약참여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출재보험자의 입장에서 매 특약연도에 대한 계산서를 각각 별도로 분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업무의 번잡 및 관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포트폴리오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특약제도에 따라 재보험특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책임이 개시된 증권의 미경과기간이 완료되고 또한 미지급보험금이 완전 정산되어 특약이 자연 만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특약을 관리하는 특약 종결방식을 Run-off System이라 하고, 매특약연도말에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잔존책임을 구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하여 구재보험자의 잔존책임을 종결시키는 특약 종결방식을 Clean-cut System이라고 한다. Clean-cut 방식에 따라 구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하는 보험료를 포트폴리오 보험료라 하고 회수하는 미지급보험금을 포트폴리오 보험금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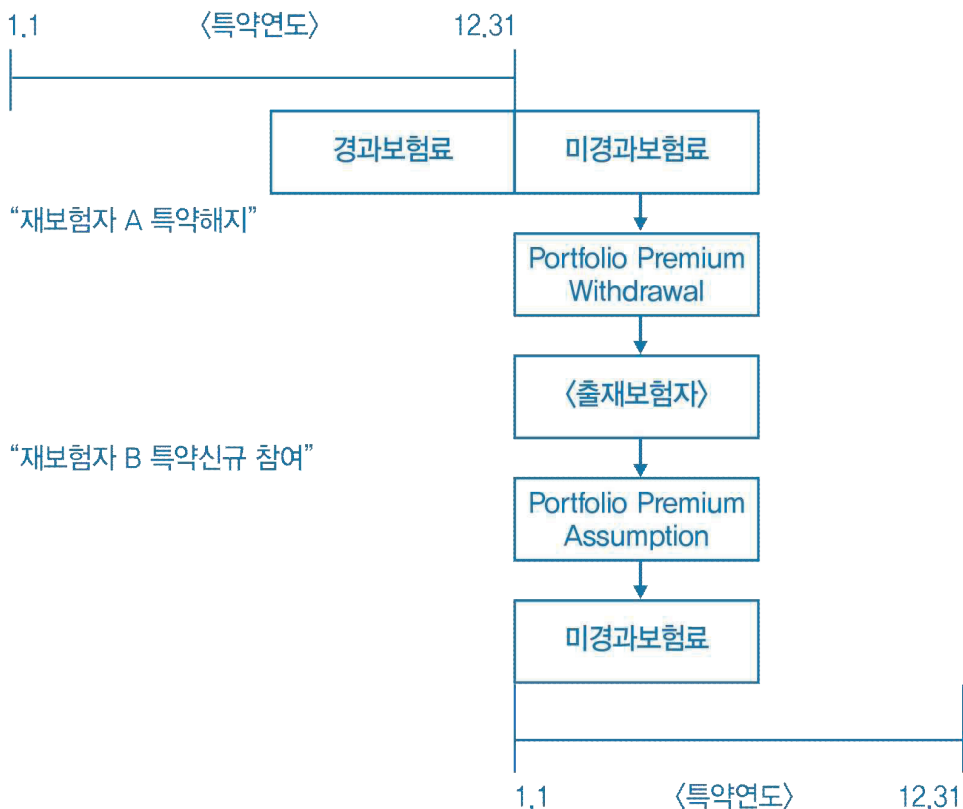
1) 포트폴리오 보험료

포트폴리오 보험료는 특약종료일 현재의 미경과보험료 해당액으로서 특약해지시 구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Portfolio Premium Withdrawal"으로, 신규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Portfolio Premium Assumption" 라고 한다.

- 특약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재보험자 'A' 12월 31일에 특약해지, 해당지분을 재보험자 'B'가 인수
- 12월 31일 현재 미경과보험료를 50%로 가정(평균적으로 특약연도 중간일에 위험이 개시하여 익년도 중간일에 위험이 종료하는 경우)
- 포트폴리오 보험료는 Net Premium에 대하여 계산
- "Portfolio Premium Withdrawal"은 재보험자 'A'에 대한 계산서에 포함(출재보험자에게 환급 효과)
- "Portfolio Premium Assumption"는 재보험자 'B'에게 송부되는 계산서에 포함(재보험자 'B'에게 이전 효과)

그림6 | 포트폴리오 보험료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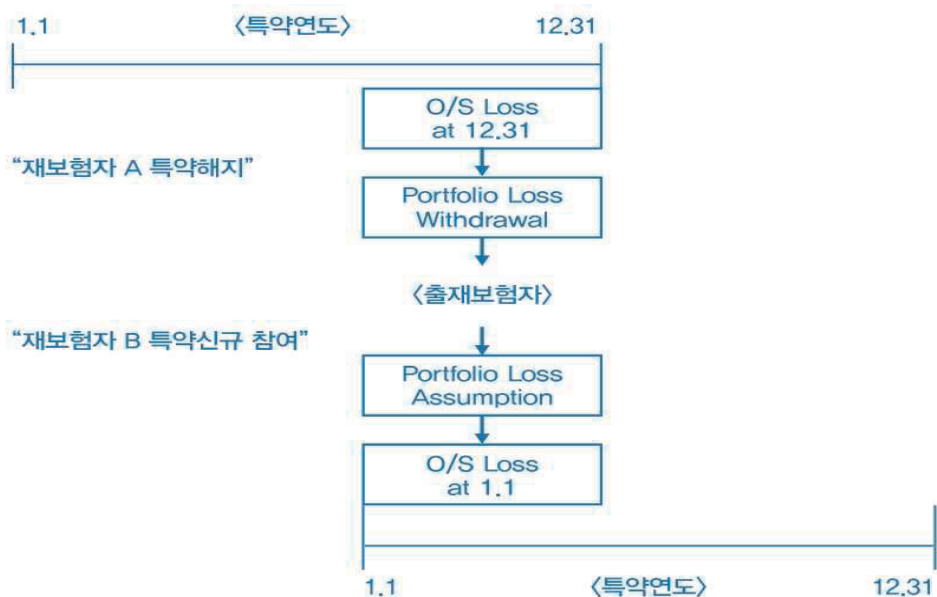
위와 같은 포트폴리오 보험료의 운영을 통하여 재보험자 'A'는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었거나 갱신된 증권에서 향후 발생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재보험자 'B'가 그 책임을 인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보험자 'A'에게 송부되는 Run-off Account에는 단지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만 표시하게 된다.

2) 포트폴리오 보험금

특약관리경비를 보다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포트폴리오 보험금이 사용 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보험금은 특약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지급보험금(Outstanding Loss)을 의미하는데 구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Portfolio Loss Withdrawal"으로, 신규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Portfolio Loss Assumption" 라고 한다.

- 특약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재보험자 'A' 12월 31일에 특약해지, 해당지분을 재보험자 'B'가 인수
- 12월 31일 현재 O/S 계산
- 포트폴리오 보험금 계산(O/S의 일정비율)
- "Portfolio Loss Withdrawal"은 재보험자 'A'에 대한 계산서에 포함(출재보험자의 보험금 회수 효과)
- Portfolio Loss Assumption"는 재보험자 'B'에게 송부되는 계산서에 포함(재보험자 'B'에게 O/S 이전 효과)

그림7 | 포트폴리오 보험금 도해



위와 같은 포트폴리오 보험금의 운영을 통하여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향후 출재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게 될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재보험자 'A'는 더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며, 출재보험자는 재보험자 'A'에게 Run-off Account를 작성하여 송부할 필요가 없다.

3) 재보험 특약 조건에 따른 계약의 경계

Run-off System은 재보험특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책임이 개시된 증권의 미경과기간이 완료되고 또한 미지급보험금이 완전 정산되어 특약이 자연만료될 때까지 재보험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계약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Clean-cut System은 매 특약연도말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잔존책임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없을 경우 계약의 경계는 잔존책임 종결 시점이 된다.

4) 계약방식별 Portfolio 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derwriting year 기준방식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연도 중에 발행하였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한 보험료가 완전히 정산되고 그 증권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정리되는데 수년이 경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Underwriting year 기준 방식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보험료 및 보험금 조항의 운용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Underwriting year 기준 특약에서는 Run-off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Accounting year 방식의 특약기준에서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의 정산이 매우 신속히 처리되므로 포트폴리오 보험료와 보험금의 운용이 매우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Accounting year 기준 특약에서는 Portfolio Premium Clause 또는 Portfolio Loss Clause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 두가지 Clause를 모두 포함하는 Clean-cut clause를 운용하여 매 특약연도 종료시마다 특약의 지분 변동에 관계없이 모든 재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여 계산서에 포함한다. 즉, 특약연도의 마지막 계산서인 4/4분기 계산서에 Withdrawal을 계산하여 포함하고 익년도 1/4분기 계산서에 Assumption을 산입하게 된다.

(4) 유보금

비례재보험특약에 있어서 출재보험자는 재보험자의 파산 및 기타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비하여 재정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 출재보험료 및 미지급 보험금의 일정비율로서 정하게 된다.

재정보증의 방법으로는 현금유보(계산서에 반영), 신용장 개설, 또는 채권예탁의 방식이 이용된다.

1) 보험료유보금과 보험금유보금

보험료유보금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담보 또는 안전장치로서 일정금액을 유보하는 것으로 재보험자의 지불불능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 만료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험료는 출제사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보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상쇄하기가 쉽다. 통상 출제사는 이 유보금을 1년 동안 유보해 놓았다가 1년후에 다시 재보험자에게 환급한다.

보험금유보금이란 보험료유보금에 부가해서 재보험자의 특약상 책임이행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 특약연도말 현재 미지급보험금 상당액을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에서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및 보험금유보금의 경우 출제보험자는 현금유보에 따르는 추가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유보금해제시 일정률의 예탁금이자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한다.

2) 신용장 개설(Letter of Credit)

일반적으로 미주지역 재보험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써 재보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재보험자가 미국 내의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자기 지분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한도로 취소불능신용장(Clean Irrevocable Sight L/C)을 개설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유보금에 대신한다.

3) 채권예탁

보증의 방법으로서 출제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상호합의한 형태의 채권(통상 출제보험자의 정부발행채권)으로 재보험자가 출제보험자에게 예탁하는 경우가 있다.

(5) 이익수수료

1) 이익수수료의 계산

이익수수료라 함은 당해 특약하에서 재보험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매특약연도말에 출제사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출제사의 신중한 계약인수 등 이익시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재보험자의 이익금 중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이익수수료는 계약 방식에 따라 정해진

수지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손실금 이월방법

① 손실금 완전소멸방법 (Deficit Carried Forward to Extinction)

과거에 입은 손실은 다음연도의 순이익금과 상쇄하여 완전 소멸될 때까지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특약의 최종실적이 이익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이익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② 손실금 3년 이월방법 (Deficit Carried Forward for 3 Years)

어느 한해의 손실금이 이전연도에 소멸되지 않는한 차년도 이후 3년까지만 이월시키는 방법이다. 즉, 당해연도의 손실금은 3년이상 이월 되지 못한다. 재보험특약 이익수수료 계산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③ 3년 평균방법 (3 years Average Basis)

당년도 특약실적과 전 2개년 특약실적을 합산하여 그 평균실적치를 기준으로 이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3) 이익수수료 계산방식

① Accounting year 기준 특약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지차를 산출하여 이익수수료를 계산하며 이 방법은 다음해 이익금의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Underwriting year 기준 특약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약 인수연도(U/Y) 기준으로 이익수수료를 계산 한다. 당해 계약연도에 대한 실적이 매 회계연도별로 진전됨에 따라 최종 정산이 끝날 때까지 매년 이익수수료의 조정계산이 이루어진다.

4) 이익수수료를 적용방법

① 정률 이익수수료 (Flat Rate)

이익수수료를 적용에 있어서 이익금에 대해 20% ~ 30%의 고정률(Flat rate)을 적용한다.

② 가변 이익수수료 (Sliding Scale)

당해특약의 실적 여하에 따라 이익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계산방식이다.

사례28 | 이익수수료의 계산

이익수수료율이 Flat Rate 20%일때 손실금 이월방법별 계산 예는 다음과 같다.

Result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Loss	Loss	Profit	Loss	Profit	Profit
5,000	4,000	8,000	3,000	6,000	5,000

(1) 손실금 완전소멸방법의 예

기간	당기결과	당기손익	누적결과	누적손익
Year 1	Loss	5,000		
Year 2	Loss	4,000	Total Loss	9,000
Year 3	Profit	8,000	Total Loss	1,000
Year 4	Loss	3,000	Total Loss	4,000
Year 5	Profit	6,000	Total Profit	2,000
Year 6	Profit	5,000	Total Profit	5,000

* Year 5 Profit Commission 400($2,000 \times 20\%$)

* Year 6 Profit Commission 1,000($5,000 \times 20\%$)

(2) 손실금 3년 이월방법의 예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Loss 5,000	Loss 5,000	Loss 5,000	Loss 5,000		
	Loss 4,000	Loss 4,000	Loss 4,000	Loss 4,000	
	—	Profit 8,000	Profit 8,000	Profit 3,000	Nil
	Loss 9,000	—	Loss 3,000	Loss 3,000	Nil
		Loss 1,000	—	Profit 6,000	Nil
			Loss 4,000	—	Profit 5,000
				Profit 2,000	Profit 5,000

* Year 5 Profit Commission 400($2,000 \times 20\%$)

* Year 6 Profit Commission 1,000($5,000 \times 20\%$)

- Year 1 : 당해연도 손실 △5,000으로 이익수수료 없음
- Year 2 : 당해연도 손실 △4,000, 이월손실 △5,000으로 이익수수료 없음
- Year 3 : 당해연도 이익 8,000이나, 이월손실 △9,000으로 이익수수료 없음

– Year 4 : 당해연도 손실 △3,000, 이월손실 △1,000($8,000 - 4,000 - 5,000$)으로 이익수수료 없음

– Year 5 : 당해연도 이익 6,000, 이월손실 △4,000으로 차감잔액 2,000에 대한 이익수수료 20% = 400회수

* 3년 이월방식에서 Year 1의 손실 △5,000은 Year 4까지만 이월되고 Year 5에는 이월될 수 없으나, Year 2~4기간중 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 이익금과 상쇄 소멸되고, 그 이익잔액($8,000 - 5,000 = 3,000$)이 있을 시는 차년도(Year 5)까지 이월됨

– Year 6 : 당해연도 이익 5,000에 대한 이익수수료 20% = 1,000회수

* Year 5 이전의 이월손실금은 Year 5의 이익 6,000으로 상쇄정리 되었으므로 Year 6으로 이월된 손실금은 없음

(3) 3년 평균방법의 예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Loss 5,000	Loss 5,000	Loss 5,000			
	Loss 4,000	Loss 4,000	Loss 4,000		
	–	Profit 8,000	Profit 8,000	Profit 8,000	
	Loss 9,000	–	Loss 3,000	Loss 3,000	Loss 3,000
		Loss 1,000	–	Profit 6,000	Profit 6,000
			Profit 1,000	–	Profit 5,000
				Profit 11,000	Profit 8,000

* Year 4 Profit Commision $67(1,000/3 \times 20\%)$

* Year 5 Profit Commision $733(11,000/3 \times 20\%)$

* Year 6 Profit Commision $533(8,000/3 \times 20\%)$

이익수수료율이 Sliding Scale인 특약의 이익수수료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이익수수료율(Sliding Scale)

- 35% on 1st 5% Profit
- 60% on next 5% Profit
- 70% on next 5% Profit
- 80% on next 5% Profit
- 90% on Remaining Profit

(2) 이익률

- Premium : 15,000
- Profit: 5,000
- Profit Ratio: 33.33% (5,000 / 15,000)

(3) 이익수수료

$$15,000 \times 5\% \times 35\% = 262.50$$

$$15,000 \times 5\% \times 60\% = 450.00$$

$$15,000 \times 5\% \times 70\% = 525.00$$

$$15,000 \times 5\% \times 80\% = 600.00$$

$$15,000 \times 13.33\% \times 90\% = 1,800.00$$

Profit Commission 3,637.50

1.2.6 비비례재보험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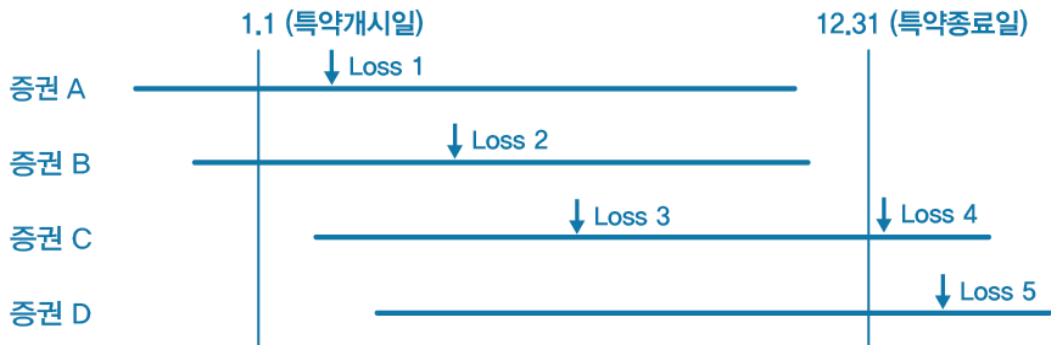
(1) Risk Attaching 방식과 Loss Occurring 방식

비례특약재보험은 계약방식에 따라 Accounting year 기준 또는 Underwriting year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비비례특약재보험에서는 통상 Underwriting year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다만, Underwriting year 기준 방식의 운영방법이 비례특약재보험의 Underwriting year 기준 방식과는 다소 상이하다.

비비례특약은 보험금의 특약적용방법에 따라 Risk Attaching 기준과 Loss Occurring 기준의 두가지가 있다. Risk Attaching 기준은 특약기간 중에 신규 발행되거나 갱신된 모든 증권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사고발생의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의 적용 대상이 되며, Loss Occurring 기준은 특약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담보하는 방식이다.

Risk Attaching 기준과 Loss Occurring 기준에서의 보험금 담보차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8 | Risk Attaching / Loss Occurring 담보 비교



※ Risk Attaching 기준 : Loss 3, 4, 5 에 대하여 재보험 담보

※ Loss Occurring 기준 : Loss 1, 2, 3 에 대하여 재보험 담보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isk Attaching 기준에서는 증권 C와 D가 특약연도중에 위험이 개시된 증권이므로 이 증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3, 4, 5에 한하여 특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Loss Occurring 기준에서는 증권의 위험개시일이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연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사고 1, 2, 3 이므로 이 보험사고에 한하여 특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보험료

비비례특약은 통상 1년단위로 체결된다. 특약 개시일(inception date)부터 재보험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당해연도의 실제보험료는 특약연도 경과후에 정확히 산출되므로 출재보험자는 보험료를 선납함으로써 재보험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여 준다.

이러한 보험료를 예치보험료(deposit premium, GNPI)에 대한 일정로서 계산하거나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비비례특약의 대상이 되는 총보험료(GNPI)는 당해계약에 해당하는 총보험료에서 환급보험료, 해지보험료, 면책위험에 관련된 보험료 및 재보험자의 위험을 경감시키고자 지출한 재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비비례재보험에서는 비례재보험과는 달리 보다루(Bordereaux)와 같은 재보험 출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수수료지급조항이 없다. 예치보험료는 통상 분기 또는 반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특약종료시점에서 당해특약연도의 보험료를 확정하고 잠정 지급한 예치보험료와 조정하여 연도말에 조정계산서로서 정산하게 된다.

사례29 | 조정보험료 계산

Gross Net Premium Income(GNPI) 1,000,000 (추정)		
• 최저예치보험료		10,000
• 보험료율		1.25%
• 예치보험료 정산	1월 1일	2,500
	4월 1일	2,500
	7월 1일	2,500
	10월 1일	2,500
	계	10,000

<조정보험료 계산>

12월 31일

확정 GNPI : 1,100,000

보험료율 조정 : 13,750(=1,100,000 × 1.25%)

최저예치보험료 차감 : 10,000

조정보험료 3,750

* 공식 : 확정 GNPI × 보험료율 - 최저예치 보험료

비비례특약에서 보험금 발생시 재보험자의 책임한도는 감소하거나 완전소진될 수가 있다. 따라서 재보험자의 책임한도를 당초의 책임한도로 회복시켜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출재보험자의 입장에서 책임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 추가보험료 없이 무제한적으로 복원이 되는 것이 출재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겠으나 통상 비비례재보험특약에서는 그 복원회수를 제한하며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복원보험료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30 | 책임액 복원 계산

특약조건 : 100,000 excess of 100,000 with 1 reinstatement

1사고 발생 : 90,000 (출재보험자 보유손해액 초과분)

재보험 책임한도	100,000
보험금 회수	90,000

잔여책임한도	10,000
※복원금액	90,000
복원 후 책임한도	100,000

제2사고 발생 : 40,000

복원된 책임한도	100,000
보험금 회수	40,000
잔여책임한도	60,000
※복원금액	$100,000 - 90,000 = 10,000$
잔여 책임한도	70,000

상기 예에서 복원조건이 1회로 제한되므로 제 2사고 발생시 책임한도의 잔여분은 70,000으로 감소된다. 추후 제 3사고 발생시 재보험자로부터의 보험금회수 가능액은 70,000을 한도로 제한된다.

복원보험료의 계산방법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식이 이용된다.

(1) Pro-rata time and account

$$\frac{\text{특약보험금}}{\text{특약한도}} \times \frac{\text{사고일이후 특약종료일까지 일수}}{365\text{일}} \times \frac{\text{특약보험료}}{1}$$

(2) % additional premium (예 : 50%, 100%, 200%)

$$\frac{\text{특약보험금}}{\text{특약한도}} \times \text{복원보험료율} \times \frac{\text{특약보험료}}{1}$$

연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확정 GNPI를 구할 수 없으므로 최저예치보험료로 대치하여 잠정 복원보험료를 계산하고 특약연도말에 GNPI 확정시 복원보험료를 조정한다.

예시

- 특약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특약한도 : 100,000 excess of 50,000
- 사고일자 : 7월 1일
- 총보험금 : 80,000

- 청산일자 : 8월 4일
- 추정 GNPI : 1,000,000
- 확정 GNPI : 1,100,000
- 보험료율 : 5%
- 예치보험료 : 45,000

(1) Pro-rata Time and Account 방식

특약보험금 : 30,000 (80,000 - 보유 50,000)

잠정 복원보험료

$$6,805 = \frac{30,000}{100,000} \times \frac{184}{365} \times 45,000$$

확정 복원보험료

$$8,318 = \frac{30,000}{100,000} \times \frac{184}{365} \times 55,000$$

조정 복원보험료

$$1,513 = 8,318 - 6,805$$

(2) 50% additional premium 방식

잠정 복원보험료

$$6,750 = \frac{30,000}{100,000} \times 50\% \times 45,000$$

확정 복원보험료

$$8,250 = \frac{30,000}{100,000} \times 50\% \times 55,000$$

조정 복원보험료

$$1,500 = 8,250 - 6,750$$

이러한 복원보험료의 경우, IFRS17 하에서 자발적인 복원보험료와 강제적인 복원보험료로 구분하여 상이하게 회계처리한다. 자발적인 복원보험료는 비비례재보험에서 보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이므로 해당 보험료는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에 포함된다. 반면에 강제적인 복원보험료는 보험서비스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및 관련 현금흐름에 포함된다.

(3) 보험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비례특약의 보험금은 고정적인 비율로 출재보험자와 재보험자가 분담하지 않고 출재보험자의 보유손해액까지는 출재보험자가 부담하고 보유손해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특약이 적용되므로 고정적인 보험금 분담비율의 개념이 없이 보험금의 대소에 따라 재보험자의 부담여부가 결정된다.

출재보험자는 비비례재보험특약에 관한 재보험 프로그램계획시 위험의 성격, 보험료의 규모, 마케팅 방법 및 보험료의 절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게 되는데, 통상 단일위험에 대한 exposure의 규모에 따라 특약의 한도를 계층별로 구분하여(layering) 재보험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사례31 | Layering

1st layer : 500,000 excess of 500,000
 2nd layer : 500,000 excess of 1,000,000
 3rd layer : 1,000,000 excess of 1,500,000

위와 같은 비비례특약의 보험금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예시

	특약대상	출재사보유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
	총보험금	손해액	재보험자	재보험자	재보험자
Loss 1	450,000	450,000	Nil	Nil	Nil
Loss 2	800,000	500,000	300,000	Nil	Nil
Loss 3	2,000,000	500,000	500,000(max)	500,000(max)	500,000
Loss 4	3,000,000	500,000	500,000(max)	500,000(max)	1,000,000(max)
		+ 500,000			
		1,000,000			

Loss 1 : 총보험금이 500,000 미만이므로 출재사 전액 부담

Loss 2 : 출재사 500,000 부담, 초과분 300,000은 1st layer의 재보험자가 전액부담

Loss 3 : 출재사 500,000 부담, 초과분 1,500,000 중

- 1st layer 재보험자가 특약한도까지 500,000 부담
- 2nd layer 재보험자가 특약한도까지 500,000 부담
- 3rd layer 재보험자가 잔여분 500,000 부담

Loss 4 : 출재사 500,000 부담, 초과분 2,500,000 중

- 1st layer 재보험자가 특약한도까지 500,000 부담
- 2nd layer 재보험자가 특약한도까지 500,000 부담
- 3rd layer 재보험자가 잔여분 1,000,000 부담
- 3rd layer 초과보험금 500,000은 출재사 책임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비비례특약에 적용되는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만일 단일사고에 Underwriting year가 다른 복수의 비비례특약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당해사고는 사고 1건으로 인식되나 특약의 운영측면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특약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각 Underwriting year별 적용 보험금을 비율적으로 조정하여 각년도의 출재보험자의 보유손해액과 재보험자의 부담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방법 관련 조항을 Interlocking Clause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통하여 출재보험자는 1사고에 대한 자기 책임액을 당해사고에 개입되는 각년도 특약 중 가장 많은 보유손해액의 수준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사례32 | Interlocking 보험금 조정

운영 특약

- 비비례특약 1 (1차 Underwriting year) : 150,000 excess of 50,000
- 비비례특약 2 (2차 Underwriting year) : 175,000 excess of 75,000

사고 내용

사고발생일 : 2차 Underwriting year 중

보 험 금 : 200,000

- 1차 Underwriting year 증권에서 발생한 보험금 50,000 (25% of Gross Loss)
- 2차 Underwriting year 증권에서 발생한 보험금 150,000 (75% of Gross Loss)

특약한도 감액조정

- 비비례특약 1 (25% of original limits) 37,500 excess of 12,500
- 비비례특약 2 (75% of original limits) 135,250 excess of 56,250

	특약 1	특약 2	
총보험금	50,000	150,000	

출재보험자보유손해	12,500		56,250		
재보험자 부담	37,500	+	93,750	=	131,250

Interlocking Clause가 없는 경우

	특약 1		특약 2		
총보험금	50,000		150,000		
출재보험자보유손해	50,000		75,000		
재보험자 부담	없음	+	75,000	=	75,000

상기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erlocking Clause를 사용하는 특약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의 보유손해액이 68,750(12,500 + 56,250)으로서 보유손해액이 큰 비비례특약2(2차 Underwriting year)의 보유손해액 75,000 이내로 제한되나, Interlocking Clause가 없는 경우에는 양 특약연도의 보유손해액합 125,000(50,000 + 75,000)을 출재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1.3 발행한 재보험계약(수재보험계약)

1.3.1 인식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한다.

- (1)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 (2)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함.)
- (3) 집합이 손실부담계약 집합이 되는 때

1.3.2 계약의 경계 판단

계약의 경계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점 또는 보장이나 기타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 의무가 있는 시점을 고려하며, 실질적 의무는 (1) 또는 (2)의 경우 종료한다.

- (1) 기업이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2)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위험을 모두 반영하여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고
- ②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음.

경계를 벗어난 예상보험료 또는 예상보험금과 관련된 금액은 부채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이러한 금액은 미래의 보험계약과 관련 있다.

1.3.3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측정

수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원보험계약과 연계된 현금흐름 및 원보험계약과 무관한 현금흐름으로 구분되며, 원보험계약과 동일하게 자산관점에서 그 부호를 정의한다.

수재보험계약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수재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 가능하다.

- 수재보험료
- 수재보험금
- 지급손해조사비
- 수재수수료
- 수재이익수수료 및 손해분담금

수재보험료 및 수재보험금 외 나머지 현금흐름항목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측정 시 수재보험료 또는 수재보험금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한다.

- 원보험계약 사고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흐름 규모가 결정되는 경우 : 수재보험료
- 원보험계약 사고여부에 따라 현금흐름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 수재보험금

사례33 | 수재보험계약 현금흐름 분류

예시

- (1) 특약체결시점 수재보험료의 10% 규모로 수재수수료 결정(수재보험료할인)
 - ▶ 수재보험료 간주
- (2) 연도末 마감 후 수재보험금 규모에 따라 수재이익수수료 결정
 - ▶ 수재보험금 간주

1.3.4 수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할인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은 계약집합의 이행에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위험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를 측정함에 있어 수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한다. 할인율은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반영되도록 조정하는 요소로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수익률을 보험계약 집합의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예: 시기, 통화 및 현금흐름의 유동성)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부채와 관련없는 요소는 제외한다

1.3.5 수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

발행한 재보험계약의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금융위험보다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금융위험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현금흐름 조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반영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예: 해약위험, 비용위험)이다.

1.3.6 수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원수계약의 보험계약마진과 동일하게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최초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 유입인 경우 보험계약마진이 인식된다. 반대로 모든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 유출인 경우 손실부담계약이며, 순 유출에 대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1.3.7 수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변동

매 보고기간말 수재보험계약 집합의 후속측정치는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된다. 매 보고기간말 이행현금흐름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정을 적용하여 재측정한다.

(1) 수재보험계약 BEL 후속측정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과 미래서비스와 관련 없는 변동으로 구분되며, 그 성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조정, 보험서비스결과 인식, 보험금융손익 인식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은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해당기간의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보험서비스결과로 인식하며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따른 변동분은 보험금융손익(PL 또는 OCI)으로 인식한다.

(2) 수재보험계약 위험조정 후속측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중 보고기간 내에 위험의 해소(상각)로 인한 변동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따른 변동은 보험금융손익(PL 또는 OCI)으로 인식한다. 그 외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화 할 필요는 없으며, 세분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일부로 포함한다.

(3) 수재보험계약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수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보고기간말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①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

② 보고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

1.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적용
2. 계약 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을 고려한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음.

③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변동분

1.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
2.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분
3.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4.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④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⑤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수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기간에 제공받은 서비스를 확정하기 위하여 보장단위(Coverage Unit)를 산정하는데, 보장단위는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보고기간말 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각각 배분하며,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4 재보험 회계처리

1.4.1 일반모형

(1) 최초인식

최초인식 시점에 수재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된 순현금흐름의 현가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고려해서 이익계약집합인지 손실계약집합인지 구분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동일하다.

사례34 | 수재보험 최초인식 회계처리(일반모형)

(1) 이익계약집합의 최초인식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100	/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CSM)	70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RA)	30

(2) 손실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70	/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40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RA)	30

(2) 기중거래

사례35 | 수재보험 기중거래 회계처리(일반모형)

가정

기중 거래 구분	예상 금액	실제 금액
수재보험료 수취	1,000	900
수재보험수수료 지급 ^{주1}	200	180
수재보험금 지급	500	400
손해조사비 지급	30	20
이익수수료 지급 ^{주2}	50	60

주1 수재보험료의 20%의 고정수수료 가정

주2 전액 투자요소로 가정

(1) 수재보험료 수취

실제 수취한 금액과 예상되었던 금액 간 차이금액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900 / 대)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1,000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CSM) 100^{주1}

주1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가정

(2) 수재보험수수료 지급

보험금과 무관한 수재보험수수료는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한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예상되었던 금액 간 차이금액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200 / 대) 현금 180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CSM) 20^{주1}

주1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가정

(3) 수재보험금 지급

차)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500 / 대) 보험수익(예상보험금) 500
보험서비스비용(발생보험금) 400 보험부채(발생사고요소 BEL) 400

차) 보험부채(발생사고요소 BEL) 400 / 대) 현금 400

(4) 손해조사비 지급

차)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30 / 대) 보험수익(예상손해조사비) 30

■ 사례37 | 수재보험 기증거래 회계처리(보험료배분접근법)

기중 거래	금액
보고기간 초 부채금액	1,000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500
보험취득 현금흐름 지출	(50)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비용	100
보험수익 인식	(500)
투자요소	(10)
보고기간 말 부채금액	1,040

(1)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2) 보험취득 현금흐름 지출

(3)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비용

(4) 보험수익 인식

(5) 투자요소 지급

보험부채(발생사고요소 BEL)	10	현금	10

1.5 공동재보험

1.5.1 공동재보험의 정의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 출제하여 보험위험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출제함으로써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말한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u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원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이관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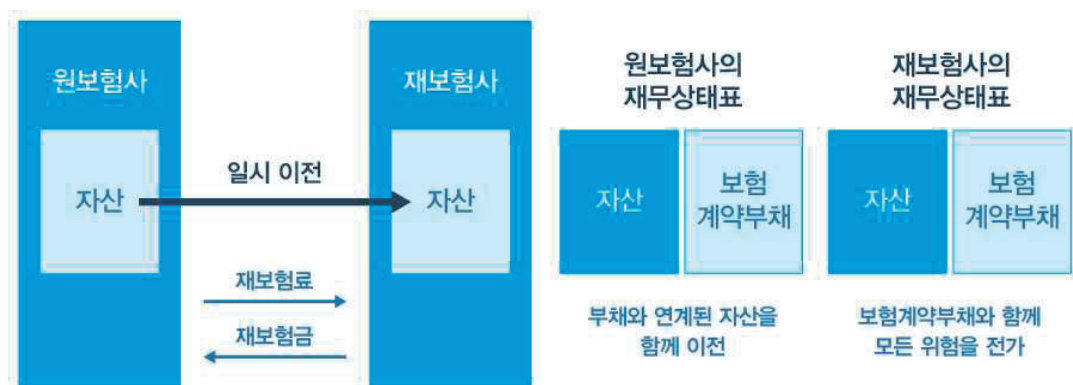
공동재보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부채를 감축 및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2020년 국내에 도입되었다. 계약이전과 유사하나 계약이전은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보험계약부채가 제거되는 반면, 공동재보험은 보험계약부채는 보유하면서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를 재보험 회계처리를 통하여 인식함으로써 계약이전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계약부채의 이전과 함께 이와 연계된 자산의 이전 여부에 따라 자산이전식과 자산유보식으로 구분된다.

(1)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

원보험사가 거래일에 거래가격을 재보험료로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보유하던 운용자산과 보험계약부채를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구조이다.

그림9 | 자산이전식 공동보험 구조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운용자산을 재보험료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자산이 감소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자산을 인식하여 거래일에는 자산과 부채의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10 | 자산이전식 공동보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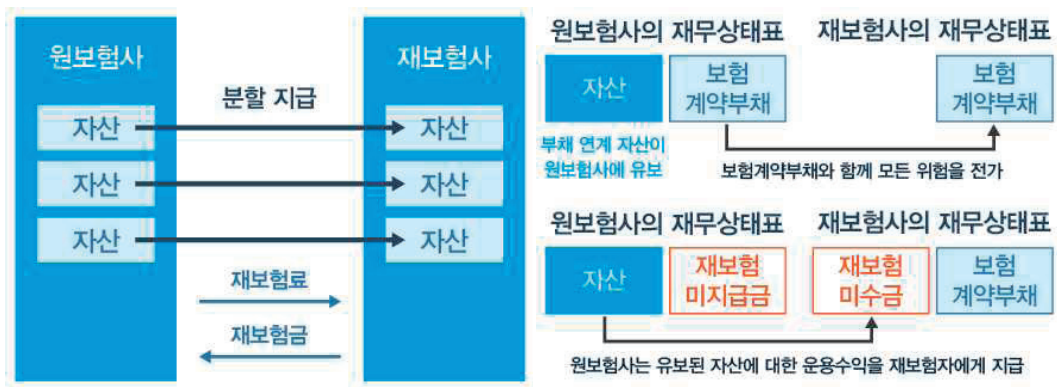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은 일시에 운용자산을 이전함에 따라 자산유보식 대비 거래구조가 단순한 반면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2)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재보험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통해 재보험사에 보험계약부채를 이전하지만 거래가격을 분할 지급함에 따라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 및 운용하는 거래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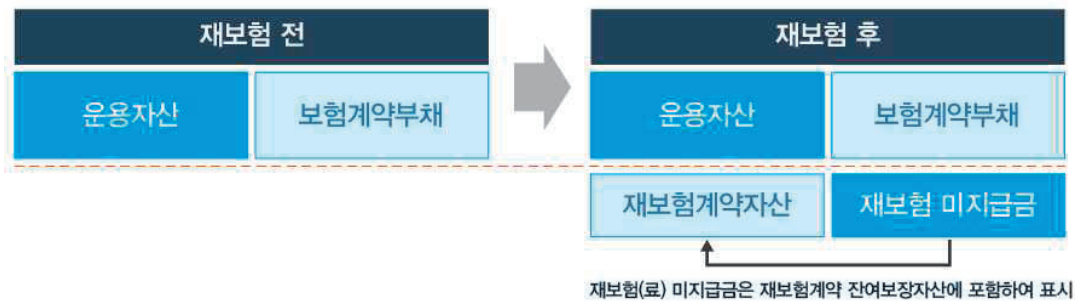
그림11 |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보험 구조



원보험사는 분할 지급하는 공동재보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보험 미지급금으로 인식하며 이에 상응하는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자산을 인식한다. 재보험료 미지급금은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자산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에 해당함에 따라 시가평가되고 재보험계약 잔여보장자산에 포함되어 표시됨에 따라 자산이전식과 마찬가지로 약정형 자산유보식 공동재보험도 거래일에는 자산과 부채의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12 |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보험 효과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재보험은 거래가격을 분할 지급하는 구조 및 약정된 기회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인해 자산이전식에 비해 거래구조가 복잡한 반면,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재보험사에 대한 신용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1.5.2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 회계 처리

사례38-1 |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가정

- 원수사A는 보유계약의 잔여보장부채로 2,600원(= BEL 2,000원 + RA 200원 + CSM 400원)과 이에 대응하는 운용자산 2,6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 A는 재보사B와 잔여보장부채의 50% 출재하는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공동재보험 대가는 잔여보장부채의 출재분에 해당하는 금액 1,300원(= 2,600원 x 출재율 50%)로 산정하였다.

<최초인식시점 회계처리>

차)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BEA	1,000 / 대) 운용자산	1,300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RA	100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CSM	200	

<최초인식시점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출재 전			
운용자산	2,600	잔여보장부채	2,600
		BEL	2,000
		RA	200
		CSM	400
		자본	
		잉여금	—
		AOCI	—
	2,600		2,600

(단위 : 원)

출재 후 ^{주1}			
운용자산	1,300	잔여보장부채	2,600
출재잔여보장자산	1,300	BEL	2,000
잔여BEA	1,000	RA	200
잔여RA	100	CSM	400
잔여CSM	200	자본	—
		잉여금	—
		AOCI	—
	2,600		2,600

주1 출재율 50%

사례38-2 | 자산이전식 공동재보험계약의 후속측정

가정

- (1) 원수보험료 수취 : 예상보험료 80원 / 실제보험료 100원
원수보험금 지급 : 예상보험금 160원 / 실제보험금 180원

차) 현금 100 / 대) 잔여보장BEL 80
잔여보장CSM 20

차) 잔여보장BEL 160 / 대) 보험수익-보험금 160
보험비용-보험금 180 현금 180

- (2) 출재보험료 지급 : 예상보험료 40원 / 실제보험료 50원
출재보험금 수취 : 예상보험금 80원 / 실제보험금 90원

차) 재보험 잔여보장BEA 40 / 대) 현금 50

재보험 잔여보장CSM	10		
차) 재보험비용-보험금	80 / 대)	재보험 잔여보장BEA	80
현금	90	재보험수익-보험금	90

(3) RA상각 : 원수 RA상각 20원 / 출재 RA상각 10원
CSM상각 : 원수 CSM상각 40원 / 출재 CSM상각 20원

차) 잔여보장RA	20 / 대)	보험수익-RA상각	20
재보험비용-RA상각	10	재보험 잔여보장RA	10
차) 잔여보장CSM	40 / 대)	보험수익-CSM상각	40
재보험비용-CSM상각	20	재보험 잔여보장CSM	20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최초인식 B/S			
현금	-	잔여보장부채	2,600
운용자산	1,300	BEL	2,000
출재잔여보장자산	1,300	RA	200
잔여BEA	1,000	CSM	400
잔여RA	100	자본	
잔여CSM	200	잉여금	-
		AOCI	-
	2,600		2,600

(단위 : 원)

후속측정 B/S			
현금	(40)	잔여보장부채	2,480
운용자산	1,300	BEL	1,920
출재잔여보장자산	1,240	RA	180
잔여BEA	960	CSM	380
잔여RA	90	자본	
잔여CSM	190	잉여금	20
		AOCI	-
	2,500		2,500

1.5.3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재보험 회계 처리

사례 39-1 |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재보험계약의 최초 인식

가정

- 원수사A는 보유계약의 잔여보장부채로 2,600원(= BEL 2,000원 + RA 200원 + CSM 400원)과 이에 대응하는 운용자산 2,6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 A는 재보사B와 잔여보장부채의 50% 출제하는 약정형 자산유보식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공동재보험 대가는 잔여보장부채의 출제분에 해당하는 금액 1,300원(= 2,600원 x 출제율 50%)로 산정하였다.

<최초인식시점 회계처리>

차)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BEA	1,000 / 대)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BEA	1,300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RA	100		
재보험 잔여보장요소 CSM	200		

<최초인식시점 재무상태표>

출제 전				(단위 : 원)
운용자산	2,600	잔여보장부채	2,600	
		BEL	2,000	
		RA	200	
		CSM	400	
		자본	-	
		잉여금	-	
		AOCI	-	
	2,600		2,600	

출제 후				(단위 : 원)
운용자산	2,600	잔여보장부채	2,600	
출제잔여보장자산	-	BEL	2,000	
잔여BEA	1,000	RA	200	
잔여RA	100	CSM	400	
잔여CSM	200			
잔여BEA-미지급	(1,300)	자본	-	
		잉여금	-	
		AOCI	-	
	2,600		2,600	

사례39-2 | 자산유보식(약정형) 공동재보험계약의 후속측정

가정

(1) 원수보험료 수취 : 예상보험료 80원 / 실제보험료 100원

원수보험금 지급 : 예상보험금 160원 / 실제보험금 180원

차) 현금	100 / 대) 잔여보장BEL	80
	잔여보장CSM	20

차) 잔여보장BEL	160 / 대) 보험수익-보험금	160
보험비용-보험금	180 현금	180

(2) 출재보험료 지급 : 예상보험료 40원 / 실제보험료 50원

출재보험금 수취 : 예상보험금 80원 / 실제보험금 90원

차) 재보험 잔여보장BEA	40 / 대) 현금	50
재보험 잔여보장CSM	10	

차) 재보험비용-보험금	80 / 대) 재보험 잔여보장BEA	80
현금	90 재보험수익-보험금	90

(3) RA상각 : 원수 RA상각 20원 / 출재 RA상각 10원

CSM상각 : 원수 CSM상각 40원 / 출재 CSM상각 20원

차) 잔여보장RA	20 / 대) 보험수익-RA상각	20
재보험비용-RA상각	10 재보험 잔여보장RA	10

차) 잔여보장CSM	40 / 대) 보험수익-CSM상각	40
재보험비용-CSM상각	20 재보험 잔여보장CSM	20

(4) 미지급금에 대한 고정대가^{주1} : 5원^{주1} 예실자 없음

차) 재보험 잔여보장BEA	5 / 대) 재보험 잔여보장BEA_미지급금	5

<재무상태표>

(단위 : 원)

최초인식 B/S			
운용자산	2,600	잔여보장부채	2,600
출재잔여보장자산	—	BEL	2,000
잔여BEA	1,000	RA	200
잔여RA	100	CSM	400
잔여CSM	200	자본	
잔여BEA-미지급	(1,300)	잉여금	—
		AOCI	—
	2,600		2,600

(단위 : 원)

후속측정 B/S			
현금	(40)	잔여보장부채	2,480
운용자산	2,600	BEL	1,920
출재잔여보장자산	(60)	RA	180
잔여BEA	965	CSM	380
잔여RA	90	자본	20
잔여CSM	190	잉여금	20
잔여BEA-미지급	(1,305)	AOCI	—
	2,500		2,500

제2절. 특별계정 회계

2.1 특별계정의 성격

2.1.1 특별계정의 의의

특별계정이란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정간에 업무장벽(Fire-wall)을 설치하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1.2 특별계정의 구분

(1) 특별계정의 종류

특별계정의 운용대상 상품은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며 계약자배당유무에 따라 구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보험계약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퇴직연금원리금보장계약, 퇴직보험계약, 연금저축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 장기손해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으로 구분한다. 다만, 변액보험계약과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이며 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연금저축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 장기손해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등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일반계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① 손익구조 :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
- ② 종 류 : 퇴직보험(원리금보장형 1999. 4), 개인연금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저축(2001.3),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2005. 12), 자산연계형(2007. 6)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① 투자 리스크를 전액 계약자가 부담하는 특별계정
- ② 종 류 : 변액보험 (2001. 7), 퇴직연금(실적배당형 2005. 12)

표66 | 일반계정 vs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배당형 차이

구분	일반계정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운영목적	안정성	안정성	수익성
투자Risk	보험사	보험사	계약자
보장이율	예정이율	예정이율	실적배당
손익조정	결산(월, 분기, 년단위)	결산(월, 분기, 년단위)	매월

(2)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특별계정의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일반계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및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 하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4. <삭제>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7-65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0조제10호, 제7-6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제2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2.2 특별계정재무제표

2.2.1 기준서와 감독규정의 차이

특별계정의 책임준비금은 특별계정에 투입된 적립보험료와 특별계정 운영이익의 합계(적립부분)이므로 위험보험료와 적립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될 현금흐름(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해약환급금 등)의 확률가중치를 보험부채로 평가하도록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기준서와 상이하다. 따라서 현행 특별계정 책임준비금과 기준서상 평가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평가차액의 처리방안이 필요하다. 특별계정 보험부채 평가 및 표시체계를 기준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책임준비금은 현행 법규에 따라 특별계정자산의 운영성과 등에 기반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기준서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하도록

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취지를 유지한다.

2.2.2 재무상태표

특별계정 재무상태표는 감독규정 제6-2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계정 대상보험계약인 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며, 그 외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작성은 일반계정 재무상태표와 동일양식을 사용하는 특별계정(연금저축생명(손해)보험,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 장기손보, 자산연계형보험)의 계정과목을 단순 합산하여 작성한다.

다만, 퇴직연금계약(실적배당형) 및 변액보험계약의 재무상태표는 계정과목별로 단순합산하지 않고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총액을 일반계정의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

2.2.3 포괄손익계산서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하지 않고,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한다.

표67 | 특별계정 재무제표 표시방법

구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연금저축생명(손해)보험	일반계정과 합산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형)	별도 표시	일반계정과 합산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	일반계정과 합산	
장기손보, 자산연계형보험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6-2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

②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

④ 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특별계정의 손익은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6-26조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①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계약자적립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한다.

2.2.4 재무제표 공시

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의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해서 각 특별계정별로 당일의 기준가격, 수익률 및 자산구성내역 등을 계약변동내역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계정 상품은 회사 전체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함께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증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

2.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을 포함) 등

3.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마.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 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 나.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5.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6.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2. 삭제

3. 삭제

4.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단,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자산명세서
- 나. 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요약서, 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성명, 소속(협회 등록번호 포함),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제9-4조의2 제7호의 불완전판매비율(보험계약청약서에 한한다.) 다만, 영 제84조 제5호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기간이 짧아서 불완전판매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신규"로 기재한다.

⑥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보험료적립금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2.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3.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4. 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총액
5. 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
6. 기타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7. 해약공제액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⑧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별표 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text{모집수수료총액} \div \text{보험료총액}) \times 100$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 보험회사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기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⑪ 보험회사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계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은 계약체결비용이 표준계약공제액 대비 1.4배 이내(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특별계정 회계처리

2.3.1 적립보험료와 운용수익

일반계정에 납입한 보험료를 분해하여 특별계정 운용 대상인 적립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을 특별계정으로 자금 이체한다.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립부분의 순보험료를 말한다. 운용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공시기준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한다.

(1)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방법에 의거하여 감독규정이 규정하는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20% 한도)을 반영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산출시점 직전 1년간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지출률(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또한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해야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퇴직연금보험계약(실적배당형 제외) 및 퇴직보험계약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방법에 의거하여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자산연계형보험계약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방법에 의거하여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4. <삭제>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7-65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0조제10호, 제7-6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제2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2. 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② 삭제

③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액보험인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 (삭 제)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7-69조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2.3.2 자금이체

특별계정운용과 관련하여 계정간에 자금이체는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과 자산을 편입하거나 편출할 수 없다. 자금이체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보험료 이체

일반계정에서 수납한 보험료 중에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인 적립보험료만을 보험료 분해하여 이체기일 내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완납후유지비 등 일반계정으로 이체

납입완료후 지속적인 계약관리(안내장 등)를 위해 발생한 유지비 등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3) 제지급금(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

제지급금이 발생하여 지급할 때에는 일반계정에서 계약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선지급한 제지급금의 해당금액을 이체기일 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한다.

(4)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약관대출금 포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수입을 재원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운용 방법 중의 하나로서 대출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대출관련 운용자산은 우선 일반계정에서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을 수납하고 해당 금액을 정하여진 이체기일 내에 계정간에 자금정산을 위한 자금이체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운용수수료의 이체,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가 발생한다.

(6) 법규관련 조항

관련법규 | 감독규정 제5-7조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특별계정의 결산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

③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④ 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⑤ 영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

2.3.3 자금이체 시기

회사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에 이체 건이 발생하면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계정간 자금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정산하고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정산한다.

(1) 이체사유 발생 시점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와 관련한 계상일(회계처리일)을 자금이체 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 계정간 자금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 계산 기산일

- 보험료 수납분 중 저축보험료 등 : 영수일
-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 지급 : 지급일 및 배서일(환급보험료)
- 선납(완납)계약의 경과위험보험료 등 : 익월계약일(경과기준일)
- 재산관리비(부동산관리비)배분액 : 해당월 말일
- 미상각신계약비, 신계약비상각비 : 해당월 말일

2.3.4 기간 경과이자

계정간 이체사유가 발생하여 정산시에는 이체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체일까지 기간경과이자를 합산하여 계정간에 정산한다.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장기손해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 및 퇴직보험계약(실적배당형 제외)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에 따른 경과 이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하고,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4 퇴직보험 특별계정

2.4.1 퇴직보험의 의의

퇴직보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설정 및 운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을 운용대상으로 하는 특별계정이다.

2.4.2 재무제표 작성방법

퇴직보험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으로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과 합산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 유배당상품을 제외한 무배당 퇴직보험(원리금보장형)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2.5 변액보험 특별계정

2.5.1 변액보험의 의의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각각의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내지는 해약환급금)에 반영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으로 변액보험에서는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결과가 직접 적립금에 반영됨으로써 결과에 따라 정액보험을 웃도는 급부를 얻을 수 있고, 인플레이 대책의 구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계약자가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5.2 변액보험 역사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의 진전에 따른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광의의 변액보험은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특정한 상품가격 및 환율과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안정가치 보험, 물가지수등의 특정한 지수와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지수(Index)보험, 책임준비금의 투자성과와 연계시켜서 정해지는 에퀴티(Equity) 보험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나, 협의로는 에퀴티(Equity) 보험을 변액보험이라 한다.

에퀴티(Equity)보험은 1950년 후반부터 1970년에 걸쳐 미국 및 구미 각국에 널리 보급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Variable Insurance, 영국에서는 Unit-linked Assurance라고 한다.

2.5.3 변액보험 성격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中 적립보험료로 Fund를 구성하여 Fund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선진금융형 보험상품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실적을 전액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보험이므로 보험회사는 기존의 확정금리 또는 연동금리보장상품 판매로 인한 금리리스크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넓은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변액보험은 운용자산의 평가손익, 매각손익 등을 포함한 자산 운용실적을 직접 보험금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정액보험의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분리하여 별도로 변액보험에 관한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한다.

2.5.4 변액보험과 타상품 비교

(1) 기준금리 비교

표68 | 보장이율별 상품 및 성격

구분	확정금리	연동금리	실적배당
보장이율	확정금리보장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변동	실적배당
특정	장기운용 금리변화 둔감	장·단기운용 금리변화 중간	단기운용 금리변화 민감
투자자위험	적음	중간	많음
회사부담리스크	많음	중간	적음
국내생보사	전통형상품	금리연동형상품	변액보험
타금융권	은행·투신	없음	은행·투신

(2) 변액보험과 정액보험

표69 | 보장급부의 변동에 따른 분류

구분	정액보험	변액보험
부리이율	예정이율(확정금리)+배당	실제투자수익률
운용계정	일반계정	특별계정
운용목적	안정성	수익성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으로 고정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만기보험금	계약시 약정한 금액	만기시적립액(최저보증없음)
자산평가	결산등 필요시기에 실시	매일 실시
회계처리	시가 또는 원가평가	시가평가
투자책임	회사	계약자
최저보장이율	예정이율	없음
상품판매자	모든 모집종사자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합격자등

(3) 변액보험과 투자신탁

변액보험은 실적금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반계정과 다르고,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재산증식이 목적인 투자신탁과 다르다.

표70 | 투자신탁 vs 변액보험 비교

구분	변액보험	투자신탁
목적	장기적 인플레이 헷지를 통해 실질가치가 보전된 보장금액 제공	고객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투자실적을 제공
운용 방법	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정산	신탁재산 전액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배분
계약자관리	가입시 상품형태만 선택하고 자금운용에 관여하지 못함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투자운용

(4) 주요 용어 정의

1) 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해 매일 변동가능

2)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재산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계약체결시 약정한 기본 보험금액

3) 특별계정운용수수료

1. 운용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대가

2. 환급금

해약시에 발생하는 해약차이(순보식적립금 - 해약환급금 상당액)

3. 보험금

사고발생으로 계약소멸시 남아있는 적립금

4. 실효적립금

실효시에 발생하는 실효차이(순보식적립금 - 해약환급금 상당액)

5. 자연식위험보험료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망위험률이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위험보험료

6. 완납후 유지비

납입완료후 지속적인 계약관리(안내장 등)를 위해 발생한 유지비

4) 초기투자액

회사가 특별계정의 최초 개설시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자·운용하는 금액

2.5.5 재무제표 작성방법

재무상태표상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에 표시한다.

손익계산서상 변액보험 수익·비용은 일반계정과 합산하여 표시한다.

2.6 생명보험 연금저축 및 자산연계형 특별계정

2.6.1 연금저축의 특징

제도성 상품으로 세제혜택 연금보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정에 따라 기존 연금보험의 판매를 중지(2000. 12. 31)하고, 새로운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의 도입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연금저축을 특별계정으로 운용토록 함(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이다.

2.6.2 자산연계형상품의 특징

2005년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처음 선보인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이며, 연금저축과 회계 처리 방법은 유사하나 공시이율 결정방법이 상이하다.

2.6.3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연금저축 및 자산연계형상품은 퇴직보험과 별도로 재무제표 양식이 일반계정과 동일하다.

2.7 퇴직연금 특별계정

2.7.1 퇴직연금 의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보험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노후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업복지제도로써 퇴직연금 특별계정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근거하여 설정 및 운용 한다.

2.7.2 퇴직연금과 퇴직보험의 비교

확정급여형(DB)제도와 퇴직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DB제도는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연금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하여 부담금을 산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퇴직연금상품인 반면, 퇴직보험은 단순히 기업이 납입하고자 하는 부담금 수준을 결정하여 사외에 예치하는 퇴직저축 상품이라는 점이다.

제3절. 대손충당금 회계

3.1 인식 대상 및 측정 모형

3.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손상 기준서의 개요

현행 IAS39의 복잡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의 손상 적용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라 2014년 7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에 의해 현행 IAS 39를 대체하는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제정하였다.

3.1.2 적용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분류및측정' 상 분류 기준에 따른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FVOCI-채무상품),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IFRS 9 '손상'을 적용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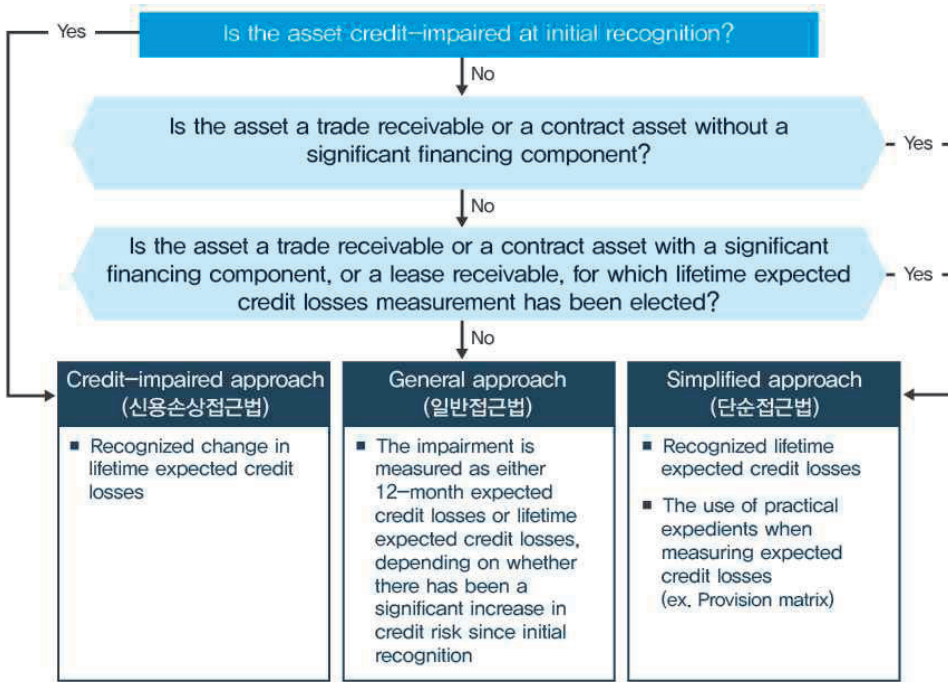
표71 | 대손충당금 측정 대상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기대신용손실 미측정 대상
- 상각후원가측정/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이 아닌 대출 약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이 아니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적용 대상인 금융보증계약 - 리스채권, 계약자산 등	- 지분에 대한 투자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인 대출 약정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기타금융상품

3.1.3 측정모형의 구분

금융상품의 유형 및 최초 손상 여부에 따라 아래의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며, 각 측정모형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측정방식은 상이하다.

그림13 | 대손충당금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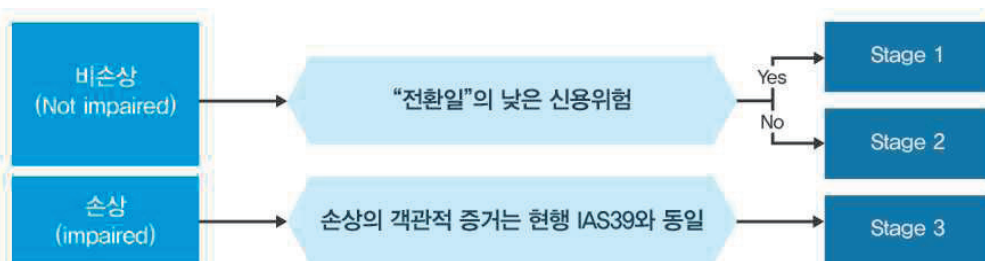


※ Significant financing component (유의적인 금융요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60에 따라 결정

3.1.4 전환일 규정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시점부터의 신용위험 변동을 추적하여 Stage를 구분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하나, 금융상품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 결정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전환일 현재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일마다 신용위험이 낮은지 여부에 의해서만 Stage를 분류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14 | 대손충당금 측정에 대한 전환규정



3.2 측정방법

3.2.1 단순접근법

IFRS 9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 단순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상거래채권일지라도 회계정책으로 단순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B5.5.35에서는 과거경험손실에 바탕을 둔 Provision Matrix(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충당금 설정률에는 회사의 과거 경험을 반영하고,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타채권에 대해서 과거 평균손실률을 산정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하며, 해촉자/위촉자 미환수수당 채권과 같이 보증효과가 적용되는 경우 보증서로 인해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손실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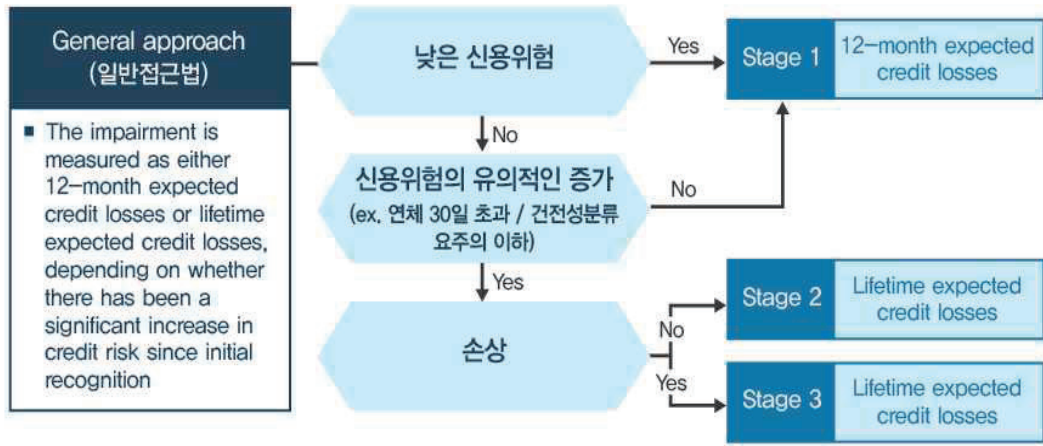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문단 B5.5.35

문단 5.5.17의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적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문단 B5.5.51~B5.5.52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충당금 설정률표는 매출채권의 연체 일수에 따라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할 수 있다(예: 연체가 없는 경우에 1%,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2%,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3%, 90일과 180일 사이인 경우에 20% 등). 고객층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는다.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다.

3.2.2 일반접근법

최초 인식 시점의 손상채권(신용손상접근법 적용), 매출채권/계약자산/리스채권(단순접근법 적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출채권(약정 포함)은 일반접근법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일반접근법은 보고일 현재 신용위험의 수준, 손상 여부 및 최초 인식 대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Stage를 분류하고, 해당 Stage 별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그림15 | 일반접근법 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을 기대존속기간 동안의 신용손실 확률가중치로 측정할 것하며, 다음과 같이 Lifetime EAD, Lifetime PD, Lifetime LGD 및 할인계수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한다.

표72 | Stage별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

구분	산식
Stage 1	현재 EAD × 1 년 PD × 현재 LGD
Stage 2	$\sum \text{Lifetime EAD}_t \times \text{Lifetime PD}_t \times \text{Lifetime LGD} \times \text{Discount Rate}_t$

사례40 | 일반접근법 하 대출채권 기대신용손실 측정 방법

(1) Lifetime PD

Basel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기간구조에 따른 Lifetime PD(누적 PD)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Rollrate을 이용한 Markov-Migration 방법과 Vintage 모형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Markov-Migration 방법은 연체구간에 대한 전이율 Matrix가 앞으로도 계속 동질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이며, Vintage 모형은 여신 실행연도별 Grouping된 여신이 실행시점 이후 경과년수에 따라 누적되는 부도건수로 누적 PD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만, Vintage 모형의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부도식별이 아닌 다양한 신용위험 정보에 따른 부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시

Markov-Migration Matrix

T	T + 1				
	무연체	1회차	2회차	3회차	부도
무연체	95.0%	3.0%	1.0%	0.7%	0.3%
1회차	2.0%	92.0%	4.0%	1.5%	0.5%
2회차	1.0%	5.0%	85.0%	6.0%	3.0%
3회차	0.0%	2.0%	9.0%	78.0%	11.0%
부도	0.0%	0.0%	0.0%	0.0%	100.0%

상기 예시 그림은 기초에 무연체인 여신 중 1개월 후에도 무연체를 유지한 여신이 95%이며, 부도구간으로 전이된 여신이 0.3%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무연체에 대한 2개월 후의 누적 PD는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무연체 2개월 누적 PD

$$= 0.3 + 3.0 \times 0.5 + 1.0 \times 3.0 + 0.7 \times 11.0 + (95.0 + 2.0 + 1.0) \times 0.3 = 0.71\%$$

위의 Transition Matrix 전이행렬을 다음의 수식으로 다기간으로 확장하여 월별 누적 PD를 산출할 수 있다.

$$TM^N \begin{bmatrix} t_{11} & t_{12} & t_{13} & d_{11} \\ t_{21} & t_{22} & t_{23} & d_{21} \\ t_{31} & t_{32} & t_{33} & d_{31} \end{bmatrix}^N = T_N \begin{bmatrix} d_{1N} \\ d_{2N} \\ d_{3N} \end{bmatrix}$$

위의 함수식에 따라 누적으로 산출된 TM 행렬에서 최종 부도구간으로 누적된 확률이 각 연체회차에 대한 누적 PD이다. 또한, 이를 엑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누적기간(N월) TM

= MMULT(기초 1M단위 TM 행렬, N-1월 TM)

예시

12개월 후 누적 PD

T	T + 12				
	무연체	1회차	2회차	3회차	부도
무연체	56.9%	20.2%	9.2%	4.9%	8.8%
1회차	13.4%	45.2%	17.8%	8.1%	15.7%
2회차	7.4%	21.5%	25.0%	11.2%	34.9%
3회차	3.1%	12.3%	16.1%	10.5%	57.9%
부도	0.0%	0.0%	0.0%	0.0%	100.0%

상기 예시 그림은 1개월 단위 TM을 12개월로 확장한 TM으로 무연체인 여신의 12개월 누적 PD는 8.8%이며, 1회차인 여신의 12개월 누적 PD는 15.7%임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누적 PD는 해당 계약번호(계좌번호)별 잔여만기까지의 누적PD를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하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과거사건, 현재상황 및 미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래경제적 상황은 일반적으로 PD에 반영할 수 있으며, 관측가능한 정보의 시계열 변동과 일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예시로 실업률, 자산가격, 상품가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기 위한 전체 만기까지 추정할 필요는 없으며 관측가능한 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당금 산출시점부터 먼 기간 일수록 미래지향적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추정의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미래지향적 정보로 단기간 예측에 이용가능한 지표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연체율, GDP성장률 등이 있을 것이다.

(2) Lifetime LGD

LGD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의 산출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는 미래지향적 정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Lifetime EAD

기대신용손실은 기대존속기간동안의 계약상 현금흐름과 기대현금흐름의 차이에 대해 확률가중평균으로 측정해야 한다. Lifetime EAD는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EAD가 산출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할 것이나, 분할상환의 경우 EAD는 상환주기에 따라 감소됨에 따라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감소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4)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Stage 1

Stage 1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begin{aligned} & \text{기대신용손실} \\ &= \text{산출대상금액 EAD} \times 1\text{년 누적PD} \times \text{현시점의 LGD} \end{aligned}$$

현시점의 LGD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의 LGD와 동일하며, 12개월 미만인 여신에 대해서 1년 기대신용손실 산출여부에 대하여 12개월 PD로 적용할 수 있다.

Stage 2

Stage 2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Lifetime 동안의 확률가중평균 기대신용손실로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begin{aligned} & \text{기대신용손실} \\ &= \sum \text{Lifetime EAD}(t) * \text{Lifetime PD}(t) * \text{Lifetime LGD}(t) * \text{Discount Rate}(t) \end{aligned}$$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여신 정보
만기일시상환	잔여만기 4년, EAD는 1,000, 이자율 10%, EIR 12%, 담보금액 500
분할상환	잔여만기 4년, EAD는 1,000, 이자율 10%, EIR 12%, 담보금액 500

신용위험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누적 PD 정보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Year	누적 PD	선도 PD
1	0.60%	0.60%
2	1.40%	0.80% ^{주1}
3	1.80%	0.39% ^{주2}
4	2.30%	0.49%

주1 2년의 선도PD 0.80% = (1 + 1.40%) / (1 + 0.60%)

주2 3년의 선도PD 0.39% = (1 + 1.80%) / (1 + 1.40%)

또한, 담보가치는 1년후 10% 상승후 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만기일시상환 여신의 기대신용손실>

$$\begin{aligned} & 4\text{년후 EAD} \times 4\text{년 누적PD} \times 4\text{년후 LGD} \times 4\text{년 Discount Rate} = 9.22 \\ &= 1,400 \times 2.30\% \times (1-550/1,000) \times 1/(1+12\%)^4 \end{aligned}$$

<분할상환 여신의 기대신용손실>

$$EAD(t) * \text{선도PD}(t) * (1 - \text{누적PD}(t-1)) * LGD(t) * \text{Discount Rate}(t) = 4.68$$

Year	원금+이자 (a)	누적 PD	선도 PD	담보가치 (b)	LGD (c=1-b/a)	Discount Rate	기대 신용손실
1	1,000+100	0.60%	0.60%	500	50.0%	89.3%	2.95
2	750+75	1.40%	0.80%	550	33.3%	79.7%	1.73
3	500+50	1.80%	0.39%	550	0.0%	71.2%	0
4	250+25	2.30%	0.49%	550	0.0%	63.6%	0
합계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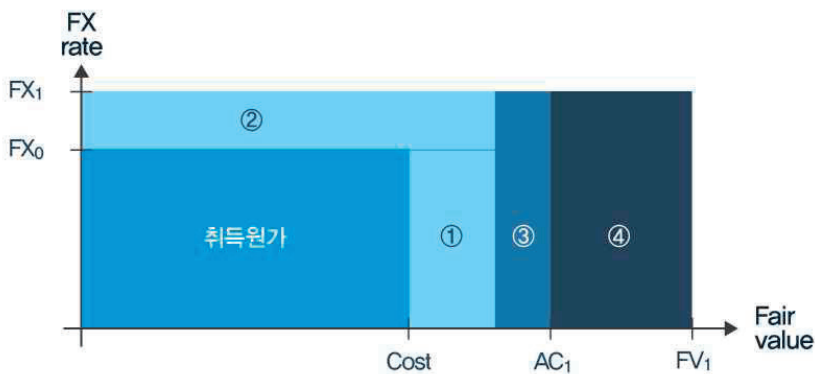
2년후의 EAD는 1,000에서 1년 분할상환 250을 제외한 750의 잔여원금에 10%이자 75를 가산한 825이며, 2년 후의 Discount Rate는 $1 / (1 + 12\%)^2 = 79.7\%$ 이다.

사례4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구분	측정방법
Stage 분류	신용평가사로부터 결산일 시점의 신용등급을 수령하여 신용위험 유의적 하락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1) 결산일 투자등급인 채무상품 – Stage 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2) 결산일 투자등급 미만인 채무상품 – 최초 취득시 등급을 평가일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 Stage 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최초 취득시 등급보다 평가일 현재 등급이 하락한 경우: Stage 2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3) 손상 채무상품 – Stage 3으로 분류
PD	신용평가사로부터 산출된 부도율을 이용한다. Stage 1: 12개월 부도율 Stage 2: 해당 자산의 잔여만기에 따른 부도율 Stage 3: 100%
LGD	(1) 자체적인 기업여신 신용LGD가 추정되는 경우 기업여신 신용LGD 적용 (2) 자체 기업여신 신용LGD가 추정 되지 않는 경우, 신용평가사로부터 산출된 신용LGD 적용 (3) 위의 두 방안 모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Basel 기본내부등급법 기업 선순위 채권 LGD 45% (후순위 채권 75%) 적용

EAD	해당 채무상품의 결산기말 상각후원가를 EAD로 간주한다.
기대신용손실	Stage 분류에 따라 산출된 PD, LGD, EAD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기대신용손실} = \text{PD} * \text{LGD} * \text{EAD}$ 최초인식 시점에는 별도의 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며, 매 결산기의 stage 분류에 따라 측정되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한다.

<FVOCI 외화채권 후속측정>



* 취득시점: 취득원가 = Cost * FX0

1기 결산

- (1) 유효이자 인식: $(AC1 - \text{Cost}) * FX0 \rightarrow$ 당기손익 인식
- (2) 환산평가: $AC1 * (FX1 - FX0) \rightarrow$ 당기손익 인식
- (3) 손상평가: $AC1 * (PD * LGD) * FX1 \rightarrow$ 당기손익 인식
- (4) 공정가치평가: $(FV1 - AC1) * FX1 + (3) \rightarrow$ 기타포괄손익 인식

다음기의 기대신용손실은 (3)의 금액을 별도로 관리 후 증가 또는 감소된 금액만큼 신용손실액을 추가 인식 또는 환입한다.

3.3 대손준비금

감독규정은 보유자산의 대손추산액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를 근거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각 분류에 따른 대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중 자산건전성 분류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어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미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인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4.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1의 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을 만들고, 대손충당금 등(대손준비금을 포함)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절. 법인세 회계

4.1 정의

법인세회계는 일정기간에 대한 법인세부담액과 기말 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발생주의(수익 및 비용의 대응원칙) 및 공정가액평가 등을 기초로 하는데 비해,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역사적 원가 등을 기초로 하므로 회계와 세법은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인식방법과 인식시기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법에 따라 보고한 법인세부담액을 기업회계에 따라 법인세비용으로 기간 배분하는 것이 이연법인세 회계이다.

표73 | 차감납부세액 산출 구조

법인세 계산 구조	
I.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손실)	XXX
II. 세무조정	
(+) 익금산입	XXX
(-) 익금불산입	XXX
(+) 손금산입	XXX
(-) 손금불산입	XXX
III. 차가감소소득금액	XXX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XXX
IV.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XXX
(-) 이월결손금	XXX
(-) 비과세소득	XXX
(-) 소득공제	XXX
V. 과세표준	XXX
(×) 세율	x%
VI. 산출세액	XXX
(-) 공제감면세액	XXX
(+) 가산세	XXX
VII. 가감계	XXX
(-) 기납부세액	XXX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XXX
VIII. 차감납부할 세액	XXX

4.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회계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만을 포함하나 세법상 과세소득은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증가액도 과세소득에 포함하므로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 가산조정 및 (-) 차감조정 등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한다.

표74 |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소득 산출

기업회계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
(-)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 (-)
회계이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과세소득

4.2.1 비일시적 차이

비일시적차이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한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말한다. 즉, 당기 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의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차이는 대부분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관련 세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규제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며, 다음 항목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①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
- ② 자기주식처분손익 등과 같은 잉여금 구분에 의한 차이
- ③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는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4.2.2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는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한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 가액과 세무회계상의 자산·부채 가액의 차이로서 발생한 회계연도의 이후 기간에 소멸하는 차이로 미래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일시적 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분류된다.

또한, 일시적 차이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유보’로 소득처분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로 관리가 된다. 일시적 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의 가감을 가져오므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4.3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4.3.1 이연법인세부채

어떤 회계연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는 미래의 회계연도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사이에 반대의 영향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상쇄된다. 따라서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일시적차이에 의한 법인세효과는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법인세효과를 부채로 인식한다.

미래의 납부할 세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과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75 | 이연법인세 부채 확인절차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	확인절차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가산되어 산출세액을 증가시켜 납부할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중에서 (-)유보금액을 확인한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제외되는 세무조정항목	확인절차
영업권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중에서 (-)유보금액을 확인한다.
자산,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기업결합거래가 아니고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4.3.2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법인세효과를 자산으로 인식하며 미래의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과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76 | 이연법인세자산 확인절차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확인절차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 산출세액을 절감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중에서 (+)유보금액을 확인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미래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표로 이월결손금의 현화 및 공제가능기한을 파악한다.
이월세액공제로 미래의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 중에서 이월 공제 가능한 공제감면세액의 종류, 금액, 공제기한을 파악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제외되는 세무조정항목	확인절차
부의영업권의 환입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말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중에서 (+)유보금액을 확인한다.
기업결합거래가 아닌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미래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시키는 항목이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한다.

4.3.3 실현가능성 평가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특정 미래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항목들은 특정 미래기간에 실제로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현가능성 평가의 대상이 된다.

실현가능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미래의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차감할 일시적 차이
- ② 세무상 이월결손금
- ③ 이월세액공제

(1)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하는 항목의 실현가능성 평가시 고려요소

미래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하는 항목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충분여부’와 ‘미래예상과세소득의 충분여부’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각 기준별 평가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충분 여부 평가시 고려요소

- 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 ② 세무상 결손금 등의 이월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2) 미래 예상과세소득의 충분 여부 평가시 고려요소

- 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기간 또는 세무상 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한지 여부
- ②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정책^{주1}이 있는지 여부

^{주1} “세무정책”이라 함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의 공제 가능한 기간이 소멸되기 이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그 예로 국채나 공채 등 비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매각하고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다른 투자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미래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2)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하는 항목별 실현가능성 평가 고려요소

차감할 일시적 차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와 같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를 절감하는 항목별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미래의 법인세 절감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차감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경우 미래예상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기간에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절감효과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먼저 미래 특정기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히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미래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하면 된다. 그러나 미래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는 미래 과세소득이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커버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 세무상 이월결손금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래과세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차감되어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경우 예상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①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②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확실한 미래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3) 이월세액공제

세무상 이월세액공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하여 미래과세소득에 동 기간의 확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이월공제감면세액이 차감되어 납부할 법인세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월공제감면세액의 경우도 예상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현가능성 평가를 한다.

- 1.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2.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확실한 미래과세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4.4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측정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법인세 비용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표77 | 일반회계 법인세비용 산출

당기 법인세부담액	200
±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변동액	-100
±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변동액	+50
±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이연법인세	-20
= 법인세비용	130

-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이용하여 당기 법인세 부담액을 파악한다.
- 세무조정자료로부터 일시적차이를 파악한다.
- 차감 및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한다.
-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법인세효과가 자본에 직접 반영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 당해 자본항목에 반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인세법상 세율구조는 초과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의 문단49에 따르면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평균세율} = \frac{\text{예상 법인세 부담액}}{\text{예상 과세소득}}$$

세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금액은 법인세율의 변경에 따른 법인세효과 만큼 조정하여 반영한다. 이러한 변경효과금액은 회계변경으로서 전진법으로 그 변경연도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문단 53에 의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4.5 수정신고

이연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당초 신고된 금액에 변경이 있거나,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의 원인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효과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한다.

(1) 오류가 없거나 영구적 차이인 경우

접대비 한도를 잘못계산하거나 법인세 신고절차 등의 위배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상의 오류가 없이 법인세를 추납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이는 대부분이 영구적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2)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전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의 과소계상 오류 등과 같은 회계상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법인세 부담액을 증감시키고 일시적 차이는 소멸된다.

이런 직전회계연도의 오류에 따른 일시적 차이는 비교 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전전기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하는 이를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으로 하여 당기 법인세비용을 감소처리한다.

(3)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개발비의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 등과 같은 오류는 회계상 오류가 수정되는 회계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계상한다.

4.6 재무제표 표시

4.6.1 미수법인세환급액의 표시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부채(미지급법인세)로 인식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은 자산(미수법인세환급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법인세관련 자산항목(미수법인세환급액)을 인식할 경우에는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감으로 처리한다. 즉 별도의 법인세 수익 또는 음(-)의 법인세비용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표시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의 차감표시를 한다.

4.6.2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표시

구분표시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당기법인세부담액과 당기 법인세환급액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

상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급법인세와 미지급법인세 그리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상계 충족조건은 아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문단 71, 74를 참조한다.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 (1)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 (2)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4.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 (1)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가)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 (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4.7 법인세비용의 기간내 배분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법인세 기간간 배분’이라 하고 결정된 법인세비용을 같은 기간에 속하는 주요 손익항목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법인세 기간내 배분’이라 한다 즉, 법인세비용을 동일 회계기간의 계속영업손익, 중단영업손익 및 자본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 내 비용 배분 절차

법인세 비용의 기간내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당기법인세(충부담세액)에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한 당기 총법인세비용을,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과 중단영업손익 및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표78 | 일반회계 법인세 기간배분

법인세의 기간 배분 계산 순서	
당기법인세(충부담세액)	XXX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한 법인세변동액	XXX
당기 총 법인세비용	XXX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XXX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법인세비용	(XXX)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XXX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XXX

(1) 자본항목계정에서 직접 가감되는 법인세부담액 배분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은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한다. 위의 예로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세무상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일시적차이라고 한다.

위에 속한 자본항목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자본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42 | 자본항목에서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부담액의 법인세 기간내배분 사례

A사는 2021년의 회계이익(전액 경상이익인 것으로 가정) 500,000원을 보고하였으며 세무조정항목은 아래에 설명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며 법인세율은 30%로 가정한다.

- 자본항목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140,000 발생하였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140,000에 대해 익금산입(기타) 소득처분 하였다.

법인세비용의 기간내 배분과 재무제표 표시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1)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용인식

차) 법인세비용 150,000 대) 미지급법인세 150,000

(2)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42,000 대) 법인세비용 42,000

(2)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기간 내 배분

손익계산서에서 계속사업손익에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해당손익에 직접 반영하여 당해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기재한다.

사례43 | 계속사업과 중단사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 기간내배분 사례

K사의 2021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40,000인데, 이 중 계속사업이익이 50,000이고 중단사업이익이 90,000이라고 한다. 계속사업이익은 경상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특별손익항목은 없다. 세율이 30%라고 가정하고 세무조정항목 및 자본조정에 직접 가감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법인세비용은 42,000이 된다.

이때 계속사업과 중단사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 기간내배분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	
구성항목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경상이익	50,000
경상이익법인세비용	(15,000)
경상이익	35,000
중단사업이익(법인세효과: 27,000)	63,000
당기순이익	98,000

따라서 특정 회계기간의 총 법인세비용에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데, 이는 다시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에 배분된다.

제5절.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5.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및 범위****5.1.1 의의**

연결회계는 법적으로 다른 회계실체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회계실체로 간주하고 단일의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 때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하여도 지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므로 반증이 없는 이상 B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그 이용자가 연결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은 법적으로 다른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므로 단일의 공동운명체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는 각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5.1.2 용어의 정의

(1)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는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한편,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는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때 연결실체(consolidated group)는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말한다.

(2) 지배력

지배력(Control)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10~14 참조).

②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15와 16 참조).

③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17과 18 참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상기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각 투자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9호 ‘금융상품’과 같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한다.

(3)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지배기업(parent)은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종속기업(subsidiary)은 다른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종속기업은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다.

* 보험사는 수익증권으로 자산을 위탁하여 운영(아웃소싱)하는 형태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익증권도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실체 범위에 포함한다.

(4) 중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은 한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의 당해기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지배기업이 되고, B사는 C사의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 B사는 중간지배기업이 된다.

(5)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s)은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말한다.

5.1.3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1) 지배력의 평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힘을 평가하는 목적상 실질적인 권리와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련 활동,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들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따라 결정된다.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다른 상대방과 관계에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다음은 투자자와의 관계의 성격상 투자자를 위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예이다.

- 1) 투자자의 특수관계자
- 2) 투자자의 출자나 대여로 피투자자의 지분을 수취하는 당사자
- 3)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소유한 피투자자의 지분을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한 당사자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가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자발적으로 독립된 당사자의 상호합의 조건에 근거하는 상황은 제외)
- 4) 투자자의 후순위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자신의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당사자
- 5)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와 같은 피투자자
- 6) 전문용역 제공자와 유의적 고객 사이의 관계와 같이, 투자자와 긴밀한 사업 관계의 당사자

(2)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1)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5~B8 참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관련 활동에서 이익을 얻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2)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11~B13 참조)

다양한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은 많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황에 따라 관련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①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구매
- ② 존속 기간의 금융자산 관리(채무불이행 된 때를 포함)
- ③ 자산의 선택, 취득, 처분
-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의 연구와 개발
- ⑤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funding structure)의 결정이나 자금의 조달

3) 투자자의 권리로 인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투자자가 갖게 되는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14~B54 참조)

힘은 권리에서 발생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하여,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권리는 피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①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 형태의 권리
-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해임할 권리
- ③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
- ④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하는 권리
- ⑤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권리의 보유자가 갖게 하는 그 밖의 권리(예: 경영관리계약에 규정된 의사결정권)

다른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실질적인 권리는 보유자가 결정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비록 그 권리가 보유자에게 관련 활동과 관련된 결정을 승인하거나 막을 현재의 능력만을 갖게 할지라도 단순한 방어권이 아니라면 다른 당사자들이

보유한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방어권은 그 권리와 관련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방어권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①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의 손실로 유의적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는 차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대여자의 권리
- ②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본적 지출을 승인하거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의 발행을 승인하는, 피투자자의 비지배지분 보유자의 권리
- ③ 차입자가 특정 대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입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대여자의 권리

4)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55~B57 참조)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에게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변동이익은 고정되지 않고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다. 변동이익은 오직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이거나,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이 변동되는지와 이익의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이익이 변동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고정금리 지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상이 되고 투자자가 채권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관점에서 고정금리 지급은 변동이익이다. 변동 금액(즉, 이익이 변동되는 정도)은 채권의 신용위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비슷하게 피투자자의 자산 관리에 필요한 고정 성과 수수료는 피투자자의 성과위험에 투자자가 노출되기 때문에 변동이익이다. 그 변동 금액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는 피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문단 B58~B72 참조)

① 위임된 힘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다른 기업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도 결정한다.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본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때때로 본인의 힘을 대리인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을 대신한 것이다. 단지 다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의 결정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것은 아니다.

②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다.

- 의사결정 약정에 따라 허용되고 법에 규정된 활동
- 그러한 활동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자의 재량권

③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다른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인 권리는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해임권이나 그 밖의 권리는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

④ 보상

피투자자의 활동에서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보상금액 및 보상과 관련된 변동성이 클수록,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⑤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노출

피투자자에 대해 다른 지분(예: 피투자자에게 투자하거나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보증을 제공)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 평가할 때 그 지분의 이익 변동에서 자신이 노출된 정도를 고려한다. 피투자자의 다른 지분을 갖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본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의 면제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2)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도 있지 않은 경우
- 3)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4)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5.1.4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하 특수목적기업)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법인격이 없는 실체의 형태로도 설립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목적기업 역시 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당해 기업에 의해 특수목적기업이 지배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한다.

상기된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보는 예시 외에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 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므로 그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고 있다.
2.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종’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여 왔다.
3.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흔히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4.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자산의 이전이 매각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상기된 특수목적기업의 연결 범위에 충족하면 연결회계처리를 적용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지배력에 대한 지표는 특수목적기업과 거래하는 각각의 당사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획득될 수 있다. 때때로 보고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자본 모두를 대부분 제공한 외부 투자자에게 특수목적기업을

통해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이익이나 신용보호를 보증한다. 보증의 결과 그 기업은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을 갖게 되고 투자자는 손익에 대한 노출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여자가 될 뿐이다.

- ① 자본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기초 순자산에 대해 유의적인 지분을 갖지 않는다.
- ② 자본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 ③ 자본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기초 순자산이나 영업의 고유위험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 ④ 자본제공자는 채무나 지분을 통해 대여자의 이익과 동등한 주된 대가를 실질적으로 받는다.

(1) 수익증권 연결여부에 대한 검토

표79 |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한정된 특수목적	자산운용을 사전에 결정된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수익증권 보유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
실체의 형태	신탁의 형태
자동조종방식	운용회사가 자산운용을 사전에 결정된 투자정책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사모단독펀드, 일반적인 수익증권, MMF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약관에 의해서 한정된 특수목적에 수행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분류된다.

표80 | 연결여부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활동	운용회사의 투자 지시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익과 손실은 수익자인 회사에 귀속되므로, 수익증권은 회사의 투자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의사결정	약관 변경 등의 핵심의사결정권을 보유하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사항은 운용사에 위임되어 있음.
효익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됨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50%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부분의 위험을 흡수하게 됨

*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은 활동, 의사결정, 효익, 위험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수익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시킨다.

(2) 투자일임계약 연결여부에 대한 검토

표81 |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한정된 특수목적	투자일임계약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자산에 운용하고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실체의 형태	투자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는 계약형태이고 별도의 실체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자동조종방식	계약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정형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비특정형은 계약자산을 운용하는 주체에 위임되어 있음

* 투자일임계약은 계약의 형태이고 계약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도 직접 가능하며 본인의 계좌에서 거래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실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간의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일임계약(특정형, 비특정형)은 특수목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일임계약에 대하여 구성자산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투자조합 연결여부에 대한 검토

표82 |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한정된 특수목적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의 설립촉진과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동법 및 조합규약에 따라 활동함
실체의 형태	조합의 형태
자동조종방식	운용회사가 자산운용을 사전에 결정된 투자정책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조합은 관계법령 및 약관에 의해서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특수목적기업으로 분류된다.

표83 | 연결여부에 대한 판단

구분	내용
활동	투자조합은 창업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비상장 창업자/벤처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즉 투자조합은 한정된 존속기간을 가지고 조합재산에서 조합운영경비와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효익을 위하여 설립됨
의사결정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동 주요업무의 의사결정사항은 투자대상 및 방법, 운용원칙 등에 대하여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수행되고 있음
효익	투자조합에서 발생하는 효익은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각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분되므로 출자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효익의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음
위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무한책임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이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나 회사가 투자한 투자조합의 경우 채무가 없으므로 업무집행사원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은 실질적으로 유한책임사원인 회사와 동일하게 출자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함(다만, 우선손실변제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특수목적기업 대한 연결여부 판단은 활동, 의사결정, 효익, 위험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투자조합의 경우 중요한 투자의사결정이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에 의해 이뤄지므로 업무집행사원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투자조합의 일정지분을 보유하여 일반적인 운용수수료 이상의 효익을 얻을 목적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은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결지배기업이 됨.

5.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5.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2) 종속기업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5.2.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1)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한다.
- 2)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한다.
- 3)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

(2)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3)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4)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5.2.3 주요 연결 회계처리 개요

별도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정과 피지배기업의 자본계정이 각각 단순 합산되어 있기에 연결대상회사 간 투자주식과 자본금은 연결실체 자신에 대한 투자주식과 자본금으로 중복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결 조정분개를 통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 배당금 조정

종속회사의 배당지급 관련하여 각자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 회계처리를 취소한다.

사례44 | 연결 배당금 조정

차) 배당금 수익	100	/	대) 이익잉여금	200
비지배지분	100			

(2) 지배회사 투자주식과 종속회사 자본계정의 상계

중복 계상되어 있는 연결대상회사 간 투자주식과 자본금을 연결 조정분개로 상계 제거한다.

사례45 | 지배회사 투자주식과 종속회사 자본계정의 상계

차) 자본금	100 ^{주1}	/	대) 종속기업투자주식	200 ^{주1}
기타포괄손익	100 ^{주1}	/	비지배지분	200 ^{주2}
이익잉여금	100 ^{주1}	/	공정가액차이(부채)	200 ^{주3}
자본조정	100 ^{주1}			
공정가액차이(자산)	100 ^{주3}			
영업권	100 ^{주4}			

^{주1}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시점 잔액. 단,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지배권 획득일의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자본계정도 지배권 획득일의 금액

^{주2} 비지배지분 = (종속회사의 자본계정 + 순공정가액차이) * 비지배지분율

^{주3} 공정가액 차이가 발생하는 자산, 부채의 예시

자산 : 대출채권, 비상장유가증권, 업무용건물 등

부채 : 예수금, 차입부채 등

^{주4} 영업권 = 종속기업투자주식 - (종속회사의 자본계정 + 순공정가액차이) * 지배지분율

(3) 종속기업주식 취득시 발생하는 투자차액의 상각

지배회사 투자주식과 종속회사 자본계정의 상계시 발생하는 공정가액차이부분과 영업권은 해당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각한다. 하지만 지배부분과 비지배부분으로 배분되는 공정가액차이로 인한 상각비에 비해 영업권의 상각비는 비지배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지배부분에만 배분된다. 영업권은 종속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의 지분을 보다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례46 | 종속기업주식 취득시 발생하는 투자차액의 상각

상각대상 유형자산 (건물 등)

차) 감가상각비	100	/	대) 건물	100
비상각대상 자산 (토지 등)				
차) 유형자산처분이익	100	/	대) 토지	100

(4) 내부거래 등 상계제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에 발생한 거래는 연결관점에서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각자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모두 제거한다. 다음의 “5.2.4 내부거래 대사 및 상계”에서 설명한다.

(5) 종속기업이익의 배분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과 투자차액 중 공정가액 상각액에 대하여 비지배지분을 만큼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한다.

주1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 (당기순이익(손실) + 공정가액차액상각분) * 비지배지분율

사례47 | 지배권을 획득한 회계연도와 이후의 연결제거분개

A사는 20x1년 B사의 주식 60%를 200,000원에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A사는 동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B사의 연도별 자본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자본변동이다.

	20x1년 초	20x1년 말	20x2년 말
자본금	120,000	120,000	120,000
이익잉여금	80,000	100,000	130,000
합계	200,000	220,000	250,000

지배권 획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순자산은 건물이며 20,000원의 차이가 있다.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사례48 | 20x1년 말 지배회사 투자주식과 종속회사 자본계정의 상계

차) 자본금	120,000	/	대) 종속기업투자주식	200,000
이익잉여금	80,000	/	비지배지분	88,000 ^{주1}
건물	20,000			
영업권	68,000 ^{주2}			

주1 $(120,000 + 80,000 + 20,000) * 40\% = 88,000$

주2 $200,000 - \{(120,000 + 80,000 + 20,000) * 60\% \} = 68,000$

사례49 | 20x1년 말 종속회사 투자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차이의 상각

차) 감가상각비	4,000 ^{주1}	/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0

주1 $20,000 / 5 = 4,000$

사례50 | 20x1년 말 종속기업 이익의 배분

차) 비지배지분손익	6,400 ^{주1}	/	대) 비지배지분	6,400

주1 $[(220,000 - 200,000 (20x1년 당기순이익)) - 4,000(투자차액상각비)] * 40\% = 6,400$

사례51 | 20x2년 말 지배회사 투자주식과 종속회사 자본계정의 상계

차) 자본금	120,000	/	대) 종속기업투자주식	200,000
이익잉여금	100,000 ^{주1}	/	비지배지분	96,000 ^{주2}
건물	20,000	/	이익잉여금(지배지분)	12,000 ^{주3}
영업권	68,000 ^{주4}			

주1 $80,000 (x1년 초 이익잉여금) + 20,000 (x1년 당기순이익) = 100,000$
주2 $(120,000 + 80,000 + 20,000) * 40\% + 20,000 * 40\% (x1년 당기순이익의 비지배지분분) = 96,000$
주3 $20,000 * 60\% = 12,000$
주4 $200,000 - \{(120,000 + 80,000 + 20,000) * 60\% \} = 68,000$

사례52 | 20x2년 말 종속회사 투자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차이의 상각

차) 감가상각비	4,000 ^{주1}	/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 ^{주2}
이익잉여금	2,400 ^{주3}			
비지배지분	1,600 ^{주4}			

주1 $20,000 / 5 = 4,000$
주2 $20,000 / 5 * 2 = 8,000$
주3 $4,000 * 60\% = 2,400$
주4 $4,000 * 40\% = 1,600$

사례53 | 20x2년 말 종속기업 이익의 배분

차) 비지배지분손익	10,400 ^{주1}	/	대) 비지배지분	10,400

주1 $[(250,000 - 220,000 (20x2년 당기순이익)) - 4,000(투자차액상각비)] * 40\% = 10,400$

5.2.4 내부거래 대사 및 상계

연결결산단계에서 수행하는 내부거래 대사는 연결대상회사의 내부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지배기업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의 차이내역은 연결결산장부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내부거래란 연결대상회사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와 그로 인해

채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및 부채 잔액을 의미하며, 내부거래 상계 절차를 통해 수익/비용 및 채권/채무의 잔액이 제거된다.

(1) 수익·비용의 상계

수익·비용 상계는 연결결산 기간동안 발생한 연결실체내의 수익과 비용의 거래를 제거하여 연결실체가 아닌 외부와의 거래내역만을 연결채무제표에 표시하는 과정이다. 수익·비용 상계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수익/비용 거래, 배당거래 등과 비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기타의 수익/비용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비용의 상계과정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활동의 비용과 상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업활동의 비용과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연결손익계산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수익인식회사가 인식한 영업활동의 수익을 상대회사가 비영업활동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 수익과 비영업활동의 비용을 상계할 수 있다.

사례54 | 수익·비용의 상계제거

차) 수익(대출이자수익 등) 100 / 대) 비용(차입금이자 등) 100

(2) 채권·채무의 상계

채권·채무 상계는 연결대상 회사간 내부거래의 결과, 결산기말 현재 연결실체내에 존재하는 채권과 채무를 제거하여 외부와의 채권·채무만을 연결채무제표에 표시하는 과정이다. 채권·채무의 상계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미수금·미지급금거래 등의 자산·부채와 비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미수금·미지급금거래 등의 자산·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비용 상계의 과정과 동일하게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자산은 영업활동의 부채와 상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채권·채무 상계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결산기말 현재의 자산·부채를 제거하는 과정이므로 영업활동의 채권과 비영업활동의 채무를 상계하여도 연결채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례55 | 자산·부채의 상계제거

차) 채무(차입금 등) 100 / 대) 채권(대출채권 등) 100

사례56 | 지배회사P사, 종속기업S사를 가정한 채권 채무 상계

(1) 20x1년 12월 1일 P회사는 S사로부터 투자자문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20x2년 3월 31일 기말시점에서 동 자문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 하였음.

<지배기업>

차) 자문수수료비용	1,000,000	/	미지급금	1,000,000

<종속기업>

차) 미수금	1,000,000	/	자문수수료수익	1,000,000

<연결조정분개>

차) 미지급금	1,000,000	/	미수금	1,000,000

차) 자문수수료수익	1,000,000	/	자문수수료비용	1,000,000

(2) 20x1년 6월 1일 S회사는 P회사에게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만기 1년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20x2년 3월 31일 기말 시점에서 동 차입금은 미상환 하였으며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6.00%이며 현재까지 이자는 입금되지 아니함

<지배기업>

차) 대출채권	100,000,000	/	대) 현금	100,000,000

미수수익	4,500,000	/	이자수익	4,500,000

<종속기업>

차) 현금	100,000,000	/	대) 차입금	100,000,000

이자비용	4,500,000	/	미지급비용	4,500,000

<연결조정분개>

차) 차입금	100,000,000	/	대) 대출채권	100,000,000

미지급비용	4,500,000	/	미수수익	4,500,000

이자수익	4,500,000	/	이자비용	4,500,000

(3) 20x1년 S회사는 P회사소유의 건물에 임차보증금 2억원에 임차비용 8,000,000원의 계약조건으로 임차하였음

<지배기업>

차) 현금	200,000,000	/	대) 임대보증금	200,000,000

현금	8,000,000	/	임대료수익	8,000,000

<종속기업>

차) 임차보증금	200,000,000	/	대) 현금	200,000,000
지급임차료	8,000,000	/	현금	8,000,000

<연결조정분개>

차) 임대보증금	200,000,000	/	대) 임차보증금	200,000,000
임대료수익	8,000,000	/	지급임차료	8,000,000

5.2.5 지배권 획득일의 투자·자본상계

종속기업에 대한 최초 지배권 획득 시, 연결대상회사 내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 해당 종속기업의 자본계정을 상계하여 제거한다. 이때, 지배기업은 투자차액(공정가치 평가차액 및 영업권)과 비지배지분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연결조정분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요 회계처리

- 1)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최초 지배권 획득일 현재 해당 종속기업의 순자산 정보와 지배기업의 사업결합원가를 확인한다.
- 2)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수행하고,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공정가치 평가차액으로 회계처리하고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 3) 지배기업의 사업결합원가와 종속기업의 공정가액 (=장부가액+공정가치 평가차액)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상당액을 비교한 후, 차액은 영업권 혹은 잉가매수차익으로 처리한다.
- 4)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여러 단계에 걸쳐 취득한 결과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단계적 취득인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단계적 취득을 통해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배권 획득일에 모든 지분을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 5) 해당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정산표에 합산하고, 투자·자본 상계분개를 수행한다.
- 6) 계산된 투자차액은 구성요소(공정가치로 평가된 토지, 건물 등) 별로 구분한 후, 상각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취득일 이후의 결산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7) 연결 대상 수익증권을 투자자본 상계 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평가손익과 관련 이연법인세를 제거 한다.

(2) 투자차액

투자차액은 지배권 획득 과정에서 지급한 투자회사의 매수원가, 즉 사업결합 원가가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의 장부가액에 대한 투자회사지분 (투자회사가 최종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다. 투자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표시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차액은 아래와 같이 공정가치 평가차액과 영업권의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공정가치 평가차액

지배권 획득일 현재의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종속기업의 자산 혹은 부채의 계정과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지배권 획득일 현재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투자회사주주지분 (투자회사가 최종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주주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배분된다.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지배권 획득일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가 발생한 해당 자산·부채의 계정과목별로 차이 내역을 추적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2) 영업권

지배권 획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다음의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은 하지 않으며 매회계년도 손상검사를 통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부의 영업권은 취득일에 당기손익에 반영함)

1) K-IFRS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

2) K-IFRS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3)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비지배지분 금액의 측정 시 상기 '공정가치 평가차액'의 방법에 따라 ①공정가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영업권을 비지배지분에도 인식하는 전부영업권(Full Goodwill)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고 ②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영업권을 비지배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지분에만 인식하는 부분영업권(Partial Goodwill)으로 회계처리 된다.

(3) 비지배지분의 인식

지배력 획득 시점에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이때 비지배지분을 인식하는 방법은 ① 공정가치, ②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경우 차액(공정가치-피취득자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 금액)만큼 영업권에 영향을 미쳐 비지배지분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인식(Full Goodwill)하게 된다. 또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 영업권은 지배기업 지분에 대해서만 인식(Partial Goodwill)하게 되므로 사업결합에서 인식된 비지배지분과 영업권의 금액이 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사업결합 발생 시 비지배지분의 측정방법은 정보산출의 효익과 비용,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투자·자본상계

당기에 최초로 지배권을 획득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및 투자차액은 지배기업의 연결정산표에 합산하여 표시한 후, 투자·자본 상계분개를 수행한다. 투자·자본 상계분개란 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에 계상된 투자주식(사업결합원가)과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의 자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때 투자차액(공정가치 평가차액 및 영업권)의 인식 및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차액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에 대한 배분은 투자·자본 상계분개에 포함된다.

(5) 지분의 단계적취득으로 인한 지배권의 획득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여러 단계에 걸쳐 취득한 결과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라면(단계적 취득인 경우), 투자차액은 지분의 취득하는 시점 별로 계산할 것인지(단계법) 아니면 지배권 획득 시점에 일괄적으로 재인식할 것인지(일괄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

1) 단계법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차액은 지배권 획득일 이전에 단계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각 거래금액과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 및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배권 획득일에 인식되는 영업권은 단계적 취득 시에 투자회사가 각 단계별로 지급한 대가와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금액과의 차이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인식한다. 단, 단계적 취득 시에 각 단계별로 인식된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지배권 획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차액은 투자회사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2) 일괄법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차액은 지배권 획득일 시점에 재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인 종속기업의 장부상 자산·부채는 지배권 획득일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계산하여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새로 인식하고,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후 그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영업권 가액은 지배권 획득일 시점의 투자회사 지분의 공정가치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의 차액으로 재계산된다. 일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권 획득일 이전에 지분의 단계적 취득과정에서 인식한 투자차액은 모두 "0"이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단계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의 지분을 지배권 획득일의 공정가액으로 사업결합대가를 계산한다. 이때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자본변동액은 지배권 획득일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피취득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지배권 획득일에 일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단계적 취득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는 관계기업에 대한 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20에서 ‘중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시 회계처리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41~문단42에 따라 일괄법으로 처리함)

(6) 투자차액의 사후관리

지배권 획득일 이후 투자차액은 투자주식의 처분, 투자차액의 상각 및 손상평가, 환율변동 등을 통해 그 잔액이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즉, 투자차액의 변동은 개별 재무제표 상에 변동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결산 과정에서 연결조정분개를 통해서만 반영할 수 있으므로, 투자차액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의 계정과목별로 지배권 획득일 시점의 발생금액과 지배권 획득일 이후의 변동금액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7) 투자차액의 환산

지배권 획득과 관련하여 산출한 투자차액(공정가치 평가차액 및 영업권)은 피투자회사인 해외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배기업과 중속기업이 대한민국에 위치하여 양자가 모두 그룹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차액은 피투자회사의 통화인 그룹통화로 계산되어지므로 투자차액의 환산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중속기업이 해외에 위치하는 경우 투자차액은 해당 중속기업이 지배기업에 보고하는 통화(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지배기업은 투자차액의 원화환산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결결산을 수행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연결결산 시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자산부채는 연결결산 기말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고 손익항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작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환산차이는 지배기업의 해외사업환산차(대)로 처리한다.

(8) 간주취득일

중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이 해당 중속기업의 결산일과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지배권 획득 시점의 중속기업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식의 실제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연결결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자본 상계절차를 수행한다.

5.2.6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

연결대상 투자회사(혹은 투자회사가 최종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가 연결대상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이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해당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혹은 주식의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때 투자회사지분(혹은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지분 사이에 종속기업순자산에 대한 지분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를 연결재무제표상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회계처리

- 1) 지배기업은 연결대상 회사 투자주식 계정의 변동 내역을 집계하여, 투자주식의 취득 혹은 처분 금액 및 거래주식수와 지분을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2) 간주거래일 시점의 연결대상 피투자회사(혹은 종속기업) 자본 내역을 확정한다.
- 3) 지분을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변동금액 및 지분변동차액을 계산한다.
- 4) 지분변동금액·지분변동차액에 대한 연결조정분개를 수행한다.

(2) 지분변동금액의 계산 및 처리

- 1)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회사지분 (혹은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대해 각각 거래 전 지분가액과 거래 후 지분가액을 비교하여 지분변동금액을 산정한다.
- 2) 간주거래일 현재 해당 피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정가치 평가차액 및 미실현손익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분변동금액을 계산한다. 지분변동금액의 일반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지분변동금액 = 피투자회사 공정가액 x (거래후지분율 - 거래전지분율)]

- 3) 지분변동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투자회사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간주거래일 현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피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상에 표시되어 있는 순자산가액으로 자본의 장부가액과 동일)
- ② 간주거래일 현재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의 잔액(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권획득 시 인식한 공정가치 평가차액의 미상각잔액으로, 공정가치 평가차액의 발생액에서 전 연결결산 시까지 수행된 누적 상각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
- ③ 간주거래일 현재 피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 잔액(연결결산 과정에서 인식된 피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 발생액에서 실현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
- ④ 기타조정금액의 잔액(연결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의 순자산 조정금액의 잔액으로, 이는 개별재무제표에서 파악되지 않았으나 연결결산 과정에서 파악된 순자산의 변동분을 의미)

4) 따라서 지분변동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액이란, 피투자회사의 개별결산 과정에서 인식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연결결산 과정에서 재계산된 연결실체 내에서 간주되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연결용 순자산)을 의미한다. 즉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투자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연결실체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써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3) 지분변동차액의 계산 및 처리

지분거래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의 비지배주주로부터 지분변동금액과 동일한 금액(예 :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처분 할 수도 있겠으나, 지분변동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대가로 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차이금액(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대가의 공정가치)을 자본에 반영하며 지분변동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할 때, 이 차액을 지분변동차액이라 한다. 지분변동차액의 일반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지분변동차액 (추가취득의 경우) = [지분변동금액 - 거래금액]

* 지분변동차액 (일부처분의 경우) = [거래금액 - 지분변동금액]

지배기업은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변동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추가 취득금액 혹은 처분금액)을 비교하여 지분변동차액을 계산한다.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 거래는 지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로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때 발생한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이나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개별회계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투자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인한 발생한 투자차액은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된 금액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개별회계에서 원가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연결조정분개 시 지분변동차액을 구분하여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함)

(4) 개별투자계정 회계처리의 취소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에 대한 연결조정분개 수행 시, 지배기업은 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행한 투자주식 계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배기업은 연결결산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거래로 인한 개별회계처리를 취소하고, 연결결산 관점에서 지분변동차액을 재계산하여 올바른 계정과목 및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5) 간주거래일

투자주식의 추가취득과 일부처분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상 중요한 사항은, 거래와 관련한 지분변동금액과 지분변동차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피투자회사의 연결용 순자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피투자회사의 연결용순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점을 정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주식의 추가취득 혹은 일부처분에 대한 실제 거래일이 연결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일 시점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용순자산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연결결산일에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용 순자산을 계산한다.

5.3 재무제표 환산

5.3.1 외화환산

환산이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해외에 실체를 두고 있는 경우(해외종속기업), 해외종속기업이 작성 및 보고한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시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말 환율, 손익 외 자본 항목은 역사적 환율, 손익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평균환율과 거래일의 환율이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5.3.2 그룹통화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이란 해외종속기업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그룹통화)로 변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외화거래의 환산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발생한 외화 거래내역을 표시통화로 변환하는 절차라면,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은 해외실체가 작성한 외화표시 재무제표 전체를 그룹통화로 환산하는 절차이다.

5.3.3 주요 회계처리

- (1) 지배기업은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기말환율, 월평균환율)을 확정한다.
- (2) 환율의 확정 후 확정된 환율을 이용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환산을 수행한다.
- (3) 환산수행 후 개별재무제표의 외화환산 과정에서 순자산의 환산금액과 자본의 환산금액에 대한 차이는 "해외사업환산대(차)"로 계정처리한다.

5.3.4 환율확정 및 그룹통화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그룹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지배기업은 연결결산에 필요한 환율을 확정한다. 연결결산에 필요한 환율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확정된 환율정보는 모든 종속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결산 수행 이전에 해당 종속기업에 통보한다. 특히, 지배기업 회계 부서 담당자는 해외종속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통화와 그룹통화에 대한 환율을 누락 없이 확정하여야 한다.

- ① 결산기말 환율: 연결 결산기말 현재의 환율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외화 단위를 기준으로 그룹통화로 표시한다.
- ② 누계평균환율: 회계연도 초부터 당 연결결산 기말까지의 평균환율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외화 단위를 기준으로 그룹통화로 표시한다.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시 자산과 부채는 결산기말 환율로, 손익 외 자본항목은 역사적환율(=해당 자본거래 발생일), 손익항목에 대한 환산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다만, 연결결산기의 환율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항목에 대해 결산기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 외화환산 과정에서 순자산의 그룹통화 환산액과 자본의 그룹통화 환산액의 차이는 "외환차이누계액(해외사업환산대(차))"으로 계정처리한다. 따라서,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대(차)은 다음의 일반적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 * 해외사업환산차 [원화환산 자본가액 - (원화환산 자산가액 - 원화환산 부채가액)]
- * 해외사업환산대 [(원화환산 자산가액 - 원화환산 부채가액) - 원화환산 자본가액]

5.4 별도재무제표

5.4.1 정의 및 범위

별도재무제표란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는 법규 등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또는 작성 면제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선택할 경우에 작성한다.

5.4.2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른 방법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건전성 측면 및 보험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원가법을 적용하되, 특수목적기업인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배당금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4.3 종속기업이 없는 기업의 재무제표 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종속기업이 없는 기업)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 작성한다.

5.5 연결재무제표 공시 사항

연결주식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로 정보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다. 따라서, 연결주식은 지배기업의 회계정책(회사 GAAP) 및 회계지침 혹은 결산 준수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지배기업은 적용한 GAAP을 고려하여, 당 결산기에 작성할 주식항목을 확정된 후 종속기업에 통보한다.
- 연결주식 작성에 필요한 종속기업의 개별주식 정보가 개별회사로부터 모두 집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연결주식을 작성한다. 연결주식은 지배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 개별주식 정보를 단순 합산하는 항목, 그리고 개별주식의 합산 후 조정하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 작성된 연결주식이 연결재무제표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연결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정리한 내역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연결주식의 작성방식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배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

회사의 개요, 중요한 회계정책 및 주당이익 계산 등 지배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 가능한 유형

2) 개별주식 정보를 단순 합산하는 항목

금융비용, 관계기업 투자내역 등 연결결산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개별회사의 주식정보를 단순히 합산하여 작성 가능한 유형

3) 개별주식의 합산 후 조정하는 항목

유형자산변동내역, 무형자산변동내역, 차입금내역 등 연결결산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므로, 개별회사의 주식정보를 합산한 후 조정하여 작성 가능한 유형

개별주식의 합산 후 조정하는 항목의 주식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 본문의 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기업 연결회계 부서 담당자는 연결주식 작성 후 연결주식의 합계액이 연결재무제표 본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예: 유형자산변동내역,

무형자산변동내역, 차입금내역 등).

- 연결결산 과정에서 파악되는 추가적인 정보는 연결조정분개, 연결범위의 변동 및 환율변동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결주식이 연결재무제표 본문의 구성내역을 표시하거나(차입금내역 등) 계정과목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경우(예: 유형자산변동내역, 무형자산변동내역), 지배기업은 연결주식 작성시에 연결조정분개로 인해 변동되는 계정과목의 증감액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연결결산 과정에서의 내부거래상계, 미실현손익 계산 및 제거 등의 절차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본문의 계정과목 금액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식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과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 연결주식이 계정과목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경우(예: 유형자산변동내역, 무형자산변동내역), 지배기업은 당 연결결산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연결범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최초 지배권 획득 혹은 연결범위제외)에는 전 연결결산기말의 연결주식금액과 당 연결결산 기초의 합산된 주식금액이 불일치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결범위에서 추가 혹은 제외된 회사의 전 연결결산기말의 개별주식금액을 “연결범위변동”의 항목으로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유형자산을 보유한 종속기업이 당 연결결산기 연결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결주식의 기초잔액을 전 연결결산기 연결주식의 기말잔액으로 표시하고, 연결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이 보유한 전 연결결산기말 현재의 개별 유형자산 금액을 당 연결주식의 “연결범위변동” 항목으로 차감한다. 최초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해당 회사의 당 연결결산기초의 개별 유형자산 금액을 “연결범위변동” 항목으로 가산한다.
- 연결주식이 계정과목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경우(예: 유형자산변동내역, 무형자산변동내역)로 해외 종속기업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외화기준으로 입수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당 연결결산기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연결주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별주식의 외화표시 기초잔액, 당기변동액 및 기말잔액에 대해서는 각각 기초환율, 연결결산기 평균환율,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므로 환산된 기초잔액과 당기 변동액의 합계액이 환산된 기말잔액과 상이하게 되므로 지배기업은 외화환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를 “환율변동효과”로 하여 연결주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절. 외화보험과 환율변동효과

6.1 개요

외화보험은 달러, 유로 등 해당 외화로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금 또한 외화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의미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외화거래에 대해 기능통화로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고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의미한다.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및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을 포함한다.

6.2 화폐성 및 비화폐성의 구분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화폐성항목의 본질적인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이며,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여 외화를 환산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화폐성항목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 모두에 적용되며, 잔여보장부채의 측정에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6.3 외화보험계약의 외화환산

6.3.1 최초인식

기능통화로 달러, 유로 등 외화로 발행된 외화보험계약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거래일의 환율은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사용하며,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3.2 장부금액 변동분의 외화환산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의 환율차이는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다만,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 하기로 한 경우(문단 88(2)) 혹은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 하기로 한 경우(문단89(2))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6.3.3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②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③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화보험계약의 각 구성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화폐성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외화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에 관련된 거래요소별 적용환율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외화 거래일의 환율 적용과 관련된 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1호의 요구사항 범위 내에서 각사의 회계정책에 따른다.

표84 | 회계모형 별 적용환율 사례

회계모형	거래 유형 (예시)	적용 환율 (예시)
일반모형	수익성그룹에 추가된 신계약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및 CSM의 신계약 유입효과	- 최초인식일의 현물환율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이행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유입	- 유출 또는 유입일의 현물환율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CSM 이자부리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CSM조정-미래서비스와 연관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CSM조정-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과 연관된 조정(VFA만 해당)	- 조정이 인식된 때의 마감환율 - 적절한 평균환율^{주1}
	CSM 상각	- 마감환율^{주2}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주3}
	기타 B121에 따른 보험수익	- 보험수익의 최초인식일의 현물환율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마감일의 자산, 부채 환산	마감환율
	손실회수요소 인식으로 인한 수익인식	수익 인식일의 현물환율
	CSM조정-손실회수요소 환입	환입 인식일의 현물환율
보험료배분 접근법	보험료	- 보험료 수령일의 현물환율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최초인식시점 또는 그 후에 유출된 보험취득현금흐름	- 보험취득현금흐름 유출일의 현물환율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기존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또는 기타 자산계정의 제거	제거일의 현물환율
	금융요소의 조정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주4}
	투자요소의 유출 혹은 이전	- 지급일의 현물환율 - 보고기간의 평균환율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주5}
	수익의 인식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주6}

주1 공정가치가 기간에 걸쳐 변동했다고 고려 시

주2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회사가 거래일을 보고기간 말로 고려 시

주3 CSM 상각이 보고기간 중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라고 고려 시

주4 금융요소가 시간가치를 나타내고 보고기간동안 발생한다고 본다면, 평균환율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주5 보험취득현금흐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각 된다면,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주6 보험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되므로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사례57 | 외화보험계약의 환율변동효과 산출 사례

가정

- 보장기간: 발생시점부터 3년간
- 최초인식일 할인율: 10%
- 보험계약마진: 매년 균등상각(33%)
- 보험료: 일시납을 가정하며,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150원(최초 계약시 수취)
- 보험금: 보험요소 및 투자요소 보험금은 매년 각각 30원 및 15원 발생을 가정하며, 1년도 실제투자요소 보험금은 16원 발생(실제보험요소 보험금은 15원으로 동일)

거래통화는 달러이며, 각 기준일별 환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환율(₩/\$)
최초측정일	1,100
실제현금흐름 거래일	1,200
1년도 평균환율	1,250
1년도 기말환율	1,400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위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아래와 같다.

(통화: \$)				
구 분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①)	(150)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②)	112	78	41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①+②)	(38)	78	4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	9	5	—
이행현금흐름	(26)	87	45	—
계약서비스마진	26			

1차연도의 이행현금흐름 변동 원인은 아래와 같다.

(통화: \$)				
구 분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 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 마진	합계
기초 보험계약순자산(부채)	—	—	—	—
보험서비스결과	(37)	8	16	(13)
미래 서비스 관련:신계약	(38)	12	26	—

현행 서비스 관련	-	(4)	(9) ^{주3}	(13)
현행 서비스 관련-CSM조정	1 ^{주1}	-	(1)	-
과거 서비스 관련	-	-	-	-
보험금융비용(수익)	11 ^{주2}	-	2 ^{주4}	13
환율변동효과	-	-	-	-
현금흐름	104	-	-	104
기말 보험계약순자산(부채)	78	8	18	104

주1 투자요소 보험금의 차이(실제현금흐름-예상현금흐름)로 계산되며 16 - 15로 산출된다

주2 최초측정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인 37원에 일시납 보험료인 150원을 차감한 잔액(-37+150)에 10%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주3 최초측정 CSM에 CSM조정((-1 + 3)후 상각률(33%)를 곱하여 산출된다

주4 최초측정 CSM에 10%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관련된 각 거래요소별 적용환율 및 기말환산효과는 아래와 같다.

(통화:₩/\$)

구 분	적용환율 기준	외화금액	적용환율 (원화)	기말환산 (원화)	환산차이
기초 보험계약순자산(부채)	-	-	-	-	-
보험서비스결과					
미래 서비스 관련:신계약	최초인식일	(38)	(41,901)	(53,328)	(11,427)
실제보험료	거래일	(150)	(165,000)	n/a	n/a
예상보험료	예상거래일	150	165,000	210,000	45,000 ^{주2}
현행 서비스 관련					
보험금-보험요소-실제CF	거래일	30	36,000	n/a	n/a
보험금-보험요소-예상CF	평균환율	(30)	(37,500)	(42,000)	(4,500) ^{주2}
보험금-투자요소-실제CF	거래일	16	19,200	n/a	n/a
보험금-투자요소-예상CF	평균환율	(15)	(18,750)	(21,000)	(2,250) ^{주2}
과거 서비스 관련	-	-	-	-	-
보험금융비용(수익)	평균환율	11	13,989	15,667	1,679
환율변동효과					
현금흐름					
보험료	거래일	150	165,000	n/a	n/a
보험금-보험요소	평균환율	(30)	(36,000)	n/a	n/a
보험금-투자요소	거래일	(16)	(19,200)	n/a	n/a
기말 보험계약순자산(부채)		78	80,838	109,339	28,501 ^{주1}

주1 환산차이는 각 구성요소별 환산차이의 합계액((11,427)+45,000+(4,500)+ (2,250)+ 1,679)) 혹은 '기말환산환율적용' 기말 보험계약순자산(부채) 109,339원과 '거래요소별 적용환율' 기말 보험계약순자산(부채) 80,838원으로 산출된다

주2 해당 조정은 예상현금흐름의 예상발생일환율과 기말환율의 차이 조정에 해당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환산차이 또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며,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다.

(통화: ₩)

구 분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 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 마진	합계
기초 보험계약순자산(부채)	—	—	—	—
1. 보험서비스결과	(42,951)	8,982	16,544	(17,425)
(1) 미래 서비스 관련:신계약	(41,901)	13,678	28,223	—
(2) 현행 서비스 관련	(1,500) ^{주1}	(4,696)	(11,230)	(17,425)
현행 서비스 관련—CSM조정	450 ^{주2}	—	450	—
(3) 과거 서비스 관련	—	—	—	—
2. 보험금융비용(수익)	13,989	—	3,207	17,196
3. 환율변동효과	28,501	3,167	5,785	37,452
4. 현금흐름	109,800	—	—	109,800
기말 보험계약순자산(부채)	109,339	12,149	25,535	147,023

주1 보험요소와 관련된 실제보험금 36,000원과 예상보험금(37,500원)의 합계로 산출된다

주2 투자요소와 관련된 실제보험금 19,200원과 예상보험금(18,750원)의 합계로 산출된다

상기의 변동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통화: ₩)

구 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합계
기초 보험계약순자산(부채)	—	—	—
보험수익	(53,425) ^{주1}	—	(53,425)
보험서비스비용	—	36,000 ^{주2}	36,000
투자요소	(19,200)	19,200	—
보험금융수익(비용)	17,196 ^{주3}	—	17,196
환율변동효과	37,352	—	37,352
현금흐름	165,000	(55,200)	109,800
기말 보험계약순자산(부채)	147,023	—	147,023

주1 당기 예상보험금 37,500원(30\$:평균환율)+보험계약마진 상각액 11,230원(9\$:평균환율)+위험조정 상각액 4,696원(4\$:평균환율)의 합계

주2 당기 실제보험금 36,000원(30\$:거래일환율)

주3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관련된 금융손익 13,989원(11\$:평균환율)+보험계약마진에 부러진 금융비용 3,207원(3\$:평균환율)의 합계

제7절. 계약자배당

7.1 개요

7.1.1 계약자배당의 의의

보험회사의 잉여금 발생원인은 경영을 열심히 한 결과로 보험료를 적정하게 잘 운영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보험회사의 잉여금 발생은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잉여금 중 일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기업과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를 막론하고 잉여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잉여금 또는 이익의 대부분은 보험계약(무배당보험 제외)의 계약자에게 배분되는데, 이 분배금을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배당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배당금과 구별하여 계약자배당금이라 부른다.

7.1.2 잉여금의 발생 원인

보험료는 그 산출기초의 예정과 실제가 일치하면 보험기간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 보험료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즉, 수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순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는 모두 예정된 바와 같이 사망의 발생에 따른 위험보험금의 지급에 충당시키고, 저축보험료도 예정된 바와 같이 전년도부터 이월된 보험료적립금에 누적하여 운용을 하고, 그 결과 발생되는 운용수익을 더하여 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이 된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도 예정된 바와 같이 모두 사업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과부족이 없고 보험회사의 수지는 이익도 손실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산정시 적용한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이 사망률의 변화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율이나 사업비율의 변화는 피할수 없어 실제와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경영의 안정목적을 위해서 산출기초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차이는 잉여 즉, 이익으로 나타난다.

7.1.3 잉여금의 발생 원천

이들 잉여금 즉, 이익금의 발생원천에는 계산기초에 따라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등이 있다.

(1) 위험률차손익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을 말한다. 사망보험 등에서는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보다 낮으면 사차익이 발생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차손이 생긴다.

(2) 이자율차손익

예정이율과 실제이율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을 말한다. 실제의 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으면 이차익이 발생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차손이 생긴다.

(3) 사업비차손익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을 말한다.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부가보험료 수입)보다 낮으면 비차익이 발생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차손이 발생된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가 결산할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잉여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보험료는 개략적으로 산정된 것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정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잉여금은 일반기업의 이윤과 비교할 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잉여금 즉, 이익금의 발생원천은 개략적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있기 때문에 정산에 의한 잉여금의 일정부분은 보험료의 부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생명보험 상품 및 손해보험의 장기상품의 경우 상품별 약관에 유배당, 무배당 여부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다.

7.2 손익분석

7.2.1 손익분석의 개념

손익분석은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하에 손익계산서상 손익을 보험손익, 투자손익, 기타손익으로 구분하여 손익금액과 원인규모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3이원 방식에 따른 이원분석기준을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체계에서 손익분석기준으로 대체하였다.)

7.2.2 손익분석의 목적

손익분석의 목적은 보험회사 경영성과인 잉여금 변동내용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료산출기초자료와 대비분석하여, 잉여금의 변동내용 및 발생원천을 파악하고, 계약자배당·보험료수준의 적정성 검토 등 정책입안 및 집행의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한편 계약자 및 주주간의 손익배분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손익분석은 연결기준손익으로 하며 실무적인 절차 수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계정, 특별계정별(펀드별)로 손익을 구분하여야 한다.
- ② 각 계정별로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익 및 관계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지분법손익을 구분하고, 이는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③ 종속회사에서 발생하는 손익(종속자회사의 지배회사 지분상당액 및 지분법 손익)에서 계약자배당재원은 연결재무제표상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반영한다.

7.2.3 손익분석 방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4조 및 [별표16] 손익분석기준 (2022.11월 현재¹⁾)

(1) 분석대상손익

분석대상 손익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퇴직보험 포함)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2) 손익의 구분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계정별 손익은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책임준비금해당액에 대한 상품별 손익(보험부문손익 + 투자부문손익 + 기타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하며,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상품별 손익에 구분 표시한다.

① 보험부문손익 : 보험부문수익 - 위험관련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할인료

단, 위험관련 지급보험금은 보증관련 지급보험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보증관련 지급보험금은 보증비용을 부가하는 계약에서 보증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된 보험금을 의미한다.)

1) 2022.11월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시행에 맞추어 법규 및 기준 정비가 진행 중이므로, 기존의 기준을 서술하였다.

1) 보험부문수익 : 보험료수익 - (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책임준비금이자)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단, 손익분석을 위한 기준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책임준비금증가액 = 기말책임준비금 - 기초책임준비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 책임준비금은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하고 보증준비금 및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은 제외하되, 기말책임준비금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연금개시 등에 따른 계정간 이체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후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증가액을 산출)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한다.

·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은 보증비용을 부가하는 계약에서 보증과 관련하여 특별계정 이체금액 이상으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2. 기타지급금 : 보험계약 관련 총지급금에서 위험관련지급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보증관련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지급금

· 해지환급금은 효력상실환급금을 포함하고 보증관련 지급보험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책임준비금이자 : 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증가액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위험발생당시 기준책임준비금 + 기타지급금 - [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 (1 + 적립이율) - 전보험연도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 이자관련기준책임준비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서 위험관련지급준비금, 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 및 재보험료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기말 이자관련책임준비금의 경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기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외한다.

· 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은 예정위험률·예정이율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기초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 보험료적립금 산출시 사용한 기초율을 적용하며,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보험은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 특별계정의 위험관련 수수료, 사업비관련 수수료 등

2) 실제사업비 : [별표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보험상품별로 산출한 실제사업비

3) 보험부문손익의 세부항목으로서 다음을 산출한다.(위험보험료 및 순위험보험금은 원수기준으로 산출)

1. 재보험관련손익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재보험료적립금전입액(재보험자산 증가액 포함)

2. 위험보험료 = 순보험료 -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1+적립이율) - 전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예정위험률·예정이율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기초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경우 보험료적립금 산출시 사용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위험보험료를 산출하며,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보험은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순위험보험금 = 위험관련지급보험금-위험관련준비금+납입면제보험료

· 위험관련준비금 =기초 위험관련지급준비금-기말 위험관련지급준비금+위험발생당시 기준책임준비금

· 납입면제보험료는 실제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해당 금액을 수입보험료정리 사항으로 처리한다.

②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단, 손익분석을 위한 투자손익 산정시 변액보험 등 운용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상품에 해당되는 재산관리비는 제외한다.

1) 투자손익 배분기준

투자손익을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고,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2)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

1. 자본계정운용손익은 다음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처리한다.

$$\bullet \text{ 자본계정운용손익} = \text{투자손익} \times (\text{자본계정금액}^{\text{주1}} - \text{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text{주2}})^{\text{주3}} / (\text{자산총계}^{\text{주4}} - \text{미상각신계약비})^{\text{주3}}$$

주1 자본계정금액은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계정금액 -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이 부치인 경우는 자본계정운용손익을 "0"으로 처리한다

주2 재평가적립금처리후잔여액은 자본계정중 '99.3.31이전 자산재평가실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의 잔여액으로 한다

주3 위 식의 각 항목은 다음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Sigma(\text{매전월말금액} + \text{매당월말금액})] / 24$$

주4 자산총계는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약자지분조정 중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의 결산월의 당월말 금액은 전월말 금액으로 한다.

2. 책임준비금해당투자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보험상품별로 배분하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배분한다.

$$\bullet \text{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text{투자손익잔여액} \times \text{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 / \text{평균책임준비금}$$

$$\ast \text{ 평균책임준비금} = (\text{기초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text{주5}} + \text{기말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text{주5}}) / (2 + \text{평균적립이율}^{\text{주6}})$$

주5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은 제3호의 가목의 (1)의 (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료적립금 및 출제보험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주6 평균적립이율 = (기초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 적수 + 기말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 적수) / (기초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 + 기말 투자손익관련책임준비금)

$$\ast \text{ 책임준비금 적수} = \text{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한 이율} \times \text{책임준비금}$$

다만, 책임준비금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각신계약비에 적용하는 이율은 해당 책임준비금의 적립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

1. 투자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배분한다.

- 적용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익은 보유계약^{주7}에 전액 귀속한다.
-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익은 투자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에 따라 보유계약, 신계약^{주8}배당보험, 신계약무배당보험, 신계약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계약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및 신규조정 자본계정^{주9}에 배분한다.

^{주7}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8}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주9}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적용일 이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로 조성된 자본을 말한다.

2. 투자재원은 투자손익 배분대상별로 매 회계연도의 보험손익·기타손익, 직전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투자손익·재투자자금(자산매각을 통해 유입된 금액), 유상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합산하여 산출^{주10}하며, 투자재원 구성비는 전체 투자재원 합계액에서 투자손익 배분대상별 투자재원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10}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비용 등(책임준비금 전입액, 이연신계약비, 대손상각비 등)은 투자재원에서 제외

3. 보유계약에 배분된 투자손익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의 투자손익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과 보유계약의 배당보험(상품별)·무배당보험(상품별)·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배분한다.

4. 신계약 배당보험 및 신계약 무배당보험에 배분된 투자손익은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또는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보험상품별로 배분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배분된 투자손익은 총액으로 산출하여 신계약 배당보험의 계약자지분에 직접 귀속한다.

4) 투자부문손익의 세부항목으로서 다음을 산출한다.

1. 책임준비금 해당 투자부문손익 = 투자손익 - 자본계정운용손익 - 책임준비금이자
2. 경상투자손익 : 투자영업수익중 경상적 부분(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수수료수익, 금전신탁이익, 대손충당금환입, 신탁보수, 기타투자수익 등의 경상적 부분) - 투자영업비용중 경상적 부분(재산관리비, 금전신탁손실,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부동산감가상각비, 기타투자비용 등의 경상적 부분)

3. 비경상투자손익 : 투자손익 - 경상투자손익

③ 기타손익 : 운용수수료관련수익 및 보증수수료관련수익 - 운용수수료관련비용 및 보증수수료관련비용 + 기타 영업외 수익 - 기타 영업외 비용 - 특별계정수입(지급)수수료 중 보험관련항목 - 운용수수료관련재산관리비 - 보증준비금증감 - 보증관련지급보험금 - 보증관련책임준비금전입액 -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 증감 + 해지당시기준책임준비금 - 해지환급금 등

· 보증수수료가 보험료수익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보험료수익에서 차감하고 보증수수료관련수익에 합산한다.

· 기타 영업외 수익·비용 : 영업외 수익·비용에서 운용수수료관련 수익비용과 보증수수료관련 수익비용을 차감

1) 기타손익 배분기준

기타손익은 발생원천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직접 배분하고 발생원천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자산운용관련손익은 평균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 등으로 부과받은 금전상의 제재금과 기부금 등의 비용은 자본계정운용손익에서 차감한다.

(4) 기 타

1) 지급준비금중 비실명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한 과징금은 준비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며 기타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2)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수리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명세표 하단에 주석사항으로 명기한다.

3) 손익분석은 매월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

4)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투자손익 배분과 관련하여 손익분석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별 적용계획서에 따라 적용하고, 회계연도말부터 2월 이내에 상세 배분내역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 칙

1) 신계약비를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손실은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다. 다만, '98년 3월에 보험료적립금이 해지환급금식을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각 보험상품별로 배분한 특별손실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은 배당보험손익으로 처리한다.

2) '98.3.31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종전 "생명보험회사의 이원분석지침"에 의해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이 이루어졌던 경우, 무배당보험의 준비금 손익조정액(무배당보험의 실제책임준비금을 기준책임준비금보다 더 적립한 회사의 경우에 발생하는 준비금 관계손익을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의 기타손익으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함)은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직접 배부하여 조정한다.

3) '03.4.1.이후 법 제107조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에 의한 금액(2가지 이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작은 금액으로 한다)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표에서 "초과운용자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5호제나목(2) 1) 및 2)의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산식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 자본계정운용손익 = (투자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자본계정금액-재평가적립금처리 후잔여액)/(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초과운용자산)

- 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초과운용자산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평균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책임준비금^{주11})

- 무배당보험상품별 투자손익 = (투자손익-자본계정운용손익-배당보험상품 투자손익)×보험상품별 평균책임준비금/무배당보험상품 평균책임준비금

^{주11} 초과운용자산에 해당하는 평균책임준비금은 '평균책임준비금×초과운용자산/(자산총계-미상각신계약비-자본계정금액)'에 따라 계산하되, 각 항목의 계산방법은 자본계정운용손익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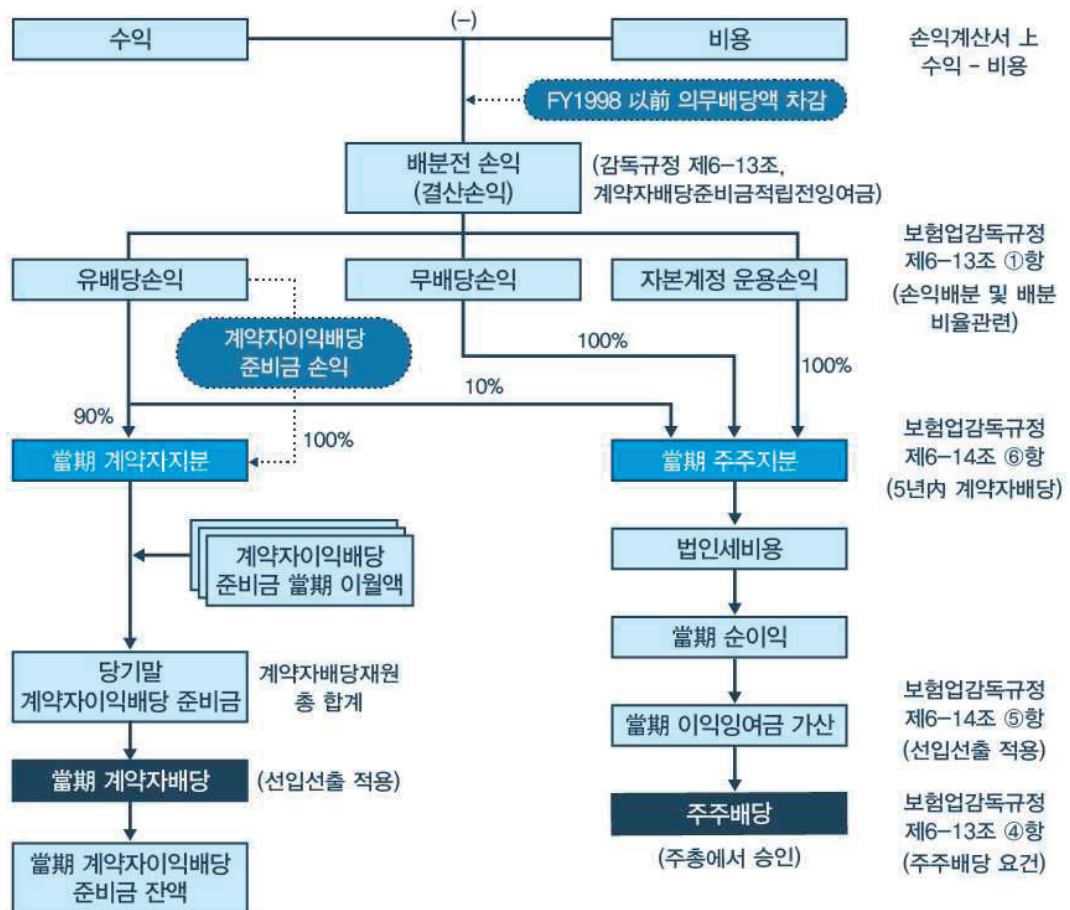
4)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은 투자손익으로 분류한다.

7.2.4 계약자지분 배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은 위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6] 손익분석기준에 따라 자본계정운용손익 및 책임준비금해당손익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해당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된다.

그림16 | 유배당손익 배분 산출흐름도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흐름도



- 주 1. 유배당보험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이월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
 2.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시 당기 계약자지분보다 전기이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우선 사용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책임준비금해당손익 중 무배당보험손익은 전액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책임준비금해당손익 중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은 전액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책임준비금해당손익 중 유배당보험손익은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지분으로 할 수 있다.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

7.3 계약자배당관련 보험계약부채

7.3.1 보험사건의 정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 잉여금을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한 후, 계약자지분으로 배분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로 구분하기 위해 먼저 계약자배당관련 보험사건의 정의가 필요하다.

표85 | 계약자배당 관련한 책임준비금

구 분	설 명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에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에도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 100분의 30 이내에서 적립하는 금액
계약자배당준비금	①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②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소멸계약률)을 곱한 금액

계약자배당 관련 보험사건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사건 중 어느 단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즉, 보험사건의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의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1) 계약자지분 확정

당기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배분되어 계약자지분이 확정되며, 해당 금액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차기사업연도 선적립배당으로 적립한다.

계약자지분 총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보험사건의 발생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계약자배당관련 준비금은 전액 발생사고부채로 적립한다.

(2) 계약별 배당금액 확정

기시에 선적립배당으로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당기에 1년 이상 유지되며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 계약별로 배당금액이 발생한다. 발생한 배당금액은 선적립배당준비금에서 차감되어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며, 이 시점에 계약별 배당금액이 확정된다. 기시 선적립배당준비금 중 당기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다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환된다.

계약별 배당이 확정되는 시점을 보험사건의 발생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하며, 이외 현행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한다.

(3) 지급금액 확정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계약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또는 연금액에 가산되어 지급된다. 연금액에 가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현금지급되는 계약은 계약별 배당금액 확정 시, 지급금액이 확정되므로 보험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구분할 수 있다.

1. 배당재원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계약: 일시금 지급 요청 또는 연금지급기일 도래
2. 이 외의 계약: 계약자별 배당금액 확정 시점(위의 (2)시점과 동일)

지급금액 확정시점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한다면, 배당재원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계약의 경우 계약별 배당금액이 확정되더라도 아직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자배당준비금 금액을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하고, 이 외의 계약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별 배당금액 확정 시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7 | 배당확정과 지급준비에 따른 부채계정

① 계약자지분 확정	② 계약별 배당금액 확정	③ 지급금액 확정
● 예상 계약자배당 최선추정부채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표86 | 계약자배당관련 책임준비금 표시

보험 사건	예상계약자배당 최선추정부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선적립	기발생
①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발생사고부채	발생사고부채
②	잔여보장부채	잔여보장부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③	잔여보장부채	잔여보장부채	잔여보장부채	연금전환 가능 계약: 잔여보장부채 이외: 발생사고부채

7.3.2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

(1) 예상현금흐름 추정

2023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시행시점에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 배당은 기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의 손익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기준의 손익 결산과 손익 배분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보험회계처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예상 배당금액을 추정하여 잔여보장부채로 적립해야 한다. 예상 배당금액 추정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기준에 따른 예상 손익이 아닌 기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 기준에 따른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및 위험률차손익을 추정한다. 예상현금흐름은 현행 기준 이자율차손익, 예상사업비차손익, 예상위험률차손익을 추정하되, 현행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100분의 90이상을 예상현금흐름으로 반영하고 이원별 예상손익 합계가 부(-)의 금액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을 한도로 반영할 수 있다.

표87 | 장래발생 이원 추정

구 분	설 명
예상이자율차손익	투자자산의 운용결과로 획득할 투자수익 ^{주1} 에서 자산운용에 필요한 각종 투자비용을 차감하고 준비금의 예상부담이자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손익 주1 위험중립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중립효과 고려
예상사업비차손익	실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비와 상품 개발시 예정한 예정사업비 간의 차이로 산출한 예상손익
예상위험률차손익	실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보험금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보험금의 차이로 산출한 예상손익

예상 배당현금흐름 관련 유배당손익을 추정할 때 유배당손익의 귀속시점 별 현금흐름이 아닌

배당확정시점 별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배당확정시점 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경우 확정률 등의 가정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한다. 유배당손익 배분 이후 이익배당준비금과 선적립 배당준비금의 예상 금액 일부가 잔여보장부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이익배당준비금과 선적립 배당준비금 적립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의 배당보험손익의 예상실제차이를 고려하여 적립한다.

(2)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 변동분석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는 배당 외 최선추정부채와 동일하게 예상미래현금흐름의 현재이므로 기초부터 기말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한다.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와 배당 외 최선추정부채는 관련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와 배당 외 최선추정부채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와 배당 외 최선추정부채를 합산 산출 및 분석하는 경우에도 기초에 예상했던 당기 예상배당현금흐름과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배당현금흐름(배당관련 준비금의 변동 고려 후)은 보험금융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표88 | 배당관련 현금흐름 회계처리

변 동 요 인	설 명	회 계 처 리
예상배당현금흐름	기초에 예상한 유배당보험의 예상손익배분결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분될 것으로 예상한 금액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실제배당현금흐름 (배당관련 준비금의 변동 고려)	당기 실제 유배당보험의 손익배분결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분된 금액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화폐의 시간가치	예상배당 최선추정부채를 할인한 효과의 Unwinding Effect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공시이율차이	기초에 예상한 공시이율 ^{주1} 과 실제 공시이율의 차이로 인한 최선추정부채의 변동금액 ^{주1} 위험중립가정효과를 고려하고 당기분 차이와 미래분 차이를 모두 고려한다	보험금융손익
잔존계약차	기초에 예상한 기말 물량과 실제 물량의 차이로 인한 최선추정부채의 변동금액	보험금융손익
계리적 가정 변경	손해율 및 해지율 등의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인한 최선추정부채의 변동금액	보험금융손익
금융위험 가정 변경	할인율 및 공시이율 등의 금융위험 가정 변경으로 인한 최선추정부채의 변동금액	보험금융손익 (기타포괄손익)

7.3.3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유배당상품의 계약자지분에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한 후에도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별로 배당할 금액이 확정되는 확정배당준비금인 반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계약자별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업법시행령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의 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에 따라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동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 및 당기에 적립할 금액은 5년 내의 회계연도에 배당상품 결손을 보전하거나, 주주가 배당보험(유배당상품)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이 있는 경우 주주가 보전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지분에 전입하고, 잔여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동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발생하는 회계차이(이익잉여금차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계약자배당 관련 보험사건의 정의에 따라 잔여보장부채 혹은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계약자배당 관련 보험사건을 1)계약자지분 확정 2)계약별 배당금액 확정 3)지급금액 확정 중 1)계약자지분 확정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시점으로 판단하는 경우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유배당이익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변동은 금융위험의 변동으로 보아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당기 변동분은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한다.

7.3.4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자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회사는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연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하며, 이 산출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합산하여

적립한다.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률, 계약소멸률 등 계리적가정을 적용하여 미래 지급시점별 예상 배당 지급금을 산출한 후, 예상 배당지급금의 현가로 산출할 수 있다.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소멸계약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배당 관련 보험사건의 정의에 따라 잔여보장부채 혹은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계약자배당 관련 보험사건을 ① 계약자지분 확정 ② 계약별 배당금액 확정 ③ 지급금액 확정으로 구분하여, 계약자지분 확정 시점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전액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계약별 배당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별 배당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하나,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차기에 계약별 배당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연금재원으로 전환가능한 계약은 아직 연금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외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한다.

사례58 | 계약자배당 최선추정부채와 계약자배당준비금

가정

- 배당금을 연금재원으로 전환 가능한 계약
- 기시 계약자배당 최선추정부채^{주1}: 1,000원
- 기말 계약자배당 최선추정부채: 700원
- 당기 예상 배당금액: 300원

^{주1} 계약자배당 최선추정부채: 미래에 발생할 배당손익을 예상한 최선추정부채

- 기시 계약자배당준비금: 1,000원(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900, 선적립 배당준비금 100)
- 기말 계약자배당준비금: 1,500원(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1,300, 선적립 배당준비금 200)
- 당기 배당금 지급금액 200원

- 당기 계약별 확정된 배당금액 600원
- 당기 선적립 배당준비금 적립금액 100원
- 기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000원
- 기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500원

(1) 계약자지분 확정 시점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전체 금액을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차) 잔여보장BEL_예상배당	300 / 대)	발생사고BEL_계약자배당준비금	500
보험금용손익_배당BEL	900	발생사고BEL_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500
		현금	200

(2) 계약별 배당금액 확정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선적립 배당준비금을 잔여보장부채로,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한다.

차) 잔여보장BEL_예상배당	300 / 대)	잔여보장BEL_계약자배당준비금	100
보험금용손익_배당BEL	900	발생사고BEL_계약자배당준비금	400
		잔여보장BEL_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500
		현금	200

(3) 지급금액 확정 시점을 보험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 전체 금액을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한다.

차) 잔여보장BEL_예상배당	300 / 대)	잔여보장BEL_계약자배당준비금	100
보험금용손익_배당BEL	900	잔여보장BEL_계약자배당준비금	400
		잔여보장BEL_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500
		현금	200

제8절. 지분법회계

8.1 적용 범위

지분법 회계처리는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즉 관계기업(이는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님)에 적용된다. 그러나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또는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은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1) 유의적인 영향력

투자자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로 투자자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자 외의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사례59 |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준 지분율에 대한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법의 차이

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타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분율은 20% 이상이다. 하지만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타회사의 주식을 별도 승인없이 지분율 15% 초과를 취득할 수는 없기에 기존 기업회계기준 실무의견서상 보험사가 타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을 15%로 적용하고 있었다.

사례60 | 수익증권(사모펀드) 지분법 적용 여부

사모펀드의 경우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운용사에 대한 운용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수익증권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 하지 않는다.

유의적 영향력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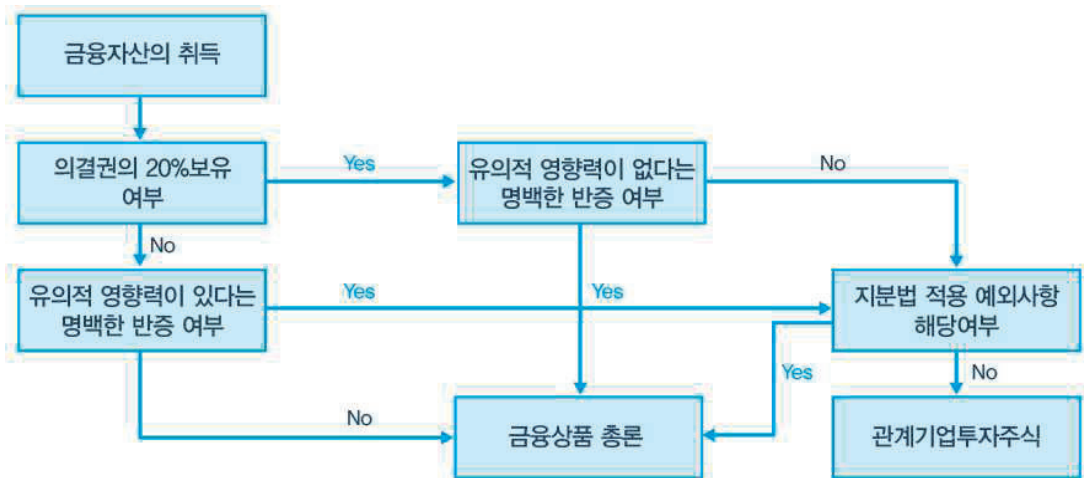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③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또한 회사는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해당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며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상실될 수 있으며 소유지분율의 변동이 없어도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합의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분법 회계처리 흐름도



(2)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1) 투자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2)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면제 되는 경우

3)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투자자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② 투자자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③ 투자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④ 투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8.2 지분법 회계처리

(1) 취득시

지분법은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에 원가(취득시점의 공정가치와 취득부대비용의 합계)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한다.

사례61 | 관계기업 취득시 (지분법)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00 / 대) 현금

100

관계기업 투자는 관계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한다.

또한,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관계기업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투자자는 취득 후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62 | 영업권 인식 및 지분법 이익 조정

A사는 20x1년 1월 1일 B사 주식 40%를 500,000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으며, 20x1년 초 현재 B사 건물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50,000원 초과하고 그 이외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20x1년 초 현재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0x1년 초 B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은 1,000,000원이며, 20x1년 B사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원이다.

20x1년 초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주1} / 대) 현금 500,000

^{주1} 영업권 : $500,000 - (1,000,000 + 500,000) * 40\% = 80,000$

20x1년 말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8,000^{주2} / 대) 지분법 이익 38,000

^{주2} $100,000 * 40\% - 50,000 * 1/10 * 40\% = 38,000$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투자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투자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한다. 이 경우 영업권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영업권 = 추가 취득분의 공정가치 +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지분의 추가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 - 추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공정가치

사례63 | 단계적 취득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시

20x1년 1월 1일 A사는 B사 지분의 10%를 1,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x2년 1월 1일 B사 지분의 10%를 1,200,000원에 추가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20x1년 취득한 지분의 20x1년 말 및 20x2년 1월 1일 현재 공정가치는 1,100,000원이며, 추가취득일 현재 B사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00,000원으로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20x1년 및 20x2년의 B사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0원과 800,000원이다.

(1) 최초취득

20x1년 1월 1일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1,000,000 / 대) 현금 1,000,000

(2) 유가증권 평가

20x1년 12월 31일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100,000 / 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100,000

(3) 추가취득

20x2년 1월 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300,000 / 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1,100,000
현금 1,200,000

주1 영업권 = 2,300,000 - (10,000,000 * 20%) = 300,000

또한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후에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투자차액(영업권)은 별도로 계산한다.

사례64 |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중 추가 취득

20x1년 1월 1일 A사는 B사 지분의 20%를 2,000,000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였으며, 20x2년 1월 1일 B사 지분의 10%를 1,200,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20x1년 취득한 지분의 20x1년 말 및 20x2년 1월 1일 현재 공정가치는 2,200,000원이며, 최초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9,500,000원, 추가취득일 현재 B사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00,000으로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20x1년 및 20x2년의 B사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0원과 800,000원이다.

(1) 최초취득

20x1년 1월 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 / 대) 현금 2,000,000

$$\text{영업권} = 2,000,000 - (9,500,000 * 20\%) = 100,000$$

(2) 순자본변동 인식

20x1년 12월 3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00^{주1} / 대) 지분법이익 100,000^{주1}

^{주1} 500,000 * 20% = 100,000

(3) 추가취득

20x2년 1월 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200,000 / 대) 현금 1,200,000

$$\text{추가영업권} = 1,200,000 - (10,000,000 * 10\%) = 200,000$$

(2) 평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차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65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평가

피투자자의 당기순익 중 투자자 지분 해당액 인식(당기순익)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00 / 대) 지분법이익 100

피투자자로부터 배당금 수령

차) 현금 1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100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증감 중 투자자 지분 해당액 인식(기타포괄손익)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100 / 대) 기타포괄이익 100

(3) 지분법 적용 중지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산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구성항목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투자자의 지분이‘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투자자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사례66 | 지분법 적용 중지

A사는 20x1년 초 B사 주식 20%를 200,000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0,000원이며 공정가액과 동일하다. 또한, 20x1년 말 현재 A사와 B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5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B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20x1년 : -1,100,000원

20x2년 : -200,000원

20x3년 : 500,000원

(1) 20x1년 12월 31일

차) 지분법손실	220,000 ^{주1}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 ^{주2}
			대손충당금	20,000 ^{주2}

주1 $-1,100,000 \times 20\% = -220,000$

주2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2) 20x2년 12월 31일

차) 지분법손실	30,000 ^{주3}	/	대) 대손충당금	30,000

주3 장기투자지분의 잔여액이 30,000원에 불과해 30,000원만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나머지 10,000원은 지분법손의 인식을 중지함

(3) 20x3년 12월 31일

차) 대손충당금	50,000 ^{주4}	/	대) 지분법이익	90,000 ^{주5}
관계기업투자주식	40,000 ^{주5}			

주4 지분법 적용을 재개하는 경우 장기대여금에 대한 지분법 손실 인식액을 먼저 회복하여야한다

주5 $500,000 * 20\% = 100,000$ 이므로 당기 지분법이익 인식액은 100,000원 이어야 하나, 전기 지분법 인식 중지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손실 10,000원이 존재하므로 당기 지분법이익 인식액은 90,000원 ($=100,000 - 10,000$)임.

(4) 내부 미실현손익 제거

투자자(투자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사례67 | 내부 미실현손익 제거

A사는 20x1년 1월 1일 B사의 지분 30%를 80,000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0x1년 중 A사는 장부가액 100,000원의 토지를 150,000원에 매각하고 처분이익으로 50,000원을 인식하였다. B사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x1년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200,000원이다.

(1) 20x1년 1월 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80,000	/	대) 현금	80,000

(2) 20x1년 12월 3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45,000	/	대) 지분법 이익	45,000 ^{주1}

주1 $200,000 * 30\% - 50,000 * 30\% = 45,000$

(5) 손상차손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 및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또한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투자자산의 사용가치 측정 방법

- 1) 관계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사례68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과 회복

A사는 20x1년 1월 1일 현재 B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80,000원이다. B사는 20x1년 중 영업부진(당기순손실 100,000원)으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으며, 손상요건을 충족시킨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A사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순공정가치 : 20,000

사용가치 : 30,000

B사는 20x2년 말 현재 회수가능액이 90,000원으로 회복되었으며, 20x2년 12월 31일 현재 A사가 보유한 B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15,000원이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복시 장부금액은 75,000원이다.

(1) 20x1년 12월 31일

차) 지분법손실	20,000 ^{주1}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30,000 ^{주2}		

주1 $100,000 \times 20\% = 20,000$

주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80,000 - 회수가능가액 $\text{Max}(20,000, 30,000) = 30,000$

(2) 20x2년 12월 3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45,000	/ 대) 지분법이익	15,000 ^{주3}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30,000 ^{주4}

주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 $45,000 = 30,000 + 15,000$

주4 손상차손환입액 = $\min[90,000(\text{회수가능가액}) - 45,000, 30,000(\text{손상차손인식액})]$

(6) 지분법 적용 유가증권의 처분

투자자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처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으로 인식된다.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또한 지분법의 사용이 중단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더 이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분류 및 측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에 따라 재분류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따라서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시점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69 | 일부 매각 후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A사는 B사의 보통주 30%를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x1년 1월 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보고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90,000원	6,000원

20x1년 1월 1일 A사는 B사의 보통주 20%를 80,000원에 처분하여 지분율이 10%로 하락하였으며, A사는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B사 주식의 처분 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월 1일	20x1년 12월 31일
40,000원	50,000원

20x1년 1월 1일

차) 현금	80,0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60,000 ^{주1}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0,000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0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 ^{주2}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0,000
차)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6,0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6,000

주1 $90,000 \times 2/3 = 60,000$

주2 $90,000 \times 1/3 = 30,00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포함된 투자차액(영업권) 또한 처분된 관계기업투자주식에 포함되어 비례적으로 처분이 된다.

사례70 | 일부 매각 후 유의적인 영향력 유지

A사는 B사의 보통주 30%를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x1년 1월 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관계기업투자주식 90,000원과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6,000원을 보고하고 있다. 취득일 현재 순자산 중 과소평가된 자산은 건물로 20x1년 1월 1일 현재 미상각 잔액은 7,500원이다. 잔존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0x1년 1월 1일 A사는 B사의 보통주식 10%를 40,000원에 처분하여 지분율이 20%로 하락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x1년 당기순이익은 40,000원이다.

(1) 20x1년 1월 1일

차) 현금	40,0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 ^{주1}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0,000
차)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2,000 /	대) 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2,000 ^{주2}

(2) 20x1년 12월 31일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7,000 /	대) 지분법이익	7,000 ^{주3}

주1 $90,000 \times 1/3 = 30,000$

주2 $6,000 \times 1/3 = 2,000$

주3 $40,000 \times 20\% - 7,500 / 5 \times 2/3$ (공정가치부분의 처분후 비율) = 1,000 = 7,000

8.3 기타사항

(1)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투자자의 사용을 위하여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투자자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투자자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자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2) 관계기업의 회계정책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자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회계사례

제5장. 회계사례

제1절. 회계처리(일반모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는 보험계약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모아서 회계모형을 정의했다. 이를 일반모형 (General Measurement Model)이라 하며, 일반모형에서 직접 참가 특성 및 단기보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파생되는 회계모형도 존재한다. 아래의 예시는 일반모형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계처리 사례를 소개한다.

1.1 최초인식

1.1.1 이익계약집합

최초로 유입된 보험계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별계약 또는 계약세트를 설정해야 하고, 설정된 단위별로 유사한 위험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보험계약 집합을 확정한다. 보험계약 집합이 확정되면,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한 순현금흐름의 현재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이하 위험조정)을 고려해서 이익계약집합인지 손실계약집합인지 구분할 수 있다.

회계적으로 최선추정부채와 위험조정을 각각 보험계약마진으로 처리하거나, 순액으로 아래처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사례71 | 이익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차) 최선추정부채(BEL)	100 / 대) 보험계약마진(CSM)	70
	위험조정(RA)	30

1.1.2 손실계약집합

보험계약 집합을 구성 후 장래 순현금흐름을 측정했을 때 순유출액이 예상되거나, 위험조정 보다 순유입액이 적은 경우에는 손실부담계약집합이다.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담액은 인식된 시점에 즉시 비용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장래예상수익은 가득요건이 완료되는 시점에 천천히 인식하고, 장래예상비용은 즉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보수성에 기인한다.

사례72 | 손실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차)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70 / 대) 최선추정부채(BEL)	40
	위험조정(RA)	30

1.1.3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 반영

보험계약 집합을 구성하기 이전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금흐름은 보험계약 집합이 확정되는 시점에 반영해야만 신규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이 적절히 인식될 수 있다. 최초로 회사에 유입된 보험계약 집합의 계약체결시에 계약경계 밖의 현금흐름이 존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으로 인식해야 한다. 계약경계 밖에 있는 현금흐름(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을 당기에 인식하게 되면 보험계약마진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은 해당 귀속시기가 되기 전 까지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으로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은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매결산기에 해당 자산이 자산성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자산성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을 인식한다.

최초인식시점에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은 최선추정부채의 일부로 처리하고, 해당 금액은 최초인식 보험계약마진의 규모를 산정할 때 반영된다.

사례73 |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 반영

- 계약 갱신시, 일시납 보험료 100원 수취
- 당기 계약체결비용 20원 지급예상
- 장래 보험금 50원 지급예상
- 재무상태표에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 7원 존재
- 단, 위험조정과 시간가치는 미미하다고 가정

(1) 이익계약집합의 최초인식(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을 이행현금흐름 반영 전)

차) 최선추정부채(BEL)	30	/ 대) 보험계약마진(CSM)	30

(2) 사전인식보험취득현금흐름의 이행현금흐름 반영

차) 보험계약마진(CSM)	7	/ 대)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7

1.2 기중거래

1.2.1 응답 보험료 수취

보유계약의 보험료 납입 응답일이 도래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수취된(될) 보험료를 인식해야 한다. 응답일에 최선추정부채를 증가시키며, 사실상 보험료가 납입이 되는 때에 한해 보험부채가 증가한다.

또한 장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예상 보험료 할인을 고려한 경우 실제 보험료 할인이 예상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 효과도 결산반영시 조정되어야 한다.

응당일 이전에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추가납입하는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다.

사례74 | 응당보험료 납입일 처리

(1) 계속보험료의 응당일 납입

차) 현금 (실제납입액) 100 / 대) 최선추정부채(BEL) 100

(2) 계속보험료의 응당일 미납

차) 최선추정부채(미수보험료) 100 / 대) 최선추정부채(BEL) 100

1.2.2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발생보험금은 보험계약 집합에서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으로, 투자요소를 제외하고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당기 발생보험금은 최선추정액과 위험조정액을 모두 포함한다.

당기에 보고된 사고뿐만 아니라 보고되지 않은 사고 또한 실제발생보험금에 포함된다. 실제발생보험금은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처리하며, 당기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발생사고부채의 감소로 처리한다. 당기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는 전기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부채의 상환도 존재한다. 전기에 발생한 사고 관련 부채에 대한 추정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해당 부채 관련하여 인식할 비용은 없다.

사례75 | 보험사고 발생

아래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 기초 발생사고부채: 100원
- 당기 발생한 보험사고: 2,000원
- 당기 발생한 보험사고 중 당기 지급액: 1,850원
- 전기 발생한 보험사고 중 당기 지급액: 100원
- 기말 발생사고부채: 150원
- 단, 위험조정과 시간가치는 미미하다고 가정

(1)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발생보험금 추정O)

차) 보험비용_발생보험금 2,000 / 대) 발생사고부채 2,000
발생사고부채 1,950 현금 1,950

(2)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발생보험금 추정X)

차) 보험비용_발생보험금 1,950 / 대) 현금 1,950

1.2.4 계약유지관련 비용 발생

계약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다. 발생계약유지비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사업비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사례78 | 계약유지비의 집행

아래와 같은 계약유지비가 발생했을 때,

- 당기 집행된 유지비 중 계약유지비 개념에 부합한 금액 : 700원
- 당기 집행된 유지비 중 계약유지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 300원

단, 예상과 실제 유지비의 차이는 없음

차) 보험서비스비용(계약유지비)	700 / 대)	현금	700
최선추정부채(계약유지비)	700	보험수익(예상계약유지비)	700
기타보험서비스비용(간접비)	300	현금	300

1.2.5 투자요소 지급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다. 명백히 분리되는 투자요소는 분리해야 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투자요소는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 포함한다. 투자요소의 지급은 과거에 보험계약자에게서 받은 보험료의 환급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상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요소는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하는 금액으로 보험금과 달리 보험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예상과 다른 투자요소액은 보험계약마진 상각 대상액에 반영됨으로 궁극적으로 보험성과에 반영된다.

투자요소를 산출함에 있어서, 상품별 현금흐름 항목(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등)을 고려할 수 있고, 투자요소를 산출하는 다른 방법으로 장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사고와 상관없는 상환액을 별도의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음 예시는 예상투자요소와 실제투자요소가 동일한 경우의 회계처리이다.

사례79 | 실제투자요소의 지급

차) 최선추정부채(BEL) - 투자요소	100 / 대) 현금	100

1.2.6 계약해지 및 중도인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문단 74에 따라 보험계약의 의무가 완료, 이행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소멸 요건으로 더 이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인 자원의 이전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더 이상 추정하지 않는다. 개별계약의 해지 시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은 보장단위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도 있고 개별계약에 상응하는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하여 해지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사례80 | 실제 보험계약 해지가 발생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 해지 전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최선추정부채): 100원
- 해지 전 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20원
- 반환되는 투자요소 (계약해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 환급금): 30원(예상과 실제 현금흐름 일치함)

단, 보험계약마진 보장단위 산출 시 계약해지에 대한 효과 반영, 현금 지급 이후의 보험부채의 조정은 결산정리 시 수행

차) 최선추정부채(BEL) - 투자요소 30 / 대) 현금

30

보험약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기도 한다. 중도 인출은 부분해지로 볼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투자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1.2.7 부활

보험료가 장기 연체된 경우 보험계약 효력은 정지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연체보험료에 일정 이율을 추가하여 납부를 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부활하게 된다.

잔여보장부채의 유지율(또는 해약률) 산출 시 부활 계약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잔여보장부채에 부활 시 표시될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보험계약 부활시 연체보험료의 납부와 부활이자 인식이 발생된다.

사례81 | 연체보험료의 납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 부활이 발생했을 때,

- 계약자 납부한 보험료 100원 중 연체보험료: 90원과 부활 보험료에 부과되는 이자: 10원

차) 현금	100 / 대) 최선추정부채(BEL)	90
	부활이자수익(보험금융수익)	10

1.2.8 계약자배당

회사는 보험계약의 이익이 발생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자 배당을 해야 한다. 계약자배당은 기초서류에 산출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한 보험계약의 배당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을 따른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 배당액은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도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다.

사례82 | 계약자배당 확정 및 지급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 계약자배당액이 발생했을 때,

- 당기에 확정된 계약자 배당액: 100원
- 당기에 지급한 계약자 배당액: 100원

단, 계약자 배당액 예상과 실제 배당금액 차이는 없고, 확정 직후 지급 가정

(1) 당기 계약자배당액 확정

차) 최선추정부채(BEL)	100 / 대) 계약자배당 준비금(BEL)	100

(2) 당기 계약자배당액 지급

차) 계약자배당 준비금(BEL)	100 / 대) 현금	100

1.2.9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수취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연복리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품질보증해지는 보험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제도로, 보험가입한지 3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약관 및 청약서부분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서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다. 품질보증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계약은 해지가 된다.

청약철회 또는 품질보증해지는 사실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다. 계약집합이 확정이 되었다면, 해당 계약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사례83 | 청약철회 반영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발생했을 때,

- 회사는 계약체결 시 최선추정부채 -30원, 위험조정 10원, 보험계약마진 20원을 계상
- 보험계약자가 초회 보험료 100원을 납부
- 회사는 초회보험료 수취시 최선추정부채 +100원 증가
- 보험계약자가 유효한 청약철회를 요청

단,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는 미미하다고 가정

청약철회 반영

차) 최선추정부채(BEL)	70 / 대) 현금 (초회보험료 환급)	100
위험조정	10	
보험계약마진(CSM)	20	

단, 청약철회가 발생한 개별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이 보험계약별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 당기 실현된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서비스 제공량 결정 시 청약철회 효과를 반영한다.

1.3 결산정리

1.3.1 공시이율변경

공시이율은 경제적가정의 일부로 공시이율의 변경은 투자손익에 포함된다. 공시이율의 변경은 당기 계약자적립금의 및 장래 계약자적립금을 변경시켜, 당기 공시이율 변경의 효과를 당기 또는 장래 영향으로 세분화하기 어렵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일관된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84 | 당기 공시이율 변경에 대한 추가 적립효과

아래와 같은 공시이율의 변경효과가 발생했을 때,

- 기초 보험계약자 적립금 규모: 100원
- 기초에 예상된 공시이율로 증가될 적립금: 3원
- 당기의 실제 계약자적립금 증가: 4원
- 당기변화로 향후 증가될 계약자적립금: 2원

차) 보험금유비용	1 / 대) 최선추정부채(BEL)	1
보험금유비용	2 최선추정부채(BEL)	2

1.3.2 Unwinding (이자부리 포함)

회사는 기중거래로 실제 현금흐름의 수취 및 지급을 회계처리 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예상 현금흐름은 최선추정부채에 포함되어 있다. 당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조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예상-실제의 현금흐름의 차이가 재무성가로 표시된다.

최선추정부채 조정은 기초 시점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명목현금흐름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목현금흐름과 현재가치로 측정된 현금흐름의 차이는 필요이자로 측정된다. 회사가 최선추정부채에 포함한 현금흐름 항목의 종류에 따라서 조정시 표시되는 계정이 세분화 된다.

사례85 | 일반모형의 당기 최선추정부채 조정

아래와 같은 최선추정부채가 조정 될 때,

- 기초 최선추정부채: 1,000원
- 당기 조정되는 명목 현금흐름: 보험금 500원, 계약유지비 300원
- 기말 최선추정부채: 250원

차) 최선추정부채(BEL)	750 / 대) 보험수익_예상보험금	500
보험금유비용	50 보험수익_예상계약유지비	300

최선추정부채에서 조정되는 현금흐름 항목으로는 예상보험금, 예상계약유지비, 예상손해조사비, 예상투자관리비, 예상투자요소, 예상신계약비 등이 있다. 당기에 조정되는 예상보험금, 예상계약유지비, 예상손해조사비, 예상투자관리비 금액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위험조정도 최선추정부채와 유사하게 조정되며, 위험조정변동으로 처리된다.

변동수수료모형의 경우 이자부리 효과는 일반모형과 상이하다. 변동수수료모형은 보험사가 금융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 산출 시 최선추정부채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기초항목의 투자성과를 모두 반영한 순 금융위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금리변동에 따라서 순 금융위험(일반모형의 이자비용 상당액)은 음수가 될 수 있다.

사례86 | 변동수수료모형의 당기 이자부리

아래와 같은 최선추정부채 및 기초항목의 성과일 때,

- 기초 최선추정부채: 1,000원
- 당기 조정되는 명목 현금흐름: 보험금 500원, 계약유지비 300원
- 기말 최선추정부채: 250원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변동: 30원

차) 최선추정부채(BEL)	750	/ 대) 보험수익_예상보험금	500
보험금융비용	50	보험수익_예상계약유지비	300
기초항목(운용자산)	30	투자수익	30

예시에서 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화폐시간가치로 50원이 발생하지만, 기초항목의 운용성과로 30원이 상계되기 때문에 변동수수료모형에서 부담하는 純 금융위험 비용은 20원이다.

1.3.3 미래현금흐름 변동(비금융가정)

결산시점에 관측가능한 정보를 활용하고 현행추정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회사가 비금융가정별 경험데이터의 누적량 등을 고려해서 갱신할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장래 변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보험계약마진이 충분하지 않다면, 초과분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사례87 | 기말 최적가정의 변화

아래와 같이 최선추정부채의 증가가 예상될 때,

- 보험계약 집합의 위험률 증가에 따른 장래 지급액의 현가 증가액: +100원
- 신계약비 및 유지비의 장래지급액 현가의 감소액: -20원

차) 보험계약마진(CSM)	80	/ 대) 최선추정부채(BEL)	80

1.3.4 미래현금흐름 변동(금융가정) - 일반 및 변동수수료 모형

금융위험의 변동은 회사가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변동효과를 구분하여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 모두에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금융손익 세분화 회계처리는 동일하지만, 보험계약마진에 대해서는 회계모형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모형에서 금융위험은 보험사가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만 반영되고, 보험계약마진에는 반영되지 않는 반면, 변동수수료모형은 금융위험을 기초로 변동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 모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험도 계리가정의 일환으로 장래 서비스에 따른 보험계약마진 변동으로 처리한다.

아래와 같은 최선추정부채가 증가가 예상될 때,

사례88 | 일반모형의 금융가정 변동

－ 당기말 금리변동으로 최선추정부채 변화: +100원

차) 보험금융손익	100	/ 대) 최선추정부채(BEL)	100
보험계약마진(CSM)	N/A	보험금융손익	N/A

사례89 | 변동수수료모형의 금융가정 변동

－ 당기말 금리변동으로 최선추정부채 변화: +100원

차) 보험금융손익	100	/ 대) 최선추정부채(BEL)	100
보험계약마진(CSM)	100	보험금융손익	100

1.3.5 위험조정의 변동

위험조정은 잔여보장부채(일반모형, 변동수수료모형)와 발생사고부채(모든 회계모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PAA를 적용하는 계약의 발생사고부채에서도 측정한다.

위험조정의 변동은 회계모형을 불문하고 동일한 회계처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잔여보장부채와 달리 발생사고부채에서는 장래가정 변동에 따른 위험조정액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위험이 실현된 계약으로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험조정의 변동은 크게 시간가치의 반영, 당기조정, 계리가정 변동에 따른 영향, 경제적가정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위험조정은 최선추정부채와 동일한 회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융위험에 대한 효과를 세분화하지 않도록 회계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최선추정부채와의 차이점이다.

단, 금융위험을 세분화하고 경제적 가정 조정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한 경우

사례90 | 위험조정의 변동사례 (금융위험을 기타포괄손익과 보험투자손익으로 세분화)

아래와 같은 잔여보장부채의 위험조정이 예상될 때,

- 기초 위험조정잔액: 100원
- 당기 화폐시간가치 반영: 5원
- 당기 예상 조정 규모: -20원
- 기말 계리적가정변동에 따른 영향: +30원
- 기말 경제적가정변동에 따른 영향: -20원

(1) 당기 화폐시간가치

차) 보험금융이자비용	5 / 대) 위험조정(RA)	5

(2) 당기 예상조정

차) 위험조정(RA)	20 / 대) 보험수익(위험조정변동)	20

(3) 기말 계리가정 변동

차) 보험계약마진(CSM)	30 / 대) 위험조정(RA)	30

(4) 기말 경제적가정 변동

차) 위험조정(RA)	20 / 대) 기타포괄손익_보험계약	20

보험금융위험을 세분화하고 경제적 가정 조정의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지 않게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에는 기말 경제적가정 변동 금액을 모두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한다.

1.3.6 손실부담 평가

보험계약마진은 매기 상각 전에 손실부담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손실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기에 장래 손실 예상액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손실부담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보험계약마진에 조정되는 당기 예상-실제 현금흐름의 차이 (예: 보험료, 투자요소, 신계약비 등)와 장래 현금흐름 차이 (예: 위험률 가정의 변동, 사업비 가정의 변동 등)가 있다. 이자부리 후 보험계약마진에 당기 현금흐름차이와 장래 현금흐름 차이를 반영한 후에도 보험계약마진 잔액이

존재한다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금흐름의 큰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계약마진은 모두 소진되고 초과분은 당기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례91 | 기말 최적가정의 변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이 예상될 때,

- 기초 보험계약마진 : 100원
- 이자부리 상당액 : 5원
- 당기 예상-실제 현금흐름(예: 투자요소의 추가 지급) 불리한 차이: -30원
- 장래 현금흐름(예: 위험률 가정 악화)의 불리한 차이: -90원
- 손상평가 내역: CSM 잔액 = $100 + 5 = 105$ 원, CSM 변동금액 = $-30 - 90 = -120$ 원 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초과하는 15원 손실 발생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15 / 최선추정부채(BEL)	15

손실부담계약의 평가는 보험계약마진에 조정되는 당기 예상-실제 현금흐름차이 및 장래 현금흐름의 변경 효과를 모두 반영 후, 상각 직전에 수행하기 때문에 손실부담평가 후 결과에 대한 분개만 상위에 표시한다.

1.3.7 보험계약마진 상각

보험계약마진의 상각은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장래에 제공될 보장단위를 고려해서 당기 배분된 금액만큼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보장단위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급부의 수량 및 기대보장 기간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도 투자관련서비스 수량을 고려해서 보장단위를 산정해야 한다.

사례92 | 기말 최적가정의 변화

아래와 같은 보장단위가 예상될 때,

-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 100
- 당기 이후에 제공될 보장단위: 900
- 상각 대상 보험계약마진: 1,000원

단, 상각 대상 보험계약마진에는 기초 보험계약마진에 이자부리, 경험조정, 장래변동 등이 포함. 제공된 보장단위에는 실제 계약의 해지 및 만기해지 등의 효과가 포함

차) 보험계약마진(CSM)	100 / 대) 보험계약마진상각 이익	100

1.3.8 손실부담계약의 손익조정

신계약에 대한 보험계약 집합 결정시 수익성을 고려해서 손실부담계약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손실부담 보험계약 집합이라도 향후 결산시에 이익계약집합으로 실제 수익성은 변동될 수가 있다. 보험계약 집합의 수익성은 최초 결정되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예시하고자 하는 결산시 확정된 손실부담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결산기 초기에 손실부담계약은 당기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서 발생한 보험수익과 금융손익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의 경우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서 발생한 보험수익을 모두 인식하면 보험수익을 과대 인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수익은 납입된 보험료를 한도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사례93 | 손실부담계약의 이행현금흐름 조정에 따른 손익조정

아래와 같은 기초에 손실부담계약집합이 존재 할 때,

- 기초 손실액(Loss component) : 400원, 손실비율 50%
- 당기 최선추정부채의 조정수익: 보험금 300원 , 유지비 100원
- 당기 발생한 금융손익: 50원

단, 추가손실 및 손실회수는 발생하지 않고, 위험조정은 미미하다고 가정

차) 손실요소배분액_보험수익(보험금)	150	/ 대) 손실요소배분액(보험비용)	150
손실요소배분액_보험수익(유지비)	50	손실요소배분액(보험비용)	50
손실요소배분액_보험금융수익	25	손실요소배분액(금융비용)	25

결국 손실부담계약의 손익조정은 당기순이익에 변동 없이, 손실분에 해당하는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만큼 보험수익 및 보험금융비용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1.3.9 할인을 변동 반영

금융위험 변동에 따른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회계모형(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할인을 변동은 금융위험의 일종으로, 금융위험의 변동은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하며 보험사는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정책으로 회사가 결정해야 하며, 한번 결정된 회계정책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자본의 항목으로 누적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할인을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기에 반영될 기타포괄손익 증감액만 회계처리 한다.

사례94 | 기말 할인율 변화 (금융위험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회계정책 선택시)

아래와 같은 할인율 변동이 예상될 때,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할인율이 예상과 달라짐에 따라 최선추정부채 증가: +40원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할인율이 예상과 달라짐에 따라 위험조정 증가: +10원

차) 기타포괄손익_보험계약	40	/ 대) 최선추정부채(BEL)	40
기타포괄손익_보험계약	10	위험조정(RA)	10

(1) 기말 할인율 변화 (금융위험을 모두 금융손익으로 처리하는 회계정책 선택시)

아래와 같은 할인율 변동이 예상될 때,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할인율이 예상과 달라짐에 따라 최선추정부채 증가: +40원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에 할인율이 예상과 달라짐에 따라 위험조정 증가: +10원

차) 금융비용	40	/ 대) 최선추정부채(BEL)	40
금융비용	10	위험조정(RA)	10

1.3.10 보험취득현금흐름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회계적으로 손익 귀속시기는 보장이 발생하는 전보험기간이다. 현금지급은 보험계약 초기에 발생하지만, 보험손익 귀속시기를 전 보험기간으로 이연하기 위해 회계적으로 보험취득현금흐름은 현금발생시 인식하는 예상-실제 차이 조정과 잔여액에 대한 비망기록(향후 배분될 금액)을 수행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은 크게 보험료 유관한 현금흐름과 그렇지 않는 현금흐름으로 구분하며, 보험료 유관한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예상-실제차이는 계약마진으로 조정하며, 그렇지 않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은 즉시 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95 | 보험취득현금흐름 예실차 반영

아래와 같은 보험취득현금흐름이 발생될 때,

- 보험료유관 보험취득현금흐름 예상액 100원 발생, 실제 집행액 90원 발생 (유리한 차이)
- 보험료무관 보험취득현금흐름 예상액 100원 발생, 실제 집행액 105원 발생 (불리한 차이)

(1)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집행시, 예상과 다른 실제의 회계처리 (보험료유관)

차) 최선추정부채(BEL)	100	/ 대) 현금	90
		보험계약마진	10

(2)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집행시, 예상과 다른 실제의 회계처리 (보험료무관)

차) 최선추정부채(BEL)	100 / 대) 현금	105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5	

제2절. 회계처리(보험료배분접근법)

2.1 최초인식

2.1.1 보험료배분접근법 개요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단기계약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측정모형으로 수취한 보험료를 시간의 경과 기준 혹은 보장기간의 위험의 해제 양상 등을 고려하여 매 보장기간에 배분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보험계약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와 중요한 차이 없이 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일반모형에 비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이며, 일반모형접근법 대비 주요 간소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조건에 따라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② 조건에 따라 유의적 금융요소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할인율 산출 및 적용에 대한 관리가 간소화된다.
- ③ 사실과 상황에 따라 손실부담부채 발생 징후가 있을 시, 손실부담부채를 인식 및 측정 할 수 있다.

잔여보장부채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1.2 계약집합의 구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최초인식 시 일반모형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해야 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 되는 계약으로 구성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손실부담계약, 손실가능계약, 이익계약으로 나누고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계약집합은 변경할 수 없다.

- ①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집합 → 손실계약집합
- ②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 이익계약 집합
- ③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집합 → 손실가능집합

2.1.3 이익계약집합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시 이익계약집합의 최초 인식 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① 최초 인식 시점의 수취한 보험료(현금 수취 기준)
- ② (－) 최초 인식 시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단,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 제외)
- ③ (－) 보험계약부채 인식 전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를 그 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사례96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잔여보장부채의 최초 측정

상황

회사는 20X3년 7월 1일에 보험계약을 발행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9개월로 20X4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이다.

(1) 최초계약 인식시점

20X3년 7월 1일

회사는 보험료 900원을 수취하고, 보험취득현금흐름으로 90원을 지급하였다.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위험이 감소하며, 당기 중 해지계약은 없다.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임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투자요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가정한다.

(2) 최초계약 인식시점의 분개

20X3년 7월 1일

차) 현금	900원	/ 대) 잔여보장부채	900원
잔여보장부채	90원	현금	90원

20X3년 7월 31일

차) 잔여보장부채	100원	/ 대) 보험수익(경과보험료)	10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비	10원	잔여보장부채	10원

(3) 최초 인식시점의 재무제표 표시

20X3년 7월 31일

재무상태표(20X3.7.31.)		포괄손익계산서(20X3.7.1.~20X3.7.31.)	
자산		수익	
현금	810원	보험수익(경과보험료)	100원
부채		비용	
잔여보장부채	72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0원
자본		순이익	
이익잉여금 ^{주1}	90원	보험서비스결과 ^{주1}	90원

주1 잔여보장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여주며, 사고발생에 따른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 및 자본의 감소는 표시하지 않음

2.1.4 손실계약집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기업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실과 상황이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사실과 상황의 판단 및 손실평가를 통해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평가하고, 포트폴리오별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의 집합을 손실계약집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실과 상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서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과 상황을 판단할 시 손실부담계약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① 청약 시에는 손실부담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청약일과 보장개시일/보험료납입예정일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여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보험업 특성 상 Pool, 공동인수, 공동물건, 농작물 등 국가나 감독기관에 의한 보험 등)

기업은 포트폴리오별 손실계약집합에 해당하는 계약의 최초측정 회계처리 시, 이익계약집합의 회계처리에 더하여, 일반모형을 가정했을 경우 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잔여보장부채의 차이를 손실부담부채로 추가 계상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보험계약 집합이 손실계약집합이 된다면, 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사례97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잔여보장부채의 최초 측정 시 손실계약에 대한 추가 회계처리

상황

회사는 20X3년 7월 1일에 보험계약을 발행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9개월로 20X4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이다.

(1) 최초계약 인식시점

20X3년 7월 1일

회사는 보험료 900원을 수취하고, 보험취득현금흐름으로 900원을 지급하였다.

동 계약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임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여, 일반모형에 따른 잔여기간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한 결과,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은 990원이며, 시점별 추정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20X3.7.1	20X3.7.31.
잔여보장부채(손실평가 전)	810	720
보험료 수취액	900	800
보험취득현금흐름	90	80
손실부담부채	180	160
손해액	140	140
사업비	20	2
위험조정	20	18
잔여보장부채(손실평가 후)	990	880
손실비용(환입)	180	(-) 20

(2) 최초계약 인식시점의 분개

20X3년 7월 1일

차) 현금	900원	/ 대) 잔여보장부채	900원
잔여보장부채	90원	현금	90원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180원	잔여보장부채	180원

20X3년 7월 31일

차) 잔여보장부채	100원	/ 대) 보험수익(경과보험료)	10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비	10원	잔여보장부채	10원
잔여보장부채	20원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환입	20원

(3) 최초계약 인식시점의 재무제표 표시

20X3년 7월 31일

재무상태표(20X3.7.31.)		포괄손익계산서(20X3.7.1.~20X3.7.31.)	
자산		수익	
현금	810원	보험수익(경과보험료)	100원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환입	20원
부채		비용	
잔여보장부채	88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0원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	180원
자본		순손실	
결손금 ^{주1}	70원	보험서비스결과 ^{주1}	70원

^{주1} 잔여보장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여주며, 사고발생에 따른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 및 자본의 감소는 표시하지 않음

2.2 기중거래

2.2.1 보험료 수취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시 기중 보험료 수취액은 전기말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며, 후속 보고기간에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른 후속보고기간말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사실에 따라 산출한다.

표89 | 보험료배분접근법 장부금액 - 보험료 수취

잔여보장부채 산출 프로세스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료 수취
① 전기말 장부금액	
② + 당기 수취한 보험료(현금 수취 기준)	✓
③ - 당기 중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주1}	✓
④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과 관련된 금액	✓
⑤ +- 금융요소의 조정 ^{주2}	✓
⑥ - 경과보험료 인식 ^{주3}	✓
⑦ -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⑧ 당기말 장부금액	

^{주1} 보험취득 현금흐름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서 차감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하여 보험비용과 부채를 증가시킨다.

^{주2} 금융요소의 조정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단, 보장인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주3} 경과보험료 인식(수익 인식: 예상보험료 기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각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와 금융요소 제외)이다.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다음에 따라 매 보장기간에 배분한다.

1) 시간의 경과 기준

2)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 2)의 예는 특정보험의 경우 과거 보장기간 동안 보험사고의 발생 양상이 보험종기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보험종기에 많은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사실과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기준은 변경 가능하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인식 방법은 현행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과보험료 인식과 동일한 논리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사례98 | 보험료 수취에 따른 기중거래 회계처리

상황

이전 사례에 이어서, 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20X3년 9월 1일에 분납보험료 700을 추가 수취하였다.

(1) 기중 보험료 수취에 따른 회계처리

20X3년 9월 1일

차) 현금 700원 / 대) 잔여보장부채 700원

20X3년 9월 30일

차) 잔여보장부채 200원 / 대) 보험수익(경과보험료) 20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비 10원 잔여보장부채 10원

(2) 20X3년 9월 30일 후속보고기간말 재무제표의 표시

20X3년 9월 30일

재무상태표(20X3.9.31.)		포괄손익계산서(20X3.7.1.~20X3.9.31.)	
자산		수익	
현금	1,510원	보험수익(경과보험료)	400원
부채		비용	
잔여보장부채	1,140원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30원
자본		순이익	
이익잉여금 ^{주1}	370원	보험서비스결과 ^{주1}	370원

주1 잔여보장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여주며, 사고발생에 따른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 및 자본의 감소는 표시하지 않음

2.2.2 보험금 지급

잔여보장부채와는 달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이하 발생사고부채)는 기준서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일반 모형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최선추정하여야 한다.

표90 | 보험료배분접근법 장부금액 - 보험금지급

잔여보장부채 산출 프로세스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금 지급
① 전기말 장부금액	
② + 당기 수취한 보험료(현금 수취 기준)	
③ - 당기 중 지급한 보험취득현금흐름	
④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과 관련된 금액	
⑤ +- 금융요소의 조정	
⑥ - 경과보험료 인식	
⑦ -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
⑧ 당기말 장부금액	

발생사고부채의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미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사고,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기업이 실질적인 의무를 가진 모든 미래 사고와 관련된 지급액을 포함한다.
- ② 보험금처리원가(기업이 보유계약의 사고를 조사, 처리 및 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률수수료, 손해사정수수료,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 원가를 포함함)

다만,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이 보험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거나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할인율(즉, 현행할인율)을 적용하여 발생사고부채를 현행가치로 산출하여야 한다.

일반모형의 발생사고부채는 제 1절 회계처리(일반모형)을 참조한다.

2.2.3 보험취득관련 비용 발생

(1) 보험취득 현금흐름 범위 및 이연

보험취득관련 비용(이하,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 되는 보험계약

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 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한다. 간단한 예시로서, 직접 귀속되는 현금흐름은 수당, 수수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모집 관련 인쇄비, 설계사 점포 임차료 등을 들 수 있다.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배부 기준을 통해 각 보험계약에 배부한다.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다음 두 단계의 현금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하기 전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받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 ② 보험계약 집합 최초 인식 및 후속측정 시점에 지급하거나 받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기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 취득 현금흐름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②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위 ①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 집합에 배분한다. 이때 보험계약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 취득 현금흐름(또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 집합에 대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최초 인식 시점에 잔여보장부채 내에서 차감하도록 한다(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이연).

(2)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및 제거

보험료배분접근법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개별 계약단위로 측정, 상각 및 제거할 수 있으며, 보험료배분접근법의 경우 보험 취득 현금흐름은 수익 인식의 경과와 동일한 패턴으로 상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은 보험취득 현금흐름 차감 전 잔여보장부채의 경과수익 인식율과 동일한 비율로 상각하며, 보험취득 현금흐름 차감 전 잔여보장부채의 미경과율과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미상각률은 같다. 보험료(수익)의 경과율과 보험취득현금흐름(비용)의 경과율이 동일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금액 = 미경과보험료 경과수익 인식금액 × (신계약비 총 누적발생액) ÷ (보험료 총 누적발생액)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환평가는 잔여보장부채 내 보험취득 현금흐름 차감 전 잔여보장부채의

환평가에 비례 인식 및 측정한다. 즉, 보험취득 현금흐름 차감 전 잔여보장부채 대비 보험취득 현금흐름 비율을 기준으로 환평가에 반영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하에서 모든 보험부채는 화폐성부채로 인식되므로, 잔여보장부채를 구성하는 부채 역시 환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험 최초 인식 시점에 지급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역시 보험취득 현금흐름 차감 전 잔여보장부채의 환종과 주로 동일하게 평가되어 지급되므로, 이연되어 잔여보장부채에 차감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역시 보험취득 현금흐름 차감 전 잔여보장부채의 환평가에 따라 비례 인식 및 측정한다.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할인 여부는 잔여보장부채 유의적 금융요소에서의 결정에 따른다.

2.2.4 계약해지 및 중도인출

계약의 취소 등의 원인으로 잔여보장부채에서 계약이 제거될 시, 관련 보험 취득 현금흐름 또한 개별 계약단위 수준에서 관리되어 제거된다. 이는 곧 제거액 전체가 즉시 비용 처리됨을 의미한다. 계약의 제거 시 신계약비의 환입이 발생한다면 이는 상기의 제거액 비용에서 차감한다.

2.2.5 투자요소의 지급

분리불가 투자요소의 손익은 당기에 표시되는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투자요소 상당액은 제외하고, 예상과 다른 투자요소의 지급은 당기성가로 손익표시된다. 실무적으로는 PAA보험계약에 투자요소를 차감후에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을 산출하거나, 투자요소를 차감하지 않고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을 산출 후에 후속적으로 보험수익을 당기에 발생한 투자요소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투자요소 성격별로 직접 장부부채에 차감하는 것과 후속적으로 보험손익을 차감하는 방법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3 결산정리

2.3.1 Unwinding (이자부리)

(1) 개요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수취한 보험료를 보험계약부채(자산)으로 계상한 뒤 보장기간에 걸쳐 수익(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므로, 일반모형과는 달리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할인하여 부채를 측정하지 않는다. 즉, '수취한 보험료 = 잔여보장부채 증가분'이고 수취한 보험료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현금흐름이므로 보험료 수취를 통해 잔여보장부채가 증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잔여보장부채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존재할 경우, 잔여보장부채를 부채 잔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잔여보장부채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발생사고부채를 측정할 때, 일반모형과는 달리 일부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보험계약 집합의 유의적인 금융요소

1) 적용대상

오직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갖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리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일과 보장의 제공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때, 그 집합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측정 여부를 판단한다.

표91 | 보험료배분접근법 금융위험 유의성 판단

기간	유의성	유의적인 금융요소 식별
보험료 납입기일과 보장의 제공 사이의 기간이 1년 초과	유의적인 금융요소 존재함	O
	유의적인 금융요소 존재하지 않음	X
보험료 납입기일과 보장의 제공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	—	X

표와 같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식별되지 않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서는 이자부리 금액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다.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금융요소의 유의성 판단에 대해서는 기준서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한 유의성의 판단은 회사 및 보험계약부채의 규모, 재무상태, 적용될 할인율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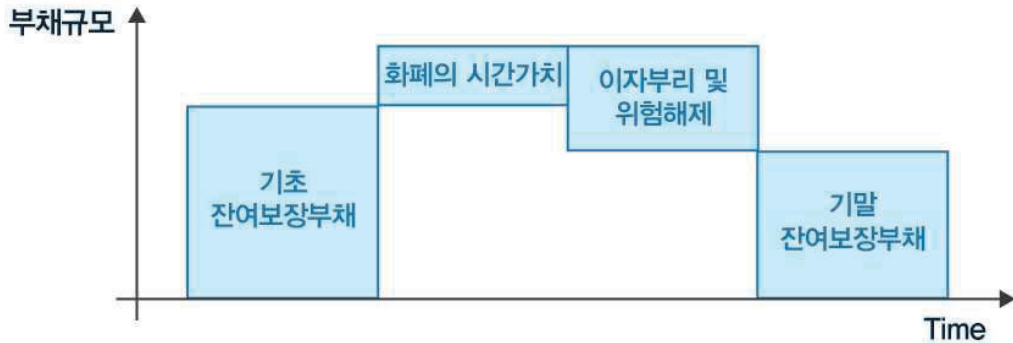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존재한다면, 잔여보장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다. 즉, 잔여보장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않은 보험서비스의 가치를 증가시키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계약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또한 잔여보장부채는 위험이 해제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보험서비스가 감소하므로, 이자를

부리(Unwinding)하여 제공한 보험서비스에 대한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18 |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잔여보장부채 변동



위 그림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통해 증가한 잔여보장부채의 증가분은 해당 기간에 이자부리되면서 감소한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잔여보장부채의 평균 잔액은 증가할 것이다.

사례99 |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이자부리

상황

다음과 같은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대상 보험계약 집합을 가정한다.

- 20X3. 1. 1(최초시점)에 총 보험료 900 수취 (투자요소 없음)
- 보장기간 = 3년 (20X3. 1. 1 ~ 20X5. 12. 31)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수익 인식 (월할)
-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 = 5%

해당 보험계약 집합에 대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은 다음과 같다.

화폐의 시간가치 미고려 - 할인율 미반영

시점	20X3.1.1	20X3.12.31	20X4.12.31	20X5.12.31
기시 잔여보장부채		900	600	300
보험수익 ^{주1}		(300)	(300)	(300)
기말 잔여보장부채	900	600	300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 할인율 반영

시점	20X3.1.1	20X3.12.31	20X4.12.31	20X5.12.31
기시 잔여보장부채		900	630	331
보험수익 ^{주2}		45	32	17
기말 잔여보장부채		(315)	(331)	(348)

주1 보험수익 = (기시 잔여보장부채 + 화폐의 시간가치) / 잔여기간

주2 이자부리 = 기시 잔여보장부채 * 5%

사례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미반영시의 기말 잔여보장부채 평균잔액 = $(900+600+300)/3 = 600$,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시의 기말 잔여보장부채 평균잔액 = $(900+630+331)/3 = 620$ 으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반영 효과로 인하여 잔여보장부채의 평균 잔액이 증가한다. 보장기간 내 인식하는 손익은 할인을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900으로, 보험료 수취액과 동일하다.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로 인한 잔여보장부채의 증가분(비용)과 보험서비스비용의 증가분(수익)의 효과가 보장기간에 걸쳐 상쇄되기 때문이다.

(3) 회계처리

사례100 | 이자부리에 대한 회계처리

상황

직전사례에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인식하는 경우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은 아래와 같다.

<할인을 반영시>

시점	20X3.1.1	20X3.12.31	20X4.12.31	20X5.12.31
기시 잔여보장부채		900	630	331
이자부리		45	32	17
경과수익		(315)	(331)	(348)
기말 잔여보장부채	900	630	331	-

이자부리 금액은 금융손익으로 인식하며, 경과수익은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X3년 1월 1일

차) 현금 900 / 대) 잔여보장부채 900

20X3년 12월 31일

차) 보험금유비용	45	/ 대) 잔여보장부채	45
잔여보장부채	315	보험수익	315

20X4년 12월 31일

차) 보험금유비용	32	/ 대) 잔여보장부채	32
잔여보장부채	331	보험수익	331

20X5년 12월 31일

차) 보험금유비용	17	/ 대) 잔여보장부채	17
잔여보장부채	348	보험수익	348

사례99와 사례100의 총 보험수익 및 총 보험금유손익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례 손익 비교>

구분	사례99	사례100	차이
총 보험수익	900	994	94
총 보험금유손익	-	(94)	(94)
총 손익	900	900	-

(4) 발생사고부채의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발생사고부채를 측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기준서 제 1117호에서는 보험계약 집합의 잔여보장부채를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간편법이 허용된다.

- ①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이 보험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되거나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없다.
- ② 발생사고부채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할인할 때, 최초 인식시점이 아닌 보험금 발생일(발생사고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최초측정 시 최선추정부채와 위험조정을 산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미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에 적용할 할인율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서 제 1117호에서는 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할인할 때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할인을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하는 보험계약 집합의 발생사고부채에 대해서는 보험금 발생일의 할인율로 할인하는 간편법을

허용하였다.

2.3.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수익

(1) 개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일반모형 대신 적용하는 간편법이므로,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금액과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보장기간 동안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식한 보험수익을 차감하여 조정한다. 이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장기간 동안 인식할 총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 제외 및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 조정)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험계약서비스 기간에 배분한다.

① 시간의 경과 기준

②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

일반적으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1년 미만의 단기보험계약이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위험이 해제된다. 위험이 해제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대한 의무(보험금 지급)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중 자동차 사고가 고르게 발생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보장 의무가 소멸한다.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보장기간 동안 잔여보장부채를 균등하게 수익으로 대체한다. 반면, 보장기간 내 특정 사건에 대한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예: 위성발사보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는 계약(예: 건설공사보험) 등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일할계산/월할계산 등을 적용하고, 위험의 해제 양상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별도의 수익인식 패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상품별 수익인식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별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로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다르며, 이는 일반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CSM의 상각 패턴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경우의 잔여보장부채와 일반모형을 적용한 경우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보험료배분접근법 하 보험수익인식패턴은 CSM 상각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나, 일부 보증의 경우 어떠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판단이 필요한 보증에 적용할 수익인식패턴의 판단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92 | 수익인식 - 해상보험 중 적하/운송보험

구분	내용
CSM 상각	1) 기대보장기간 : 2~3개월 (일반 적하/운송보험) 2) 급부금의 양 : 보장기간 내 동일하게 최대보장 제공 3) CSM 상각 : 보장기간 내 시간 비례 상각 적하/운송보험의 특성상 다수 선적물의 선적/하역시점을 개별적으로 추적이 힘들다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적하/운송 행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급부금은 가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제공되는 최대보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PAA 수익인식	상기의 CSM 상각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 비례 수익 인식 적용

표93 | 수익인식 - 해상보험 중 위성보험

구분	내용
CSM 상각	1) 기대보장기간 - 위성발사보험 : 위성발사기간(보통 1일) - 운송보험 : 계약기간(보통 1년) 2) 급부금의 양 : 보장기간 내 동일하게 최대보장 제공 3) CSM 상각 : 보장기간 내 시간 비례 상각 위성보험은 위성의 발사에 대한 보장과 발사 후 궤도 진입/운영에 대한 보장으로 구분되며,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보장기간 동안에는 최대보장을 제공하므로 시간 비례 상각을 적용한다.
PAA 수익인식	상기의 CSM 상각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 비례 수익 인식 적용 - 위성발사보험 : 위성발사기간 동안 비례적 인식 - 위성운송보험 : 위성운영기간 동안 비례적 인식

표94 | 수익인식 - 기타특종보험 중 EW(Extended Warranty)보험

구분	내용
CSM 상각	1) 기대보장기간 : 대기기간을 제외한 계약기간(ex: 제품구매 2년 경과 후 시점부터 2년 보장) 2) 급부금의 양 : 보장기간 내 동일하게 최대보장 제공 3) CSM 상각 : 보장기간 내 시간 비례 상각 EW보험의 실질적인 보험사건은 최초 제품보증 이후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하자이며, 해당 보험사건은 최초 제품보증이 끝난 시점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최초제품보증기간은 보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기간 동안에는 최대보장을 제공하므로 시간 비례 상각을 적용한다.
PAA 수익인식	상기의 CSM 상각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 비례 수익 인식 적용

표95 | 수익인식 - 기타특종보험 중 RVI(Residual Value Insurance)보험

구분	내용
CSM 상각	1) 기대보장기간 : 대기기간을 포함한 보험기간 전체 대기기간 (보험가입 후 매각개시 전 시점) 2) 급부금의 양 : 위험별 구분 - 시장가치 변동 위험(금융위험): 잔존물(ex: 선박, 차량)의 경과연수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함. 최대보장 제공. - 물리적 상태 변동 위험(비금융위험): 잔존물의 물리적 상태 변동은 해당 잔존물의 사용에 비례하며, 일반적인 선박 및 차량은 일정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 비례 적용. 3) CSM 상각: 보장기간 내 시간 비례 상각 RVI보험은 잔존물 가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계약서상의 보험사건과 회계적으로 해석되는 보험사건의 차이가 있다. 계약서상의 보험사건은 매각 또는 보장종료시점의 잔존물 가치 하락이나, 회계적으로는 보장종료시점의 단발성 사건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이 아닌 보장기간동안 누적적으로 발생한 감가상각과 시장 상황 변동에 의한 가치의 하락을 보험사건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제 1117호의 해석에 따라 회계적 보험사건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보장기간 동안에는 최대보장을 제공하므로 시간 비례 상각을 적용한다. - RVI의 계약서상 보험사건: 보험목적물의 매각시 매각가격이 가입금액 미만 - RVI의 회계상 보험사건: 보험목적물의 잔존가치에 대한 시장가격변동(금융변수) 과 물적 상태의 변동(비금융변수)

PAA 수익인식	상기의 CSM 상각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 비례 수익 인식 방법 적용 – 대기기간의 보험목적물의 가치 변동(시장가격 변동, 물적 상태 변동)에 대하여도 RVI보험은 보장을 제공하므로 보장기간에 포함함 1) 시장가치 변동 위험(금융위험): 잔존물의 경과연수와 관계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시간 비례 수익 인식 2) 물리적 상태 변동 위험(비금융위험): 잔존물의 물리적 상태 변동은 해당 잔존물의 사용에 비례하며, 일반적인 선박 및 차량은 일정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시간 비례 수익 인식

표96 | 수익인식 - 권원보험

권원보험의 보험사건은 계약서 작성 시점의 결함 자체가 아니라 결함의 발견이다.

구분	내용
CSM 상각	1) 기대보장기간 : 계약서 상 보장기간 2) 급부금의 양 : 보장기간 내 동일 최대보장 제공(보험금이 청구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과 시간의 경과에 무관) 3) CSM 상각 : 보장기간 내 시간 비례 수익 상각 – 권원보험의 계약서상 보험사건: 계약서 작성시 발견되지 않은 소유권 등 결함 – 권원보험의 회계적 보험사건 : 결함 자체가 아닌 결함의 발견 – 권원보험의 보험위험 : 결함의 발견 위험
PAA 수익인식	상기의 CSM 상각 방식을 준용하여 시간 비례 수익 인식 적용

건설공사, 조립보험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및 조립이 진행되어 위험목적담보물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보장기간 내 제공되는 위험의 보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시간 비례 수익 인식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추정한 위험의 해제 양상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3.3 손실부담부채

(1) 개요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부채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이 아니라고 가정하나, 사실과 상황이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다.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1)과 2)의 차이를 잔여보장부채에 포함시킨다.

1) 손실부담부채 반영 전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2) 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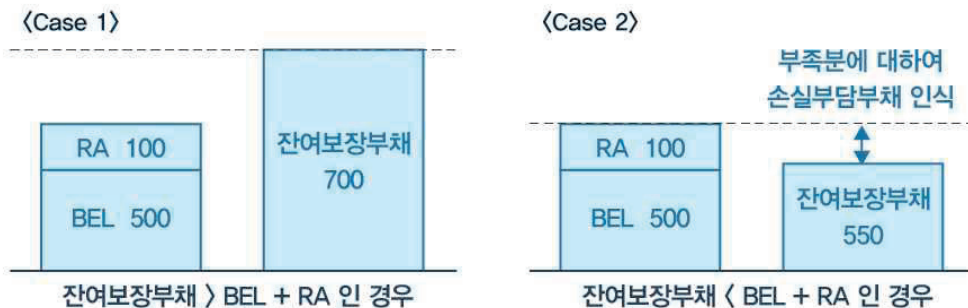
기준서 제 1117호에서는 손실부담부채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서도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을 산출하여 최선추정부채 및 위험조정을 산출한 뒤, 보험료배분접근법 하의 잔여보장부채와 비교하여 손실부담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손실부담부채 평가

손실부담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집합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 및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 기간 동안 매 보고기간 말 이루어진다.

사례101 | 손실부담부채 평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보험계약 집합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투자요소는 없다고 가정한다.)



Case 1의 경우 보험료 수취로 인한 잔여보장부채는 700이며 미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현재가치로 추정된 최선추정부채(BEL)과 위험조정(RA)의 합계는 $100 + 500 = 600$ 이다. 이러한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유입현금흐름(700)이 유출현금흐름(600)보다 크므로 손실부담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Case 1의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서는 손실부담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Case 2의 경우 보험료 수취로 인한 잔여보장부채는 550이며 미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현재가치로 추정된 최선추정부채와 위험조정의 합계는 $100 + 500 = 600$ 이다.

이러한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유입현금흐름(550)이 유출현금흐름(600)보다 작으므로 손실부담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Case 2의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서는 부채 인식 부족분($600 - 550 = 50$)만큼 추가로 손실부담부채를 인식한다.

두 경우,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Case 1

차) 현금	700	/ 대) 잔여보장부채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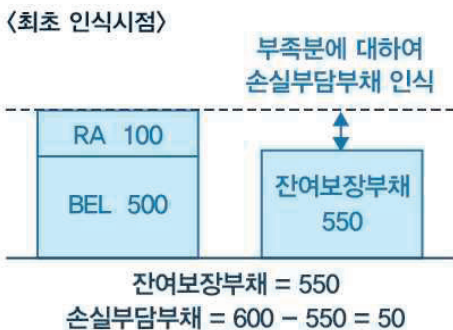
(2) Case 2

차) 현금	550	/ 대) 잔여보장부채	550
보험손익(손실비용)	50	잔여보장부채(손실부담부채)	50

보험계약 집합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손실부담부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손실부담부채 잔액의 변동은 보험손익을 구성한다. 계약집합의 보장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잔여기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유출액과 잔여보장부채 잔액이 0에 수렴하므로 보장기간 종료 시점에는 손실부담부채 잔액은 0이 된다. 따라서, 보장기간 내 인식하는 손실부담부채와 관련된 보험손익 또한 최종적으로 0이 되며, 이는 일반모형에서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된 손실요소(ΔCSM)와 같은 개념이다.

사례102 | 손실부담부채 평가(후속 측정)

직전 사례의 Case 2(손실부담부채 인식) 보험계약 집합이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 기간에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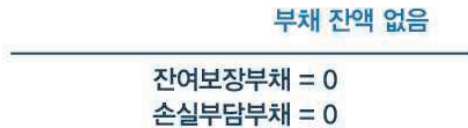


직전 사례와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잔여보장부채 550, 손실부담부채 50을 부채로 인식한다.

〈보장기간 1/2 경과〉



〈보장기간 종료〉



보장기간이 1/2 경과한 시점에, 잔여보장부채는 시간에 비례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므로 $550/2 = 275$, 잔여기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추정치는 $250(BEL) + 50(RA) = 300$ 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 집합은 여전히 손실부담계약이며, 손실부담부채는 $300 - 275 = 25$ 가 된다.

보장기간이 모두 경과하면 최초 인식한 잔여보장부채를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잔여보장부채 잔액은 0이 된다. 또한 보장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의 추정치 또한 0이 된다. 따라서 손실부담부채 역시 0이 된다.

시점별 잔여보장부채 및 손실부담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잔여보장부채	손실부담부채	계
최초 인식시점	550	50	600
보장기간 1/2 경과시점	275	25	300
보장 종료시점	—	—	—

기간 경과에 따른 부채의 변동분은 모두 보험손익으로 반영된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인식시점

차) 현금	550	/ 대) 잔여보장부채	550
보험손익(손실비용)	50	잔여보장부채(손실부담부채)	50

(2) 보장기간 1/2 경과시점

차) 잔여보장부채	275	/ 대) 보험손익(경과수익)	275
잔여보장부채(손실부담부채)	25	보험손익(손실부담부채 환입)	25

(3) 보장 종료시점

차) 잔여보장부채	275	/ 대) 보험손익(경과수익)	275
잔여보장부채(손실부담부채)	25	보험손익(손실부담부채 환입)	25

제3절. 출재보험(일반모형)

3.1 최초인식

3.1.1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출재보험계약

(1) 일반모형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그 시점에 발생한 모든 현금흐름의 합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한다.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하는 이익이 아니라, 재보험계약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원수보험계약과 같이 부(-)의 보험계약마진을 제한하지 않으며,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재보험료에 따라 순원가 또는 순차익이 발생한다.

1) 재보험계약 구입 시 순원가 발생

일반적으로 재보험계약을 구입할 때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은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합한 금액(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차변에 보험계약마진이 인식되며, 이는 재보험계약 구입에 대한 순원가를 나타낸다.

사례103 | 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측정 (일반모형: 재보험계약 구입 시 순원가 발생)

가정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270원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300)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30)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18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12)원

보험계약마진: 12원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0원

(1) 최초 인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 12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원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RA) 18원

2) 재보험계약 구입 시 순차익 발생

기업이 출재한 원수보험계약의 측정치를 과대평가하거나, 원수보험자의 유리한 가격 책정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재보험계약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에 비금융위험조정을 합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이 때 대변에 보험계약마진이 인식되며, 이는 재보험계약 구입에 대한 순차익을 나타낸다.

사례104 | 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측정 (일반모형: 재보험계약 구입 시 순차익 발생)

가정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270원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260)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0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18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28원

보험계약마진: (28)원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0원

(1) 최초 인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1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 28원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RA) 18원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화폐의 시간가치 및 위험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며, 재보험계약 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은 재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재보험료와 동일하다.

사례105 | 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 재보험자에게 300원의 재보험료를 지급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지급한 재보험료: 300원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300원

(1) 최초 인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300원 / 대) 현금 300원

3.1.2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 출재보험계약

(1) 일반모형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하거나 그 집합에 손실부담계약을 추가하여 손실을 인식할 때, 기업은 인식한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손실금액 중 출재보험계약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동 금액을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사례106 | 원수보험계약의 손실발생 시 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측정 (일반모형)

가정

- 기업은 정액보험료로 원수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의 30%를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
- 기업은 원수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의 30%를 재보험자에게 이전할 수 있음

<최초 인식시점에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원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1,000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00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60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160원

보험계약마진: 0원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부채(자산): 160원

최초 인식시점의 비용: 160원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270원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260)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0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18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28원

보험계약마진(손실회수 조정 전): (28)원

손실회수요소: 48원^{주1}

보험계약마진(손실회수 조정 후): 20원^{주2}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48원

최초 인식시점의 수익: 48원

(1) 원수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차) 보험서비스비용(손실요소)	160원 / 대)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BEL)	100원
		보험부채(잔여보장요소 RA)	60원

(2) 재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10원 / 대)	재보험수익(손실회수요소)	48원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RA)	18원 /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	20원 /		

주1 $160 \times 30\% = 48$

주2 $48 - 28 = 20$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재보험계약자산을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또는 집합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추가하는 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대신 잔여보장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동 금액을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사례107 | 원수보험계약의 손실발생 시 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정액보험료로 원수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의 30%를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 재보험자에게 300원의 재보험료를 지급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최초 수취한 보험료 : 900

장래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추정액 (PAA 추가적립액): 160원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160원

최초 인식시점의 비용: 160원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지급한 재보험료: 300원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의 회수: 48원^{주1}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348원

최초 인식시점의 수익: 48원

(1) 최초 인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348원 / 대)	현금	300원
		재보험수익(손실회수요소)	48원

주1 $160 \times 30\% = 48$

3.2 기중거래

3.2.1 재보험료 지급시점

(1) 일반모형

재보험료 지급 시 최초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보험료 금액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조정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금액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액 간 차이금액(재보험료 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재보험료의 경험조정 금액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108 | 재보험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 (일반모형: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조정)

가정

- 1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료: 300원
- 1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재보험료: 250원
- 기업은 예상한 재보험료 추정치 300원과 실제 발생한 25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50원의 경험조정에 대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1) 1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원 / 대) 현금 250원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 50원

- 2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료: 300원
- 2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재보험료: 400원
- 기업은 예상한 재보험료 추정치 300원과 실제 발생한 40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100원의 경험조정에 대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2) 2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원 / 대) 현금 400원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 100원

사례109 | 재보험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 (일반모형: 당기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조정)

가정

- 1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료: 300원
- 1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재보험료: 250원
- 기업은 예상한 보험료 추정치 300원과 실제 발생한 25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50원의 경험조정에 대해 당기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1) 1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원 / 대) 현금 250원
재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료 경험조정) 50원

- 2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험료: 300원
- 2차월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실제 지급한 재보험료: 400원
- 기업은 예상한 보험료 추정치 300원과 실제 발생한 40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100원의 경험조정에 대해 당기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2) 2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원 / 대) 현금 400원
재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료 경험조정) 100원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지급한 재보험료는 잔여보장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재보험계약의 잔여보장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는 재보험료는 최초 인식시점 및 이후 해당 기간에 실제로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재보험료를 의미한다.

사례110 | 재보험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총 재보험료는 500원
- 기업은 1차월 재보험자에게 300원의 재보험료를 지급
- 총 예상재보험료 500원 중 1차월에 지급한 300원을 제외한 200원은 2차월에 지급하기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3차월에 발생

(1) 재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회계처리 없음

(2) 1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300원 / 대) 현금 300원

(3) 2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회계처리 없음

(4) 3차월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200원 / 대) 현금

200원

(3) 복원보험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사건 발생 시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강제적 복원보험료와 자발적 복원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1) 강제적 복원보험료

강제적 복원보험료는 계약상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누적보험금 발생 시 강제적으로 부과된다. 강제적 복원보험료는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하는 재보험금과 순액으로 결제되는데, 이는 지급하는 재보험금을 차감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재보험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사례111 | 재보험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 (강제적 복원보험료)

가정

-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취할 재보험금: 2,000원
- 재보험금 발생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할 복원보험료: 300원
- 복원보험료 차감후 수취할 재보험금 순액: 1,700원

(1) 재보험금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2,000원 / 대)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2,000원

(2) 복원보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30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00원

(3) 복원보험료 차감된 재보험금 수취시점

차) 현금 1,70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1,700원

2) 자발적 복원보험료

자발적 복원보험료는 강제적 복원보험료와 달리 기업이 복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이는 자발적 복원보험료의 지급으로 인해 보장기간 또는 수준이 증가하므로 추가보험료 지급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자발적 복원보험료는 일반적인 재보험료의 지급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사례112 | 재보험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 (자발적 복원보험료)

가정

- 해당 기간 발생한 실제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의 차이는 없음
-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취할 재보험금: 2,000원
- 재보험금 발생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할 복원보험료: 300원

(1) 재보험금 수취시점

차) 현금 2,000원 / 대)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2,000원

(2) 복원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원 / 대) 현금 300원

3.2.2 재보험수수료 발생시점

(1)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한 재보험수수료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재수수료의 경제적 효과는 출재수수료 없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즉,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한 출재수수료는 재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하며, 기업이 인식할 재보험비용에서 제외된다.

1) 일반모형

재보험수수료 수취 시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액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조정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금액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액 간 차이금액(경험조정)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재보험료수수료의 경험조정 금액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113 |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한 재보험수수료 (고정수수료: 일반모형)

가정

- 해당 기간 발생한 실제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의 차이는 없음
- 원수보험계약의 손해율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는 재보험료의 30%의 고정수수료를 기업에게 지급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없음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미래현금유입액(출재수수료)의 현재가치 추정치: 1,800원

미래현금유출액(재보험료)의 현재가치 추정치: (6,000)원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4,200)원

이행현금흐름(최선추정과 위험조정): (4,200)원

보험계약마진: 4,200원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부채): 0원

(1) 최초 인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 4,2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4,200원

(2)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6,000원 / 대) 현금 6,000원

(3) 재보험수수료 수취시점

차) 현금 1,8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1,800원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재보험계약의 잔여보장자산에서 발생한 재보험료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보험료의 감소로 처리하는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한 출채수수료는 실제 발생 시 재보험계약의 잔여보장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사례114 |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무관한 재보험수수료 (고정수수료: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원수보험계약의 손해율과 무관하게 재보험자는 재보험료의 30%의 고정수수료를 기업에게 지급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없음

<최초 인식시점에 재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기업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재보험료: 6,000원

기업이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한 재보험수수료: 1,800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4,200)원

(1) 재보험료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6,000원 / 대) 현금 6,000원

(2) 재보험수수료 수취시점

차) 현금 1,8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1,800원

(2)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수수료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출제수수료는 어떠한 상황에도 환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투자요소와 그 외 금액으로 구분가능하다. 출제수수료 중 투자요소로 처리되는 금액은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며 기업이 인식할 재보험비용에서 제외된다. 투자요소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재보험자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재보험금을 변동시키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출제보험계약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처리한다.

1) 일반모형

기업은 보험금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요소의 금액 및 해당 기간에 지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결정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투자요소의 발생금액과의 차이금액(경험조정)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며, 투자요소의 경험조정 금액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례115 |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수수료 (이익수수료: 일반모형)

가정

- 기업은 일반모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재보험료: 5,100원
-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잠정수수료: 100원
- 출제이익수수료율: 30%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 예상 재보험금: 3,000원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재보험금: 4,000원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 예상 이익수수료: 600원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이익수수료: 300원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정산수수료: 30원
- 이익수수료에서 발생한 예상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는 전액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1) 최초 인식시점

회계처리 없음

(2) 재보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5,000원 / 대) 현금 5,000원

(3) 재보험금 발생시점

차) 재보험서비스비용(예상재보험금) 3,0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4,000원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4,000원
 현금 4,00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4,000원

(4) 이익수수료, 정산수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주2} 3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주1} 600원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CSM)^{주3} 300원

차) 현금 30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00원
현금 30원 재보험수익(정산수수료) 30원

주1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것으로 기대한 예상 이익수수료 600

주2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한 실제 이익수수료 300

주3 이익수수료 경험조정

2) 보험료배분접근법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출재수수료 중 투자요소로 인식된 금액은 재보험비용으로 인식하는 보험료배분금액에서 제외한다. 투자요소 발생 시 해당 금액은 재보험계약의 잔여보장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사례116 |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수수료 (이익수수료: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재보험료: 5,000원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재보험금: 3,000원
- 출재이익수수료율: 30%
-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수취할 수 있는 금액(투자요소): 1,500원
-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이익수수료: 600원

(1) 재보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5,000원 / 대) 현금 5,000원

(2) 재보험금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000원 / 대)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3,000원
현금 3,00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000원

(3) 재보험료 배분

차) 재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료배분)^{주1} 3,5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3,500원

주1 재보험료 5,000 - 투자요소 1,500 = 3,500

(4) 이익수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주2} 6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1,500원
 재보험수익 900원

차) 현금 60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600원

주1 투자요소 1,500

주2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이익수수료 600

사례117 |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는 수수료 (잠정 및 정산수수료: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재보험료: 6,000원
- 재보험료 지급 시 재보험료의 30%를 잠정수수료로 수취
- 출재수수료는 재보험료의 20~40%사이로 원수계약의 손해율과 연관되며, 계약의 최종 손해율에 기초한 금액을 최초 잠정 수수료에서 조정 후 결제
-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수취할 수 있는 금액(투자요소): 600원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재보험금: 4,500원
- 잠정수수료 조정 후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정산수수료: 600원

(1) 재보험료 및 잠정수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4,200원^{주1} / 대) 현금 4,200원

주1 재보험료 6,000 - 잠정수수료 (6,000 × 30%) = 4,200

(2) 재보험금 발생시점

차) 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4,500원 / 대)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4,500원
 현금 4,50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4,500원

(3) 재보험료 배분

차) 재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료배분)^{주1} 3,6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 3,600원

주1 재보험료 6,000 - 투자요소 2,400 = 3,600

(4) 정산수수료 발생시점

차) 재보험수익 1,2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PAA)^{주1} 60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주2} 600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600원 / 대) 현금 600원

주1 투자요소 2,400 - 잠정수수료 (6,000 × 30%) = 600

주2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정산수수료 600

3.2.3 재보험금 수취시점

(1) 일반모형

보험사고 발생 시 최초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재보험금 금액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조정하며,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재보험금을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발생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사례118 | 재보험금 수취시점의 회계처리 (일반모형)

가정

- 기업이 해당 기간에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한 재보험금: 300원
- 기업이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재보험금: 250원
- 재보험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 재보험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음

(1) 재보험금 발생시점

차) 재보험서비스비용(예상재보험금) 30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30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250원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250원

(2) 재보험금 수취시점

차) 현금 25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250원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재보험금을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발생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식별하지 않으므로 일반모형과 같이 사고발생시점에 별도로 재보험서비스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례119 | 재보험금 수취시점의 회계처리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기업이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재보험금: 250원
- 재보험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음

(1) 재보험금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250원 / 대)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250원

(2) 재보험금 수취시점

차) 현금 25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250원

3.2.4 수입손해조사비 수취시점

(1) 일반모형

보험사고 발생 시 최초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입손해조사비 금액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조정하며,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수입손해조사비를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발생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사례120 | 수입손해조사비 수취시점의 회계처리 (일반모형)

가정

- 기업이 해당 기간에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한 수입손해조사비: 80원
- 기업이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수입손해조사비: 100원
- 수입손해조사비에서 발생한 경험조정은 당기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
- 재보험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음

(1) 수입손해조사비 발생시점

차) 재보험서비스비용(예상수입손해조사비) 80원 / 대)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8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100원 재보험수익(발생수입손해조사비) 100원

(2) 수입손해조사비 수취시점

차) 현금 10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100원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수입손해조사비를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발생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식별하지 않으므로 일반모형과 같이 수입손해조사비 발생 시점에 별도로 재보험서비스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례121 | 수입손해조사비 수취시점의 회계처리 (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기업이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재보험금: 250원
- 기업이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실제 수입손해조사비: 100원
- 재보험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음

(1) 수입손해조사비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100원 / 대) 재보험수익(발생재보험금) 100원

(2) 수입손해조사비 수취시점

차) 현금

10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100원

3.2.5 계약유지 관련비용 발생

(1) 일반모형

기업은 미래현금흐름 측정 시 재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발생하는 원가가 둘 이상의 집합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현금흐름은 각 재보험계약 집합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계약유지비용 금액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서 조정하며, 동 금액을 재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계약유지비용을 재보험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하며, 발생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한다. 발생한 사업비 중 어떠한 보험계약 집합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간접비용은 기타사업비로 분류한다.

사례122 | 계약유지 관련비용 발생시점의 회계처리(일반모형)

가정

- 기업이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계약유지비용: 400원
- 해당 기간에 실제 발생한 계약유지비용: 350원
- 계약집합에 귀속되지 못한 기타 간접비: 40원

(1) 재보험계약유지비용 발생시점

차) 재보험자산(잔여보장요소 BEL)	400원	/ 대) 재보험서비스비용(예상계약유지비)	400원
재보험수익(발생계약유지비)	350원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50원

(2) 재보험계약유지비용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50원	/ 대) 현금	390원
기타사업비용	40원		

(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보험금을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발생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한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식별하지 않으므로 일반모형과 같이 계약유지비용 발생시점에 별도로 재보험서비스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례123 | 계약유지 관련비용 발생시점의 회계처리(보험료배분접근법)

가정

- 기업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재보험계약 집합을 측정
- 기업이 해당 기간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계약유지비용: 400원
- 해당 기간에 실제 발생한 계약유지비용: 350원
- 계약집합에 귀속되지 못한 기타 간접비: 40원

(1) 재보험계약유지비용 발생시점

차) 재보험수익(발생계약유지비) 350원 / 대)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50원

(2) 재보험계약유지비용 지급시점

차) 재보험자산(발생사고요소 BEL) 350원 / 대) 현금 390원
 기타사업비용 40원

3.3 결산정리

3.3.1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

출재보험계약의 BEL 변동, RA변동 및 CSM 변동 등 기본 회계처리는 원수보험계약 중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집합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원수보험계약의 회계처리는 제4장 제1절 회계처리(일반모형) 참조)

다만,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음(-)의 CSM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인식 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된다.

사례124 | 출재보험계약 최초인식

가정

-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측정 결과 BEL 1,000,000원, RA 200,000원 으로 CSM (-) 1,200,000원
- 원수보험계약을 30% 비례 출재한 경우

(1) 출재보험계약 집합을 일반모형을 적용한 경우,

최초 측정 결과 BEL 300,000원, RA 60,000원, CSM (-)360,000원인 경우 회계처리

차) 출재잔여보장자산 BEL 300,000 / 대) 출재잔여보장자산 CSM 360,000
출재잔여보장자산 RA 60,000

(2) 출재보험계약집합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경우,

출재보험료가 300,000원 이며, 추가로 보험금 회수가 80,000원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

차) 출재잔여보장자산 PAA 380,000 / 대) 현금 300,000
출재-원수연계평가수익 80,000

3.3.2 투자회수요소의 인식

투자회수요소란 보험사건 발생과 무관하게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요소로 위험보험료 출재방식이라 하더라도 이익수수료 등으로 인해 출재보험에서도 투자회수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손해율이 0이더라도 정해진 이익수수료율에 따라 이익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므로 손해율을 0으로 가정한 이익수수료를 투자회수요소로 정의하여 보험손익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출재보험의 투자회수요소는 제3장 손익계산서 제6절 출재보험손익 총론 참조)

투자회수요소 및 보험금이나 급부금에 연동/연동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 한다.

표97 | 투자회수요소 처리

구 분	예 시	회계처리
투자회수요소	이익수수료, Sliding scale commission의 정산분	보험손익 미인식 (단, 예상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원수보험계약의	강제적인 복원보험료	보험금에 가감하여 처리

구 분	예 시	회계처리
보험금이나 급부금에 기초하는 금액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지 않는 금액	순수보장상품의 해약환급금, No claim bonus, 고정수수료, Sliding scale commission의 잠정분(보험료 수취와 동일시점에 고정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의 차감으로 처리

각 항목별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례125 | 투자회수요소의 인식

가정

(1) 투자회수요소의 회계처리

A재보험회사에 이익수수료율 15%의 재보험을 출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인식 시 BEL 1,000,000원, RA 200,000원, CSM 1,200,000원으로 측정된다.

차) 출재잔여보장자산 BEL 1,000,000 / 대) 출재잔여보장자산 CSM 1,200,000
출재잔여보장자산 RA 200,000

당기말 예상출재이익수수료는 150,000원이며, 실제로 수취한 출재이익수수료는 200,000원이다.

차) 재보험비용- 예상출재이익수수료^{주1} 150,000 / 대) 출재잔여보장자산 BEL 150,000
현금 200,000 출재이익수수료 200,000

^{주1} 단, 이익수수료의 경우 투자회수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도까지의 금액은 재보험비용과 재보험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이나 급부금에 기초하는 금액

B재보험회사에 강제적 복원보험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차) 출재보험료 1,000,000 / 대) 현금 1,000,000

지급한 강제적 복원보험료는 재보험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출재잔여보장자산 BEL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차) 재보험금수익 1,000,000 / 대) 출재보험료 1,000,000

(3)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지 않는 금액

C재보험회사에 출재보험료를 1,000,000원 지급하고, 동시에 고정수수료 200,000원을 수취한다.
본 예시에서 예상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차) 출재보험료 1,000,000 / 대) 출재보험수수료 200,000
현금 800,000

수취한 고정수수료 금액은 출재보험료의 차감으로 처리하며, 예상출재보험료 및 예상출재보험수수료에 대한 출재잔여보장자산을 조정한다.

차) 출재잔여보장자산 BEL 1,000,000 / 대) 출재보험료 1,000,000
출재보험수수료 200,000 출재잔여보장자산 BEL 200,000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투자회수요소에 대해서는 위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

3.3.3 재보험수수료와 투자회수요소

(1) 재보험수수료의 종류

투자회수요소는 모든 상황(보장사건의 발생과 무관)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최소 금액으로 정의되며, 출재계약의 경우 출재자에게 어느 상황에서라도 환급된다면 투자회수요소의 정의를 만족 한다. 투자회수요소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 반영하지 않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재보험수수료 및 투자회수요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재보험수수료가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이나 급부금에 기초

① 투자회수요소 요건 충족시 →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 반영 제외(보험부채 차감 인식)

② 투자회수요소 요건 불충족시 → 보험서비스비용 반영

2) 재보험수수료가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 → 보험료 차감

3) 이익수수료의 Minimum cashout = 수취보험료 * 이익수수료율

4) Sliding scale commission의 Minimum cashout = 수취보험료 * (최대 - 잠정수수료율)

해당 투자회수요소는 수취된 보험료에 비례하여 잔여보장부채 내에 구분되어 존재하며,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대체된 투자회수요소의 금액만큼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발생사고부채를 증가시킨다.

(2) 재보험수수료의 인식 및 측정

재보험수수료 중 최초 보험료 지급 시 차감되는 고정수수료 및 Sliding scale commission의 잠정수수료분은 보험료 차감 요소로 분류된다.

보험료 차감 요소의 특징은 보험료 수취 시 보험계약자에게 즉시 지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보험거래에서 상기의 재보험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취된 보험료에서 지급된 재보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장부채(출재의 경우 자산)을 계상하고,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과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료 차감 요소로 분류되는 재보험수수료와 투자회수요소로 분류되는 재보험수수료가 같이 있는 경우, 보험료 차감 요소를 먼저 회계처리하고, 차감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투자회수요소를 인식 및 측정한다.

3.3.4 이익수수료의 배분

출재보험계약 중 다수는 각 Treaty마다 연도별로 계산된 수치차로 이익수수료를 산출하여 연도말에 출재보험사로 1회 지급하고 있다. 각 Treaty별 계산된 이익수수료를 보험계약 집합별로 배분하는 방법, 연도말에 한번 발생하는 출재보험 이익수수료를 중간보고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방식을 사용하든 실제 발생하는 이익수수료를 적합하게 추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익수수료 추정모델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집합별 이익수수료 배분

재보험계약의 정산단위(Treaty)보다 보험계약 집합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정산단위별로 산출된 이익수수료를 합산한 뒤 각각의 보험계약 집합별로 산출된 수치차(재보험료-재보험금)를 배분 driver로 하여 보험계약 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2) 중간보고기간별 이익수수료 배분

연도말까지의 예상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이익수수료 총액을 산출한 후 보험금 및 이익수수료에 따라 중간보고기간별로 배분할 수 있다.

3.3.5 불이행위험의 반영

출재보험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하며,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및 회수금액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당기말 불이행위험을 반영한 BEL과 전기말 불이행위험을 반영한 BEL의 차이를 보험금융비용의 하위항목인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으로 인식한다.

사례126 | 출재보험계약 불이행위험 반영

예시

$$\text{손실조정} = \sum_i^n (PD_i \times \text{부도시손실액}_i)$$

- ▶ i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부도시점, n = 만기
- ▶ PD_i (부도확률) = $PD \cdot (1 - PD)^{i-1}$
- ▶ PD = 재보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 ▶ 부도시손실액 $_i$ = $\sum_i^n C_i \cdot (1 - \text{회수율})$
(단, C_i 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i 시점 회수예상액)

기시: 불이행위험반영 前 BEL 1,000,000원, 불이행위험반영 後 BEL 800,000원

기말: 불이행위험반영 前 BEL 700,000원, 불이행위험반영 後 BEL 400,000원

차)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100,000 / 대) 출재 BEL 100,000

(100,000 = (700,000 - 400,000) - (1,000,000 - 800,000))

RA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재보험자 신용위험에 따른 불이행위험은 RA에 반영하지 않는다.

3.3.6 손실회수요소

임의출재계약 및 특약출재 중 비례재보험계약의 경우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은 출재율에 근거하므로 손실회수요소는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손실부담부채에 출재율(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 출재된 부분을 고려한 가중평균출재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원수보험계약의 손실요소로 인식하는 당기손익에 출재율을 곱한 금액만큼 출재보험에서 손실회수요소를 인식한다.

다만, 계약, 담보 또는 세부담보 단위로 출재가 이루어져 출재보험계약 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을 특약서 상 출재율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경우, 원수보험계약 집합과 출재보험계약 집합 간 대표 출재율(예상)을 산정 후 손실회수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는 손실회수요소 금액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손실요소 인식금액에 대표 출재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

사례127 | 출재보험계약의 손실회수요소

손실요소회수금액 = 손실요소금액 *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율

예시

회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율이 40%인 경우

구분	기시	손실요소/ 손실회수요소 배분	손실요소/ 손실회수요소 변동	기말
손실요소	1,000,000	(200,000)	400,000	1,200,000
손실회수요소	400,000	(80,000)	160,000	480,000

(1) 손실요소 및 손실회수요소 배분 회계처리

차) 보험수익-예상보험금 200,000 / 대) 보험서비스비용-손실요소배분 200,000
 재보험수익-손실회수요소배분 80,000 재보험비용-예상출재보험금 80,000

(2) 손실요소 및 손실회수요소 변동 회계처리

차) 보험서비스비용-손실요소 400,000 / 대) 잔여보장부채 BEL 400,000
 출재잔여보장자산 BEL 160,000 재보험수익-손실회수요소 160,000

제4절.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양식

계정과목	금액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위험회피회계적용파생상품자산)	
(기타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특별계정자산)	
I. 운용자산	
1. 현금및예치금	
가. 현금과예금	
(1) 현금	
(2) 당좌예금	
(3) 보통예금	
(4) 정기예금	
(5) 정기적금	
(6) 해외제예금	
(7) 기타예금	
나. 금전신탁	
다. 선물거래예치금	
라. 기타예치금	
2. 유가증권	
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가. 주식	
(1) 상장주식	
(2) 기타	
나. 출자금	
다. 국·공채	
(1) 국채	
(2) 공채	
라. 특수채	
마. 금융채	
바. 회사채	

(1) 보증사채	
(2) 무보증사채	
사. 수익증권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1) 주식	
(2) 채권	
(3) 수익증권	
(4) 신통유가증권	
(5) 기타유가증권	
자. 기타유가증권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가. 주식	
(1) 상장주식	
(2) 기타	
나. 출자금	
다. 국·공채	
(1) 국채	
(2) 공채	
라. 특수채	
마. 금융채	
바. 회사채	
(1) 보증사채	
(2) 무보증사채	
사. 수익증권	
아. 외화표시유가증권	
(1) 주식	
(2) 채권	
(3) 수익증권	
(4) 신통유가증권	
(5) 기타유가증권	
자. 기타유가증권	
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실충당금)	
가. 국·공채	
(1) 국채	
(2) 공채	
나. 특수채	
다. 금융채	
라. 회사채	
(1) 보증사채	
(2) 무보증사채	
마. 수익증권	
바. 외화표시유가증권	

(1) 채권	
(2) 수익증권	
(3) 신종유가증권	
(4) 기타유가증권	
사. 기타유가증권	
2-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자산]	
[관계기업투자자산]	
가. 주식	
나. 출자금	
다. 기타	
3. 대출채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가. 콜론	
나.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다. 부동산담보대출금	
라. 신용대출금	
마. 어음할인대출금	
(1) 상업어음할인	
(2) 무역어음할인	
(3) 기타	
바. 지급보증대출금	
사. 기타대출금	
(1) 사모사채	
(2) C P	
(3)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	
(4) 기타	
4. 부동산	
(손상차손누계액)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토지)	
- 투자부동산 (건물)	
- 투자부동산 (해외부동산)	
- 투자부동산 (기타)	
가. 토지	
나.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다.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라. 해외부동산	
(감가상각누계액)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건설중인자산	
마. 건설중인자산	
바. 기타부동산	
(감가상각누계액)	
II. 비운용자산	
1. 보험계약자산	
가. 잔여보장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보험계약마진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나. 발생사고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손상차손누계액)	
2. 재보험계약자산	
가. 잔여보장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보험계약마진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나. 발생사고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미수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4.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가. 공탁금	
나. 예약보증금	
다. 임차보증금	
라. 기타보증금	
5.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6. 선급비용	
7. 선급법인세	
8. 선급부가세	
9. 선급금	
가. 일반선급금	
나. 부동산매입선급금	
10. 가지급금	
(대손충당금)	
가. 일반가지급금	
나. 부동산매입가지급금	
11. 가지급보험금	
12. 본지점계정차	
13.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4.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5. 임차점포시설물	
(감가상각누계액)	
16. 기타의유형자산	
17. 이연법인세자산	
18. 파생상품자산	
[매매목적파생상품]	
[헤지목적파생상품]	
가. 이자율관련	
나. 통화관련	
다. 주식관련	
라. 신용관련	
마. 기타	
19. 무형자산	
(손상차손누계액)	
가. 영업권	
나. 소프트웨어	
다. 개발비	
라. 기타의무형자산	
20. 어음	
(대손충당금)	
가. 받을어음	
나. 부도어음	
21. 순확정급여자산	
22. 기타의비운용자산	
III. 특별계정자산	
(특별계정미지급금-실적배당형퇴직연금)	
(특별계정미지급금-변액보험)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2. 변액보험	
<부채>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과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포함된부채)	
(특별계정부채)	
I. 책임준비금	
1. 보험계약부채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배당부채]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보증부채]	
가. 잔여보장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보험계약마진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나. 발생사고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다. 사전인식 보험취득현금흐름	
2. 재보험계약부채	
가. 잔여보장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보험계약마진	
(4)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나. 발생사고요소	
(1) 최선추정	
(2) 위험조정	
3. 투자계약부채	
II. 기타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1. 미지급금	

2. 미지급비용	
3. 미지급법인세	
4. 당좌차월	
5. 차입금	
가. 콜머니	
나. RP매도	
다. 후순위차입	
라. 기업어음의발행	
마. 기타	
6. 사채	
가. 후순위채권	
나. 일반채권	
7. 선수금	
8. 선수수익	
9. 예수금	
10. 미지급부가세	
11. 가수금	
12. 가수보험료	
13. 본지점계정대	
14. 이연법인세부채	
15. 임대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16. 순확정급여채무	
가. 확정급여채무	
나.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다.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라. 사외적립자산	
(1) 퇴직연금운용자산	
(2) 기타사외적립자산	
17.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	
[헤지목적파생상품]	
가. 이자율관련	
나. 통화관련	
다. 주식관련	
라. 신용관련	
마. 기타	
18. 신탁계정차	
19. 복구충당부채	
20. 채무보증충당부채	
21. 요구불상환지분	
가. 상환우선주	
나. 기타	

22. 지급어음	
23. 자산재평가계약자지분	
가. 공익사업출연기금	
나. 재평가적립금	
24. 그밖의기타부채	
III. 특별계정부채	
(특별계정미수금-실적배당형퇴직연금)	
(특별계정미수금-변액보험)	
1. 실적배당형퇴직연금	
2. 변액보험	
<자본>	
I. 자본금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1. 보통주자본금	
[발행보통주식수]	
2. 우선주자본금	
[발행우선주식수]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재평가적립금	
4. 기타자본잉여금	
III.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 (-)	
(할증발행차금) (+)	
IV. 계약자지분조정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2.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3. 재평가잉여금	
V.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가. 기업합리화적립금	
3. 대손준비금	
4. 임의적립금	
5. 처분전이익잉여금(처리전결손금)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6. 해약환급금준비금	
7. 보증준비금	
8. 비상위험준비금	
VI. 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자기주식	
3. 기타자본조정	
V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지분상품평가손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3. 관계·중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6. 해외사업환산손익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가.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나.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이익	
라. 공정가치위험회피평가손실	
8. 재평가잉여금	
9. 보험수리적손익	
10. 기타	

4.2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계정과목	금액
I. 보험손익	
1. 보험수익	
1-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수익	
가. 예상보험금	
나. 예상손해조사비	
다. 예상계약유지비	
라. 예상투자관리비	
마. 위험조정변동	
바. 보험계약마진상각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아. 손실요소 배분액	
(1) 최선추정 수익인식 배분	
(2) 위험조정 수익인식 배분	
자. 기타보험수익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2) 수취보험료 경험조정	
(3) 기타	
1-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수익	

2. 보험서비스비용	
2-1. 일반모형/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가. 발생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다. 발생계약유지비	
라. 발생투자관리비	
마.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바. 발생사고요소조정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사.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아. 손실요소 배분액	
자. 기타보험서비스비용	
(1) 보험취득현금흐름 경험조정	
(2) 보험취득현금흐름자산 손상차손(환입)	
(3) 기타	
2-2. 보험료배분접근법 보험서비스비용	
가. 발생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다.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마. 보험취득현금흐름 즉시인식액	
바.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사. 기타보험서비스비용	
3. 재보험수익	
3-1. 일반모형 재보험수익	
가. 발생재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바. 기타재보험수익	
3-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수익	
가. 발생재보험금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인식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인식액	
나. 발생손해조사비	
다.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라. 발생사고요소조정	
(1) 발생사고요소 최선추정 변동액	
(2) 발생사고요소 위험조정 변동액	
마. 기타재보험수익	
4. 재보험서비스비용	
4-1. 일반모형 재보험서비스비용	
가. 예상재보험금	
나. 예상손해조사비	
다. 위험조정변동	
라. 보험계약마진상각	
마.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1) 최선추정부채 비용인식 배분	
(2) 위험조정 비용인식 배분	
바. 기타재보험서비스비용	
(1) 재보험료 경험조정	
(2) 기타	
4-2. 보험료배분접근법 재보험서비스비용	
5. 기타사업비용	
II. 투자손익	
1. 투자수익	
가. 보험금융수익	
(1) 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② 환율변동수익	
③ 할인율변동수익	
④ 기타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수익	
① 보험금융이자수익	

② 환율변동수익	
③ 할인율변동수익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⑤ 기타	
나. 이자수익	
(1) 예금이자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자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이자	
(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자	
(5) 대출채권이자	
(6) 기타이자수익	
다. 배당수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배당수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배당수익	
(3)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배당수익	
(4) 기타배당수익	
라. 임대료수익	
마. 수수료수익	
바. 금융상품처분이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이익	
(4) 대출채권처분이익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6) 기타	
사. 금융상품재분류이익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① 유가증권	
② 대출채권	
③ 기타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이익	
① 차입부채	
② 요구불상환지분	
③ 기타	
자. 금전신탁이익	
차. 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1) 대손충당금환입	

(2)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환입	
(3) 파생상품손상차손환입	
(4) 기타	
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1) 부동산손상차손환입	
(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 기타	
파. 지분법평가이익	
하. 파생상품거래이익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1) 이자율관련	
(2) 통화관련	
(3) 주식관련	
(4) 신용관련	
(5) 기타	
거. 파생상품평가이익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1) 이자율관련	
(2) 통화관련	
(3) 주식관련	
(4) 신용관련	
(5) 기타	
너. 외환차익	
더. 외화환산이익	
러. 부동산처분이익	
[투자부동산처분이익]	
머. 재평가손실환입	
버. 신탁보수	
서. 금융부채상환이익	
(1) 발행채권	
(2) 요구불상환지분	
(3) 기타	
어. 염가매수차익	

저. 기타투자수익	
2. 투자비용	
가. 보험금융비용	
(1) 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② 환율변동비용	
③ 할인율변동비용	
④ 기타	
(2) 재보험계약보험금융비용	
① 보험금융이자비용	
② 환율변동비용	
③ 할인율변동비용	
④ 재보험자불이행위험변동액	
⑤ 기타	
나. 이자비용	
(1) 당좌차월이자	
(2) 차입금이자	
① 콜머니이자	
② RP매도이자	
③ 후순위차입금이자	
④ 기타	
(3) 발행채권이자	
(4) 신탁계정차이자	
(5) 요구불상환증권이자	
(6) 리스부채이자	
(7) 기타이자비용	
다. 재산관리비	
라. 부동산관리비	
마. 지분법평가손실	
바. 금융상품처분손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장외채권중개수수료)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장외채권중개수수료)	
(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처분손실 (장외채권중개수수료)	
(4)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5) 대출채권처분손실	

(6) 기타	
사. 금융상품재분류손실	
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① 유가증권	
② 대출채권	
③ 기타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① 차입부채	
② 요구불상환지분	
③ 기타	
자. 금전신탁손실	
차. 금융상품손상차손	
(1) 대손상각비	
(2) 유가증권손상차손	
①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손상차손	
(3) 파생상품손상차손	
(4) 기타	
카.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타. 비금융자산손상차손	
(1) 부동산손상차손	
(2) 무형자산손상차손	
(3) 기타	
파. 파생상품거래손실	
[매매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헤지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1) 이자율관련	
(2) 통화관련	
(3) 주식관련	
(4) 신용관련	
(5) 기타	
하. 파생상품평가손실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1) 이자율관련	
(2) 통화관련	
(3) 주식관련	

(4) 신용관련	
(5) 기타	
거. 외환차손	
너. 외화환산손실	
더. 부동산처분손실	
[투자부동산처분손실]	
러. 재평가손실	
머. 부동산감가상각비	
버. 무형자산상각비	
서.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어. 금융부채상환손실	
(1) 발행채권	
(2) 요구불상환지분	
(3) 기타	
저. 기타투자비용	
III. 영업이익(또는영업손실)	
IV. 영업외손익	
1. 영업외수익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나. 전기오류수정이익	
다. 외환차익	
라. 외화환산이익	
마. 자산수증이익	
바. 채무면제이익	
사. 보험차익	
아. 잡이익	
2. 영업외비용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나. 기부금	
다. 전기오류수정손실	
라. 외환차손	
마. 외화환산손실	
바. 재해손실	
사. 과징금·과태료·벌과금등	
아. 잡손실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VI. 법인세비용	
VII. 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	

(법인세차감후중단사업손익)	
(비상위험준비금적립액)	
(해약환급금준비금적립액)	
(보증준비금적립액)	
(대손준비금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후 당기순이익)	
VIII. 기타포괄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지분상품평가손익]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3.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 할인율 변경효과	
(2) 환율 변경효과	
(3) 기타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 할인율 변경효과	
(2) 환율 변경효과	
(3) 기타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6. 해외사업환산손익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8. 재평가잉여금	
9. 보험수리적손익	
10. 기타	
IX. 총포괄손익	

- ◆ 본 해설서에 관한 질의 또는 제안은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145-7251, 팩스 : 02-3145-7249)
- ◆ 본 해설서는 발간시점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추가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해설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업무자료 (보험 - RBC제도 및 감독회계 - 업무자료)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계해설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반영-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생명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손해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원타워 B동

인쇄처 준아트

Tel : 02-6393-0682